

29

독일통일 총서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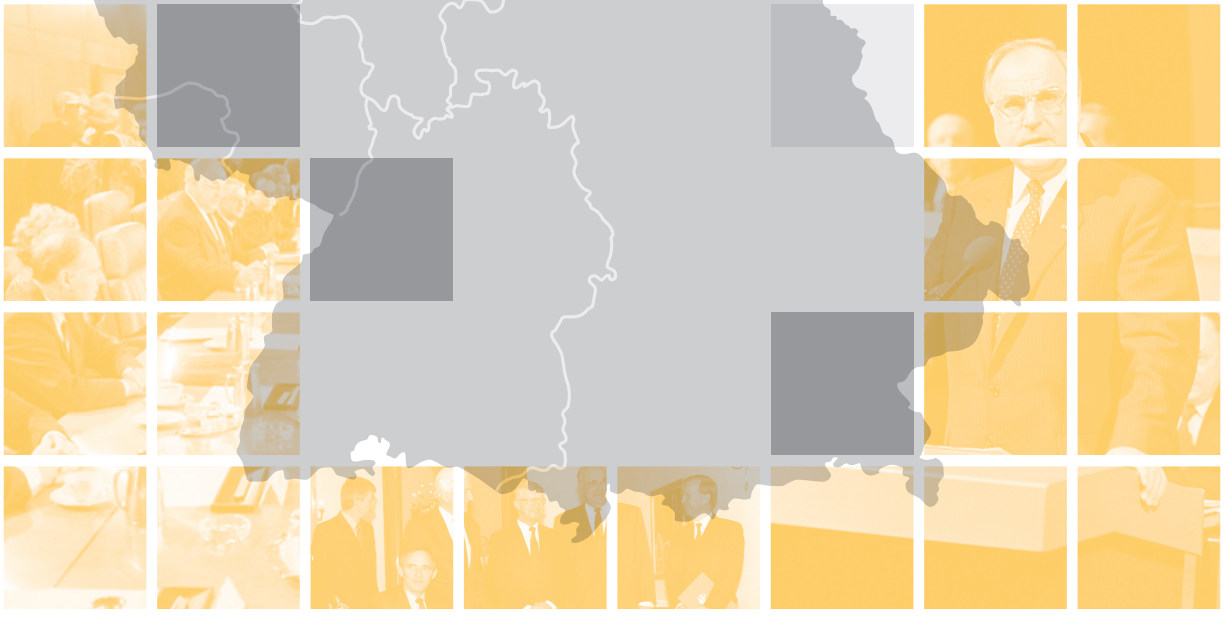


29

독일통일 총서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29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케이앤케이컴
전화 070-4773-7761

CONTENTS



I 독일통일 과정에서 수상청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 고찰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정책결정론(의사결정론)에 대한 이론 20

제2장 독일 연방정부의 구조와 역할 25

제1절 연방정부의 운영 원리 26

제2절 연방정부의 구성 27

1. 수상과 수상청 27

2. 장관과 부처 29

제3절 수상의 의사결정 과정 30

제3장 서독의 독일정책 결정 기구와 역할 32

제1절 독일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기구 33

1. 수상청: 독일정책 결정의 중심 33

2. 비공식 그룹/전문가 40

3. 내각 회의 42

4. 내독관계부 43
5. 외무부 45
6. 정부 조정위원회 45
제2절 통일과정(1989–1990)에서 콜 수상의 정치력 48

제4장 독일통일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 서독 정부의 정책결정 환경 55
제1절 국제적 조건의 변화 55
1. 소련의 변화: 독일통일의 계기 제공 56
2. 미국의 입장: 독일통일의 동력 제공 57
3. 프랑스의 입장: 독일통일의 미래 제공(건설적 비판) 59
4. 영국의 입장: 과거로의 침잠 또는 독일에 대한 경각심 60
제2절 통일 직전의 동서독 정세 및 관계 62
1. 서독의 정세 62
2. 동독의 정세 63
3. 동서독 관계 64
제3절 독일통일 과정 65
1. 첫 번째 단계: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 66
2. 두 번째 단계: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70
3. 세 번째 단계: 1990년 4월부터 10월 3일까지 75

제5장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실제 81
제1절 통일의 이정표로서 10개항 프로그램 82
1. 배경 82
2. 경과(준비과정) 및 내용 83
3. 국내외 반응 88
4. 평가 89
제2절 경제 분야: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90
1. 배경 90
2. 주요 쟁점 94
3. 경과(협상과정) 및 내용 98
4. 평가 103
제3절 정치 분야: 통일조약 105
1. 배경 105

CONTENTS

2. 주요 쟁점 106
3. 경과(협상과정) 및 내용 108
4. 평가 115

제6장 한반도통일 시 정책적 시사점 117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연방수상청과 독일통일

들어가며 126

제1장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사령탑으로서의 연방수상실 130

제2장 1989년 여름-동구 유럽 주재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탈동독 주민 133

제3장 1989년 가을/겨울-동독의 변혁과 2+4 회담 139
제1절 호네커에서 크렌츠로 동독 지도부의 교체 139
제2절 동독의 개혁과 선거 143
제3절 2+4 회담과 수상청, 외무부 간의 역할 분담 145

제4장 화폐통합을 위한 구상 150

제5장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 158

나가며 160

III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64

문서 요약 200

문서 요약(문서번호 1~222) 200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2실 업무 분장표 36

표 1–2〉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주요 내용 103

독일통일 총서 29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수상청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 고찰

이 봉 기
(평화문제연구소)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989년 9월 이후 동독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월요데모가 계속되어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고, 11월 9일에 이르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도 독일통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을 포함하여 동서독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콜 수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1989년 11월 28일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콜 수상은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3~4년(5~10년으로 언급하기도 함)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1989년 11월 9일부터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1년도 안 되는 329일이 걸렸다.

독일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독일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똑같은 질문이 하나 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독일통일을 계획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독일인들이 대답하는 한결같은 대답이 하나 있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계획과 관련 독일 정부의 관계 부처 서랍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다.

계획성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일까? 이로부터 다시 두 가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이 독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계획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는가?"이다. 독일은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의 전문(전체 독일 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23조(... 독일의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 가입 후에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한다)와 146조(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에 통일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독은 1949년 국가로 창설되면서 통일을 국가가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독일통일을 국제 정치의 어젠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독일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1, 2차 세계대전의 피해 국가인 프랑스, 폴란드 등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스스로도 1972년 동서독 간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점차 동서독 간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물론 기민당 등 보수당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때로 통일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통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발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서독 정부의 법적 지위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통일 계획 관련 부처의 책상 서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서독은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통일을 준비하여 통일을 그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질문이 본고의 주제로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질문을 본고에서 답을 하려는 방식으로 다르게 설정해 보면, "갑작스러운 통일 기회를 맞이하여, 서독의 수상 및 수상청, 내독관계부, 외무부, 내무부 등은 통일로 인하여 부딪히게 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정책결정 과정으

로 접근하고자 하며, 특히 서독의 수상 및 수상청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과제와 역할이 무엇이었고, 서독의 수상은 이를 어떠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이 통일을 저해하는 외적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과 달리 통일을 논의하고 이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현 과정에 있어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 부처들은 독일통일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반도통일 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다가올 통일에 대한 정부 부처 및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이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둔 통일 계획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안에 대한 경우의 수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통일에 이르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보다 더 유연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은 없을까?

서독 정부가 1989년 11월 9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작동한 방식에 아마도 해결책에 근접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독 수상 및 수상청, 내독관계부, 외무부, 내무부 등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결정 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시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 합리적 또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서독 정부가 통일의 기회(동독의 변혁기)를 맞이하여 서독의 수상(수상청)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해 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독일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 수상청(Bundeskanzleramt)의 과제와 역할은 달리 표현하면 수상청에 어떠한 과제가 부여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콜 수상의 정책(의사)결정 과정으로 집약할 수 있다. 물론 콜 수상이 정책의 최종 결정자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콜을 보좌하는 수상청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관계 부처의 의사결정 또한 중요한 역할, 즉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외부에 있는 이익집단, 시민, 언론, 전문가 집단 또한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책 과정의 모든 참여자를 망라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콜 수상 또는 수상청을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을 연구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부처 및 전문가 등도 포함할 것이지만, 이것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 본고의 주제인 정책을 간단히 정의해 보고자 한다. 라스웰(Harold Lasswell)은 '정책은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범 교수는 정책을 '가치관 속에 들어 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의 내용(환경의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하고 있다. 정정길 교수는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정길, 1999, 52). 결국 정책결정 과정은 현실 세계에서 부

딪히는 문제에 대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989/1990년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1982년에 집권한 서독의 콜 수상이 1949년 서독 정부 수립 이래 정부의 최고 목표의 하나인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그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선 시간적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기까지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동 기간에 이루어진 주요한 정책결정을 포함하고자 한다. 동 기간에 이루어진 서독 콜 총리의 주요 정책결정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동독의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1989년 12월 19일의 동서독 정상회담, 동독의 조약공동체에 대한 대응, 동독의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 고르바초프의 설득 등 국제외교(1989.11.28.~1990.01.30.),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제안, 통일 방식의 결정-23조 또는 146조, 2+4 회담 개최, 통일조약 체결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여기에 제시된 주제를 모두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자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루고자 한다.

독일에서 이와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정부 및 수상(청)의 조직과 기능을 통해 수상(청)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상청은 기본적으로 수상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면서 정부 내에서 중개자 또는 조정자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상은 기본법 65조에 따라 지도원칙(Kanzlerprinzip)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 또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수상의 개인적 요인에 의

[1] 이러한 수상의 권한은 영역원칙(Ressortprinzip)과 동료원칙(Kollegialprinzip)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해 정책결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상(청)의 일반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 외에도 독일정책-서독에서는 대동독정책을 포함하는 통일정책을 독일정책이라고 칭함-의 틀 안에서 수상(청)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한 결과들도 있다. 코르테(Karl-Rudolf Korte)는 『헬무트 콜 수상 시기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in Helmut Kohls Kanzlerschaft)』에서 분단 시기 독일정책의 정책결정 구조를 다루었다. 1989/1990년의 독일정책의 정책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는 드리프트만(M. Driftmann)의 『본 정부의 독일정책 1989/1990(Die Bonner Deutschlandpolitik 1989/1990-Eine Analyse der deutschlandpolitischen Entscheidungsprozesse angesichts der Zerfalls der DDR)』과 피셔((A. Fischer)의 『독일통일을 위한 결정과정(Entscheidungsprozess zur deutschen Wiedervereinigung)』이 대표적 저작이다. 그리고 퀴스터스/호프만(Hans Jürgen Küsters/Daniel Hofmann)은 1998년 『독일통일-수상청 문서 특별판』을 펴냈는데 여기서 1989/1990년에 이루어진 독일정책의 구체적 결정과정을 기술하고 있다.[2] 퀴스터스는 2009년에 독일통일-수상청 문서 특별판에서 정책결정 과정만을 발췌하여 『독일통일을 둘러싼 투쟁(Das Ringen um die Deutsche Einheit)』이라는 단행본으로 재발간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연구 보고서의 많음이 연구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통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심도 있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독일통일 과정(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까지)에서 서독 수상(수상청)의 역할(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물론 국내에 유사 연구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한

[2] 동 특별판은 독일 연방문서보관법상 원칙적으로 30년 동안 접근이 불가능한 통일 관련 정부 문건들을 30년이라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문건을 1,667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독일 내무부가 발간한 것이다.

국국방연구원의 정상돈 박사 등이 펴낸 『동독 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과 통일부 용역으로 발표된 『독일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정도이다. 정상돈 박사의 연구서는 서독의 통일정책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서로 여겨진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직면한 많은 정책 중 10개항 프로그램, 화폐조약 체결 과정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한국유럽학회에서 작성한 『독일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시사점』에서는 서독 수상의 역할과 독일정책 관련 부서 및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독일정책과 연관된 구체적 기술은 제한적이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저술 등을 토대로 하여 1989/1990년의 독일정책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론〉: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통일 시까지 서독 정부의 법적 지위

앞에서 서독은 기본법에서 독일의 통일을 전체 독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에 의한 도덕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4대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과 체결한 조약으로 인한 국제법적인 제약도 있었다. 서독은 도덕적, 국제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분단 기간 중에 적극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통일을 위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수립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국제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2+4 회담이라는 통일을 위한 국제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1945년 5월 8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고, 1945년 6월 5일 4대국의 베를린 선언(Berliner Deklaration)에 의해 독일의 최고 행정권은 4대 승전국의 대표에게 이전되었다. 이와 관련 1944년 9월 12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은 독일 점령지역과 대-베를린의 행정

에 관한 런던 프로토콜에 서명하였다. 런던 프로토콜 1조에서 독일의 영토를 193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국이 점령하고 베를린은 3개국의 공동 점령하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44년 11월 14일의 런던 협정에서는 독일 점령지역의 통제기구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다.[3]

1945년 8월 2일의 포츠담 협정(Potsdamer Abkommen)에서는 독일지역에서 최고 행정권은 각각의 정부 지시에 따라 점령군 사령관(미, 영, 프, 소)에 의해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행사되며, 독일 전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포츠담 협정은 이러한 정치적 원칙 외에도 경제적 원칙에서는 독일의 군비생산을 금지하고, 독일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다룬다는 규정도 있었으나 후자는 지켜지지 않았다. 전쟁 배상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점령지역과 독일의 해외자산에서 배상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조약 및 프로토콜 등은 기본적으로 독일이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인 연합국의 점령기간 동안 유효한 것이었다.[4]

서독은 1949년 5월 8일 기본법을 의회 평의회에서 통과시켰고, 5월 12일에는 연합국 사령관이 헌법에 관한 유보와 함께 승인하였으며, 주정부 의회의 비준을 받아 5월 23일 연방상원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후 연방하원 선거를 실시하고 9월 14일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를 수상으로 선출하면서 서독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정부 수립에 따른 대응으로 서방 3대 점령국은 1949년 4월 10일 점령조례를, 1949년 6월에는 해체되는 군정을 대신할 연합국 고등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다. 점령조례는 새롭게 수립되는 서독 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점령국에게 유보된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9년 9월 21일 발효된 점령조례에 따르면, 서독은 국방과 외교 그리고 기본법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

[3] Ingo von Münch,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alnd(Stuttgart: Kröner, 1976), pp.25-32.

[4] Ebenda, pp.32-43.

였다. 점령조례 2항에 따르면 3개 연합국은 점령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권한을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적 협의와 같은 외교 분야에 대한 권한이 유보되었다. 그리고 점령조례 5조에 따르면, 기본법의 어떤 수정도 그것의 발효 전에 점령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정부의 헌법과 수정, 기타 다른 입법과 외국과 합의 등도 점령 당국의 명시적 거부가 없다면 점령 당국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21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5]

이렇게 입법권, 외교권 등의 제약하에서 출범한 서독 정부는 1952년 5월 26일 본(Bonn)에서 체결되고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수정되어 최종 체결된 독일(서독)과 3대 승전국과의 관계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n Drei Mächten, 일반조약)에 의해 대내외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독은 정부가 수립되고 주권을 회복하기까지 5년이 더 걸렸다. 일반조약 1조 1항에서는 점령정권을 종료시키기로 하였고 당시까지 독일의 기본법보다 위에서 군림하였던 점령조례와 연합국 고등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조 2항에서는 서독이 비로소 대내외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1954년 10월 일반조약이 발효되었고, 1조에서 주권 회복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여전히 불완전한 주권국가였다. 즉 일반조약 2조에서는 유보조항을 제정하여 서독에 대한 서방 3대 승전국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이것은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독일의 헌법 체계상 유효한 부분이었다. 일반조약 2조는 서방 3대 승전국이 평화조약, 독일통일,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관하여 여전히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대 승전국이 독일에 배치한 군대의 주

[5] Ebenda, pp.72-73.

둔에 관해서도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유보조항은 1971년 9월 3일에 체결된 4대 승전국 협정에도 효력을 나타내었다. 4대 승전국 협정의 1장 일반규정의 3조에서 4대 승전국 정부는 각각의 그리고 공동의 권한과 책임은 변화하지 않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장의 부속 합의에서는 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베를린이 서독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베를린에서 서독의 헌법적이나 공적 행위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3대국 서방 대사가 연방수상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좀 더 상세히 표현되었다. 즉 "서베를린에서 연방총회의 회의, 연방상원이나 하원의 전체 회의가 개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상원이나 하원의 위원회 개최는 서베를린과 서독의 연결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에서도 동서독의 각서 교환 등을 통해 4대 승전국의 유보조항이 유지되었다.[7]

이러한 유보조항은 서독의 외교정책, 특히 통일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1990년 통일 시까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서독이 독일통일을 주장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의 피해 국가였던 주변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주변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일과정에서 4대 승전국의 유보조항을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그것이 2+4 회담이었다. 즉 독일은 독일문제의 최종 결정에 관한 조약 7조에 "(1) 권리와 책임의 소멸: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이로써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종결한다. 그 결과 이에 관련된 4대 승전국의 모든 관련 기관은 해체된다. (2) 통일독일은 이에 따라 대내외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

6 Ebenda, p.230.

7 Ingo von Münch,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alnd Band II(Stuttgart: Kröner, 1974), pp.94-122.

였다.[8] 이로부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비로소 완전한 주권을 갖는 국가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제3절 정책결정론(의사결정론)에 대한 이론

동 보고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이어서 주요한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관련 행위자들의 정책결정 과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결론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으로 주요 사건의 요약 그리고 일반화에 한정된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보고서의 이론적 틀로서 의사결정론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이를 준거 틀로 하여 서독 수상(청)의 1989/1990년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을 접근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모형 및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간략히 정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학에서는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9, 52)'이다.

정책결정은 이론적 기반을 의사결정론에서 많이 빌려 오고 있다. 정정길 교수는 정책결정이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9]

> 첫째,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리거나 조금 경미한 결정을 장관이나 차관이 내리듯이 정책의 최종 결정이 개인에

[8] 이봉기,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와 차관공여에 관한 연구'(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2000), p.22.

[9] 정정길, 정책학원론(개정판)(서울: 대명출판사, 1999), p.454.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의회·위원회에서의 결정과 같은 집단적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론에서의 소위 집단적 의사결정 논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집단적 의사결정도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셋째, 집단적 결정의 경우에도 사실상 몇몇 개인의 결정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적용하여 정책결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논리로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의사결정 이론에서 차용한 이유 세 가지는 그레이엄 앨리슨(G. Allison)이 쿠바 위기를 다룬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에서 다룬 세 가지 모형, 즉 합리모형(제1모델), 조직행태(조직모형, 제2모델), 정부정치(정치모형, 제3모델)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앨리슨의 세 가지 정책결정 모형을 통해서 콜 총리의 독일통일 관련 정책결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쿠바 위기는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발생한 위기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봉쇄/검역에 의해서 미소 간 대결이 확대되어 전쟁의 위험으로 치달았고 마침내 소련이 미사일 철수를 발표하면서 종료되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1/3에서 1/2 사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을 만큼 위기였다.

앨리슨의 합리모형은 정부정책(행위)을 개인의 합목적적 행동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선택하며, 국가는 합리적이고 단일적인 결정자이다(정정길, 1999, 532). 이에 따르면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이유는 쿠바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10]

[10] 앨리슨은 이 외에도 냉전 경쟁,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 해소, 베를린 가설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필립 젤리코 지음, 김태현 옮김, 결정의 본질(서

로버트 케네디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ExCom)에 참석했던 10~12명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중 한 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전 세계가 파멸적인 전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컸다"고 회고하였다.[11] 이것은 쿠바 공습을 주장하는 매파가 ExCom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었을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고, 대통령이 찬성한 봉쇄안이 소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언급하는 합리모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을 개인의 합목적적 행위로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합리모형의 단순화는 이해를 돕기는 하지만 과도한 생략으로 인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정책의 의사결정자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한 명의 개인이라기보다 거대 조직과 정치행위의 복합체라는 사실이다. 거대 조직은 고도로 분화된 의사결정의 구조 속의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장치와 같으며, 행위는 국가, 조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의 위계질서 속에서 일하는 개인 간 서로 충돌하는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앨리슨/젤리코, 2018, 26).

조직모형은 국가 또는 정부가 단일적 결정주체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체의 집합체이며 이것이 국가정책을 결정한다(정정길, 533). 조직행태 모델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조직의 일상적인 행동패턴에 따라 작동하는 거대 조직의 산출물이다. 이들이 바라보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는 어떠한 조직적 맥락, 압력,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이다.

소련은 냉전 시기 1970년대 말 동구에 서방을 목표로 하는 SS-20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방은 이중결정을 하고 서독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을 만큼 냉전 역사에 중요한 사안

울: 모던 아카이브, 2018), pp.95~138.

[11] 로버트 F. 케네디, 박수민 옮김, 13일-쿠바 미사일 위기 회고록(서울: 열린책들, 2012), p.17.

이었다. 서방 측은 당시 제1모델을 적용하여, 소련의 결정을 유럽에서의 전략 균형 파괴를 위한 위협적 시도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소련의 군조직은 유럽 전 지역의 표적을 향하여, 기존의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한 미사일로 구형 미사일을 교체한 것이다. 즉 제2모델로 소련 측의 SS-20 배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소련에게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럽고 거의 불가피한... 정상적인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었다"(앨리슨/젤리코 2018, 221-223).

정부모형(제3모델)은 "정부 내부의 정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 모델에 따르면, 외교문제는 한 사람의 선택이나 조직의 산출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내부의 여러 경기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상 게임의 결과이다"(엘리슨/젤리코, 2018, 27). 제3모델의 추론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은 게임 참가자들의 흥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지위, 관계, 역량 등에 의존하며, 결정된 정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아닌 가장 반대가 적은 합의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모형 및 정부모형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케네디의 언급을 통해서 극명히 보여지기도 한다. 존 F. 케네디는 자신의 친구에게 "후임자에게 내가 건넬 첫 번째 충고는 장군들을 주의하고 군인이라고 해서 군사문제에 관해 무조건 이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것은 조직에 매몰된 전문가 또는 정책결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앨리슨의 정책결정 모델은 단 하나의 모델이 다른 모델에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각 모델이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계가 있어 이에 유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세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실제의 국가 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가 적용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앨리슨은 쿠바의 미사일 위기와 관련 중요한 국면을 3단계로 나누어 그것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소련의 미사일 쿠바 배치, 미국의 봉쇄 결정, 소련의 미사일 철수라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합리모형으로 설명을 시도하였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직모형에서 설명을 찾았고, 그래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은 정치모형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하나의 복잡한 정책결정에 대해 세 가지 모델 모두를 적용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정책결정 전체에 대해 또는 정책결정의 부분을 이루는 작은 단위의 정책결정에 적합한 모델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하나의 모델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데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11월 이후부터 독일이 통일된 1990년 10월까지 독일통일을 위한 콜 수상의 정책결정 과정을 앨리슨의 정책결정 모형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독일 연방정부의 구조와 역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독일 권력기관은 연방의회, 연방상원(참사원), 연방정부, 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그리고 오직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연방총회가 있다.[12] 본고는 독일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기구를 주제로 한다. 따라서 행정부(연방정부), 입법부(연방의회), 사법부의 3부 중 우선 사법부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사법부는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위헌 여부와 같은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정책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입법부는 정책결정 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즉 연방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신임권을 행사하여 수상을 신임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판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견제할 수는 있지만 연방정부에 대해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로서 연방정부이고, 독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수상(청)이 된다. 여기서는 수상(청)의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독일 연방정부의 운영 원리와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2] 심익섭, M. 치맥 공편, 독일연방공화국 60년(서울: 오름, 2009), pp.93-94.

제1절 연방정부의 운영 원리

독일 연방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독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독일의 통치 기관이다. 독일 기본법(헌법) 65조는 정부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본방침설정권(Richtlinienkopetenz)으로서 수상이 정책과 국가 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상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수상이 천명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연방이 목표로 하는 정책의 기본노선을 수상이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수상원칙(Kanzlerprinzip)이라고 한다. 보통 의원내각제에서 통용되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적용되지 않고, 내각은 수상에 종속적인 것이 독일 행정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의 역할이 정부 운영 형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수상의 견줄 바 없는 권한을 지칭하여 수상 민주주의(Kanzlerdemokratie)라고도 한다. 둘째, 부처원칙(Ressortprinzip)은 각 부처의 장관은 수상이 정한 기본방침의 범위 내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장관은 소관 부처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책임도 갖는다. 셋째, 동료원칙(Kollegialprinzip) 또는 합의원칙을 들 수 있다. 부처 간 업무 및 예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내각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내각의 구성 멤버는 동료로서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정책결정이 공동의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책 합의가 내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각원칙(Kabinettprinzip)이라고도 한다.[13]

[13] 박응격 외 공저, 독일 연방정부론(서울: 2001, 백산자료원), pp.81-82 그리고 pp.152-153.

제2절 연방정부의 구성

연방정부는 수상과 장관들로 구성된다. 이들을 독일의 정치적 핵심 통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 수상과 수상청

독일 연방수상은 독일 정치에서 실질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14] 이러한 독일의 정부 형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연방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 우위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본방침결정권과 더불어 인사권, 조직권, 내각사무 관장 권한이 연방수상의 주요 권한에 속한다.

독일 기본법에서 수상의 권한으로 기본방침결정권을 제시하고 있다. 동 개념은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수상이 개인적 역량에 따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하는 정치적 요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응격, 2001, 82). 수상의 기본방침결정권은 어떠한 주제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떠한 성격을 기본방침결정권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기본방침결정권으로 결정할지는 시대적 상황의 요구와 수상의 그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1949년 서독 정부 수립 이래, 아데나워 수상은 서방통합을,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콜 수상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자신의 기본방침결정권으로 정하였다. 일상적으로는 수상의 업무(Chefsache)라고 해서 자신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14] 독일의 국가권력구조상 연방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가 원수이다. 내각제하에서의 대통령인 관계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으며, 연방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형식적' 원수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형식적 '원수'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인물의 역할에 따라 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정치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1949년 정부 수립 이래 하나의 정당 단독에 의해 정부가 구성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 구성은 항상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립정부는 정당 협상을 통해 연정협약을 만들어 왔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은 이러한 협약을 통해 연정 기간에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 정당 간 부처 장관을 어떻게 나눌지를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권력분담이 이루어지고 수상의 기본방침결정권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된다(박응격, 2001, 84-85). 연방수상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면 선출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수상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연방수상청이 있다. 연방수상의 정부 내 위치로 인하여 연방수상청은 정부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수상청은 연방정부 내의 중재자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향에 있어서는 상급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상의 권한 배분과 수상청장의 역할에 의해 상급 부처처럼 운영될 수 있다.

연방수상청의 역할은 내각회의 준비를 통해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수상청장은 이를 통해 회의 어젠다를 조정하고 어떤 문건을 보고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연방수상청의 주요 기능은 업무 조정, 총괄 기능,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및 기획 등이다. 내각회의 이전에 차관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의견 갈등을 조정한다(박응격, 2001, 86).

수상청장의 직급은 정부마다 차이가 있어 왔으며, 때로는 차관급으로 때로는 장관급으로 임명하였다. 수상청에는 청 아래에 실(Abteilung)을 두고 있고, 실 아래에 그룹(Gruppe)이 있고, 그룹 아래에 과(Referat)를 두고 있다.[15] 수상청과 별도로 수상의 직속기관으로 수상 비서실(Kanzlerbüro)이

[15] 독일 연방정부를 다루는 국내 책자들은 Abteilung을 국으로 Referat를 계로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의 행정 체계와 비교하여 Abteilung을 실로, Unterabteilung을 국으로,

있으며, 수상 비서실은 수상의 일정 및 개인 면담, 진정·청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장관과 부처

연방장관은 수상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장관은 수상이 결정한 기본방침에 의거 부처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한다. 독일의 연방장관이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의원으로 임명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수상과 임기를 같이한다. 연방장관의 지위는 두 가지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방장관은 연방내각의 구성원으로 내각회의에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한다. 연방 직무규칙 15조에 따르면 연방장관은 내각의무(Kabinettzwang) 또는 정부규율(Regierungsdisziplin)의 지배를 받는다(박응격, 2001, 89). 즉 내각 구성원은 자기가 속한 정당의 입장과 다를지라도 내각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관은 자신의 부처에 대한 인사권과 조직권을 갖는다.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장관을 최고 책임자로, 차관, 실장, 국장, 과장으로 구성된다. 연방 부처 차관은 정무 차관(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과 행정 차관(Beamtete Staatssekretät)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무 차관은 정치적 역할을 통해 장관을 정치적으로 보좌한다. 정무 차관은 의회와 내각에서 장관을 대리하며, 다만 내각에서는 표결권은 없다. 정무 차관은 반드시 의회의 의원으로 임명한다. 행정 차관은 부처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관리자이고 부처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 차관은 부처 업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며 부처 간 업무 조정의 책임도 맡고 있다. 연방수상청장의 주관하에 내각회의 개최 이전에 열리는 차관회의에 참

Referat를 과로 번역하였다.

석하여 내각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결정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행정 차관은 정무직이지만 부처 내부의 승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제3절 수상의 의사결정 과정

서독 정부의 독일정책 결정과정은 연방정부에 속하고, 이것은 연방수상과 각 부처의 장관을 의미한다. 독일정책은 몇 가지 특수성에 의거하여 정부, 특히 수상이 결정하는 영역이 되었다. 우선 서독의 독일정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과의 협상이나 교섭에서 외교적 업무 영역으로 다루지 않았다. 독일정책은 대부분 행정부 영역에서 처리된 것이 큰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독 정부는 동독과 협상을 행정규칙(Regel)의 차원에서 처리함으로써 입법적 권한을 가진 의회의 제약을 피하였다. 즉 서독 정부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동서독 간 협정을 체결하여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동서독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정책은 대외정책처럼 다른 정치적 영역보다 법적으로 훨씬 더 작게 규정된다. 물론 의회는 독일정책에 대한 질의나 토론 그리고 의회의 내독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일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였다(Korte, 1998, 10-11). 이것은 여론을 움직이고 의회의 지지 확보 문제 등과 연관되어 독일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큰 틀에서 진행된 것이고 구체적 업무를 통제한 것은 아니었다.

코르테(Karl-Rudolf Korte)는 『헬무트 콜 수상 시기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in Helmut Kohls Kanzlerschaft)』에서 콜 수상이 모든 독일정책 결정의 권력 중심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독일정책에 있어 콜 수상이 중심에서 활동한 것을 그는 시스템 콜(Systems Kohl)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콜 수상의 통치 방식이 헌법적, 제도적 목표에 스며들었

다고 주장한다. 즉 콜 수상은 독일정책을 수상청이 전략적으로 중추적 지위가 되게 함으로써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정책의 정책 영역을 구조적으로 콜 수상 개인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다고 하였다.

제3장

서독의 독일정책 결정 기구와 역할

2장에서는 서독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 및 역할에 대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독일정책의 결정에 관여하는 조직/기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서독의 독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수상의 업무를 지원 및 보좌하는 수상청(수상청 2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행정 부처로는 내독관계부와 외무부가 있었다. 그리고 내각, 정당 내 협의 등도 독일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조직 외에도 수상이 의사결정을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비공식적 그룹 및 개인도 독일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콜 수상의 방갈로 저녁모임, 외부 조력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 조직 및 수상의 비공식적 그룹 및 개인 외에도 수상 개인의 통치 스타일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즉, 업무 스타일이나 지도방침, 지도력과 같은 것들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통치 스타일, 지도력과 같은 것은 헌법이나 직무 규정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가 지도하고 목적을 정하며, 이에 따른 수단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때로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Korte, 1998, 12-13).

〈보론: 유사 개념의 정의: 독일정책, 독일문제, 내독관계〉

우리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등을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독에서도 분단 시기 유사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먼저 이러한 개념, 즉 독일정책, 독일문제, 내독관계 등을 정의하기로 한다. 서독에서는 대동독정책 등을 포함하는 통일정책을 독일정책이라고 불렀다.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은 평화와 자유의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을 목표로 추구하는 정책이라고(Korte 1998, 9)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정책은 전통적으로 수상 스스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이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공을 들였다. 따라서 서독의 분단 기간 내내 독일정책은 수상이 통솔하는 중요 업무(Chefsache)에 속하였다.

서독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로 독일문제(Deutsche Frage)가 있는데 이는 역사적-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 영토를 193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의 결과로 분단 시기 및 통일과정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가 항상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독일 분단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내독관계(Innerdeutsche Beziehungen)가 있었는데 이는 동서독 사이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제1절 독일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기구[16]

1. 수상청: 독일정책 결정의 중심

수상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상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

[16] Karl-Rudolf Korte 교수의 『Deutschlandpolitik in Helmut Kohls Kanzlerschaft – Regierungsstil und Entscheidungen 1982-1989』, 23~66쪽에 독일정책 결정 조직/기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며,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상청은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점과 업무를 수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상청은 수상의 결정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17]

조직으로서 서독 수상청(Bundeskanzleramt)은 독일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독일 정부 조직에서 정책 수립과 관련한 헌법 원칙 65조에 수상청은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다:

> "연방 수상은 정책의 기본노선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정책 노선의 한도 내에서 각 연방 장관은 자신의 관할영역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장관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 연방정부가 결정한다."(기본법 65조)

이러한 관할 영역의 원칙으로부터 수상은 특별한 사업을 자신의 기본방침으로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서의 일상적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업무규정(Geschä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을 통해 수상의 기본방침결정권을 구체화하였다. 즉 수상청의 청장이 정부의 사무국장(내각의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usse/Hofmann, 2017, 49). 실제에 있어서 관할 영역 원칙 때문에 수상청이 미리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법이다. 따라서 수상청의 청장은 내각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의 정책 발의를 지원하거나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은 합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조율된다. 이를 통해 수상청은 조정기능을 갖게 되었고 부처 간 합의를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Fleischer, 2011, 137-138).

[17] Volker Busse/Hans Hofmann, Bundeskanzleramt und Bundesregierung – Aufgaben, Organisation, Arbeitsweise (Bonn: bpb, 2017), p.48.

코르테 교수는 독일정책과 관련 콜 수상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Korte, 1998, 36-37).

- 1984년 이래 수상청 청장이 연방장관을 겸직하면서 독일정책은 정부의 업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독일정책 태스크포스팀은 청장의 직접적 관할하에 보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 청장은 수상의 제한 없는 신뢰를 받았고, 수상과 청장은 매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났으며 이를 통해 독일정책, 비밀외교 등 비밀스런 대화를 진행하였다.
- 쇼이블레와 자이터스와 같은 청장의 개인적 역량으로 당과 정부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콜의 독일정책이 의회로부터 비판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용하였다.

〈수상청 2실〉

서독 수상청은 수상청장 아래 6개의 실을 두고 있었다(1990년 4월 10일 기준). 실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룹은 부처의 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실은 전체 행정과 내각 및 국회 그리고 내무와 법무의 부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실~4실은 각 부처의 정책 조정업무를 맡았다. 5실은 사회 및 정책 분석 등의 업무를, 6실은 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수상청은 이 외에도 수상의 개인 업무와 진정 및 청원을 담당하는 수상 비서실과 국무 장관 및 정무 차관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는 독일정책을 담당하였던 2실을 중심으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당시 2실의 실장은 텔칙(Horst Teltschik)이었는데, 2실의 담당 업무는 외교와 내독관계였다. 2실은 20~23의 네 개 그룹을 관할하였고 그룹 아래에 전체 8개의 과가 있었다. 그룹 23과 독일정책 태스크포스팀은 아래에 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실의 실장은 관례적으로 직업 외교관이 임명되었는데 콜 수상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자신의 오랜 사람인 호르스트 텔칙을 임명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외교정책 및 독일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외무부에 대하여 콜 자신이 독립적인 관점을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텔칙은 외무부의 도움 없이 주요국에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겐셔 외교 장관과 텔칙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였는데, 수상실로부터 외무부로 전달되는 대외정책에 관한 정보를 텔칙이 의도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Korte, 1998, 37-38). 또한 대외정책의 안정을 중시하였던 겐셔와 갈등하였고,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 제약된 방식으로 독일통일 문제에 접근하였던 겐셔보다 이러한 틀을 뛰어넘으려 하였던 텔칙의 방향이 맞았다는 것은 독일통일의 역사가 증명하였다.

당시 사민당의 동방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수용과 유럽 연합에 대한 의무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서 독일통일은 기민당 내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콜이 이에 대해 기본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텔칙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쇼이블레와 자이터스의 역할로 인하여 텔칙의 독일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지만 독일정책과 관련된 대외 정책은 그렇지 않았다(Korte, 1998, 38-39).

표 1-1〉 2실 업무 분장표

그룹	하위 부서(과)	주요 업무	비고
그룹 21 – 외무부 – 경제협력부	Referat 211	유럽통합, 유럽국가 및 터키와의 양자 관계	
	Referat 212	동서 관계, 동유럽국가 및 소련과의 양자 관계, 군비통제	
	Referat 213	국제기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의 양자 관계	
	Referat 214	개발정책, 남북 관계	
그룹 23 – 국방부 – 안보정책		국방부, 안보정책	과 없음
태스크포스 20 – 독일정책		독일정책	과 없음

그룹 22 – 내독관계부 – 동독 관계 – 베를린 문제	Referat 221	동독과 일반적 문제, 헌법과 행정 영역에서 동독 관계 및 베를린 문제	
	Referat 222	법률, 교통, 경제 영역에서 동독 관계 및 베를린 문제	
	Referat 223	문화, 교육, 미디어 영역에서 동독 관계 및 베를린 문제	
	Referat 224	내각 독일통일위원회, 독일정책과 관련한 연방–주정부 문제, 노동과 사회 영역에서 동독 관계 및 베를린 문제	

출처: Thomas Knoll, Das Bonner Bundeskanzleramt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2004, p.296.

- **독일정책 태스크포스팀**

독일정책 태스크포스팀은 직제상 2실에 속하였지만, 수상청 청장의 직접 관할하에 있었다. 따라서 독일정책팀은 직접적으로는 수상청 청장을 위해 일하였고, 간접적으로만 2실의 실장을 위해 일하였다. 업무 관할에 따르면 독일정책은 내독관계부 또는 외무부에 속하는 것이 적절하였지만 수상이 독일정책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수상청에서 관할하게 된 것이다. 독일정책팀은 1977년에 수상청에 설립되었고, 당초의 설립 목적은 연합국과 내독 관계 관련 정보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담당 업무는 동서독 관계와 베를린 문제였다. 또한 당시 슈미트 수상은 이를 통해 독일정책을 위한 정치가를 수상청에 두고자 하였다. 외무부와 전독문제부가 반대하여 타협책으로 초기에는 정무 장관이, 나중에는 수상청 청장이 관할하였다. 독일정책팀장이 직원을 선발하였는데, 항상 대부분은 외무부 소속이었다. 조직 위계상 특이한 것은 2실의 22국이 독일정책팀장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정책 태스크포스팀이 마련된 또 하나의 이유는 동독이 내독관계부를 협상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Korte, 1998, 39-40).

독일정책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Korte, 1998, 40-41).

- 동서독 협상 준비
- 수단적 활동(말씀자료 작성, 조약 및 협상 문안 작성)
- 조정 업무(서방 연합국에 대한 외무부 관할 중 독일정책 조정, 전체로서 독일 및 베를린 문제 관련 조정, 독일정책 조정 대화 준비)
- 행정적 협의(상주대표부 관련 행정 업무)
- 일상적 활동(여론, 국회, 정당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조직관리)

기민당 집권 시기에도 수상청 청장의 독일정책팀장은 에곤 바(Egon Bahr)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사민당의 정책적 지향을 가졌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그는 사민당-자민당의 독일정책에 대한 변경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취했고 수상의 연설문에서 동독 정부를 거칠게 공격하는 표현들을 삭제하였다. 그는 가능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연설문이나 협상 전략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정책팀 내에 사회민주당적인 분위기가 흘렀으나, 1986년 뒤스베르크(Claus-Jürgen Duisberg)가 독일정책팀장으로 임명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뒤스베르크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입장은 기민당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Korte, 1998, 41-42). 1982년에 정권을 인수한 콜 수상이 사민당 성향의 독일정책팀장을 4년 동안이나 교체하지 않은 것은 동독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사민당의 독일정책을 기민당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수상청 5실: 사회적, 정치적 분석, 커뮤니케이션과 여론활동, 연설문 작성팀〉

5실의 업무는 정당, 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미디어였다. 공보팀 역시 5실에 속하였다. 5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콜

수상의 생각을 읽고 입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수상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독일정책 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독의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

서독의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는 수상청의 관할하에 있었다. 서독은 상주대표부 설치 시 동독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조약의 원칙에 따라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외무부 소속으로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본에 설치한 동독의 상주대표부는 동독 외무부 소속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서독 상주대표부의 동독 파트너는 동독 외무부가 되었고 동독 상주대표부의 서독 파트너는 수상청이 되었다.

콜은 집권 후 브로이티감(Hans-Otto Bräutigam)을 사무 차관 겸 상주대표부 대표로 임명하였고 브로이티감은 외교관으로서 특유의 조심성을 발휘하여 갈등을 피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상청 청장인 쇼이블레를 만나 정보 보고를 하였다. 브로이티감은 호네커도 간혹 면담하였고, 동독의 외무부 차관, 경제 담당 징치국원인 미탁(Günter Mittag), 무역부의 샬크-골로드코프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가 상시 대화 및 협상 파트너였다.

상주대표부 대표의 업무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상주대표부 본연의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 협상가로서의 업무였다. 상주대표부는 정기적으로 정치적 분석을 보고서로 본에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말미에 동독의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었다. 내독관계부는 보고서가 동독의 내부 현실을 미화하고 있다고 자주 비난하곤 하였다. 보고서는 1989년 말까지도 동독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전하고 있었다(Korte, 1998, 46-47).

2. 비공식 그룹/전문가

콜 수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비공식 그룹은 수상 비서실, 아침 정세팀, 저녁 모임 등으로 구성되었다. 독일정책은 1989년 가을까지 이들에게 예외적 테마로 다루어졌다. 콜 수상은 결정이 필요하면 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은 수상에게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였다(Korte, 1998, 25-26). 퀴스터스(Hanns Jürgen Küsters)는 콜의 특징을 내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대화 또는 작은 모임에서 식사를 하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듯이(Küsters, 2009, 14) 비공식 그룹은 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비공식 그룹의 자문은 문서화되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 전문가들은 자기 영역에서만 조언이나 자문을 한 것이고 콜 수상의 결정은 이들의 자문 내지 조언의 총합이라는 차이도 있다.

〈수상 비서실〉

수상 비서실은 수상의 개인적 업무를 보좌한다. 콜이 정치를 시작한 때부터 개인 비서로 일해 왔던 베버(Juliane Weber)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노이어(Walter Neuer) 수상 비서실 실장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였다. 수상에게 보고되는 문서는 수상 비서실을 거쳐 수상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수상 비서실은 보고 문건이 수상에 이르기까지 필터의 역할을 한다.

〈아침 정세팀〉

아침 정세팀(Morgenlage)은 정책결정을 위한 협의회가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정치적 일일상황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 그럼에도 논의의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둘러싼 의견이 개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

기도 하였다. 수상청장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 언론 담당인 에두아르트 아커만(Eduard Ackermann), 안보 보좌관 호르스트 텔칙(Horst Teltschik)이 참여하였고, 여기에 개인 비서인 율리안네 베버(Juliane Weber), 연방 프레스 센터장, 연설문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경제 담당 요하네스 루데비히(Johannes Ludewig) 등도 함께 하였다(Korte, 1998, 27-28).

〈수상 방갈로 저녁 모임〉

불규칙적으로 열리기는 하였지만 수상의 방갈로에서 저녁에 만나는 모임으로 수상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참석 대상이었다(Küsters, 2009, 17). 아침 정세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참석 대상은 주제에 따라 변화하였다. 아침 정세보다는 정치적이었고, 기본원칙에 대한 토론, 아이디어 제안 등이 논의의 주제였다(Korte, 1998, 28-29).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항 프로그램은 이 모임의 결과물로 알려지고 있다.

〈수상의 외부 조력자〉

콜 수상은 정부 정책설명,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상의 연설 등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콜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공식적인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개인적 인상을 중요시하였으며, 신뢰를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였다(Korte, 1989, 29-30).

콜 수상은 직접적인 좌담을 통해 또는 전화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수상청에서 매 분기마다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전문가회의에는 학자들, 언론인들과 수상청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독일 및 유럽문제에 관련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다(한국유럽학회, 2010, 48).

이러한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통일과정의 논의를 주도한 주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한국유럽학회, 2010, 48 재인용).

- 바이덴펠트 교수(Werner Weidenfeld): 정치학자, 독일문제, 유럽문제 전문가, 뮌헨대학 교수, 베르텔스만 재단 이사, 국제정치(Internationale Politik) 편집장 역임
- 슈튀르머 교수(Michael Stürmer): 역사학자, 독일문제 전문가,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교수, 저널리스트
- 슈바르쯔 교수(Hans-Peter Schwarz): 근대 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아데나워 전문가, 독일정책 및 외교정책 전문가, 본(Bonn) 대학 정치학 교수,
- 하케 교수(Christian Hacke): 근대 사학자이자 정치학자, 동서문제 전문가, 본 대학 교수,
- 마이스너(Boris Meisner): 소련 전문가

3. 내각 회의

내각은 정부를 의미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중요한 결정기관이라고 언급된다. 국내 정책적 및 대외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혹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 모든 사안은 내각에 제출되어 자문과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각 회의의 운영방식은 수상의 업무 스타일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콜 수상의 각료였던 인사에 의하면 내각 회의가 오히려 공증인의 회의 같은 절차라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수상원칙, 부처원칙 그리고 내각원칙 사이의 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내각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수상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상청은 내각 의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 유의하고 있다. 첫째는 내각 의안이 부처들의 의견 형성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내각 의안이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내각에서 상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수상청이 특히 유의하는 것은 부처 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내각 회의 이틀 전에 수상청 청장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각 부처의 차관회의

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usse/Hofmann, 2017, 75-76). 이러한 내각 의안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독일정책 관련 내각 회의 전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코르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독일정책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부처로부터 차관회의까지 거치면서 의안을 발전시킨다. 내각에서 다루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보고에 대한 설명과 결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관은 배경과 정치적 평가를 목록화한 짧은 메모지를 수령한다. 독일정책 팀장은 수상청 청장을 위해 내각 회의 의안에 대한 설명 관련 주요 언급 내용을 작성한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각 부처는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에 내각에서 논쟁과 의견 갈등은 오히려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 의안은 관련 부처의 장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내각에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다.

독일정책은 대부분 법안이나 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구두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독관계부 장관이나 수상청 청장 또는 영향력 있는 장관이 제안한 독일정책의 경우, 회의에서 다른 장관이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각 회의보다 그 이전에 발생하는 과정이 정부 정책결정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Korte, 1998, 49).

4. 내독관계부

독일 정부의 업무 규정에 따르면 내독관계부는 독일정책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의 연례보고서(1990)에 따르면 내독관계부는 국가의 통일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 민족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양독관계를 진흥하고,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 독일정책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 행정에 있어 부처의 독일정책 계획을 조정한다.

내독관계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독부가 모든 동독과의 협상에 참여

하였지만, 동독 정부는 내독부를 주요 대화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독부의 동독에 대한 실질적 관할은 인도적 문제에 한정되었다. 즉 가족 재결합과 동독으로의 여행과 관련한 것들이었다(Küsters, 2009, 20). 동독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하여 서독 정부는 전략적인 독일정책 협상에 대한 지도는 수상청으로 하고 내독 간 정책 영역의 수행과 같은 이행은 내독관계부의 관할로 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수상청은 자신의 업무를 상주대표부에 한정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은 수상청이 내독 관계의 전체 범위에 걸쳐 동독의 정치적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원래의 의도는 내독관계부가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 모든 동서독 관계를 책임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각 관련 부서들은 자기의 관할을 주장하였다. 독일정책 태스크포스 및 외무부에는 독일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내독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기도 하였다(Korte, 1998, 53-54).

독일정책에 대한 내독부와 수상청과의 관계는 내독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임명되면 수상청에 대해 내독부의 업무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다. 바르첼(R. Barzel)과 베너(H. Wehner)가 전자에 속하였고, 빈델른(H. Windelen)과 빌름스(D. Wilms)는 후자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1969년 브란트(Willy Brandt)가 집권한 후 전독문제부가 내독관계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처의 위상이나 기능은 이미 기본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빈델른 장관은 내독부를 '독일정책부'로 명칭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쇼이블레에 의해 저지되었다. 마지막 내독부 장관이었던 빌름스는 쇼이블레에 의해 규정된 활동 공간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내독부의 정치적 기능은 점차 의미를 잃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쇼이블레가 내무부 장관으로 통일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동안 내독부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1991년 1월 18일 해체되었다(Korte, 1998, 55-56).

5. 외무부

외무부는 독일정책 분야에서 대외적 문제, 즉 베를린과 전체로서의 독일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점령조례와 1954년의 독일조약에 있었던 유보조항이었다. 외무부는 또한 수상실과의 역할 충돌로 인해 전략적 정책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콜 총리가 그동안 직업 외교관이 담당해 왔던 수상실 대외정책실장에 주총리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호르스트 텔칙을 임명하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 수상청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수상청 대외정책실의 부실장이 직업 외교관이었고 우리의 국이라고 할 수 있는 Gruppe 21과 22의 국과장은 외무부에서 충원되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다. 베를린과 전체로서 독일에 관하여서는 서방 3대국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협의하는 문제는 수상청과 외무부에서 함께 담당하였다. 즉 외무부의 독일정책 관련 업무의 중점 과제의 하나는 본(Bonn)의 4인 그룹과 수상청 사이의 조정 업무였다(Korte, 1998, 56-57).

6. 정부 조정위원회[18]

정부에는 일련의 독일정책 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조정위원회가 존재하였다. 위원회는 정치가와 정무직 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누가 위원회를 이끄는지, 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내각 및 연정 회의를 제외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수상청과 독일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등이 참석하는 대략 6개 정도의 위원회가 의사결정과 자

[18] Hanns Jürgen Küsters, Das Ringen um die Deutsche Einheit (Freiburg: Herder, 2009), pp. 18-20; Karl-Rudolf Korte, Deutschlandpolitik in Helmut Kohls Kanzlerschaft (Stuttgart: DVA, 1998), pp.57-64.

문을 위한 역할을 하였다: 내각 독일 및 베를린 문제 위원회(Der Kabinettausschuss für Deutschland- und Berlinfragen), 독일정책 조정대화(Das Deutschlandpolitische Koordinierungsgespräch), 3인 확대 회의(Der Erweiterte Dreier-Kreis). 독일정책 조정(Die Deutschlandpolitische Koordinierung), 독일 하원 연정 대표 간 독일정책 대화(Der deutschlandpolitische Gesprächskreis mit Vertreten der Koalitionsfraktionen im Deutschen Bundestag), 본 4인 그룹(Bonner Viergruppe) 등이 이에 속한다(Küsters, 2009, 18).

〈내각 독일 및 베를린 문제 위원회/내각 독일통일위원회〉

동 위원회에는 수상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외무부, 내독관계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교통부, 체신부 및 베를린 시장이 참석하였다. 동 위원회는 1967년에 만들어져 1971년 7월 8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1985년에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1989년 중반까지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동독의 변혁기 단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상청의 자이터스 연방장관하에 다시 개최되었고 명칭은 내각 독일통일위원회로 바뀌었다.

〈독일정책 조정대화/독일 및 베를린 문제 차관 회의〉

동 위원회는 내독관계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였고 아데나워 수상 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다. 참석자들은 연방수상청의 청장, 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교통부, 언론 및 정보청, 베를린 주정부 대표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3인 확대 회의/5인 독일정책 조정대화〉

3인 회의는 초기에 수상청 청장, 외무부 사무 차관, 내독관계부 사무 차관의 3인이 참석하는 회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5인 회의로 확대되었다. 참석

자는 연방수상청 청장, 내독관계부 및 외무부 차관, 상주대표부 대표, 베를린 연방문제 담당 의원 그리고 내독관계부의 독일정책 실장과 수상청의 독일정책 T/F 팀장도 참석하였다. 동 회의의 명칭은 다양하였는데 독일정책 조정회의 등으로 불렸다. 다른 부처의 차관들은 회의 주제에 따라 참석하였는데, 당시 동서독 관계와 관련된 경제부, 재무부, 교통부 차관 등이었다 (Korte, 1998, 62; Küsters, 2009, 19).

〈독일정책 조정/독일정책 TF 과장급 교류위원회〉

교류위원회는 4~6주 간격으로 콜 수상 시기 수상청 독일정책 T/F 팀장 아래에 모였고, 부처의 독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들이 참석하였다. 참석 부서는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농업부, 국방부, 청소년여성부, 교통부, 체신부 등이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정보들이 취합되는 과정이 일어났다. 브리핑 회의를 통해 각 부처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 내독관계부와 수상청이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하였고, 결국 1987년 이후 교류위원회가 내독관계부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독일정책 대화그룹/하원 연정 대표 독일정책 대화그룹〉

1987년 이후 매달 의회 회의가 있는 첫 번째 주 목요일에 연방 하원 연정 대표자들이 정부의 대표자들과 함께 최근 독일 문제 및 베를린 문제를 주제로 비공식 회합을 가졌다. 회합은 이른 모임 시간에 따라 '독일정책 조찬'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수상청 청장과 내독관계부 장관이 항상 참석하였고 주제에 따라 여타 정부 대표자들이 자민당 의원, 기민당 의원, 기사당 의원과 회합하였다.

〈본(Bonn) 4인 그룹〉

서방 3대국의 대사와 서독 정부 대표가 만나는 모임이었다. 동 회의에서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였다. 1989년 가을 이후에는 독일 정부에서 수상청 청장 및 독일정책 태스크포스팀장, 외무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6개의 공식 및 비공식 위원회 외에도 장관 대화, 내독관계부 주관 동독 협상 조정위원회, 기민/기사연합 조정위원회 등도 독일정책의 조율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제2절 통일과정(1989-1990)에서 콜 수상의 정치력

서독 정치에서 수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기본법 65조에 규정된 수상의 기본방침결정권의 또 다른 표현으로 수상의 권력이 다른 권력을 압도하는 데에서 기인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은 수상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독일의 민주주의를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본법에 동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실질적 적용과정에서 헌법 내용이 수상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독 정부 수립 초기에는 기본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데나워의 가부장적인 개인적 성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냉전이라는 정치적 상황도 이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수상의 행위 공간이 제한되었고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치적 결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움도 증가되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의식이 확대되면서 정책결정의 결과나 부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적 참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68운동은 정치적 의식과 참여를 높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전통적인 좌우 지표는 사회적 개혁의 진전으로 그리고 동서 냉전의 붕괴로 더 이상

준거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서독의 수상 민주주의가 조정 민주주의(Koordinationsdemokratie)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수상은 이제 수많은 행위자를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19]

볼프강 예거는 1990년 동독에서의 자유총선까지 양독 관계에서의 중요한 국면에서 콜 총리의 지도력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Jäger, 1996, 354-358).

첫 번째 혁신적 조치는 1989년 11월 8일 분단 독일의 민족 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나타났다. 11월 8일은 콜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 장벽 붕괴 하루 전날이었다. 콜은 동 연설에서 동독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었고 동독의 정치, 경제적인 기본적 개혁과 연계되었다. 즉 사회주의통일당(SED)이 권력 독점을 포기하고, 다당제를 수용하며, 자유총선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 콜 수상은 대동독 관계에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콜 수상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일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동독과 비밀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이기도 하였다. 즉 콜 수상의 정책 수정은 동독 측의 비밀 협상가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샬크-골로드코프스키(Schalck-Golodkowski) 차관과 서독의 자이터스(Seiters) 수상청장과 쇼이블레(Schäuble)가 11월 6일 본에서 만난 후에 일어났다. 샬크-골로드코프스키는 동 비밀회합에서 서독 측에 수십억 마르크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하여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기 때문이다. 동 협상에서 서독 측은 다만 동독 측을 위해 40억 마르크의 여행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동독 측이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주민에게 부과하

[19] Wolfgang Jäger, "Kanzlerdemokratie im Einigungsprozess 1989/90," In Politik - Bildung - Religion Hans Maier zum 65. Geburtstag, Theo Stammen (Hrsg.), (Paderborn: 1996), pp.353-354.

는 강제 환전의 폐지와 그동안 동독 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 받았던 환영금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여행기금은 동독 주민이 서독을 여행할 때 필요한 외환 기금이었지, 동독 정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니었다.

11월 6일 비밀협상 직후 자이터스와 쇼이블레는 콜 수상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11월 8일의 콜 연설에 동독에 대한 지원과 동독의 개혁을 요구하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었다. 11월 7일에는 자이터스가 샬크에게 전화로 서독 측의 제안을 알려 주었다.

물론 당시 동독이 처한 내외적 상황을 볼 때 서독의 제안이 없었어도 동독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물론 호네커 후임으로 새로 당서기장에 임명된 크렌츠(Egon Krenz)가 개혁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의 개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10차 당중앙위 회의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논의하며 여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의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였다. 결국 이것은 동독의 개혁에 대해 서독의 경제적 대가를 받으려 했던 샬크의 계산이 빗나가게 하였다. 물론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열렸지만 서독은 동독에서의 상황이 그 정도로까지 전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수상의 결정은 11월 28일 의회에서 발표한 10개항 프로그램이었다. 콜 수상은 연설에 대해 연합국 및 연정 파트너와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발표하였다. 콜 수상은 10개항 프로그램 4항에서 동독 모드로우 총리가 제안한 조약공동체에 화답하였다(국가연합제 구조를 거쳐 연방제로 나아가는 방식). 콜은 그때까지 일상적인 정치 어젠다로 올려놓지 않았던 구체적 통일방안을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독일통일을 어젠다로 올리고 논의할 여지를 만들었다.

세 번째 주요한 정치적 판단은 동서독 간 즉각적인 화폐통합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동 제안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제안이기도 하다. 1990년 1월에는 주요 정치인들은 이미 동독의 붕괴를 염려하기 시작하였

다. 동독의 모드로우 총리는 깊어 가는 동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독일, 하나의 조국(1990.2.1.)'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전망을 보여 주고자 하였고, 점차 심각해져 가는 위기에 대해서는 동독 자유총선을 앞당김으로써 대응하였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통일독일의 중립이라는 조건 아래 독일통일은 독일인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Jäger, 1996, 365). 당시 동독 주민이 매일 약 2,000명씩 서독으로 몰려오고 있어, 동독 주민들이 동독에 머물러도 좋다는 전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곳곳에서 화폐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전문가들은 법적, 경제적 질서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고 마지막으로 화폐통합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이러한 단계적 화폐통합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민당의 원내 부대표도 신속한 화폐통합을 주장하였으며, 나중에 동독의 작센주 주총리가 된 비덴코프(Kurt Biedenkopf)는 이미 1월에 화폐통합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90년 2월 2일 서독의 테오 바이겔(Theo Waigel) 재무 장관은 동독 주민에게 미래에 대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전망을 주기 위해 동독에 공식적 지불수단으로 서독 마르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수상에게 화폐통합 관련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콜 수상은 2월 3일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모드로우와 만난 후 결심을 하였다. 2월 6일에는 연정과 합의하였고 화폐통합을 언론에 공표하였다. 다음날에는 내각에 동독의 경제개혁과 화폐통합을 지시하였다.

서독과 즉각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이 1990년 3월 18일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른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로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3월 18일 동독 총선 이후 성립된 연정은 연정협약에 기본법 23조에 의한 독일통일을 명기하기도 하였다.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콜은 고르바초프와 중요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통일독일의 NATO 잔류). 통일로 향하는 국내의 결정이 대외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과정보다 앞서가는 문제가 발생하여 콜이 동독 의회의 신속한 통일론자들에게 속도조절을 이야기하여야 했다.

당연히 콜 수상의 통일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수상의 뛰어난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한 구조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예거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Jäger, 1996, 358-359).

첫째, 수상 민주주의 모델은 외교 관계의 영역에서 수상이 가장 먼저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독일정책에서는 행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행위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특히 의회는 국내정책보다 정책형성에서 훨씬 더 작은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행정부 영역에서도 독일정책은 동서독의 특별한 국제법적인 지위로 인하여 외무부가 아니라 수상청이 관할하였다. 내독관계부는 동독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에 수상청이 마치 부처 관할 영역인 것처럼 담당하였다. 내독관계부는 독일정책에 관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부 내에서 축소된 역할로 인하여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수상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상과 가까이 있는 수상청에 대립할 수는 없었다. 동독의 변혁기 수상청은 거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그것은 기본법에 있는 수상의 기본정책결정권에 근거하였다.

셋째, 연정 파트너로서 자민당(FDP)의 역할은 독일정책의 관할 영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경제부 장관의 취약함에 의해서도 축소되었다. 기사당의 테오 바이겔 재무 장관이 화폐통합에 전면에 나서는데 비해서 경제부 장관은 사건의 뒤에 반응하였을 뿐이었다. 자민당의 화폐통합에 대한 입장도 기민/기사당과 달랐다. 결국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상청의 경제 담당국이 경제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웠다.

넷째, 동독의 변혁기 콜 수상의 결정은 그 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기본 틀

을 제공하였다. 수상은 전면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협상을 내세웠다. 장벽 붕괴 전 동독의 개혁에 대해 제안한 지원으로 독일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과 화폐통합 제안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층으로부터 동독 주민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또 다른 중요한 기본 조건은 약화된 야당이었다. 콜 정부는 이전 사민-자민당 연정의 독일정책을 유지하였지만, 구두로는 독일통일을 주장하였다. 또한 콜은 동독의 국제법적 국가 인정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은 이와 반대로 1982년 이래 야당으로 있으면서 동서독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야당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내에 서로 다른 입장들로 갈등하였다. 특히 사민당의 수상 후보였던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은 신속한 통일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독일통일을 둘러싼 위와 같은 유리한 기본조건이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정치력을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정치인들 간 개인적 관계를 정확히 학문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독일통일에서 개인적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콜과 고르바초프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통일독일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Jäger, 1996. 359). 많은 독일의 통일 관련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카우카수스에서 사우나 회담 등을 이러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콜과 고르바초프의 관계가 독일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통일독일의 미래에 대하여 고르바초프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정도까지 해석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장래를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의 역동성은 그러한 지도자가 바뀌고 그 나라의 미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의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였지만 당시 고르바초프가 처한 소련에서의 정치적 상황도 고르바초프의 선택을 제약하였다.

콜 수상의 가장 큰 개인적 업적은 변혁기 동독을 관리하는 민감함에서

두드러진다. 당시 콜 수상은 동독 주민의 거리에서 시위의 급진화를 막아 긍정적 발전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는 영역과 동독 공산정권의 불안정한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다. 민주주의와 통일로의 변화가 통제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만 하였다. 동독의 무장 세력과 소련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였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정권과 동독 주민 사이의 갈등을 이미 익숙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즉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콜 수상이 취했던 정책결정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볼프강 예거는 19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의 협상 파트너는 더 이상 당이 아니라 동독 주민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1989년 12월 19일 콜이 드레스덴을 방문한 것은 독일 전체의 수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독 모드로우 정권을 동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예거는 통일과정에서 콜 수상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독일 연방의 정치 시스템이 조정·협의 민주주의 또는 합의 민주주의에 이르는 구조적 경향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데나워 시기의 모범에 따라 수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은 수상이 특별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이용하는 것이고, 콜 수상은 통일과정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과정에서 콜의 수상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하르트비히(Hans-Hermann Hartwich)는 통치의 모든 기능적 영역에서 정치적 관리로부터 권력의 공학, 외부 연출 및 정당성 창출을 거쳐 카리스마적 요소를 보여 주었다고 하였고, 렘부르흐(Gerhard Lehmbruch)는 헬무트 콜 수상이 상당히 광범위한 결과와 거대한 모험이 뒤따르는 즉흥적 행위에 대하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에 탁월하였다고 하였다.

제4장

독일통일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 서독 정부의 정책결정 환경

4장에서는 정책결정에 관한 서독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서독 정부가 어떠한 대내외적 조건에서 어떠한 정책을 왜 취하였는지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 서독이 왜 신속한 독일통일 정책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설명하면 정책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은 서독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통일을 원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이 동서독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독은 통일을 위한 국제 및 국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물론 이러한 조건은 주어지기도 하였지만 서독에 의해 조성되기도 하였다-이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제1절 국제적 조건의 변화

독일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책임의 결과로, 유럽의 세력 균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의 분단 이후 동서 간 냉전이 성립(1차 베를린 봉쇄 등)되고 강화(한국 전쟁 등)되면서 동서독은 분단의 최전선이 되었다. 양극 체제에서 각각의 진영에 포섭되어 있는 동서독으로서는 미소의 종속변수

로서 이러한 냉전의 질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분단을 받아들이면서 분단의 고통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서독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최대치였을 수 있다.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독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들은 우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은 통일을 위해서 이들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였다. 특히 양극 체제를 이루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독일에 대한 관계가 더욱 중요하였다.

1. 소련의 변화: 독일통일의 계기 제공

독일통일의 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소련의 지도자인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1985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하였고, 이것은 미소 대결을 협력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1987년 7월 독일 연방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에는 소련은 아직 독일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쉐바드나체 소련 외상은 자신의 퇴임 이후 쓴 회고록에서 1986년에 이미 소련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그것의 결과로 독일통일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20]

1987년 4월 10일 프라하에서 소련은 동구 국가들이 더 이상 소련 공산당의 모범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1988년 12월 7일 유엔에서는 자유선거 원칙을 수용하였다. 1989년 3월에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공식적 폐지를 선언하였으며(Hartwich, 1991, 248), 이어서 1989년 7월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의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적

[20] Hans-Hermann Hartwich, „Die Bundesregierung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1989/90)“ Hartwich/Weber (Hrsg.), , in Regieren in der Bundesrepublik 3 – Systemsteurung und „Staatskunst“, (Wiesbaden: 1991), p.248.

인 사회주의 모델이 없으며,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였다(Lemke, 2009, 463). 즉 소련은 미국 등 서방과 동서갈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경쟁에서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2. 미국의 입장: 독일통일의 동력 제공

서독은 냉전 이후 미국의 독일(America's Germany)로서 유럽에서 미국에 가까운 국가였고 통일 직전 서독에 미군이 25만 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라고도 할 수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대해 미국에는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독일의 민족적 열망에는 지지를 표명하되, 동독 주민들이나 서독 정부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섣불리 독일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입장은 미국이 독일의 통일 혹은 국가연합의 형태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117).[21]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4일 만에 부시는 키신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키신저는 부시에게 "독일통일은 막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독일이 감지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키신저가 지적한 대가란 독일이 소련과 손잡고 나토에서 탈퇴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사태인데 이러할 경우 미국이 유럽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한국유럽학회, 2010, 21 재인용). 미국

[21] 이와 달리 나중에 독일통일이 점차 궤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특히 뉴욕 타임스의 편집장을 지냈던 A. Rosenthal은 기고문에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인류에 행했던 만행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독일에는 지난날을 반성하지 못하는 나치 잔당이 남아 있고 통일이 되면 이러한 친나치 그룹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독일통일을 찬성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116 재인용).

이 이러한 걱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내에서 서독 외무 장관 겐셔(Hans-Dietrich Genscher)의 겐셔리스무스(Genscherismus)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겐셔리스무스는 겐셔 장관의 소련에 대한 유화적 입장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불신을 의미하는데, 당시 서독은 미국에 대해 이의 불식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Hartwich, 1991, 250).

미국 정부는 1989년 11월 21일 독일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베이커(James Baker) 국무 장관이 서독의 겐셔 외무부 장관에게 "미국 정부는 독일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며, 독일이 다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단지 문제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라는 전문을 보냈다. 부시 대통령은 12월 3일의 몰타 회담에서 소련에 대해 독일통일 찬성 입장을 전달하였고, 직후 브뤼셀의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독일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전달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117-118 재인용).

- 독일 민족의 자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 정부는 현재 독일통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구상도 없다.
- 독일통일은 NATO와 유럽 통합에 대한 서독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은 유럽의 안정과 질서를 감안해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유럽의 국경 문제 관련 헬싱키 조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밝힌다.

미국은 위와 같이 4대 승전국 중에 독일통일에 대해 가장 먼저 지지의사를 밝혔고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4대 원칙에 따라 독일통일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이에 대한 소련의 반대도 극복하여야 하였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반대도 극복하여야 했다.

3. 프랑스의 입장: 독일통일의 미래 제공(건설적 비판)

서독은 프랑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일통일 직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유럽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한 유럽공동체 형성에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과 미테랑(Francois Mitterrand)은 서로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1989/1990년경에 유럽 통합을 둘러싸고 프랑스는 신속한 경제 및 화폐통합을 통한 유럽의 국가연합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독일은 유럽의 정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치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결국 양국의 이러한 차이의 극복은 독일통일을 프랑스가 수용하고 유럽의 신속한 경제적 통합을 독일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Hudemann, 2009, 498).

1989/1990년 프랑스 국민의 독일통일에 대한 태도는 여론조사에서 62~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윤/양현모, 2009, 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프랑스의 정치권은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12월 6일 키예프에서 고르바초프와 "현재 유럽의 안정과 평화는 동서독 양 국가가 모두 존립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9년 12월 20~22일 동독을 방문해서 동독의 개혁을 통한 독립국으로의 발전을 역설하면서 동독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랑스의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였다. 또한 이러한 반응은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프랑스에는 오래전부터 "두 개의 독일이 하나의 독일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정형화된 사고가 펴져 있었다. 실제에 있어서는 독일통일이 동구의 민주화 과정 및 유럽 대륙의 안정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Hudemann, 2009, 500).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자신의 영향력 상실과 독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동유럽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 민주화와 고르바초프의 권력이 불안정화 하

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NATO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프랑스는 유럽공동체에 정치적, 전략적 우선권을 두고 있었다(Hudemann, 2009, 508).

독일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지만, 프랑스는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와의 맥락에서 어떤 형태로 가야 할지 형태를 정하고 기본적 동력을 제공하였다. 1991/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연합은 직접적으로 독일통일로부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영국의 입장: 과거로의 침잠 또는 독일에 대한 경각심

독일은 영국에게 있어서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독일에 의한 두 번의 세계대전은 영국에 막대한 희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독일이 통일된다는 것은 영국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기 충분하였고, 영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었다. 이러한 대처의 독일에 대한 적대적 그림 외에도 현실 정치에서 유럽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이 독일통일에 대한 생각에 함께 반영되었다. 즉, 유럽 통합이 진전되어 독일이 유럽 통합에서 점차 중심적 역할을 하고 영국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주변에 머무는 것이었다(Heydemann, 2009, 487).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해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는 자유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칭하였지만, 대처는 독일통일을 가능한 늦추고 나아가 멈추려고 하였다. 메이저(John Major)와 같이 독일통일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런던은 독일문제에 대한 현상 변화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았다.

대처 총리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던 상공부 장관 리들리(Nicholaus Ridley)는 독일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콜 총리를 히틀러와 비유하면서, '독일이 통일되면 독일은 유럽에서 다시 패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언론 또한 독일통일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는데, 1989년 10월 31일 언론인 오브리앙(Conner Cruise O'Brien)은 The Times에 기고를 통해 "독일이 통일되면 히틀러 시대의 제3제국에 이은 제4제국을 꿈꿀 것이며, 이로써 유럽은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122 재인용).

2+4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영국의 대처 수상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즉 1990년 2월 말에 대처 수상은 향후 협상에서 4대 승전국만이 참여하여야 하고 양 독일은 단지 옵저버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eydemann, 2009, 489-490).

이러한 영국의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영국 내에 팽배해 있는 독일과 독일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많은 문화교류가 있었지만 독일과 영국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둘째, 2차 세계대전 후 정치, 경제적으로 점차 쇠퇴해지면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영국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보루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후 질서의 부정 및 개편은 영국인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다. 셋째, 통일될 독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공습을 경험한 영국은 통일된 독일이 군사적으로 영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국을 앞서 나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123).

이러한 역사, 문화적 배경 외에도 현실 정치의 계산도 있었다. 즉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는 유럽 통합을 늦추어 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영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자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통일보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유럽의 국경 유지를 강조하면서 동구권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주도하여 이를 통해 유럽 통합을 지연 또는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제2절 통일 직전의 동서독 정세 및 관계

1. 서독의 정세

1982년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이 서독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투표에 의해 물러남으로써 사민-자민당의 연정이 종말을 고하였고, 기민/기사-자민당의 연정이 시작되었다. 서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Helmut Kohl이 뽑혔다.

독일정책으로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에 대한 기민/기사 연합의 입장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과정 이래 양분되어 있었다. 기사 연합의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 등을 중심으로 사민당의 신동방정책이 분단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만, 기민당의 바르첼 등은 신동방정책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영구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당내 소수의 유력인사 및 실향민들의 반대로 기민당이 강령을 수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김진호, 2014, 211).

1982년에 집권한 기민/기사 연합은 사민당의 신동방정책을 목적을 사상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즉 기민/기사 연합은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사민당의 평화적 공존이 가져올 영구분단은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신동방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분리하였다. 교류협력 등 실제적 조치들은 허용하고 지속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지침이 되는 목표는 없었다. 동독 및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협상, 협정, 무역, 정상회담 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기민/기사연합의 관점에서 이것은 민족문제 해결과 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장기정책의 요소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클레멘스, 2010, 410).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장기적 목표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에 의해 구속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졌고, 모호한 성격으로 인하여 당내 개혁파와 근본주의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물론 모두에게 불만족일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서방의 동맹국들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데탕트 정책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장점도 있었다(클레멘트, 2010, 406-414).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서독에서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 동독과 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기민/기사 연합에서는 독일정책이 동독정책으로 전환이 언급되었고 1987년 비스바덴의 당대회에서는 가이슬러(Heiner Geißler) 사무총장과 같은 기민당의 개혁파들은 '통일'이라는 개념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기도 하였다(Hartwich, 1991, 250).[22]

1990년 서독 총선을 앞두고 1989년 지방선거는 총선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로 치루어졌고 베를린 선거(1989.1)와 유럽선거(1989.6) 모두에서 기민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많은 차이로 패배하였다. 당시 예측은 1990년 총선에서 콜이 다시 뽑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 동독의 정세

동독의 호네커 정부는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에 대해 반대하면서, 자신의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개혁에 저항하고 있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관료는 옆집에서 벽지를 교체한다고 멀쩡한 자기 집의 벽지를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곧 드러났다.

1989년 5월 헝가리 정부에 의해 오스트리아 국경 철조망이 제거되고 9월에는 국경이 개방되면서 많은 동독 주민이 탈출하였다. 또한 9월 말에는 동

[22] 사민당의 유력 인사들이 1980년대 초 기본법 전문에 있는 통일 추구 의무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다. 클레이 클레멘스 지음, 권영세 옮김,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고뇌하는 현실주의자(파주: 나남, 2010), p.458.

베를린 서독 대표부,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동독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발에 의한 투표, 즉 동독 주민이 동독을 탈출함으로써 동독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정부는 정부 수립 40주년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1989년 10월 7일 행사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축하장 바깥에서는 동독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1989년 10월 17일 마침내 개혁에 반대하던 당서기장 호네커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크렌츠 역시 구시대의 인물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도 곧 당서기장에서 물러났다. 11월 8일에는 동독 정부의 빌리 스토프(Willi Stoph) 내각이 물러나면서 개혁 성향의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자유로운 이주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2월 1일에는 동독 헌법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원칙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 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정당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재야 세력들과 원탁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도 12월 8/9, 16/17 특별 당대회를 개최해 당의 혁신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3. 동서독 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2년 새로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은 이전 사민-자민당 연정 정부가 추진하던 동방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콜 수상은 동방정책의 수단은 수용하였지만 이러한 동방정책의 목적은 언급하지 않는 모호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책 추진에 대한 목적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당내에서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제거하였고, 서방국가들로부터 동구권 접근으로부터 생겨나는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통일의 레토릭은 감소하였고,

1988년 빌름스(Dorothee Wilms) 내독관계부 장관은 "서독 기본법이 독일인들에게 굳이 민족국가를 추구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국가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역사적 과정에서 유럽의 분단이 극복될 때만 달성 가능하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클레멘스, 2010, 450). 그리고 논자들은 기민당의 통일에 대한 언급이 기도서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동독은 서독의 접근정책에 대해 차단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서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 기사 연합의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슈트라우스가 1983/1984년 동독에 대해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 공여를 성사시키게 된다. 대동독 차관 공여는 이미 사민당의 슈미트 정권에서 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데, 서독의 보수정권이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여 성사를 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동독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국경에서 자동 기관총 발사 장치를 제거하고 국경 통과 시 검문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4~1987년에 걸쳐 서독의 야당인 사민당과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이 '이데올로기 논쟁과 공동안보'라는 합의문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동독 측에서 합의문 작성에 참여하였던 마르크스-레닌연구소 소장이었던 한(Erich Hahn)은 합의문을 동서독 지식인간의 대화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역사학자 빙클러(August Winkler)는 동 합의문을 사민당이 동독의 국가로서 존재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동독의 사회적 체제의 존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제3절 독일통일 과정

동독의 변혁과정은 1989년 10월부터 시작되어 몇 단계를 거쳐 통일로 나아갔다. 여기서는 이러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1990년 4월부터 10월 3

일까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별 시간적 연대기를 살펴보면 시기별 쟁점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동서독 정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첫 번째 단계: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동독 40년 동안 잠재되었던 모순들이 표출되면서 동독 정부가 상황에 대한 통제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독 정부는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문제들은 동독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들이었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 70,000명의 시민이 모여 월요시위를 계속하였다. 6,000명에 가까운 군대와 경찰 등이 동원되었지만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23] 이후 시위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89년 10월 이전에 동독 주민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을 거쳐 동독으로부터 탈출을 통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면 이제는 거리로 나와 "우리가

[23] 1989년 10월 9일의 라이프치히 시위에서 어떻게 동독 정부가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에 사용하였던 무력에 의해 시위가 진압될 것을 염려하였다. 에곤 크렌츠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천안문 사태 처리 방식을 옹호하였고, 라이프치히 시위 진압을 위해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실제로 탄약도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Leipziger Volkszeitung에 직장 예비군 사령관인 G. Lutz가 기고를 하였는데, 내용 중에는 '반혁명을 최종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무기를 들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발포 명령의 고지로 받아들였다. 10월 9일 당 지도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당서기장 호네커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그는 직전에 암으로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음-당중앙위 국가안전 담당 비서 E. Krenz는 라이프치히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프치히 상황을 보고 받고 있던 내무부 장관 F. Dickel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이프치히 당서기장 H. Hackenberg 혼자 결정해야 했다. 17시 53분 그는 라이프치히 슈타지 책임자에게 전화하여 "현 상태가 유지되는 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19시 45분 크렌츠가 라이프치히에 전화하였을 때에는 시위대가 도시 원형 도로를 가득 메운 상태였고 그는 나중에 하켄베르크의 명령을 추인하였다. 크렌츠는 최근에 언급하기를 당시 명령은 분명히 내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즉 "슈타지 및 경찰이 공격받지 않는 한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20시 30분경 시위대가 자진해산함으로써 시위는 종료되었다. Alfred Weinzierl/Klaus Wiegrefe (Hg.), Acht Tage, die die Welt verändern – Die Revolution in Deutschland 1989-90 (München, 2015), pp. 90, 102-104.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를 외치며 동독 정권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동독 정부는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를 고르바초프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지만, 민심은 정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10월 17일 사회주의통일당 당중앙위는 에리히 호네커(E. Honecker)를 권좌에서 축출하고 에곤 크렌츠(E. Krenz)를 당서기장에 임명하였다. 크렌츠는 액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개혁이 요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크렌츠는 결국 12월 6일 당서기장에서 물러났다.

11월 9일에는 귄터 샤보브스키(G. Schabowski)의 기자회견장에서의 말실수로 뜻하지 않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동독 정부에 의한 동독 주민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부터 동서독 주민의 거주 이전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은 서독 정부에게는 밀려드는 동독 이주민에게 거주할 주거와 직장을 알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독 정부로서는 장벽 붕괴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추진하던 여행 자유화를 통해 여행목적이나 친척 관계 소명 등의 전제조건 없이 개인적 여행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하루이틀 먼저 여행 자유화가 실시된 것이고 오히려 행정부의 허가나 승인이 불완전한 개혁으로 또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자유화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개혁성향의 한스 모드로우(H. Modrow)가 물러난 빌리 스토프(W. Stoph)의 후임으로 인민의회에 의해 내각평의회 의장(총리)으로 선출되었다. 11월 17일 정부 정책설명에서 한스 모드로우는 서독에 대해 계약공동체를 제안하였다. 모드로우는 통일을 현실성이 없는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하였다(Hartwich, 1991, 252).

이 시기에는 동서독 모두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크렌츠가 당서기장 취임 후 11월 1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 정치적 어젠다에 독일통일은 없었다. 서독 또한 동구의 민주화과정이나 고르바초프의

개혁 및 서방으로의 접근정책이 동독 사태로 인하여 위험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서독의 일반적 견해는 통일보다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사민당의 한 의원은 동독과 '거리를 둔 변화(Wandel durch Abstand)'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당의 바이겔은 크렌츠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였으며, 보수적 신문인 FAZ도 동독의 근본적인 개혁은 위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Hartwich, 1991, 252).

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콜 수상은 의회에서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동독의 급변하는 상황이 콜 수상으로 하여금 독일통일에 대한 서독의 입장을 언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서독이 독일의 통일을 정치적 어젠다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정상이 당시 독일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유럽인들의 일반적 인식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서독은 10개항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힐 수 있었고, 동독 모드로우 총리의 조약공동체에 대하여 화답할 수 있었다(10개항 프로그램 제4항).

콜 수상은 유럽의 집을 위한 새로운 건축을 요구한 것이었다. 콜은 유럽에서 최대 긴장 요인의 하나인 독일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유럽 연합의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콜은 10개항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통일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그것은 계약공동체 → 국가연합 → 연방국가의 3단계 방안을 의미하였다. 모드로우의 계약공동체를 수용하였지만, 그 전제조건은 경제적으로는 동독이 시장을 받아들이고 사유제를 수용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고 다당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콜 수상이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에도 독일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통일정책이 유럽의 평화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CSCE 프로세스와 군비축소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의 불

확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 프로그램은 독일통일이 나아갈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실적 관점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었다. 동독 정부는 콜의 10개항 프로그램이 현실을 무시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제안이라고 평하였다. 즉, 동서독 두 국가의 근거가 되는 국제적 조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9년 12월 1일 동독은 헌법 1조에 있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적 지위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스 모드로우 정부는 사회주의통일당과 분리되었고 정치권력은 당에서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당중앙위 정치국원 모두가 물러났고 6일에는 크렌츠도 국가평의회 의장 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발생한 권력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재야단체에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하여 성립시켰다.[24]

원탁회의 대표들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과 기존 블록정당 그리고 야당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통일당이 절대 권력에서 물러남으로써 생긴 정치적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즉 많은 부분에서 의회와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원탁회의는 첫 회의가 열린 1989년 12월 7일부터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이 개최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었다. 원탁회의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으로 인민의회와 각료회의를 통제하는 최고의 기관이었고, 원래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안건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도 있었다. 선거법 및 새로운 헌법 초안 등을 제정하였다. 원

[24] 동독에서 1989년 여름부터 다양한 반체제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8월에 정치적 단체들이 형성되었으며, 9~10월에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정치적 단체인 신광장(Neues Forum)은 1989년 9월 10일 출범하였고, 동독 사회민주주의당(SDP)은 10월 9일에 발족하였다. 신광장은 동독 헌법에 따라 9월 19일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독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김영윤/양현모,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통일부, 2009), pp.76-77.

탁회의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동안 거리에 있었던 권력이 원탁회의로 이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반체제그룹이나 정당들이 추구했던 목표는 동독 사회주의의 개혁이었지 독일통일은 아니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91-93).

1989년 12월 19/20일 서독의 콜 총리가 동독의 모드로우 총리와 드레스덴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모드로우는 이를 통해 전개되는 상황들의 진전 속도를 늦추고자 하였고, 콜은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양독은 우선 경제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조약공동체를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위원회와 전문가 그룹 등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거주 및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장벽이 없었으나, 서독 주민에게는 동독으로 거주 및 이전을 가로막는 비자제도와 강제환전제도가 있었다. 동서독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이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서독 주민도 자유롭게 동독을 오고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독 주민에게 지급하였던 환영금(100 서독 마르크)을 폐지하고 1990/1991년 사이 29억 서독 마르크의 여행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9년 12월 22일에 상징적 의미가 큰 브란덴부르크 주변의 장벽 개방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콜은 드레스덴에서 동독 주민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는데, 콜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고 스스로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 두 번째 단계: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동독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서독 모두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 동독은 한스 모드로우 총리의 취임 이후 원탁회의 구성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점차 관리하려

고 하였다. 서독 또한 콜 수상이 10개항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였다.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독일통일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점차 정리되는 과정이었다. 동서독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였다. 즉 동독은 사회주의의 개혁을 통해 동독을 존속시키려 하였고, 서독은 동독에서의 변화를 통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독은 실패하였고 서독이 성공함으로써 독일은 통일의 길로 나아갔다. 여기서는 동독의 변화를 둘러싼 동서독 정부의 총성 없는 전쟁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1월 3일 개최된 5차 원탁회의에서 루프트(C. Luft) 동독 경제부 장관은 동독의 경제적 상황과 경제개혁에 대해 보고하였다. 동독은 소유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동독이 외부로부터 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989년 외환 수입은 93억 달러였고 외환 지출은 117억 달러였다. 그리고 동독의 비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총부채는 206억 달러였다. 동독 정부의 서방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 잔고는 70~90억 달러로 알려졌다. 동독 정부는 정치적 개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의 확보 역시 시급하였다.[25]

또 하나 동독에서 시급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국가안전부의 해체에 따른 후속기관의 설치 문제였다. 그리고 1990년 최초의 라이프치히 월요시위가 개최되었고 약 100,000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서독 콜 수상은 1월 10일 언론에 대해 독일의 정책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2월 모드로우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 대표단에 야당 대표들이 참석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독 정부의 중요한 목표는 동독 주민이 동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독의 이주 인구가

[25] Günter Fischbach (Hg.), DDR-Almanach '90: Daten-Informationen-Zahlen (Stuttgart, 1990), pp.317-318.

300,000명을 넘어섰고 1월에는 매일 2,000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1월 11일 모드로우 총리는 인민의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모드로우는 여기서 독일의 통일은 아직 어젠다에 올라와 있지 않으며, 독일통일은 전체 유럽의 발전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까지 동서독의 정부 수장 모두가 아직은 독일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

1월 15일에는 동독 시민들이 국가안전부 본부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국가안전부가 이름만 국가안전청으로 변경하고 과거의 인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국가안전부 문건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모드로우 총리의 개혁에 대한 진의가 의심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고 원탁회의에서도 재야 단체와 이 문제로 대립하였다. 여러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되었고 라이프치히에서는 15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렸고 독일통일을 외치기도 하였다.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1월 28일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4개항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5월 6일에 실시하기로 한 자유총선을 3월 18일로 앞당기고, 지방선거는 5월 6일에 실시하며, 거국 내각(국가적 책임 정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책임 정부에서는 재야 정치인들에게 무임소 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Fischbach, 1990, 341). 모드로우 총리는 책임 정부와 조기 자유총선을 통해 동독의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모드로우 총리는 동독 시민들이 통일을 외치는 시위를 계속하고 점차 악화되는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반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즉 통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계약공동체에서 통일을 언급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독일, 하나의 조국'을 2월 1일 발표하였다. 모드로우 총리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기 전 1월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독일통일 문제에 대해 고르바초프와 의견을 나누었다. 모드로우를 만나기 전에 고르바초프는 독일문제

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소련은 원칙적으로 두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고르바초프는 동독 통신사인 ADN의 보도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Fischbach, 1990, 344).

> "두 개의 독일 국가가 있고, 4대 승전국의 의무가 있고, 유럽의 과정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가야 한다. 이것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 결코 독일의 이익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현실적 과정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2월 1일 모드로우는 독일통일을 위한 안을 발표하였다. 명칭은 '독일을 위하여, 하나의 조국'이었다. 동 방안에 따르면 독일통일은 네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약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법적 동화 및 경제·화폐·교통 통합과 같은 국가연합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동서독의 국가연합 단계로 의회 위원회, 공동의 행정조직 등과 같은 공동의 기구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주권을 국가연합의 권력 조직에 넘겨주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독일 연방의 형태로 단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Fischbach, 1990, 345). 모드로우는 이를 통해 독일 영토 위에 두 개의 국가를 존속시키고 독일의 군사적 중립을 주장하는 1950년대의 해법을 다시 등장시켰다(Hartwich, 1991, 257).

2월 7일 서독 내각의 독일통일위원회는 동독과 화폐통합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2월 13일 본에서 모드로우 총리와의 회담에서 콜 수상은 화폐 및 경제 통합에 대한 협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에 대해 100~150억 마르크에 이르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개혁이냐 통일이냐의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접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결정은 2월 10일 콜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서독의 콜 수상은 2월 10일 드디어 고르바초프로부터 독일통일에 대한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독일통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다만 언제라는 시간 문제만 남게 되었다. 소련의 타스 통신은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이 밝히고 콜 수상이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Fischbach, 1990, 352).

> "현재 소련, 서독 그리고 동독 사이에 독일통일에 관해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다. 즉 독일인 스스로 독일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국가 형태로, 어떤 시기에,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통일을 실현할지를 독일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헬무트 콜 수상은 이에 대해 주변국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언급하였다. 즉 "독일문제는 현실에 근거해서 풀어야 하며, 이것은 전체 유럽의 건축과 동서관계의 전체적 과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2월 15일 콜 수상은 독일 하원에서 3월 18일 동독 자유총선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의 정부와 독일통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월 19일에 열린 13차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른 동독의 병합이나 개별적 주정부 차원의 병합을 거부하고 향후 독일의 나토 회원국 유지도 거부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나 칼 마르크스시 등과 같은 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독일의 통일 또는 신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시위가 지속되었다.

3월 18일에는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이 실시되었다. 93.39%의 높은 투표율에서 보여 주듯이 동독 주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전체 24개 정당 및 정치조직들이 참여하였고 선출되는 의원 수는 400명이었다. 1989년 말이나 1990년 초의 여론조사와 달리 보수연합인 독일동맹(AfD:

동독 기민당(CDU), 독일사회연맹(DSU), 민주적 출발(DA))가 47.79%(192석)의 득표로 제1당이 되었다.[26] 여론조사에서는 제1당으로 조사되었던 동독 사민당이 21.76%(88석)를 득표하였고,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서 당명을 민사당으로 바꾸었던 과거 동독의 공산당은 16.32%(66석)를 득표하였다. 선거의 특징은 동독의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시민운동그룹의 패배였다. 연대 90(Neues Forum, Demokratie Jetzt, 그리고 IFM이 통합)은 단지 2.9%의 득표를 하였고, 녹색당과 독립여성연맹은 1.96%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3월 18일 자유총선을 통해 독일문제는 독일의 신속한 통일로 해결되었다. 선거의 결과가 '신속한 통일'을 선거 표어로 사용했던 기민당의 승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 자체의 걸림돌이 남지 않았다. 이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언제 통일을 하느냐'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3. 세 번째 단계: 1990년 4월부터 10월 3일까지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독일통일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의 쟁점은 통일이냐 개혁된 동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동독에게는 이기기 어려운 생존 게임이었다. 동독은 생존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했고 외부적으로 소련이 지켜 주어야만 하였다.

동독 정부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개혁을 하는 데 실패하였고, 동독 사회주의 지지자들은 권력자와 일부 지식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는데, 경제적 자원은 동독을 통일시키려 하는 서독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이것은 서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인데, 서독

[26] Allianz für Deutschland는 서독 기민당의 오랜 망설임 끝에 결성되었다. 동독 기민당은 동독의 블록정당으로서 동독 정권과 함께 권력을 나누었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이의 완화를 위해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Dokratischer Aufbruch와 Deutsche Soziale Union을 선거연대를 위한 정당으로 받아들였다.

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서독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통일을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한 문제였다.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을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외부적 조건으로 소련이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승전 4대국의 하나로 국제법적으로 독일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생존마저 위태로웠던 소련은 더 이상 사회주의권의 맹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로서 냉전이 해체되게 되었고, 소련은 더 이상 양극 체제의 한 극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독일통일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동독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서독이 주장하는 독일통일이 동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1990년 4월부터 10월 3일까지의 과정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통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 이룩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세 번째 단계를 1990년 4월부터 화폐통합조약이 체결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1990년 7월 1일까지와 2+4 조약과 통일조약이 체결되고 독일이 통일된 10월 3일까지로 구분하여 다시 두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화폐통합조약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가능한 구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조약이 문서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7월 1일이지만 이미 2월 7일 서독이 결정하고 2월 13일 동독에 통보한 후 3월 18일의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이를 본고의 두 번째 단계로 분류하였다.

본고의 세 번째 단계는 통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이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통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에서 독일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 승리하였으나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47.79%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독일동맹은 연정 상대가 필요하였고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에 힘입어 동독 사민당 등과 4월 11일 합의하고 12일 대연정을

체결하였다. 연정 협약의 서문과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 1989년 11월 9일 이래 동독의 특별한 상황은 두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시급한 미래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당리당략적인 이해를 뒤로 하고 두 독일의 공동 성장의 시간을 위해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연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 동독 주민의 복리와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
> - 자유와 법치국가를 이룩하는 것
> - 독일통일을 위한 서독과의 협상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며, 동시에 전체 동독을 위한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평화질서에 기여하는 것

4월 12일 참석 인원 385명 중 265명의 찬성으로 기민당의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를 대연정의 총리로 선출하였다. 23명의 장관 중에서 11명은 기민당이, 7명은 사민당이 차지하였고 모두 동독 출신이었으며 서독 정치가들은 자문역으로 남았다. 연정 협약에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신속히 통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언제 통일할 것인가"의 문제와 "동독 주민의 복리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자유와 법치국가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되었다. 후자는 화폐통합조약(제1 국가조약), 통일조약(제2 국가조약) 그리고 2+4 회담에 관한 것이었다.

4월 중에 서독 정부는 화폐통합과 관련 임금은 1:1, 채권채무는 2:1, 연금은 서독의 70% 수준 등으로 결정하였고, 4월 24일 콜과 드 메지에르는 화폐통합조약의 실시를 7월 1일로 합의하였다.

4월 29일 드 메지에르 총리는 소련을 방문해서 소련 지도부로부터 장래

[27] Hannes Bahrmann/Christoph Links, Chronik der Wende 2: Stationen der Einheit – Die letzten Monate der DDR (Ch. Links, 1995), p.192.

독일의 나토 회원국 잔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5월 16일 서독의 연방과 지방정부는 1,150억 DM의 독일통일기금 조성 및 연도별 배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동서독이 화폐통합조약에 서명하였다.

겐셔 외무부 장관은 2+4 회담의 첫 번째 관련국 외교 장관 회의를 5월 5일 본에서 개최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통일독일의 NATO 잔류 문제였고 겐셔는 통일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5월 6일에는 동독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3월 18일 총선에 비해 기민당에 대한 지지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타 정당의 지지율은 비슷하였다. 즉 기민당 34.4%, 사민당 21.3%, 민사당 14.6%의 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었고, 기민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6월 3~4일 워싱턴을 방문하였고 여기서 미 국무장관 베이커는 향후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남는 조건으로 9개항의 카탈로그를 소련 측에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NATO군이 현재의 동독지역에 주둔하지 않으며, 소련군의 동독지역 철수과정에서 주둔비용과 철수하는 군대의 소련 내 주택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Bahrmann/Links, 1995, 239-240).

6월 중에는 양독 간에 동독에 의해 국유화된 재산의 반환문제, 사유화를 담당하는 신탁청 관련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되었다. 이는 통일조약(국가조약 II)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1990년은 서독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던 해이고, 1989년 초만 하더라도 콜의 재선은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었다. 오히려 사민당의 라퐁텐이 새로운 서독의 수상으로 유력하였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문이 열리면서 이러한 예측은 반대로 되어 버렸다. 라퐁텐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완만한 속도의 통일을 주장하였고, 이와 달리 콜 수상은 역사적으로 열린 통일의 기회를 활용하여 가급적 빠른 통일을 원하였다. 결국 신속한 통일이 점차 가

시화되었기 때문에 콜은 1990년 총선에서 다시 수상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0년 7월 4일 서독의 연립정부는 전독일 총선을 1990년 12월 2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제 전독 총선의 일정이 잡히면서 언제를 독일통일의 날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7월 6일 동독 사민당은 지금까지의 통일 속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12월 2일 총선 전에 동독의 서독으로 가입을 주장하였다. 같은 날 동독의 통일조약 협상 대표인 귄터 크라우제(G. Krause)는 기자회견에서 서독이 이미 통일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동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제는 선거법 및 통일독일 수도 등의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7월 16일에는 독일통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외적 조건이 해결되었다. 즉 서독의 콜과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카우카수스 회담에서 통일된 독일의 나토 잔류에 합의하는 8개항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일독일은 '스스로 그리고 자유롭게' 어떤 군사동맹에 가입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고, 8개항에는 통일독일에 대한 4대 승전국의 권리가 소멸되고,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며, 통일독일의 군대는 370,000명으로 유지하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NPT 회원국으로 남는다는 것 등이었다(Bahrmann/Links, 1995, 273-276). 2+4 회담의 가장 큰 장벽이 카우카수스 회담을 통해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2+4 회담의 남은 과정은 요식 행위가 되어 버렸고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최종 합의문에 6개국이 서명할 수 있었다.

통일의 외적 조건이 해결됨으로써 이제 남은 문제는 언제 동독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통일조약 협상만 남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 정당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990년 7월 24일 자유당 계열의 정당이 내각을 떠남으로써 동독의 대연정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후 8월 15일 드 메지에르 총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정책결정권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롬베르크(Romberg) 재무부 장관 등을 해임하자 16일 동독 사민당 지도부는 연정 탈

퇴를 결정하였다.

동독의 서독 연방으로의 가입과 관련 8월 7일 동서독의 정부는 1990년 10월 14일에 전독 총선을 실시하고 같은 날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사민당은 당초대로 12월 2일 전독 총선을 실시하고 9월 15일 동독의 서독 연방으로의 가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폰 바이체커 서독 대통령은 12월 2일을 전독 총선으로 관보와 함께 확정하였다. 이제는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입 일자만 남게 되었으며,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는 특별 회의에서 294표의 찬성과 62표의 반대로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통일조약과 관련 대강의 윤곽이 잡혔고 8월 1일 동독의 크라우제 차관은 통일조약 체결과 관련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동독 법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둘째,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집권국가를 연방국가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Bahrmann/Links, 1995, 285). 논쟁이 되었던 중요하고 커다란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통일독일의 수도와 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하여 동독 측은 베를린을 주장하여 관철하였다. 동서독 간 기간이 서로 다른 임신중절법, 재산권 반환문제 그리고 슈타지 문서 처리 방법 등에 관해서는 통일조약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사안들은 이후에 별도 문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합의함으로써 8월 31일 45개항과 1,000쪽이 넘는 부속문서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 3일 마침내 동독은 독일 연방으로 가입함으로써 독일통일은 완성되었다.

제5장

통일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실제

4장에서 독일통일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단계마다 동서독 정부는 정치적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은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동독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서독은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독일을 통일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각 단계마다 동서독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였는가? 첫 번째 단계(1989.10~1989.12)에서 동독은 호네커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크렌츠를 앞세워 동독 주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액션 프로그램(Action-Programm)을 통해 개혁으로 나아가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동독 헌법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적 지위를 삭제하고 모드로우 정부는 재야 단체와 원탁회의를 통해 권력을 공유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콜의 10개항 프로그램 발표로 주도권을 서독이 잡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1990.1~1990.3)에서 모드로우 총리는 독일을 위하여, 하나의 조국(Für Deutschland, einige Vaterland)이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독과의 통일 속도를 늦추고 동독 주민의 민심을 얻으려 하였으나 1990년 3월 18일 자유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1990.4~1990.10)에서는 3월 18일 자유 총선에서 승리한 동독 기민당 중심의 연정이 이미 통일을 가시화한 단계였으

므로 더 이상 동독이라는 국가의 유지는 주제가 되지 못하였다.

서독 정부는 첫 번째 단계(1989.10~12)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89년 11월 28일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동 조약은 동독 모드로우 총리의 조약공동체를 수용하는 등 실현되지 않은 사항들을 담고 있었지만, 서독 정부가 동독의 변혁에 대해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통일을 정치적 어젠다에 올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1990.1~3)에서는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붕괴 직전의 동독 경제, 주민의 화폐통합에 관한 요구, 3월 18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략적 사고 등이 결합되어 화폐통합조약 추진에 대한 발표가 1990년 2월 7일에 이루어졌다. 화폐교환 비율, 화폐통합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으나 콜 수상은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자신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물론 화폐통합조약의 체결은 5월 18일에 있었지만 이미 2월 7일에 발표되고, 2월 13일 동독 측에 제안되어 협상이 시작됨으로써 그 효력은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인 3월 18일 총선에서 크게 발휘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독의 국가통일의 방식을 담은 통일조약에 대한 서독 정부의 결정이 그 중심에 있다.

5장에서는 서독 정부의 성공한 정책으로서 10개항 프로그램, 화폐통합조약(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국가조약 I), 통일조약(국가조약 II)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각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주요 쟁점, 내용 및 경과(협상과정) 그리고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통일의 이정표로서 10개항 프로그램

1. 배경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서독을 비롯한 관련 모든 국가들이 독일통일이 그렇게 목전에 와 있는 줄은 몰랐다. 동독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란하였고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판단하

기 어려웠다.

이러한 동독의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여 콜 수상은 서독의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989년 12월 2~3일간 몰타에서 개최되는 미소 정상회담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올바른 시점이라고 생각하였다.[28]

2. 경과(준비과정) 및 내용

〈준비과정〉

콜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호르스트 텔칙(Horst Teltschik)은 1989년 11월 21일 포르투갈로브(N. Portugalow, 소련 당중앙위 위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고, 동 문건이 10개항 프로그램 발표의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문건은 공식 문건 형태로 되어 있었고 동독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 즉 독-독 간 접근이 소련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독일통일)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 문건은 포르투갈로브가 팔린(Valentin Falin, 소련 당중앙위 국제관계 담당)과 함께 나눈 생각들이었다. 통일문제,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 등이었는데 소련이 독일문제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소련이 독일의 국가연합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29]

텔칙은 이를 총리에게 보고하였다. 즉 고르바초프가 자문들과 독일통일 및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면, 이니셔티브를 위해 공격적인 독일정책을 취할 기회라고 하였다(Teltschick, 1991, 44-45).

당시 수상청에는 두 명의 서로 다른 타입의 국장, 텔칙과 뒤스베르크(Claus J. Duisberg)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텔칙은 오랫동안 콜 수상과

[28] Helmut Kohl/김주일 옮김, 나는 독일의 통일을 원했다(서울: 해냄, 1998), p.121.

[29] Horst Teltschick,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Siedler, 1991), pp.43-44.

함께 일을 해왔고 이러한 관계로 국내 정치적 범주에서 자신의 외교적 직무를 생각하였고, 뒤스베르크는 직업 외교관으로 국제정치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뒤스베르크에 따르면 아직도 소련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통일은 장기적 발전의 결과로 보았다(Jäger, 1998, 65).

콜 수상은 측근 보좌관들과 11월 23일 자신의 방갈로에서 회의를 하였고 텔칙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24일 텔칙은 자신의 팀원 및 연설문 작성 담당자 그리고 독일문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텔칙은 통일을 향한 10개항의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연설문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10개항의 전반부는 양독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핵심은 조약공동체-국가연합-연방국가로 단계적으로 양독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후반부는 유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콜 수상은 완성된 초안을 가지고 주말에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람스테터(Ramstetter) 형제의 조언을 받으면서 수정하였다. 그리고 10개항 프로그램을 11월 28일 의회에서 발표하였고 그때까지 철저히 함구하도록 하였다. 연립정부의 대표들에게도 비밀로 하였다. 콜은 연설 당일 각국 대사관을 통해 4대 전승국 등 우방에 동 내용을 전달하였다.

〈전문: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30]

제1항: 서독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일어난 사건, 특히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과 새로운 차원에 이른 동서독 왕래로 야기된 현실과 관련해 비상조치를 취한다. 서독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즉각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 지불하는 환영금은 그들의 여행경비 조달에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 여행자들을 위해 필요한 외화는

[30] Helmut Kohl/김주일 옮김, 나는 독일의 통일을 원했다(서울:해냄, 1998), pp.124-128.

결국 동독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서독 정부는 그와 같은 목적의 외화기금 설치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 동독 방문 서독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최소 환전제도를 폐지하고 동독 입국 조건을 크게 완화하며 외화기금의 상당 부분을 동독 정부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능한 한 자유롭게 동서독을 내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제2항: 서독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서독인들에게 다 같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동독 측과 계속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우리는 특히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중요시한다. 그 외에 우리 정부는 동독지역의 전화망을 신속히 확장하는 데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 하노버와 베를린 간의 철도 확장과 관련해 양측은 계속 협의를 갖는다.

제3항: 서독 정부는 동독이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결정을 내려 이를 번복하지 않고 실천에 옮길 경우 그것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전면 확대할 용의가 있다. 우리 서독 정부에게 '번복하지 않고'라는 말은 동독 지도부가 헌법 개정 및 새로운 선거법과 관련해 재야 단체들과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서독 정부는 독립적, 비사회주의 정당들의 참여하에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원하는 동독 주민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동독 공산당의 권력 독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동독인들이 요구하는 법치국가 도입은 무엇보다도 정치 탄압적인 형법의 폐기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 원조는 근본적인 경제 체제 개혁이 있을 때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들은 지탱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정시킬 생각은 없다. 동독 정권이 서방국가들의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경제 조건을 조성하며 민간경제의 활동을 보장해 줄 경우에만 경제적 발전은 가능하다.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가져다주는 경제 체제를 동독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제4항: 동서독 관계의 가까움과 특성은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서 합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와 같은 협력은 점차 공동의 제도도 요구하게 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위원회들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그 경우 특히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 교통, 환경 보호, 과학, 기술, 보건, 문화 등이 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협력에는 베를린도 완전히 포함된다.

제5항: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사이의 국가연합적 구조는 한마디로 난센스다. 그것은 동독에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먼저 자유선거가 있은 후에야 서독 정부는 공동정부위원회, 공동전문위원회 그리고 공동의회 기구 등의 구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분단의 고통을 덜고 민족통일에 대한 의식을 각성, 강화하는 수준에서의 조그마한 조치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장차 동베를린에서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가 탄생해 서독 정부의 파트너로 등장하면 새로운 형식의 제도적 협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로 합쳐져 자라 독일 역사를 면면히 이어주게 될 것이다. 독일의 국가질서는 항상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라는 이름을 지녀왔다. 통일독일이 결국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인들이 원할 경우 통일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6항: 미래의 독일이라는 건축물은 미래의 전체 유럽이라는 건축물 속에 끼워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서방세계는 항구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질서 구상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89년 6월의 독·소 성명은, 당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이젠 중요한 논거자료임이 증명되었다. 이 성명에서 모든 국가의 통합성 및 안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자신의 정치사회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든 국가의 권리가 유럽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주요 요소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제 고르바초프에 대해 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제7항: 서독 정부는 전체 유럽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사명과 의무를 강조하는 바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공동체와 유럽을 똑같은 하나로 보고, 또 유럽 통합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보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럽이 구멍 뚫린 철의 장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유럽공동체는 동유럽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유럽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또 모든 유럽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장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정체성은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자율 속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8항: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통합 유럽 건설의 핵심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중립과 비중립을 포함하는 모든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까지 참가하며, 그 영향력의 범위가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뻗쳐 있기 때문에 동서 진영 간 큰 문제를 토론하는 장으로 매우 적합하다. 전체 유럽의 새로운 제도적 협력 형태가 이곳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제9항: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군축과 군비통제는 정치적 발전과 보조를 같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유럽의 재래식 병력감축을 위한 빈 협상과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합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화학무기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핵 잠재력을 전략상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곧 있을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의 회담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독을 포함하는 바르샤바 조약국들과의 쌍무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협상의 진행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10항: 이 같은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는 유럽에 평화가 이룩되고, 그 속에서 독일 민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다. 독일의 국가적 단일성 획득을 의미하는 독일통일은 언제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목표이다. 우리는 독일통일로 이르는 길 위에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3. 국내외 반응

콜 수상의 10개항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민/기사당을 제외하고는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조차도 부정적이었다. 자민당은 하원에서 표결에는 찬성했지만 곧이어 개최된 전당대회에서는 이에 반대하였다. 겐셔 등 자민당에서는 폴란드와의 국경인 오더-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사민당의 오스카 라퐁텐은 이를 외교적 실수라고 비난하였다.

동독 정부의 10개항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나, 신광장과 같은 재야단체도 동독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민사당 의원인 문필가 슈테판 하임은 '우리나라를 위하여'라는 호소문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의 물질적, 도덕적 가치들이 염가로 매각되고 조만간 동독이 서독에 합병되는 것을 막자"고 소리쳤다. 이에 호응하여 서독의 지식인들도 '열린 두 개의 국가를 위하여'라는 성명에서 개혁된 사회주의 동독 건설을 지지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이 개혁운동이 외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미 사라져 버린 독일제국을 다시 세우려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콜, 1998, 137-138).

콜의 10개항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반응도 거의 부정적이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제4제국의 망령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독일을 좋아하니 독일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안드레오티 이탈리아 총리는 12월의 브뤼셀 나토정상회담에서 동독 주민들에 대한 자결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같은 자결권을 발트해 연안국가들에게도 부여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콜, 1998, 139, 145).

이러한 반응에서 보듯이 당시 독일이 국제정치 어젠다에 독일통일을 내세우는 것은 주변국들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콜 수상이 10개항 프로그램의 발표를 통해 독일통일을 국제정치의 어젠다로 내세우고 이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된 것은 독일통일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었다.

4. 평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를 것이다. 콜 수상의 10개항 프로그램에 대한 당시의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평가는 대부분 인색하였다. 독일이 다시 통일한다는 데 대하여 과거로의 회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독일통일을 평가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둔 지금 콜 수상의 10개항 프로그램은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미덕인 비전 제시에 성공한 케이스로 보여진다. 물론 역사의 전개 방향이 무궁무진하여 혹시라도 독일통일이 잘못된 역사 발전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태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이 지난 독일통일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콜 수상이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할 당시 부딪혔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의 길에 신념을 갖고 밀고 나가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콜은 10개항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중요한 정책결정을 취할 때 행했던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어 적절한 연구 사례도 되고 있다.

제2절 경제 분야: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양독 정부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동독 시민의 대규모 시위와 끊임없는 서독으로의 이주로 동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둘째, 화폐통합으로 동독지역에 서방지역의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화폐통합은 독일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독 주민 대다수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원하고 있는 요인도 있었다.

1. 배경

〈동독의 경제 현황〉

호네커는 1971년 집권한 이후 1970년대 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정책은 경제정책의 결실이 바로 사회정책의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인데, 점차 경제적 결실 없이 사회적 배분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제8차 전당대회(1971년)에서 '경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아래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의 도구화하고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주민에 대한 주택공급, 노동시간 단축, 각종 사회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경제의 재생산 능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생산물은 확대재생산을 위해 투자되기 전에 분배되어 버리는 이데올로기가 경제의 법칙에 우선하는 경제정책이 계속 운용되었다. 점증하는 사회복지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서 적자는 늘어갔고 서방으로부터의 채무가 증가하였다.[31]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는 1989년 11월 10일의 당중앙위 보고에서 서방에 대한 부채 증대 원인이 동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독 국가계

[31] Der Spiegel 1991. 9. 9, Günter Mittag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획위원회 위원장인 게르하르트 쉬러는 에곤 크렌츠로부터 동독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크렌츠는 1989년 11월 10일 당중앙위 10차 보고대회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쉬러는 동독의 노동생산성이 서독 대비 40%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면서 서방에 대한 부채 증대로 동독의 상환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동독 경제 상태를 진단하였다.[32]

> 1. 1970년만 해도 29%에 달하던 축적률이 1989년에는 21%로 감소하였다. ... 이의 파급효과는 지금까지의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산투자 부문에서 (연간) 축적률은 1970년 16.1%에서 1988년 9.9%로 떨어졌으며 ... 생산투자 분야에서 (누적) 축적률은 1970~1988년 동안 120%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 부문에서는 축적률이 200%를 넘어서고 있다. 주택건설 및 사회간접 시설 확충에 자본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의료보건 분야는 등한시되었다. ... 여러 산업 분야에 고도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최신식 시설들이 갖추어 있기도 하지만 ... 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시설 마모율(감가상각률)은 1975년 47.1%였던 것이 1985년에 53%로 상승하였으며, 건축업에서는 49%에서 67%로, 교통업에서는 48.4%에서 52.1%로, 농·임·식품업에서는 50.2%에서 61.3%로 각각 상승하였다. 몇몇 특정 경제 분야에서의 시설 마모율은 매우 심각해 보수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체에서의 수공업 종사자 비율이 1980년 이후 줄어들지 않고 계속 40%로 유지된 이유이기도 하다. ... 약 3.6%에 그친 1986~1990년도 총국민소득 성장률은 계속 줄어들 추세인바 ...

[32] 쉬러 보고서는 Deutschland Archiv 1992년 10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국민소득 성장률 저하로 인한 고질적인 생산용 자본축적률 감퇴 현상은 1990년 이후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8차 당대회 이후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생산보다 소비가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차액은 비사회주의 경제권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채에 의해 충당되어 왔다. 1970년에 20억 VM(Valuta-Mark)이었던 부채가 1989년에는 490억 VM으로 급증하였다. 8차 당대회 이후 실시된 사회복지정책이 자체 생산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비사회주의경제권으로부터의 기채에 의한 것이다. … 1986~1990년도 5개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국민소득 성장률 목표를 4.8%로 책정했으나 현재 예상 성장률은 3.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산출 부문에서 목표 미달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과다지출은 자본축적량 감퇴, 국내외 부채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

-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부채는 1970년 120억 동독 마르크였던 것이 1980년에는 430억 동독 마르크로, 1988년에는 1,23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3.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1986~1989년도 5개년 수출량은 계획 목표에 훨씬 미달하였다. 1971~1980년도 무역수지 적자는 210억 VM을 넘어서고 있다. … 한 국가의 부채 상환능력 측정 기준으로 간주되는 부채상환율-연간 부채(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한 수출액의 관계-은 25%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비사회주의 통화권에 대한 1989년 동독의 부채상환율이 국제 통용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150%선에 달하고 있다. … 결제능력의 상실은 곧 지불유예란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동독이 머지않아 세계통

화기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한다. ...

쉬러는 이러한 동독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고 비생산적 공장 폐쇄, 과잉 노동 인력 감축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쉬러는 신용 차입이 중단될 경우 1990년도 생활수준은 25~30%로 하락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동독은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쉬러는 서독과 경제협력을 위하여 동서독 국경을 철폐하고 1995년에 동독의 수도 베를린과 서베를린을 2004년도 올림픽 공동행사 개최지로 신청할 것을 검토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동독의 경제 상황은 당연히 동독 주민을 서독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동독의 경제 개혁 및 화폐 및 경제 통합을 위해서 이러한 동독의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었다.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 이주 행렬〉

동독의 1989년 10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은 이보다 앞선 9월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주재 독일대사관에 동독 주민이 몰려와 서독으로 이주를 요구한 것이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더 이상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자유로운 이주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1989년 4분기에만 300,000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 1월의 상황은 매일 2,000명가량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주 행렬은 동독의 공동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독에게는 이러한 이주민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는 동독지역에 점차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던 서독 정부에게도 동독 경제재건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것은 분명하였다.

1990년 1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서독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을 가릴 것 없

이 화폐 및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1990년 2월 11일의 동독 주민 시위에서는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로 가겠다(Kommt die DM nicht nach hier, gehen wir zu ihr)"는 구호도 등장하였다.

2. 주요 쟁점

화폐통합을 둘러싸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동서독 화폐의 교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화폐통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화폐교환 비율의 경우 격차가 너무 크면 당초에 동독 주민의 이주를 막는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었고, 교환 비율의 격차가 너무 작으면 동독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폐교환 비율〉

먼저 통일 이전 1989년 11월 암시장에서의 동서독 화폐의 교환 비율은 1 DM(서독 마르크) : 16 동독 마르크로부터,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1 DM : 7 동독 마르크의 교환 비율도 있었고, 1990년 1월부터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주민에게 동독 정부가 적용하였던 1 DM : 3 동독 마르크까지 다양하여 준거로 삼기 어려웠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동서독 화폐교환 비율은 100 동독 마르크 : 88~132 DM까지 산정됨으로써 또한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구매력 평가설의 이러한 차이는 비교 품목의 산정 문제, 동서독 소득 수준의 차이, 동독에서 가격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교환 비율의 결정은 동독 경제의 실태(자산 및 부채 등), 생산성, 국제 경쟁력, 소득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동독 통계의 미비와 거짓으로 인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었다. 서독 대비 동독의 생산

성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연방은행은 50%, 킬 경제연구소는 30%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화폐통합 시 적정 교환 비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우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관대한 교환 비율을 적용할 경우 동독 주민들의 자본수익이 커짐에 따라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동독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동독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 가격을 종래 동독 마르크에서 DM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부채와 임금에 대한 교환 비율이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에 대한 교환 비율은 기업부채의 규모와 이자지급에 영향을 준다. 임금 교환 비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는 동독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낮아야 하지만, 동시에 서독으로 이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했다. 이와 관련 화폐통합 이전 동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250마르크였고 서독의 월 평균 임금은 3,192 DM으로 교환 비율이 1:1일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 비용은 서독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3]

이러한 동서독 화폐의 교환 비율에 대한 서독 정부의 요청에 연방은행은 임금 및 연금에 대해 2:1의 교환 비율을 추천하였다. 현금 및 예금에 대해서는 주민 1인당 최고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1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연방은행 자문위원회는 화폐통합이 동독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동독 기업들이 노후 상태에 있어서 비생산적으로 조업 중인데, 임금 비용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산에 직면할 것이며,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통일원, 1993, 16-17).

33 통일원, 동서독 화폐통합(서울: 통일원, 1993), p.14.

그러나 1990년 1월 29일 재무부의 자라친(T. Sarrazin)이 작성한 보고서는 화폐교환 비율을 1:1로 산정하고 있다. 자라친은 몇 가지 방식을 동원하여 1:1 교환 비율을 뒷받침하였다. 첫째, 동독의 서독 대비 생산성을 독일경제연구소(DIW)는 45~60%로 추정하고 있었다. 자라친은 여기에 좀 더 안정적인 수치 40%를 동독 취업자 수(860만 명)/서독 취업자 수(2,970만 명)에 곱하여 동독의 추가적인 생산 잠재력을 서독의 11.6%로 계산하였다(수치는 1988년 기준). 그리고 동독 주민의 순 화폐 소득은 1988년 1,630억 동독 마르크였고, 서독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1조 3,430억 DM이었다. 여기에 교환비율을 1:1로 적용하면 동독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서독 주민의 12.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은 통화량 증가가 생산성 증가와 유사함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교환 비율을 1:1로 적용해 동독/서독의 총임금 및 급여 비율을 계산해 보면 산업별로 33~43%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첫 번째에서 언급한 생산성 비율보다 낮으므로 총임금 비용도 생산성보다 다소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1:1 교환 비율이 적절함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자라친은 구매력 평가, 통화량을 기준으로 1:1 교환 비율의 적절성을 주장하였다.[34]

당시 동독의 경제 상황과 동서독의 경제력을 비교해 볼 때 임금에 대한 화폐교환 비율을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1 DM : 2 동독 마르크를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논리에 의할 때에만 그러하다. 당시 독일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지나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만약 당시 경제 전문가의 조언대로 임금 및 연금의 교환 비율을 1:1이 아닌 1:2로 하였다면 서독은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1989/1990년 동독의 변혁기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합리성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다.

[34] Thilo Sarrazin, Die Entstehung und Umsetzung des Konzepts der 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Theo Waigel/Manfred Schell,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München, 1994), pp.183-184.

〈화폐통합 방식: 빅뱅 또는 점진적〉

화폐통합을 즉각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계적 통합론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으로 우선 동독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개혁이 실시되고 동독 화폐가 완전 태환이 가능해졌을 때 화폐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경제부 장관은 3단계 화폐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동독 경제의 시장개혁 추진과 동독 마르크의 제한적 태환 추진, 2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가격 자율화 및 동독 마르크의 완전 태환 추진, 3단계에서는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도입하는 것이다.

단계적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DM의 도입으로 양독 간 소득 격차가 극명하게 되면 동독 주민들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동독지역의 산업 입지가 약화되고 서방으로부터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다. 또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압력 증대는 연방정부의 이전지출 등 재정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통합은 경제적 이론상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역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즉 거대한 구조전환의 어려움에 처한 동독이 필수불가결한 변혁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면 개혁이 지연되고 서독의 대동독 재정 원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동서독의 임금 격차로 인해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동독의 청년 인력과 우수 인력이 서독으로 대거 지속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이주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화폐통합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화폐통합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화폐통합을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합리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조기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독에 대한 서방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동서독 간 정치적 통일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단계적 화폐통합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서독이 단계적 화폐통합 방안을 선택하였다면 3월 18일 자유총선의 승자는 기민당이 아닐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자유총선에서 기민당이 승리하지 못하였다면, 동독은 경제적 주권을 잃지 않고 서독의 경제적 지원하에서 동독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동독이라는 국가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 화폐통합은 고통의 시간 내지 재정 부담이 작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고, 조기 화폐통합은 고통의 시간 내지 재정 부담이 크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서독 경제가 조기 화폐통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건실하고 규모가 큰 경제라면 단계적 화폐통합 방식으로 통일의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조기 화폐통합으로 통일의 기회를 잡는 것이 정치적 합리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만약에 콜 수상이 경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단계적 화폐통합 방안을 택하였다면, 3월 18일 동독의 자유총선에서 기민당이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독일통일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거나 아니면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서독 정부가 통화통합을 통한 정치적 통일로 목표를 정하면서 단계적 통합 방안은 정책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3. 경과(협상과정) 및 내용

〈협상과정〉

서독 재무부는 1월 중순에 단계적 화폐통합 방안을 마련하였다. 1989년 12월부터 1월까지의 상황은 아직 독일통일에 대한 어떤 신호도 감지할 수 없었기에 동서독 두 개의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동독 주민

의 서독으로의 이주가 1990년 1월 매일 2,000명에 달하고 있어 단계적 화폐통합 방안은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급진적 화폐통합 방안만이 동독 주민의 이주를 멈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었다. 자라친의 보고서에 따라 재무부는 1:1 교환 비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1월 30일 테오 바이겔(T. Waigel) 재무부 장관은 동 방안에 대해 승인하였다.[35] 2월 6일에는 콜 수상, 바이겔 장관, 람스도르프 자민당 대표가 만나는 연정 수뇌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였고, 2월 7일에는 내각이 이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본에서 개최된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콜 수상이 모드로우 총리에게 이를 제안하였다.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은 1990년 3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2월 13일 콜 수상은 동독의 모드로우 총리에게 동 조약을 제안하였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정부가 들어서야 화폐통합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드 메지에르 정부가 출범한 4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3월 18일 자유총선 이전의 협상(예비협상)은 2월 20일, 3월 5일 그리고 13일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3월 18일 동독의 자유총선으로 약 한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4월에 동독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본 협상을 개최하면서 쟁점을 해결해 나갔다.

예비협상에서 서독 측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36]

① 서독의 경제 시스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법적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DM이 도입될 수 있음을 동독 측에 명확히 알린다.

35 T. Waigel 재무부 장관은 1월 초에는 즉각적인 화폐통합 방안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36 김영찬,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 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역할(파주: 새녘, 2017), pp.136-137.

② 동독 측은 화폐통합의 세부조건 확정과 동독에 필요한 지원액 추정이 가능하도록 서독 측이 필요로 하는 경제, 금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독 측은 2월 13~14일 화폐통합을 제안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었다(김영찬, 2017, 137).

① 전문가위원회는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 간의 회담을 반영하여 통화/경제동맹의 가능성, 여건, 일정을 협의하며, 3월 18일 자유총선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② 서독 측이 원하는 정확한 조건을 분석하고 동독의 경제 붕괴 방지와 구조전환을 가능하게 할 적응과정과 관련된 즉각적인 조치들을 개념화하며, 동독 주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한다.

예비협상은 3월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중간보고서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통화동맹,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해 동독의 조속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 ② 특정일 기준으로 DM의 동독 마르크 대체와 동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 조건 마련, ③ 통일국가로 가는 결정적 단계로 통화동맹,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 ④ 본 협상에서 화폐통합의 방식과 일자, 동독 통화정책권한 이양, 시장경제에 필요한 법적 조건 마련, 구조개혁 및 전환에 필요한 지원방안, 동독 재정적자 제한 등에 대한 논의이다(김영찬, 2017, 137-138).

예비협상과 본 협상 사이인 3월 27일 콜 수상 주재 회의에서 교환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방은행과 경제 장관은 2:1 교환 비율을 제안하였고 블륌(Norbert Blüm) 노동사회부 장관은 2:1 전환 시 동독 근로자 순 임금 평균이 사회부조금 수준으로 하락하여 화폐통합의 당초 목표인 동

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행렬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콜 수상은 이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영찬, 2017, 161). 4월 초에는 재무부에서 화폐통합조약에 관한 개요가 작성되었다.

동독과 경제 및 화폐통합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4월 14일 다시 재개되었다.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연정 대표들의 오랜 내부 회의 후에 4월 23일 서독 정부는 논란이 되었던 화폐교환 비율에 대해 합의하였다. 동독과 경제 및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은 주요 요지 형태로 의결되었다(Bahrmann/Links, 1995, 206-207).

- 임금 및 급여에 대한 1:1 교환, 기업 채무와 1인당 1:1로 교환해 주는 4,000마르크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2:1 교환
- 45년 연금가입 기준으로 서독의 평균 70% 수준의 연금
- 해외 계좌에 있는 예금은 3:1 교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독 측 협상 대표인 티트마이어(Hans Tietmeyer)와 쇼이블레는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를 만나서 화폐통합조약 체결과 2+4 회담 협상이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등 네 가지 주요한 관점을 담은 화폐통합조약 계획서를 건네주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기본적으로 작업 중인 안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서독 마르크 도입으로 동독 기업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근심을 표출하며, 과도기에 중소기업을 도울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요청하였다.

자유총선 이후 동독 총리로 선출된 드 메지에르는 4월 24일 처음으로 콜 수상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동독에 서독 마르크 도입을 7월 1일 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5월 6일 지방선거 이전에 화폐통합의 주요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콜 수상의 계획은 달성되었다.[37] 동서독 양측은 4월 25일 동베를린, 4월 27일 역시 동베를린에서 5시간에 걸친 마지막 회의를 개

[37] Hanns Jürgen Küsters, Das Ringen um die Deutsche Einheit(Freiburg: Herder, 2009), pp.247-248.

최하였고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5월 12/13일 본에서 개최된 전문가위원회는 30시간의 회의 끝에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안)에 합의하였다.

〈화폐통합조약의 내용〉

동 조약은 통일조약(제2 국가조약)과 비교하여 제1 국가조약이라고도 하며, 전문, 본문 6장 38조,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그리고 부속문서로 이루어졌다.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칙 1조에서는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 마르크가 동독지역에서 단일화폐로 사용되고 서독 연방은행이 전체 통화지역의 중앙은행 및 발권은행이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고, 사회통합은 업적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사회적 균형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조에서는 쌍방은 자유, 민주, 법치 외에도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주거 및 이전의 자유, 단결권 등을 보장하고 동독 헌법이 본 조약과 상치될 경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장 '화폐통합에 관한 규정' 10조에서는 임금, 급여, 장학금, 연금, 집세, 지대 그리고 기타 정기지불금에 대해서는 1:1 비율로 교환되는 것 등을, 3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11조 이하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GATT 원칙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4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에서는 단결권 등 노동 관련법은 서독의 법이 적용되고, 사회보험 중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서독의 관련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연금보험은 과도기적 방안을 도입하였다. 과도기에 실업보험과 연금보험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독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화폐통합조약의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1-2〉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주요 내용

Ⅰ. 총칙	– 동독지역의 법은 자유, 민주, 연방, 법치국가 및 사회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정, 유럽공동체 법질서 지향 – 사회주의 법률, 권력기구, 국가질서, 세계관 등은 더 이상 불적용
Ⅱ. 경제통합	– 경제적인 성과는 민간경제와의 경쟁에 입각 – 계약의 자유 보장,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 제약은 가능한 최소화 – 기업의 결정은 국가의 계획으로부터 자유(기업의 생산, 구매, 공급, 투자, 노동관계, 가격, 수익의 사용 등) – 민간기업, 자영업은 국영기업이나 조합기업에 비해 차별이 없어야 함 – 국가가 가격을 정해야 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가격결정은 자유 – 영업활동, 토지나 기타 생산수단의 취득 및 이용의 자유 보장 – 국가의 소유 기업들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가능한 한 사유화(특히 중소기업에 기회 제공)
Ⅲ. 사회통합	– 근로자의 노동 3권 보호 – 임금 및 노동조건은 국가가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결정 – 동독의 노조에 관한 법규정 폐지

화폐통합조약 부속문서에는 1. 화폐통합과 통화전환에 관한 규정 외에도 2. 동독이 시행할 법률, 3. 동독이 폐지 또는 개정할 법규정(동독은 동 조약 시행 전 폐지 및 개정), 4. 동독이 신규 제정해야 하는 법률(동독은 동 조약 효력 발생 이전까지 혹은 본 부속문서에 명시한 별도 시점까지 법률 제정), 5.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서독은 동 조약 발효 전까지 법률 개정), 6.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규정(동독은 향후 본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제정을 위해 노력) 등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2. 동독이 시행할 법률 총칙 3에서는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관련해서 해당 조항에서 열거하는 법 또는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서독의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은 본 부속문서가 별도 확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와 상응하는 동독의 관공서 또는 기관으로 대치한다고 함으로써 서독법의 동독지역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4. 평가

화폐통합조약 협상에서 서독 측 대표를 맡았던 티트마이어는 동독과의

협상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동독 측에 서독 측의 화폐통합 방안을 넘겨줄 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계획안으로 넘겨주었다. 이는 협상 상대를 배려한 것으로 동독 측이 혹시라도 서독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38] 그리고 콜은 1990년 3월 26일 티트마이어를 화폐통합 협상에서 자신을 보좌할 개인 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Küsters, 2009, 248). 이는 서독 측 협상 대표인 티트마이어에게 힘을 실어주고 콜 수상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화폐통합은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서독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화폐통합은 이를 추진했던 서독 정부, 특히 콜 수상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독 기민당의 선거 유세에 나섰던 서독 기민당 정치인들은 화폐통합을 동독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화폐통합 논의 과정에서 특히 화폐교환 비율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유총선을 앞두고 콜 수상이 1:1 화폐교환을 언급함으로써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에서 기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콜 수상은 자서전에서 1989/1990년 변혁의 시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시간으로 간주하였고, 다시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놓이더라도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콜 수상의 견해로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경제적 판단에 따라 이를 실기한다면 통일의 역사적 기회는 다시 잡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막데부르크대학의 파케((K. H. Paque)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는 정치적 조건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지 그 역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8] Dieter Grosser, Das Wagnis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Politische Zwänge im Konflikt mit ökonomischen Regeln (Stuttgart: DVA, 1998), P.277.

제3절 정치 분야: 통일조약

1. 배경

화폐통합조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언제 통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말 롬베르크(Walter Romberg) 재무부 장관(동독 사민당)은 통일의 시기에 대해 1991년 하반기경이지 않을까 하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6월의 동독 경제 및 정치 상황은 동독이 해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낳고 있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독은 어떤 자신의 이익도 관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독으로 통일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독 측의 협상 입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동독의 크라우제(Günter Krause)는 서독의 쇼이블레 내무부 장관과 국가통일을 규정하는 조약에 대해 이미 접촉하고 있었다(Grosser, 1998, 325).

동독 측 협상 대표인 크라우제는 화폐통합조약 관련 재정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동독에 대한 투자는 통일 이후에나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서독은 2+4 회담에서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내의 통일 속도를 조절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사회연합(DSU) 소속의 의원이 동독의 서독으로의 즉시 가입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하는 데 별도의 조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 인민의회가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을 의결하면 되는 것이었다. 동독이 서독 기본법 효력 범위 안으로 가입하고 난 후 입법 관련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고 과도기적 연계법(과도기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 방식이 편리할 수 있고 서독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야기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사라지고 다른 국가로 가입하는데 단순히 의회 의결로 종료할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절차는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통일과정 전체를 불신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와 크라우제 정무 차관은 6월 17일 전후에 반드시 통일조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입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동독 주민의 이익을 좀 더 명확하게 관철할 수 있기를 원했다. 또한 통일조약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기존의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의 국가를 만든다는 정치적 의미도 포섭할 수 있기를 원했다(Grosser, 1998, 326-327).

그리고 서독이 통일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동독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었다. 서독 측 또한 장점이 있었다. 즉 통일조약을 통해 오랫동안의 과도기적 절차-조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독 측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의미에서-에 의존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39]

2. 주요 쟁점

동서독은 통일조약 체결 과정에서 시간적 압박으로 인하여 일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조약 체결 시까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한 가지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 중 합의된 부분은 조약에 규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통일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다. 즉 통일조약 2조 1항은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소재지는 독일통일 이후에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슈타지 문서처리 방식과 같이 양측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통일독일 입법부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통일조약이 전체로서 연방하원 및 상원을 통과해야

[39] Andreas Rödder, Deutschland - einig Vaterland: Die Geschichte der Wiedervereinigung (München: C. H. Beck, 2009), p.292.

하는 상황에서 통과를 어렵게 할 조항들을 분리함으로써 통일조약이 부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 문제〉

1990년 6월 7일 동독 인민의회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의원의 신청에 따라 국가안전부/국가안전청 해체 통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7월 중순 동독의 내각은 국가안전부의 정치적, 역사적, 사법적 청산을 보증하고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인 관련 국가안전부 문서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동독 인민의회는 1990년 8월 24일 동법을 한 표의 반대로 가결하였다.

비록 동법이 개인이 직접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배제하였지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동독 인민의회가 제정한 상기 법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서독 내무부 의견에 따르면 슈타지 문서는 연방문서보관소에 속하게 되었고, 연방문서보관법에 따라 30년간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동독 인민의회가 가결한 슈타지 관련법이 첫 번째 통일조약 협상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이 서명되기 하루 전에 동독 인민의회는 상기 법률이 통일조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9월 초에는 30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슈타지 본부를 점거하고 단식투쟁을 하면서 통일조약이 슈타지 문서에 관한 처리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결국 9월 18일 통일조약 추가 의정서 1절에 동독 인민의회에서 1990년 8월 24일 통과된 슈타지 문서 관련법의 기본 원칙이 통일 이후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미해결 재산권 처리 문제〉

동독 시절에 국가에 의해 국유화된 재산을 반환해 줄 것인가 또는 보상

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동 사안은 양독이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로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체결 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결국에는 침해된 재산권 보상이 아니라 원래의 재산권을 반환해 주도록 양 독일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것은 1945~1949년까지 소련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였다. 이것은 동독 정부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되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점령 시기에 행한 행위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소련은 물론 동독의 반대가 심하여 통일조약 체결 시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1990년 6월 15일 동서독이 합의한 문안을 통일조약의 부록으로 넣었고, 이 역시 통일독일의 의회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잠정적 해결방안을 찾았다(쇼이블레, 1992, 259-260).

3. 경과(협상과정) 및 내용

〈협상과정〉

통일조약 협상 참여 범위는 화폐통합조약보다 훨씬 넓었다. 쇼이블레 내무부 장관이 서독 측 대표가 되었고 거의 모든 부서의 차관이 대표단에 참여하였다. 주정부 대표, 연정 정당 및 야당 그리고 유럽연합의 고위 대표도 참석하였다. 각각의 대표단은 약 50명으로 구성되었고 서독의 대표단 구성은 동독보다 복잡하였다. 구조적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동독 대표단이 서독과 협상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서독의 법체계로 통합되는 과정이니 당연한 현상이었는데, 문제는 동독 정부에서 일하는 서독 전문가의 도움뿐만 아니라 동독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서독 측 참석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40]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동독 측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통일조약인 관계로 동독 측이 안을 내고

[40] Wolfgang Jäger, Die Überwindung der Teilung – Der innerdeutsche Prozeß der Vereinigung 1989-90 (Stuttgart: DVA, 1998), p.482.

서독 측이 이에 대해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자이터스 수상청 연방 장관이 7월 11일 밝힌 것처럼 서독은 통일조약을 협상하고 비준 절차를 거쳐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하는 절차에 관심을 가졌다.

통일조약에 대한 공식적 협상 이전에 쇼이블레와 크라우제는 5월 29일과 6월 1일 두 차례 만나 대강에 협의하기도 하였다. 1990년 7월 6일 동베를린에서 1차 통일조약에 관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동독 측에서 500쪽에 이르는 준비 자료를 배포하였다.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협상 모두에서 동독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1990년 12월 이전에 서독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서독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다: 첫째, 베를린 수도 문제, 둘째, 국가적 상징, 셋째, 향후 5개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 대한 재정, 넷째, 신탁관리청의 소속과 책임(Küsters, 2009, 377).

7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동서독의 각 부처들이 만나 자신들의 소관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는 동독이 협상할 목록을 제출하였다. 드 메지에르는 베를린을 장래 수도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통일조약에 담자고 하였으나, 이는 국회 및 상원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주장이라고 쇼이블레는 판단하였다. 쇼이블레는 통일조약 전체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통과에 문제가 있는 사안들은 별건으로 이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41]

두 번째 공식 협상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동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8월 2일 협상에서 동독 측은 통일조약의 개략적 내용을 담은 요지를 제시하였다. 2차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재정지원, 법률적용 등이었다. 통일이 되면 5개 신연방주에 대한 재정지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정부 간 견해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독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 내무부와 법무부 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내무부는 일정 기간 동독지역에

[41] 볼프강 쇼이블레 지음/한우창 역,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서울: 동아일보사, 1992), pp.123-140.

동독법을 존속시키고 통일조약에 동독에 적용될 서독법을 적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달리 법무부는 통일과 동시에 동독지역에 서독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동독법의 적용은 예외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일장일단이 있는 논쟁이었다. 서독의 환경법과 같은 경우 동독에 그대로 적용하면 동독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을 것이고, 동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면 서독의 사회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동독 주민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에는 법무부 안이 채택되었다.

3차 공식 협상은 당초 8월 27일에서 20일로 앞당겨 24일까지 개최되었다. 그리고 양측은 동독 측이 작성한 통일조약 문안 초안을 놓고 협의하였다. 양측은 조문별로 개정, 보완하면서 또한 상이하고 논쟁적인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협상 대표들보다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8월 24일 3차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대부분은 합의되었지만 아직 가조인하기 어려운 조항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일 동독 의회는 10월 3일 연방 가입을 의결하였다.

8월 26일 연정과 야당의 대표 및 원내 총무들이 서독 수상청에 모였고 사민당의 포겔(Hans-Jochen Vogel) 대표는 조약이 서명되기 전에 사민당의 입장에서 불분명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미해결 재산권, 임신중절법,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이었다. 협상 종료의 시한이 없으면,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항상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었다. 8월 29일 가조인을 하고 서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쇼이블레는 콜 수상으로부터 조인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민당에서 임신중절 관련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였다. 8월 29일 드 메지에르 총리 역시 내각회의에서 통일조약에 아직 남아 있는 논쟁들의 목록이 서독 측보다 훨씬 길었다. 31일 아침에 양측의 대표들은 다시 모여 가조인하였고, 서독의 내각과 동독의 내각 평의회는 가서명된 조약을 승인하였고 13시에 양측의 대표는 이에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추가

협상이 필요하여, 9월 10일 양측의 대표들이 모여 보완 협상을 하였고 이는 다시 해당 부처의 동의를 받았다. 9월 17일 양측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슈타지 문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향후 처리 규정에 대해 결정하였고, 18일 서독 내각과 동독 내각 평의회는 '통일조약의 이행과 해석을 위한 양독 간 합의'를 승인하였다. 또한 동 합의문에는 8월 31일 서명한 조약 내용 중에 고치거나 수정할 내용들도 담고 있었다(Jäger, 1998, 494-495).

1990년 8월 31일 서독 연방내무 장관 쇼이블레와 동독 정무 차관 크라우제는 동베를린의 황태자궁에서 1,000여 쪽에 달하는 통일조약에 서명하였다. 통일조약은 9월 20일 서독 연방하원과 동독 인민의회를 통과하고 하루 뒤에는 서독 연방상원을 거쳐 9월 28일 발효되었다. 9월 24일 통일을 앞두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동독 주재 외국 대사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26일에는 마지막 각료회의가 있었고, 통독 전날인 1990년 10월 2일 인민의회가 마지막 모임을 갖고 동독 정부를 해산하면서 동독의 소멸을 공식 선언하였다.

10월 3일 동독이라는 국가가 사라짐으로써 12월 2일 전독 총선까지 동독지역에 의회와 정부가 부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동독 인민의회 의원 중 일정 인원이 서독 의회에 참여하였고 동독 내각 또한 서독 내각에 참여하였다. 콜 수상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에게 8월 28일 무임소 장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주요 내용〉

통일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정치적 체제전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협상에서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정치 체제를 동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화폐·경제·사회 통합 조약(제1 국가조약)이 동서독의 경제적 체제전환을 위한 양독 간 조약이었다면, 통일조약(제2 국가조약)은 동서독의 정치적·행정적·법적 통합, 즉 동

독의 정치적 체제전환을 위한 기본 틀이 되었다. 통일조약은 1990년 8월 31일 '독일통일 창설에 관한 동서독 간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양측에 의해 서명되었고, 9월 29일 발효되었다(국제법상 조약). 내용은 동독을 해체하고 독일 연방(서독)에 가입하며, 독일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국가적 통일을 다루고 있으며, 법적으로 서독의 기본법을 구동독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통일조약은 헌법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통일조약은 전문 및 9장 45조로 이루어진 조약문, 조약문에 대해서 보충적 설명을 담은 의정서, 부록 I~Ⅲ, 통일조약의 실행과 해석에 관한 합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군의 통일 후 한시적 체류에 관한 법 등 1,000여 쪽으로 이루어졌다.

전문 및 9장 45조로 구성된 조약문에서 1조와 2조는 서독으로의 가입에 따른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1조에서는 5개로 이루어진 신연방주(구동독지역)가 기본법 23조에 의해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1990년 10월 3일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 2조는 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하고, 10월 3일을 독일통일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조약 3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법(헌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3조에서는 5개 동독지역의 신연방주에 서독 기본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서독 기본법 전문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새로운 기본법(헌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신연방주 5개 주를 첨가하고 기본법에 있던 통일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서독 기본법 23조를 삭제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의 독일통일로 더 이상 독일이 통일을 해야 할 남아 있는 지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기본법 146조는 "기본법은 독일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결된 새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1949-1990)"라는 조항이 "독일의 자유와 통일이 실현되어 유효한 동 기본법은 독일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결된 새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로 개정되었다. 조약 5조에서는 2

년 이내 기본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정하였다. 여기에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기본법에 새롭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기본법 146조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투표의 문제 등도 포함되어 있다.

7조는 재정헌법에 관한 내용-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 간 재정분배 및 지원 등에 관한 원칙-을 다루고 있다. 기본법 106조와 107조, 즉 재정문제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고, 재정헌법 내용을 원칙적으로 신연방주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4년까지는 동 재정헌법을 동독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통일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에서 신연방주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재정헌법에 따라 주정부 간 재정균형제도가 통일과 함께 즉각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적용될 경우, 구서독지역 주정부의 구동독지역 지원액이 급증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8조는 부록 I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동독지역(신연방 5개주)에 연방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동독 주정부의 법은 연방법 및 EC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는 서독이 체결한 조약이 부록 I에 언급된 예외 조약을 제외하고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 동독에도 적용되며, 개별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과 협의한다고 적고 있다. 12조에서는 동독의 조약들은 조약 체결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있다.

5장(공공행정과 사법) 15조에서는 주행정을 위한 경과 규정을 두어, 10월 3일 편입에서부터 새로운 선거 시까지 동독 신연방주 의회 의장 및 행정 전권 수임자가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아 주행정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독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최대한 1996년 6월 30일까지 동독 주정부 총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자문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약 37조에서는 동독 내에서 취득하거나 또는 국가가 공인한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 졸업 자격 또는 자격증의 유효성을 다루었다. 42조는 의

원 파견을 다루고 있는데, 1990년 10월 3일 편입 이후 총선(1990년 12월 2일)까지 동독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144명의 동독 의원을 서독 의회에 파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조약 부록 I은 조약 8조와 11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 II는 동독 법률의 유효 및 폐지, 개정, 보충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i절은 효력이 유지되는 동독법을 각 부처에 따라 열거하고 있으며, ii절에서는 폐지, 개정, 보충되는 동독의 법률을, iii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효한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부록 III은 미해결 재산에 관한 양독 정부 간의 공동성명서로 동독 정부 수립 이후 재산 국유화 조치 등에 따른 재산권을 반환할 것인가 또는 보상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 문제는 통일조약을 통해 양측이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통일조약의 부록으로 담아 처리하고 통일 이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일조약은 이의 이행과 해석에 관한 합의서도 포함하고 있다. 즉 통일조약의 이행과 해석에 관한 합의서 1조에는 슈타지(국가안전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양측 정부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동독 국가안전부 처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통일조약의 말미에는 동독지역(베를린 포함)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소련 군대의 한시적 체류에 관한 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소련군 등에 대하여 철군 시까지 합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 통일조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약(법률)이 헌법을 개정하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 통일조약은 아직도 독일의 법체계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규정은 여전히 헌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통일의 역사적 특수성은 정상적인 법 제정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독일 통일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통일조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조약은 통일 이후 헌법이 새롭게 효력을 미치는 영토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 헌법 조항 중에 통일로 인해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를 정해야 한다. 셋째, 통일되는 측과 통일하는 측의 법률을 조화시켜야 한다. 넷째, 통일을 주도한 국가의 조약이 피주도 국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 통일되는 측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지방정부의 대표가 선출되기까지 누가 지방정부를 이끌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여섯째, 법원 판결의 유효성 문제와 공무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보장문제, 학력 및 자격증 인정, 방송 등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4. 평가

통일조약이 형식적으로는 조약으로서 법률의 형태이지만 헌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헌법 위의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효한 독일의 법체계에 속한다.

통일조약의 체결은 동독 측에 의해 요구된 사항이었다. 동독은 이를 통해 화폐통합조약에서 미비점 등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에 대한 이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서독 측 대표인 쇼이블레 장관은 조약안을 제시하지 않고 토론 자료만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서독은 동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하였고, 이것은 결국 협상을 동독 측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끌고 가자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화폐통합조약과 달리 통일조약은 동독이 조약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협상에서부터 동독 측에서는 드 메지에르 총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화폐통합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서독의 콜 수상이 협상을 독려하고 무대 뒤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으나 통일

조약 체결 과정에서 콜 수상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 서명도 동독은 콜 수상과 드 메지에르 총리가 서명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서독의 콜 수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6장

한반도통일 시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 답하려고 하였던 것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서독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동독의 변혁을 기회로 하여 통일을 이루었는가”이다. 달리 말하면, 서독의 콜 수상이 독일통일에 대한 과제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정책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조직·제도라는 관점에서 독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독일 정부는 1949년 정부 수립 이래 모두 연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연정은 유사한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 간에 자주 성립되지만 독일은 보수당(기민/기사당)과 진보당(사민당)처럼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정당 간에도 성립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을 둘러싼 대화와 협의 및 협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합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제도는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인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립하는 극단적 정책이 자리잡을 공간을 축소시킨다. 그리고 당연히 대립하는 극단적 정책이 적어지면 서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두 번째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특징인데, 서독은 우리와 달

리 동독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였고 모든 정부마다 대동독 비밀 협상라인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폐쇄된 사회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용한 기능을 하며, 비밀협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경제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89년 11월 초 서독의 자이터스 수상청 장관과 쇼이블레 내무부 장관이 동독의 샬크-골로드코프스키를 만났을 때, 동독의 비밀 협상가는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보상을 언급함으로써 서독이 대동독 정책전환을 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독의 조직·제도가 콜 수상으로 하여금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조직·제도 또는 구조·시스템은 다이내믹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이내믹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의해 가능하다. 독일의 수상은 기본법에 따라 기본정책결정권한(통치권)을 갖는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기본법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수상이 개인적 역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연정 협약이나 사회적 발전 정도(민주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콜 수상은 동독의 변혁이라는 정세 변화에 직면하여 유럽의 지붕 아래 독일의 통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

콜 수상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세 단계의 과정에서 일련의 행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통치력,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1989년 11월 9일)된 이후 11월 28일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선언을 통해 콜 수상은 독일통일을 국제정치의 어젠다에 올려놓았고 향후 진행된 통일 프로세스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게 되었다. 10개항 프로그램은 수상 주변의 공적 및 사적 전문가를 통하여 작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선언이 서독의 서방국가와의 연대를 의문시하게 하거나 소련의 무력 개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외교 라인의 신중한 접근을 거부하고 통일의 기회로 판단한 것은 콜 수상의 개인적 역량(지도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모형과 정부모형이 결합된 정책결정).

두 번째 단계에서 콜 수상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1:1 화폐교환을 추진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서독 화폐통합은 처음에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던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행렬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1:1 화폐교환 비율의 결정은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 말 동독에서 정당별 여론조사를 하면 동독 사민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확보하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민당의 지지율이 점차 증가하였지만 1:1 화폐교환 언급 이후 기민당의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일반적 예상과 달리 기민당이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동서독은 10월 3일 통일에 이르게 되었다. 콜 수상은 회고록에서 "통일을 뒤로 미룰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대가(결국 그것은 경제적 대가이기도 하다)는 오늘날 통일을 서두름으로써 지게 된 재정적 부담보다 훨씬 큰 짐을 지워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1990년 초에 통일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지라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파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경제는 정치적 조건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지 그 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콜 수상은 동독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일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측은 무엇보다도 사라져 가는 국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첫째, 동독 측은 동독 주민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 둘째, 동독 측은 통일조약 체결이라는 상징성을 통하여 기존의 국가와 다른 새로운 동서독 공동의 국가를 만든다는 정치적 의미도 포섭할 수 있었다. 셋째, 동독 측은 화폐통합조약 체결에서 부족했던 사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다. 넷째, 화폐통합조약이 서독의 주도였다면 통일조약은 동독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통일조

약 체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은 부속문서 형태로 채택하여 통일독일의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합의의 융통성도 보여 주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두 개의 국가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독일은 이처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통일을 이룩하였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역할과 서독의 통일 관련 조직 및 제도 그리고 구체적 협상과정을 살펴본다면 향후 남북한의 통일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김영윤/양현모(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통일부, 2009.

김영찬(2017),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파주: 새녘, 2017.

김진호(2014), 서독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냉전과 데탕트 그리고 독일분단 시기, 서울: 파랑새미디어, 2014.

박응격 외 공저(2001), 독일 연방정부론, 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M. 치맥 공편(2009), 독일연방공화국 60년, 서울: 오름, 2009.

이봉기(2000),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와 차관공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2000.

정상돈, 김진무, 이강규(2012), 동독 급변사태시 서독의 통일정책, 한국국방연구원, 2012.

정정길(1999), 정책학원론(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1999

통일원(1993), 동서독 화폐통합, 서울: 통일원, 1993.

한국유럽학회(2010), 독일의 통일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한국유럽학회, 2010.

〈독일 문헌〉

Bahrmann, Hannes/Links, Christoph(1995), Chronik der Wende 2: Stationen der Einheit – Die letzten Monate der DDR, Ch. Links, 1995.

Busse, Volker/Hofmann, Hans(2017), Bundeskanzleramt und Bundesregierung – Aufgaben, Organisation, Arbeitsweise, Bonn: bpb, 2017.

Driftmann, Markus(2005), Die Bonner Deutschlandpolitik 1989/90, Münster: LIT, 2005.

Fischbach, Günter(1990), DDR–Almanach '90: Daten–Informationen–Zahlen Stuttgart: Bonn Aktuell, 1990.

Fleischer, Julia(2011), "Das Bundeskanzleramt als Protagonist einer Institutionenpolitik? – Institutionelles Strategien und exekutive Entscheidungsfindung." In Regierungskanzleien im politischen Prozess, Stephan Bröchler/Julia von Blumenthal (Hrsg.), Wiesbaden: VS Verlag, 2011.

Fröhlich, Stephan(2001), Helmut Kohl und die deutsche Außenpolitik, Schöninhg: 2001.

Grosser, Dieter(1998), Das Wagnis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Politische Zwänge im Konflikt mit ökonomischen Regeln, Stuttgart: DVA, 1998.

Hartwich, Hans–Hermann(1991), „Die Bundesregierung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1989/90)." , In Regieren in der Bundesrepublik 3 – Systemsteurung und „Staatskunst", Hartwich/Weber (Hrsg.), Wiesbaden, 1991.

Heydemann, Günther(2009), "Großbritaniens Rolle und Politik unter Margaret Thatcher während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In Revolution und Vereinigung 1989/90, Klaus–Dietmar Henke (Hrsg.), München: dtv, 2009.

Hudemann, Rainer(2009), "Von alten Stereotypen zum neuen Europa: Franfreich und die deutsche Vereinigung." In Revolution und Vereinigung 1989/90, Klaus-Dietmar Henke (Hrsg.), München: dtv, 2009.

Jäger, Wolfgang(1996), "Kanzlerdemokratie im Einigungsprozess 1989/90." In Politik – Bildung – Religion Hans Maier zum 65. Geburtstag." Theo Stammen (Hrsg.), Paderborn: 1996.

Jäger, Wolfgang(1998), Die Überwindung der Teilung – Der innerdeutsche Prozeß der Vereinigung 1989-90, Stuttgart: DVA, 1998.

Knoll, Thomas(2004), Das Bonner Bundeskanzleramt – Organisation und Funktionen von 1949-1999,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2004.

Korte, Karl-Rudolf(1998), Deutschlandpolitik in Helmut Kohls Kanzlerschaft – Regierungsstil und Entscheidungen 1982-1989, Stuttgart: DVA, 1998.

Küsters, Hanns Jürgen(2009), Das Ringen um die Deutsche Einheit – Die Regierung Helmut Kohl im Brennpunkt der Entscheidungen 1989/90, Freiburg: Herder, 2009.

Küsters, Hanns Jürgen/Hofmann, Daniel(1998), Deutsche Einheit –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München: Oldenbourg, 1998.

Lemke, Michael(2009), "Die Sowjetunion und die deutsche Einheit: Warum Moskau die DDR aufgab."In Revolution und Vereinigung 1989/90, Klaus-Dietmar Henke (Hrsg.), München: dtv, 2009.

Rödder, Andreas(2009), Deutschland – einig Vaterland: Die Geschichte der Wiedervereinigung, München: C. H. Beck, 2009.

Sarrazin, Tihlo(1994), Die Entstehung und Umsetzung des Konzepts der 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Theo Waigel/Manfred Schell,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München: 1994.

Teltschick, Horst(1991),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Siedler, 1991.

von Münch, Ingo(1974),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alnd, Band II, Stuttgart: Kröner, 1974.

von Münch, Ingo(1976), Dokumente des geteilten Deutschalnd, Band III, Stuttgart: Kröner, 1976.

Weinzierl, Alfred /Wiegrefe, Klaus (Hg.) (2015), Acht Tage, die die Welt verändern – Die Revolution in Deutschland 1989-90, München: 2015.

〈번역 문헌〉

민족통일연구원(1993), 독일 통일조약 비준법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민족통일연구원(1994),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上),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민족통일연구원(1994),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中),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민족통일연구원(1994),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쇼이블레, 볼프강 지음/한우창 역(1992),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앨리슨, 그레이엄/젤리코, 필립 지음, 김태현 옮김(2018), 결정의 본질, 서울: 모던 아카이브, 2018.
케네디, 로버트 F., 박수민 옮김(2012), 13일–쿠바 미사일 위기 회고록, 서울: 열린책들, 2012.
콜, 헬무트/김주일 옮김(1998), 나는 독일의 통일을 원했다, 서울: 해냄, 1998.
클레멘스, 클레이 지음, 권영세 옮김(2010),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고뇌하는 현실주의자, 파주: 나남, 2010.

독일통일 총서 29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연방수상청과 독일통일

이은정, 베르너 페니히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통일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서독 정부의 부처는 연방수상청이었다. 물론 서독 연방정부 내에도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하게 동독과의 관계를 전담했던 '내독성'이라는 부처가 1949년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내독성은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빌리 브란트가 추진한 신동방정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동독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치적 결정은 수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었다. 1989년 동독과 동구 유럽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정치적 결정 또한 수상청의 보좌를 받는 수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내독성 장관은 대부분 배석만 했을 뿐이었다.[1]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총선거 이후 독일통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내독성이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통일조약의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독지역에 새로 구성될 5개의 신연방주들을 위한 '재건부'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2] 서독 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실무단이 1990년 7월에

1 자이터스 연방정부 수상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논의(문서번호 10), 독일정책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책회의(문서번호 41), 베를린 문제에 대한 헬무트 콜 수상과 발터 몸퍼 서베를린 시장 간의 회담(문서번호 53), 서독 연방수상청 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회의(문서번호 77), 연방정부 수상 헬무트 콜과 연방주의 총리들 간의 회의-동독과의 협상과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문서번호 102), 동독의 재정부담 문제와 국가조약에 관한 연방정부의 콜 수상과 연방주지사들 간의 논의(문서번호 156), 신탁관리청 관련 연방정부 콜 수상과 연방주 주지사들 간의 회의 보고서(문서번호 200).

2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문서번호 184).

작성한 통일조약 초안에는 동독 쪽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동독이 제안한 것은 통일조약 14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동베를린과 5개 신연방주들이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의 연방주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과도기 동안 5개의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을 위한 연방부처를 신설한다."[3] 그러나 최종적으로 조인된 통일조약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내독성을 1991년 초에 해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내독성의 직원들은 대부분 연방내무부로 인수되었다. 결국 통일과정에서 '통일부'가 해체된 것이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독성이 신연방지역의 재건을 담당하는 강력한 '동부지역 재건부'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처를 담당할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만 했고, 연방정부의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 중에서 신연방주와 관련된 부분을 '동부재건부'로 이관해 줄 의지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 부처 내에도-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부처 중심주의 또는 부처 이기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부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연방수상청에서는 통일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수상과 수상청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2+4 회담은 수상청과 외무부, 회폐통합은 수상청과 재무부, 통일조약은 수상청과 내무부, 통일비용은 수상청과 연방주-독일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지만, 항상 연방정부의 수상과 수상청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3]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T/F의 문건-통일조약(안)(문서번호 196).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 분담이라는 표현은 업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서독 수상청의 주도하에 업무 역량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 초 동독의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를 위해 동독 기민당을 중심으로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 창립된 것과 서독 연방정부 내에 '독일통일 내각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들 수 있다. '독일을 위한 동맹'은 1990년 2월 5일에 동독의 기민당, 독일사회연맹(Deutsche Soziale Union), '민주적 도약(Demokratische Aufbruch)' 등 세 개의 단체가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를 위해 선거연합을 구성한 것이다. 신속한 통일의 실현을 정강으로 내세운 '독일을 위한 동맹'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창립회의에도 직접 참석했다. [4] 로타 드 메지에르는 당시 헬무트 콜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독일을 위한 동맹의 결성 직후 헬무트 콜과 서독 기민당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홍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독일을 위한 동맹 내의 관계는 여전히 원만한 것이 아니었다. (……) 동맹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헬무트 콜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중재해야만 했다."[5]

서독 연방정부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2월 7일, 즉 콜 수상이 모스크바로 떠나기 3일 전, 모드로우 총리가 서독을 방문하기 6일 전, 연방정부는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부위원장은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으로 하고, 외무 장관, 내무 장관, 법무 장관, 재무 장관, 경제 장관, 내독성 장관, 노동 장관, 환경 장관

[4] 동독에서의 향후 파트너 정당에 관한 콜 수상의 숙고(문서번호 89).

[5] De Maizière, Lothar. 2010.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ügen müssen. M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Einheit. Freiburg, Basel, Wien: Herder, p.84.

을 위원으로 두었다. 6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재정, 화폐통합, 경제개혁, 동독의 인프라 구조, 노동시장과 사회 질서의 조정, 교육, 외교안보 문제 등을 각기 담당하게 했다. 독일통일 과정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 내가 주관한 '국가구조 및 공공질서' 실무그룹은 처음에는 외교, 재정, 경제개혁 실무그룹에 비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들은 화폐통합과 2+4 회담, 2월 13일에 오타와에서 열릴 외교장관회의를 준비해야만 했다. 나는 내각위원회의 설립과 내가 담당한 실무그룹의 구성을 계기로 내무부의 슈납아우프 국장을 책임자로 하고 20명의 인원이 참가한 독일통일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 실무팀이 나중에 독일통일조약을 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6]

이 장에서는 선별된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1989년 여름부터 1990년 10월 사이에 연방수상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동구권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동독을 이탈하려는 주민들이 대거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서, 2+4 회담, 화폐통합과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수상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독일 정치 체제에서 수상실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자.

[6] Schäuble, Wolfgang. 1991.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p.53.

제1장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사령탑으로서의 연방수상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체제에서 연방정부의 수상과 수상청은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수상청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전체를 통괄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자극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수상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직접적인 접촉과 신뢰관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수상청의 구성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와 국가기구의 위계질서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수상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고, 수상의 신뢰를 받고, 그의 이름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나아가 수상청 내에서 공식적인 업무 부서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상이 특별한 업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명하는 특별담당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수상청 내에 이미 정착된 구조와 위계질서를 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1982년에서 1989년 사이에 연방재무 차관이었고, 1993년과 1999년 사이에는 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한 한스 티트마이어가 199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화폐통합을 계획·준비하기 위해 콜 수상의 개인 자문이자 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이 그런 사례이다.

연방수상실의 업무는 특히 수상의 정치 스타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90년 당시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은 수상청을 통해 정부와 당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기보다는 소수의 인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논의를 선호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결정과 합의를 도출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독일의 정치학자 큐스터스는 평가한다.[7] 헬무트 콜 수상의 최측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콜 수상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발터 노이어 수상 집무실 실장, 율리안네 베버 수상 개인 사무실 책임자, 호르스트 텔칙 국장 등이 그에 속했다. 율리안네 베버는 1965년부터, 호르스트 텔칙은 1972년부터 헬무트 콜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수상과 항상 직접 대면하면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수상청의 국장들, 수상이 임명하는 담당관들과 각 부처 장관들 간에는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다. 특히 통일정책과 같이 특수한 사안의 경우 수상실과 해당 부처 간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다. 연방정부가 여러 정당 간의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처 장관이 다른 정당 소속일 경우 더욱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수상청의 에곤 바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외교정책을 실현하도록 했고, 헬무트 콜 수상은 호르스트 텔칙을 통해 자신이 구상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마치 수상청 내에 별도의 외무 장관이 존재한 것이다.

1990년 독일통일이 더 이상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서독 연방정부 내에서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다. 외무장관인 한스 디트리히 겐셔가 2+4 회담과 같은 공식적인 국제협상을 담당하

[7] Hanns Jürgen Küsters,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ter Mitwirkung des Bundesarchivs. München: Oldenbourg, 1998, p.22.

고, 수상청의 호르스트 텔칙은 콜 수상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통일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업무 분담이 물론 항상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외무부에서는 호르스트 텔칙이 아마추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통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여름 이후 동서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치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벌어지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헬무트 콜 수상은 1989년 여름 이후 주변 국가의 정상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독일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1990년 초여름에 그는 한 주에 여러 차례 미국의 부시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밖으로 절대 알리지 않았다. 그보다는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오랜 전화통화를 통한 외교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다."[8]

[8] Hanns Jürgen Küsters,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90.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ter Mitwirkung des Bundesarchivs. München: Oldenbourg, 1998, p.21.

1989년 여름-동구 유럽 주재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탈동독 주민

1989년 여름 동독을 이탈한 주민들이 동구 유럽의 서독대사관에 대거 진입한 사건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대사관 난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서독으로 가기를 희망한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도 진입했었다. 1989년 7월 4일에 동독 외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이터스 서독 연방수상청장은 서독 측이 동독 이탈을 원하는 주민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대표부에 자꾸 몰려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었다.[9] 실제로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1989년 8월 9일에는 서독 측에서 대표부 건물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10] 이와 관련해 헬무트 콜 수상은 에리히 호네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에리히 호네커가 병으로 인해 수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불가능했다. 동서독 정부는 대신 서신을 교환했다.[11]

9 내독관계-수상청장 자이터스의 동베를린 공식방문(문서번호 12).

10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들의 출입 금지-슈테른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문서번호 14).

11 대사관 난민-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15). 대사관 난민-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16)

헬무트 콜 수상은 1989년 8월 14일에 호네커에게 보낸 서신에서 최근 많은 수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의 이주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대표부에 들어왔으며, 서독 측이 그들에게 동독 당국만이 이주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상주대표부를 떠나기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이 유감이지만, 동독 내의 상황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주거지역에 머물도록 만들지 못한 동독 당국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한 비공개 비밀회의를 제안했다.[12] 이에 대해 에리히 호네커는 8월 17일에 보낸 답신을 통해 동독 주민의 이주 문제는 동독이 결정할 일이며 동독 정부는 이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독 주민이 동베를린,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에 있는 서독 대표부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서독 정부가 동독 국민의 문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정부가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동독 주민들을 조속히 내보내기를 요구하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동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동서독 관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었다. 한편 콜 수상이 제안한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호네커도 동의했다.[13]

대사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동서독 정상 간의 비공개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구권 주재 서독대표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12 대사관 난민-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15).

13 대사관 난민-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16),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 대표부에 들어가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 서독 수상 헬무트 콜에게 보낸 서한(문서번호 23).

졌다. 서독 쪽에서는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14] 이들은 모두 동독 당국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며, 베를린,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15]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헝가리였다. 헝가리가 1989년 9월에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독일통일의 물꼬를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헝가리는 분단 이후 동독 주민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즐겨 찾던 곳이었다. 1989년 여름에도 많은 동독인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헝가리로 갔다. 그들 중에 서독으로 가기를 원한 사람들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서독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나오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휴가지를 떠나 동독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16]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있는 동독 주민들 중에서 서독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헝가리로 몰려오면서 헝가리에 체류하는 동독 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파에 속하던 헝가리의 총리와 외무 장관은 서독 연방정부와 협의하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서독 연방정부는 당연히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고 외무부와 연방수상청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최고위층에서 신속하게 소통하면서 기밀을 유지할 수 있었다.

14 동독의 내부 문제에 서독의 불간섭-자이터스 수상청장과 노이바우어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간의 회담(문서번호 27).

15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18),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19),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22),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24),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에 관하여-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26).

16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에 관한 동독과 헝가리 간의 논의에 관한 정보-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문서번호 25).

1989년 8월 25일에는 헝가리의 수상과 외무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했다.[17] 서독의 외무부는 원래 이들의 서독 방문을 수상에게 알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헬무트 콜 수상은 즉시 그들을 초대했고, 겐셔 외무 장관을 배석하도록 했다. 이 사례는 수상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헬무트 콜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헝가리의 수상과 외무 장관은 이 방문에서 동독 이탈주민들을 동독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 만남에서 몇 시간 동안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을 열자는 아이디어도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헝가리 수상은 헝가리의 경제 위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현재 헝가리가 고르바초프나 코메콘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방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헬무트 콜 수상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야기하여 헝가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나아가 유럽연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헝가리가 서독,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보고되었다.[18] 이 회의에서 서독이 헝가리에게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19] 그리고 1989년 9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헝가리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국가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9월 19일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호르바트 서독 주재 헝가리 대사가 자

17 독일-폴란드 관계-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문서번호 20), 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문서번호 21).

18 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문서번호 21).

19 10억 마르크의 차관은 서독 정부가 헝가리 정부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독의 은행을 통해 차관을 제공해 주고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호르스트 텔칙 국장은 2018년 10월 4일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이터스 청장에게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20] 헝가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경을 개방할 의지가 있고, 많은 수의 동독 탈출자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을 넘어갔지만, 이 문제 때문에 헝가리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서독으로부터 일종의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특히 서방 국가들도 헝가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동-서 진영 간의 현상유지를 원하며, 헝가리의 개혁정책을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심지어 헝가리의 개혁으로 인해 동-서 간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유지가 깨지는 것과 독일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가 동독 이탈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서독이 헝가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은 물론 서독 정부가 최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98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청은, 특히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정부를 설득해서 그 지역의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을 서독으로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헝가리 정부가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직후 1989년 9월 12일에 헝가리의 네메트 수상에게 보낸 콜 수상의 서신도 서독 정부의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21] '대사관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물론 동독 당국이 여행과 이주허가 정책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 9월 동독 정부는 개혁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사관 난민'과 관련해서도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당

[20] 헝가리 국경에 있는 동독 탈출자-자이터스 수상청장과 호르바트 주독 헝가리 대사 간의 회의(문서번호 30).

[21] 헝가리를 통한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네메트 수상에게 보내는 헬무트 콜 수상의 전문(문서번호 28).

국에 이주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22] 그런 동독 당국이 10월 1일에 동독 이탈주민들을 특별열차에 태워서 동독 영토를 지나서 합법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해 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연방수상청은 동독 당국을 설득하는 한편,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대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볼 수 있다.[23] 그런 배경에는 서독의 경제능력, 특히 동독을 비롯해 동구권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4]

22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수상실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문서번호 22).

23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이 동독 이탈주민들과 관련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에게 보낸 서한(문서번호 32), 서독 수상 헬무트 콜과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아다메쉬 간의 전화통화(문서번호 34).

24 연방의회 발언: 동독 탈출자(문서번호 29).

제3장

1989년 가을/겨울-동독의 변혁과 2+4 회담

제1절 호네커에서 크렌츠로 동독 지도부의 교체

1989년 여름 동독 이탈주민 문제를 통해 동독 체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 분명해졌지만 그로 인해 동독이 붕괴되거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의 국경 개방 이후 특히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동독 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11월 9일의 장벽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독 연방수상청은 약화된 동독 지도부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독 지도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라하의 서독대사관을 비롯해 동구권 국가 주재 서독대사관에 동독 이탈주민들이 진입하는 것을 계속 허용했다. 비좁은 대사관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들어가면서 전염병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었다. 서독이 대사관을 폐쇄하거나 또는 동독 당국이 신속하게 이주를 허용하고 여행을 자유화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동독 이탈주민들이 서독대사관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동독의 비인도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까지 동독 당국에게 신속한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뿐만 아

니라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으로부터까지 '대사관 난민' 문제의 신속한 해결 압력을 받던 동독 지도부의 변화에 대해 연방수상청은 1989년 가을까지도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6월 23일에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장이 주관한 독일정책에 관한 회의의 내용을 보면 동독과의 교류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25]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동독 당국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통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지만,[26] 7월 10일에 동베를린을 방문한 자이터스 수상청장은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27] 이 방문 중에 그는 동독에 대해 서독이 지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동시에 동독이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의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서독 간의 국경에서 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 또는 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동시에 동독 주민들이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8월 7일에 연방수상청의 슈탑 국장은 동독 언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지속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심리적 위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을 통해 대량으로 탈출해 오고 있는 동독 주민들을 서독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동독 주민들 사이에 언젠가는 서독이 국경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가야만 한다는

25 자이터스 연방정부 수상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논의(문서번호 10).

26 베어틀레 상주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 내부 상황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11).

27 내독관계-수상청장 자이터스의 동베를린 공식 방문(문서번호 12).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었다.[28]

그러나 9월 22일에도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는 서독이 동독의 내부 상황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작다고 보고했다.[29] 특히 호네커가 지도자로 남아 있는 한 동독에서 개혁의 전망은 밝지 못하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89년 6월 중국 천안문사건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반응은 만일 동독의 반동주의자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평가했다. 1989년 9월 말까지도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18일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호네커를 비롯한 보수적인 원로 정치국원 균터 미탁과 요아힘 헤르만 등이 퇴진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개혁을 추구하던 에곤 크렌츠가 당서기장으로 선출되면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 연방수상청 내부에서는 크렌츠가 얼마만큼 동독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가 사통당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30]

10월 26일에 작성된 서독 연방수상청의 보고서를 보면 사통당의 지도부가 교체된 후 헬무트 콜 수상은 에곤 크렌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하면서, 동서독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쪽 국가 정상이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서독의 연방수상청장과 동독의 외무 장관도 직접 교류하기로 합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전화통화에서 에곤 크렌츠는 동독 당국이 여행 자유화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28 동독의 이주정책-슈탑 국장이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13).

29 동독의 위기-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서(문서번호 31).

30 동독 지도부 교체-뒤스베르크 국장이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37).

는 것도 언급했다.[31] 그것은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는 자리에서 귄터 샤보브스키 동독 정부 대변인이 여행 자유화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을 '지금 당장'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날 저녁에 장벽의 붕괴를 가져왔던 이 조치가 사실은 동독 내부에서 호네커가 사임하고 크렌츠가 지도부를 이끌게 된 후 동독 지도부가 며칠 간 준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전화통화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두 사람 간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시기에 서독 수상청에는 동독 내부의 분위기가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정보국의 보고가 전달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대규모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 사람들이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고, 무력한 지도부에 분노하며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다. 노이에스 포럼과 같은 새로운 단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시민그룹들이 자신들은 동독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했다.[32] 이 보고서가 제출되었던 11월 6일 연방수상청에서는 동독의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독의 입장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동독의 새로운 지도부가 본질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서독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서독이 동독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동독에게 서독이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협력 자체가 동독 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오히려 그를 통해 개혁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조건부로 동독을 도와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 조건은 동독이 교역

31 서독 헬무트 콜 수상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에곤 크렌츠 간의 전화통화(문서번호 38).

32 연방정부-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융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문서번호 40).

을 방해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진보적 합작기업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서독은 판매 자문, 경영훈련 외에 연락소 설치와 같이 기존의 교역정책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동독에 전하기로 하였다.[33] 그러나 11월 9일 이후 동독의 변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11월 6일의 결정은 의미를 상실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후 콜 수상은 에곤 크렌츠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만간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34] 그 이전에 수상청장 자이터스가 동베를린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화통화에서 크렌츠가 지속적으로 베를린을 동독의 수도라고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이 그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독 정부의 현안에는 통일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는 크렌츠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서독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그가 이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11월 11일 현재는 통일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이터스 수상청장이 조만간 동독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2절 동독의 개혁과 선거

동독 사통당 지도부는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를 정부 수반으로 선출했고, 모드로우는 11월 17일의 정부 성명을 통해 동독과 서독이 '계약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계약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취임 이후 동독 체제의 본질적인 개혁을 실현하려는 한스 모드로우 총리가 가장

33 독일정책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책회의(문서번호 41).

34 베를린 장벽 개방에 관한 헬무트 콜 수상과 에곤 크렌츠 간의 전화통화(문서번호 45).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서독으로부터 개혁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11월 20일에 동베를린을 방문한 루돌프 자이터스 서독 연방수상청장에게 동독의 정치개혁이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1990년 초까지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서독 정부의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양국 간의 합작의 형태로 서독의 자본투자에 관한 규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이터스 수상청장은 콜 수상은 서독 국민이 수용한다면 동독의 개혁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35] 헬무트 콜 수상이 11월 28일에 동독의 개혁과 관련해 발표한 독일정책 10개 조항 프로그램을 보면 동독의 개혁을 지원한다는 서독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들린다.[36] 그러나 1989년 12월 19일에 헬무트 콜이 동독을 공식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동독의 개혁보다는 독일통일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2월 21일에 연방회의에서 콜 수상이 행한 연설을 보면 그가 이미 그때 한스 모드로우 총리를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설에서 그는 11월 28일에 발표한 '10개 조항-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일정책과 관련되어 '인위적으로 시간적인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과 서독이 연방제적 구조를 만드는 문제도 동독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동독 정부를 구성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37]

헬무트 콜 수상의 드레스덴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정부는 당시 동독의 사회적 분위기가 흥분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여론을 진정시켜 주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12월 20일

35 동독의 에곤 크렌츠, 한스 모드로우와 서독의 자이터스 수상청장 간에 열린 동베를린 회담(문서번호 50).

36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정책에 관한 연설(문서번호 51).

37 독일정책에 대한 연방회의 의결-논의(문서번호 64).

에 동독의 드레스덴시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동독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후에 서독과 동독의 장래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는 동독의 야당 및 반체제 그룹의 대표자들이 이런 논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 개혁정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38] 드레스덴의 모임에서 콜 수상은 서독의 기민당이 동독의 어떤 그룹과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990년 1월 또는 2월에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동독의 야당과 반체제 그룹이 원할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조직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콘라드-아데나워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이미 1989년 말에 콜 수상이 기민당의 정치인으로 동독 내에서 기민당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와 함께 독일통일이 선거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것이 독일통일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아무도 주장하지 못한다. 특히 콜 수상이 1990년 초부터 3월 18일에 치러질 동독의 자유총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그룹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전략 위에서 내린 결정들이 통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아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3절 2+4 회담과 수상청, 외무부 간의 역할 분담

독일통일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1989년 11월과 12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변화를 기대하는 동독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사회변혁의 역동성을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서독의 정치와 국제정치가 동독의 정치 체제의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의 상황을 통일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시키기 위

[38] 헬무트 콜 수상과 동독 야당 및 반체제 대표자 간의 만남-드레스덴(문서번호 63).

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었다. 서독의 풍요로운 경제가 동독 국민들에게 심어준 환상이 통일과정에서 서독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이 동서독 양측의 합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여야만 했다. 연방수상청, 특히 헬무트 콜 수상의 역할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에서도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합의를 구하는 헬무트 콜 수상의 정치방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 이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 이들이 독일을 분단 점령한 후, 1949년에 동독과 서독이 건국되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 두 국가에게 완전한 주권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통일과 같이 전체 독일과 관련된 문제는 동독과 서독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2+4 회담의 틀에서 승전연합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했다.[39]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정책적인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990년 2월 2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간의 회담을 통해서였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처음으로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언급했을 때에는 2+4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4대 승전연합국들 간의 회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은 2월 13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양쪽 독일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4대 승전연합국들만 독일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2+4 회담의 형식은 선호한다

[39] 2+4 회담은 독일통일 총서 19권 외교 분야 II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고 밝혔다.[40] 이 시기에 미국의 베이커 국무 장관도 콜 수상에게 보낸 서신에서 일차적으로 독일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통일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인들이 내적 문제들을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과 별개로,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적 문제와 관련된 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었다. 이 문제는 4대 승전연합국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2+4 회담의 형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41] 이어 2월 24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대통령 부시와 만난 자리에서 헬무트 콜 수상은 소련 쪽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독일통일을 위해 국제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전쟁을 선포했던 모든 국가들이 협정 상대국이 되어야 하고, 그 수가 많게는 110개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42] 그런 이유 때문에 독일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독은 이미 충분한 전후 배상금도 지불하였다고 못박았다. 2+4 회담 협상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나아가 독일문제를 1990년 11월 파리에서 열릴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서 2+4 회담 협상을 연내로 종결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서독의 이런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요청했다.

1990년 2월 14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외무장관회의 중에 2+4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된 후, 199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4차례 개최되었다. 서독 측에서는 연방외무부가 이 회담의 실

40 연방 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전화통화(문서번호 99), 본에서 열린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 대표단의 회의(문서번호 103).

41 독일통일에 대한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교환-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의 연방 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문서번호 97).

42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회담(문서번호 108),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문서번호 106).

무를 담당했다.[43] 그러나 2+4 회담의 진행과정을 보면, 서독의 연방수상청과 외무부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분단 시기 동안 신동방정책을 바탕으로 동서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양면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던 경험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서방세계와의 동맹체제를 강화한 후에 1970년대 초부터 동서진영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한 서독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부상했었다. 이러한 신뢰가 독일통일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1990년 2월 이후 서독 정부의 외교정책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수상실과 외무부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헬무트 콜 수상과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서독이 미국과 소련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헬무트 콜 수상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얻었고, 겐셔 외무 장관은 소련의 입장을 배려하는 입장을 견지해서 소련 정부의 신뢰를 얻었다. 1950년대와 1970년대 서독 정부의 외교정책 경험이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에서 동시에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헬무트 콜 수상이 이끄는 연방수상청과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 장관이 이끄는 외무부의 협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해야 한다.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문제,[44] 소련이 제시했던 통일독일의 중립국화 방안을 겐셔 외무 장관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반면, 헬무트 콜 수상이 소련 쪽의 제안을 거부했었다. 그로 인해 두 사람 간에, 그리고 연방수상청과 연방

[43] 독일통일 총서 19권 외교 분야 II 참조.

[44]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을 위한 보고서(문서번호 110),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서 초안(문서번호 123).

외무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다.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독일통일 문제를 둘러싼 외교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 상대국에게 서독 정부가 자신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서독의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헬무트 콜 수상의 경우 확고한 친미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것이 미국이 신속한 독일통일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편,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 장관이 소련, 특히 소련의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 간의 신뢰 관계가 소련이 신속한 독일통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콜 수상과 겐셔 외무 장관 모두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 협상과정에서 기민당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서독의 연립정부가 갖는 특징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이었다.

제4장

화폐통합을 위한 구상

독일통일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온 주제는 무엇보다 화폐통합 문제였다. 1:1의 비율로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를 교환해 주기로 한 화폐통합으로 인해 동독 경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화폐통합과 화폐교환 비율 자체보다는 주변적인 여건들이 잘못 조성되었던 것이 1990년 여름, 즉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 경제의 붕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화폐통합'을 주제로 다룬 독일통일 총서 15권에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을 위한 결정 과정에서 연방수상청의 역할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분단 시기 서독에서 동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정치 체제 분석에 집중되었고, 동독 경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서베를린에 소재한 '독일경제연구소(DIW-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 und Konjunkturforschung)만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동독 경제를 연구했었다.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이 드러나면서, 독일경제연구소(DIW)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동독 경제에 대한 연구조차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독의 생산성과 경제구조, 산업생산기지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변혁기에 경제개혁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높

은 경제적 성과를 기대했었다고 당시 동독의 경제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상한다.

19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 이후 동독에 새로운 개혁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경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 1월 23일에 개최되었던 동서독 경제위원회의 회의의 보고서에서 연방수상청의 요하네스 루데비히 경제 국장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동독 정부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드로우 정부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해 훨씬 더 신속하게 동독 경제를 활성화해서 동독 주민들에게 희망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 같다."[45] 1989년 말, 1990년 초, 독일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서독 연방수상청은 동독 경제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9년 말에는 특히 서독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독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46]

1990년 1월 9일 연방수상청장이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동독의 화폐와 경제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47] 이 회의를 통해 동독 경제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상이한지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45 연방수상청 요하네스 루데비히 경제 국장이 동서독 경제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문서(문서번호 78).

46 동서독 간의 경제협력(문서번호 49), 동독의 에곤 크렌츠, 한스 모드로우와 서독의 자이터스 수상청장 간에 열린 동베를린 회담(문서번호 50), 서독 수상의 동독 방문을 위한 준비/동독을 위한 경제지원(문서번호 57), 동독을 위한 서독의 재정지원 조치(문서번호 60).

47 이 시기에 동독에서는 "DM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DM에게로 간다"라는 슬로건이 나왔다. 실제로 하루에 약 5,000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특히 의사, 기술자와 같은 전문인력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갔다. 동독 주민들이 대량으로 이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독이 동독에서 오는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실업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고 모드로우 정부의 경제 장관 크리스타 루프트는 설명했다. 그녀의 제안에 대해 쇼이블레 서독 연방내무 장관은 논리적으로는 그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크리스타 루프트 인터뷰 2012년, 2014년).

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났다.[48] 연방은행의 대표는 동독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런 조치가 가져올 결정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본 식량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면 물가가 인상될 것이고, 그것은 임금과 연금의 상승을 통해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현재 동독 체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동독 시장에서 5가지의 상이한 화폐교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화기금의 경우 1:1과 1:5, 민간 여행자의 경우 1:4.4, 그 외에 다른 경로로 자유로운 화폐교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이 외국에 지고 있는 순 채무는 100억 달러이며, 서독에도 50억 DM의 채무를 지고 있다. 동독이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연방은행의 일원으로 동독 정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는 공식 화폐교환율을 1:5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는 동독이 이런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부언했다. 그 외에는 동독의 현재 상황에서 화폐와 신용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했다.

동독 경제의 개혁을 위해 서독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이 동독에게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1990년 1월 26일 동베를린을 방문한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독 중앙원탁회의 대표들은 서독에서 흘러들어오는 돈이 동독의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집세를 비롯한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48]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문서번호 69).

고 있다고 설명했다.[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런 지원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항상 콜 수상과 연방수상청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수상과 수상청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규합해서,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제, 사회 및 화폐통합을 위한 구상이었다.

1990년 1월 25일에 연방수상청장의 동베를린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보고서를 보면 이 회의에서 화폐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화폐통합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다.[50] 2월 2일에는 연방수상청의 미하엘 메르테스 실장이 경제통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했다. 그는 정치적 통일을 신속하게 실현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제적 통일로 가는 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로써, 우선 서독의 마르크(DM)를 공동화폐로 도입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4일 후에 연방정부 내각은 화폐 및 경제공동체에 관해 동독과 즉각적으로 협상에 임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51] 2월 9일에는 연방재무 차관인 호스트 쾰러가 경제·화폐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연방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냈다.[52] 이 초안에서 쾰러 차관은 화폐와 경제 통합을 통해 일정한 시점에 동독의 마르크가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되며, 그때까지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종결해야

49 동독 정치발전 과정에 반체제 그룹과 야당이 참여하는 문제-동베를린에서 열린 자이터스 수상청장과 원탁회의 대표자들 간의 회의(문서번호 79). 이 모임에서 원탁회의 대표들은 나아가 서독의 정당들이 벌써부터 동독의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0 서독 연방수상청 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회의(문서번호 77).

51 서독 연방수상청 네링 국장의 메모-동독과의 경제 및 화폐 통합(WWU)에 관한 네링 국장의 소견(문서번호 91).

52 통합된 경제와 공동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문서번호 94).

만 한다고 했다. 거기에는 동독에 2단계의 은행 체계(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가 도입되고,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의가 한스 모드로우 총리가 서독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서독 정부가 동독의 개혁 정부를 진지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53] 경제 및 화폐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경제질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2월 초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청, 재무부, 경제부, 연방은행, 그 외 다른 기관들은 2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사절단이 서독을 방문할 때 가능하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했다. 이를 위한 초안은 이미 1월에 재무부에서 작성되어서[54] 장관 보고를 거쳐 수상에게 제출되었다.

1990년 2월 3일에 다보스 회의에서 콜 수상을 만난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동독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서독의 지원이 있어야만 3월과 4월까지 버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콜 수상이 화폐문제를 언급하자 모드로우 총리는 서독의 마르크를 유일 통화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럴 경우에 동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서독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대해 콜 수상은 소그룹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동독 쪽에서 48시간 이내에 이 소그룹에 참가할 적절한 인물을 두세 명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55] 콜 수상은 2월 6일에 연립정부에 참여한 기사당과 자민당의 당

[53] 서독의 언론들은 이미 1989년 11월부터 동독이 파산한 국가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독일통일 총서 22권, 언론 분야 참조.

[54] 화폐통합으로 가기 위한 10개 조항(문서번호 70).

[55] 콜 수상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수상 간의 회담-동독의 현황(문서번호 85).

수에게 이러한 계획을 먼저 알렸다. 언론에는 그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경제 화폐공동체를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월 13일 서독을 방문한 한스 모드로우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서독 간에 '경제 및 화폐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2월 20일에 그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56] 3월 14일에 연방재무부의 차관 호스트 퀼러는 자이터스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전문가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동서독 양측의 전문가들이 사회공동체를 포함한 경제화폐공동체의 성립이 통일로 가는 결정적인 단계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57] 3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 이전에 이미 동서독 간에 경제화폐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선거를 통해 통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동독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58] 화폐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논의가 시작되던 1990년 2월 9일에 이미 서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부 경제전문자문위원회까지도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 주민이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었다.[59]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화폐통합이 경제개혁 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동독에 서독의 도이치 마르크

56 본에서 열린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 대표단의 회의(문서번호 103).

57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보내는 퀼러 차관의 서한-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준비(문서번호 126).

58 이에 관한 논란은 독일통일총서 15권 '화폐통합 분야' 참조.

59 콜 총리에게 보내는 거시경제발전 평가 전문위원회 슈나이더(Schneider) 위원장의 공문(문서번호 95).

를 도입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 주민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당시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였고,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 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재정균형배분 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되어서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있는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며, 동독 주민들이 화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 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지만, 이 문제는 서독 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직언했다.

헬무트 콜 수상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제전문자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읽고 난 후 바이겔 재무 장관이 자문위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답변해 달라고 문서 여백에 직접 기록해 두었다. 화폐통합을 실현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화폐교환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3월 27일에는 연방정부 노동사회 장관 노버트 블륌이 콜 수상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화폐교환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60] 임금을 2:1로 교환한다면 동독 주민의 절대다수가 사회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중앙은행자문위는 3월 30일에 동독 2마르크를 서독 1마르크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면서, 일반 주민의 예금은 1일당 2천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해 주고, 임금과 연금, 장학금 또한 1:1의 비율로 교환된다고 발표했다. 화폐를 원칙적으로 1:1로 교환할 경우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국제 경쟁 속에서 도태될 것이며, 그로 인해 동독 경제는 비용적 문제나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화폐교환 비율의 기준을 2:1로 결정한 이유였다.[61]

1990년 당시 연방정부와 콜 수상은 동독 경제의 발전상황과 화폐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와 관련된 정보가 수상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수상청장에게라도 전달되었다.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은 충실하게 그런 정보를 수상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연방주들과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립정부로 구성된 연방정부 내에서도 동독과의 화폐공동체 구성과 관련해 수많은 회의가 열렸다. 콜 수상과 연방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화폐통합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 헬무트 콜 수상과 연방정부는 화폐통합을 신속하게 실현한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후유증은 독일통일이 실현된 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전문가들의 우려를 넘어선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연방수상과 동독 주민의 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콜 수상의 단호한 의지가 없었다면 1:1 화폐교환율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60 콜 수상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화폐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131).

61 콜 수상에게 보내는 푈 연방은행 총재의 서한-중앙은행 자문위의 결정(문서번호 132).

제5장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1990년 10월 3일에 독일통일이 실현되기까지 몇 단계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초 소련 지도부가 독일통일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1990년 2월 초에 서독의 콜 수상이 신속하게 통일을 실현하기로 정책을 결정하고, 2+4 회담을 통해 통일을 위한 외교적인 틀을 만들기로 한 것, 화폐통합 결정, 3월 18일의 동독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 5월 11일의 화폐통합조약 체결, 7월에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에 동의한 것, 8월 23일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 8월 31일 통일조약의 서명, 9월 12일 2+4 회담의 서명 등이 모두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환점마다 독일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조약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의 초기에는 동독의 드 메지에르 총리와 서독의 쇼이블레 연방내무 장관이 양측 협상단을 이끌었다.[62] 서독 쪽에서는 헬무트 콜 수상은 본인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방수상청은 당연히 협

[62]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2권 '행정통합 분야' 참조

상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서독의 협상단은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경우 수상과 상의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런 협상방식을 배운 동독 정부도 드 메지에르 총리 대신 귄터 크라우제를 협상단의 대표로 임명했다. 그 후 양측의 협상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동독의 총리실과 서독의 연방수상청이 중요한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담당했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난제가 된 것은 낙태법 문제였다.[63] 그것은 동서독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독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콜 수상은 서독 의회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규정을 통일조약의 틀에서 결정하지 않고 과도규정을 두고 1992년 말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정치적 필요성을 인지했고, 동독 쪽에서도 그 방안을 수용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었다.

63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낙태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8권 '여성 분야' 참조.

나가며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동서독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독일통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었다.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과 수상청은 이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는 신동방정책의 설계사로 알려진 에곤 바가 말한 것처럼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주인공이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연방수상청은 수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2+4 회담, 통일조약 회담, 화폐통합 회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안마다 연방정부 내에 해당 부처들과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도 수상청의 역할이었다.

독일통일 총서 29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1970년 8월 12일 체결된 독소조약에 관한 외무 장관 발터 쉘의 서신	1970년 8월 12일	외무 장관 발터 쉘	Diemer, Gebhard / Ku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16/217
2	서독과 소련 간의 조약	1970년 8월 12일	독일 연방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외무 장관 쉘, 소련 총리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외무 장관 그로미코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53–355
3	서독과 폴란드 간의 국교 정상화 조약	1970년 12월 7일	독일 연방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외무 장관 쉘, 폴란드 취란키에비츠 총리, 폴란드 예드리쇼브스키 외무 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61–368
4	'베를린에 대한 승전연합국 4개국의 협정'을 둘러싼 독일 연방의회에서의 논쟁	1972년 6월 7일	연방정부 수상 브란트, 기독교민주당 당 겸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 교섭 단체 의장 겸 독일 연방의회 의원 바젤, 자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보름(동독 슈타지 비공식 요원), 사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외교위원회 의장 대리 마틱, 기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그라들	Deutscher Bundestag, 6. Wahlperiode, 188. Sitzung, Plenarprotokoll, S. 10966C–10975A
5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에 관한 에곤 바의 서신	1972년 12월 21일	수상실 정무 장관 에곤 바, 동독 내각위원회 차관 콜	Diemer, Gebhard / Ku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20
6	동독과 서독 간 관계의 기초에 대한 조약(동 · 서독 기본조약)	1972년 12월 21일	동독 외무부 서독 문제 담당 차관 콜 박사, 연방수상 직속 연방정부 특임 장관 에곤 바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3, Nr. 25, 09.06.1973, S. 421–429
7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	1973년 12월 11일	독일 연방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외무 장관 쉘,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쉬트로우갈, 체코슬로바키아 외무 장관 흐뇨우펙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4, Nr. 40, 16.07.1974, S. 990–99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	1987년 9월 10일	연방수상 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호네커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83, S. 705–708
9	서독과 소련의 공동 성명	1989년 6월 13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독 정부 및 소련 정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0 E
10	자이터스 연방정부 수상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논의	1989년 6월 23일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독성 장관 빌름스, 외무 차관 쥬드호프, 경제 차관 폰 뷰르젠, 재무 차관 클렘, 교통 차관 크니털,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외 다수 차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9 S. 311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11	베어틀레 상주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 내부 상황에 관한 보고서	1989년 6월 27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288/124, 11 35005 Pa4 Band 11
12	내독관계–수상청장 자이터스의 동베를린 공식 방문	1989년 7월 10일	수상청장 자이터스, 동독 외무 장관 피셔, 동독 사통당 서기장 호네커	Bundesarchiv, BArch/B 136/ 21328, 221 – 35016 Ve 40 NA 1
13	동독의 이주정책–슈탑 국장이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7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7/ 15797
14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들의 출입 금지–슈테른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8월 8일	연방수상청, 독일정책 실무팀장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 국장, 자이터스 수상청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859, 222 – 83105 Fa 3 NA 2 Band 4
15	대사관 난민–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4일	연방수상청, 콜 연방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	Bundesarchiv, BArch/B 288/ 355, 11 – 35016 Ve 33 NA 4
16	대사관 난민–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7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d. 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	대사관 난민–수상청장 자이터스와 동독 외무 차관 크롤리코프스키 간의 회의	1989년 8월 21일	연방수상청,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베어틀레 차관, 뒤스베르크 국장, 크롤리코프스키 동독 제1 외무 차관, 니어 동독 외무 차관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18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3일	연방수상청, 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 자이터스 수상청장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19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4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20	독일–폴란드 관계–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연방수상청, 겐셔 외무 장관, 헬무트 콜 연방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혼 헝가리 외무 장관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U1 Un 25 Band 1
21	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연방수상청 하르트만 국장, 겐셔 외무 장관, 헬무트 콜 연방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혼 헝가리 외무 장관	Bundesarchiv, BArch/BKm 21 – 30100 (56) Ge 28 (VS) Band 78, Bl. 296/1–296/5
22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2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23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 대표부에 들어가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 서독 수상 헬무트 콜에게 보낸 서한	1989년 8월 30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에리히 호네커, 서독 수상 헬무트 콜, 서독 대표	Bundesarchiv, DY 30 IV 212.039, 304, Blatt 115–117
24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31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5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에 관한 동독과 헝가리 간의 논의에 관한 정보–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1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26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에 관하여–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9월 6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27	동독의 내부문제에 서독의 불간섭–자이터스 수상청장과 노이바우어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간의 회담	1989년 9월 8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노이바우어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28	헝가리를 통한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네메트 수상에게 보내는 헬무트 콜 수상의 전문	1989년 9월 12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Bundesarchiv, BArch/B 136/ 30462, 21 – 30130 Band 3
29	연방의회 발언: 동독 탈출자	1989년 9월 14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장 리타 쥬스무트,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58, S. 12035–12047
30	헝가리 국경에 있는 동독 탈출자–자이터스 수상청장과 호르바트 주독 헝가리 대사 간의 회의	1989년 9월 1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주독 헝가리 대사 호르바트	Bundesarchiv, BArch/BK, 21 – 30100 (56) Ge 28 (VS) Band 79, Bl. 30–34
31	동독의 위기–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22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288/ 116, 11
32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이 동독 이탈주민들과 관련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에게 보낸 서한	1989년 9월 29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 야케쉬,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Politisches Archiv, Auswärtiges Amt, 513, B 85 Nr. 2346 E
33	폴란드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베어틀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10월 2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4	서독 수상 헬무트 콜과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아다메쉬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3일	발터 노이어 수상실 실장, 헬무트 콜 연방수상, 아다메쉬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Bundesarchiv, Abteilung B (Bundesrepublik Deutschland), B 136/21860, 222 83105 Fa 3 NA 2 Ed. 6.
35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콜 수상과 아다메쉬 총리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4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아다메쉬 총리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6
36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수상청장 자이터스와 뒤스베르크 국장의 보고서	1989년 10월 6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뒤스베르크,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329, 221 – 35016 Ve 40 NA 1
37	동독 지도부 교체–뒤스베르크 국장이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10월 1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뒤스베르크,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 136/20295, 221 – 35002 Pe 3 Band 5
38	서독 헬무트 콜 수상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에곤 크렌츠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26일	헬무트 콜 서독 수상, 에곤 크렌츠 사통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	Bundesarchiv, Abteilung B (Bundesrepublik Deutschland), DY 30, IV2/2 039, 328, Blatt 28–32
39	프라하에 있는 동독이탈 주민 문제 –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텔레가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	1989년 11월 3일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1861, 222 – 83105 Fa 3 NA 2, Band 7
40	연방정부–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융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	1989년 11월 3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융,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602 – 35001 (78) De 2/64/89, Band 29, Bl. 61–63
41	독일정책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책회의	1989년 11월 6일	연방정부 내독성 장관 빌름스, 차관 프리스니츠, 외무 차관 쥬드호프, 경제 차관 뷰르젠, 재무 차관 클렘, 교통 차관 크니텔, 체신 차관 플로리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베어틀레,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Bundesarchiv, BArch/B 136/20169, 221 – 14223 Sta 8 Band 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2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1989년 11월 폴란드 공식 방문	1990년 11월 10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연방외무 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청소년 · 가족 · 여성 · 보건부 장관 우르줄라 레어, 연방식량 · 농림부 장관 아그나츠 키흘레, 환경 · 자연보호 · 원자력안전부 장관 클라우스 퇩퍼, 연방특임관 겸 연방공보부 장관 한스 클라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레흐 바웬사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0.11.1989, Nr. 262/45 D, S. 1–2
43	연방정부 재무 장관 바이겔이 콜 수상에게 보낸 동독을 위한 지원조치에 관한 보고서	1989년 11월 10일	연방정부 재무 장관 바이겔	Bundesarchiv, BArch/B 136/26444, 422 – 52602 Bu 48 Band 2
44	베를린 장벽 개방에 관해 고르바초프가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1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헬무트 콜 서독 연방정부 수상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BA, DY 30/IV 2/2.039/319, Blatt 15 f.
45	베를린 장벽 개방에 관한 헬무트 콜 수상과 에곤 크렌츠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1월 11일	사통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곤 크렌츠, 연방수상 헬무트 콜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BA, DY 30/IV 2/2.039/328, Blatt 55–61
46	동독의 변화에 관한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1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헬무트 콜 서독 연방정부 수상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BA, DY 30/IV 2/2.039/3198, Blatt 17–19
47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온 방문 여행자들을 위한 지출-연방재무 장관이 연방회의에 제출한 문서	1989년 11월 16일	연방회의 의장 발터 몸퍼, 연방재무부 차관 카스텐스	Bundesrat, Drucksache 647/89
48	독일문제 및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3개 서방 전승국과 소련의 입장	1989년 11월 17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30915, 211 – 68000 Gi 46, Anlage B (212-35400 De 29 Band 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9	동서독 간의 경제협력	1989년 11월 19일	연방경제부	Bundesarchiv, BArch/B 135/21329, 221 – 35016 Ve 40 NA. 1, Anlage A
50	동독의 에곤 크렌츠, 한스 모드로우와 서독의 자이터스 수상청장 간에 열린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1월 22일	연방수상청, 자이터스 연방수상청 청장,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에곤 크렌츠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Bundesarchiv, BArch/B136/ 21329, 211 – 35016 Ve 40 NA 1
51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연방수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9.11.1989
52	10개항 계획에 대한 외국의 반응–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89년 11월 30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12 – 34500 De 39 Band 1
53	베를린 문제에 대한 헬무트 콜 수상과 발터 몸퍼 서베를린 시장 간의 회담	1989년 12월 1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 연방정부 및 베를린 시정부의 부처 장관 다수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03 S. 578f (zit.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54	모스크바에서의 연방외무 장관 겐셔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대화–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소련 측의 비판	1989년 12월 5일	연방외무 장관 겐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개인 자문역 사글라딘,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55	연방외무 장관 겐셔와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의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대화	1989년 12월 5일	연방외무 장관 겐셔,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6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고려 사항들–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89년 12월 6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21 – 3500 (28) De 26 Band 1, Bl. 1/0 und 2–5
57	서독 수상의 동독 방문을 위한 준비/동독을 위한 경제 지원	1989년 12월 7일	연방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Bundesarchiv, BArch/BKAmt/213 – 30104 De 23
58	콜 수상과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의 서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Bundesarchiv, BArch/BK, 212 – 30105 A5 Am 7
59	연방장관 자이터스와 서방 전승 3개국 대사들의 본(Bonn) 회담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터스, 미국 대사 월터스,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 영국 대사 몰러비, 외무부 차관 쥬드호프	Bundesarchiv, BArch/B 136/ 20241, 221 – 34900 Spr 2 Band 1
60	동독을 위한 서독의 재정지원 조치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Bundesarchiv, BArch/BKAmt/213 – 30104 De 23
61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독일정책의 목표	1989년 12월 14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2 Band 1
62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콜 수상에 대한 서신–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안	1989년 12월 18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2 Band 1
63	헬무트 콜 수상과 동독 야당 및 반체제 대표자 간의 만남–드레스덴	1989년 12월 20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외교안보국장 호르스트 텔칙, 연방내독성 장관 빌름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블륌, 동독 반체제 및 야당 대표들(독일 기사당, 민주주의 지금, 노이에스 포럼, 20인 그룹)	Bundesarchiv, BArch/B 136/ 20578, 221 – 35014 Ge 31 Band 2
64	독일정책에 대한 연방회의 의결–논의	1989년 12월 21일	연방회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rat Plenarprotokoll 608/1989
65	서독과 서베를린 거주 주민의 동독 여행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내각위원회	Gesetzblatt der DDR, 1989, Teil I, Nr. 26, S. 271–27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6	이스라엘 샤미르 수상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과 관련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답신–텔아비브 주재 서독대사관 전문	1989년 12월 21일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샤미르, 연방수상 헬무트 콜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67	동독 주민들의 여론–콜 수상에게 제출된 보고서	날짜 미상–1989년~1990년 겨울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Band 1
68	서독과 동독 간의 '협력과 선린 관계를 위한 조약'–수상청의 설명–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1월 4일	서독 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서독 연방 외무부 21국실 회익 실장, 내무부 국장 쉬퍼, 내독부 소속 만케, 법무부 국장 하이데,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0 E
69	동독의 화폐와 경제 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 차관 폰 뷰어젠, 재무 차관 쾰러, 노동사회부 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뒤스베르크 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쾰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70	화폐통합으로 가기 위한 10개 조항	1990년 1월 12일	연방재무부 내독관계 과장 틸로 자라친	Waigel, Theo/Schell, Manfred. 1994.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zum Kaukasus, S. 174–183
71	동독 주민의 이주에 관한 정보수집–서독 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1월 12일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622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2	독일문제와 유럽의 책임–콜 수상의 파리 연설	1990년 1월 17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서독, 동독, 중 · 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바르샤바조약기구,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헬싱키 회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Kohl, Helmut. 1990. Reden un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Bon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167–184.
73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를 위한 협약–동독 정부의 초안	1990년 1월 17일	동독 내각위원회, 연방정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45A, S. 713–716.
74	양독 간 영사업무를 개시할 경우의 국적법적 측면–수상청에 제출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1월 17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소속 브란덴부르크, 수상청, 내독부,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9 E
75	동서독 간의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연방내무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39, S. 695.
76	서독 연방의회 독일정책 토론	1990년 1월 18일	연방의회,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8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7	서독 연방수상청 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회의	1990년 1월 24일	자이터스 수상청장, 빌름스 내무 장관, 프레스니츠 내무 차관, 쥬드호프 외무 차관, 폰 뷰어젠 경제 차관, 클렘 재무 차관, 크니텔 교통부 차관, 포어스턴 플로리안 농림식품영양부 차관,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 연방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42 S. 701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78	연방수상청 요하네스 루데비히 경제국장이 동서독 경제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문서	1990년 1월 24일	연방수상청 경제국장 요하네스 루데비히,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경제위원회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43 S. 703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79	동독 정치발전 과정에 반체제 그룹과 야당이 참여하는 문제–동베를린에서 열린 자이터스 수상청장과 원탁회의 대표자들 간의 회의	1990년 1월 26일	연방수상청 자이터스 청장, 동독 원탁회의 대표	Bundesarchiv, BArch/B 288/ 116, 11 – 35004 La 4 Band 8
80	독–소 간 관계의 현황 및 전망–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1월 2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S 25 So 28 Band 4
81	전 유럽적 틀에서 본 독일정책–하르트만 국장의 기록	1990년 1월 2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1 (aus digitaler Editio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2	마조비에츠키 총리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1월 30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총리 마조비에츠키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4, S. 754f (aus digitaler Edition)
83	한스 모드로우 총리+S492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 (Herausgegeben von der Hauptabteilung Presse des Ministeriums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84	독일 경제 통일을 위한 조치–기본 구상	1990년 2월 2일	미하엘 메르테스 실장, 노베르트 프릴 52 그룹 팀장, 클라우스 고토 51그룹 팀장, 요하네스 루데비히 국장, 지그하르트 네링 실장, 텔칙 실장, 아커만 실장, 한츠 마르틴 52그룹 담당자, 헬무트 콜 연방총리, 연방은행 대표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7B, S. 752–753.
85	콜 수상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간의 회담–동독의 현황	1990년 2월 3일	헬무트 콜 수상,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8 S. 753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6	지역 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위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협의	1990년 2월 5일	동독 정부, 서독 정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00A, 200B (Anlage), 903–905.
87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1990년 2월 5일	서독 재무부(주도), 동독 재무부	Küsters, Hanns Jürgen und Daniel Hofman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1989/90: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Nr. 200A, S. 901 – 902
88	1990년 2월 7일에 개최된 내각회의를 위해 연방수상실에서 작성한 회의 자료	1990년 2월 5일	연방수상청, 자이터스 청장	Bundeskanzleramt: 136120170, 221–14470 Ka 1 Bd. I.
89	동독에서의 향후 파트너 정당에 관한 콜 수상의 숙고	1990년 2월 5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Kohl, Helmut Kohl. 1998.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Propyläen, S. 283–289
90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장이 연방정부에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출한 자료	1990년 2월 5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20170, 221 – 14470 Ka 1 Band 1
91	서독 연방수상청 네링 국장의 메모–동독과의 경제 및 화폐 통합(WWU)에 관한 네링 국장의 소견	1990년 2월 6일	연방수상청, 지그하르트 네링 연방수상청 422부 국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63, S. 761.
92	독일 정치문제 그리고 동독의 현 상태 및 동독을 위한 긴급지원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질의	1990년 2월 7일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9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3	전 유럽 안보구조–서독 연방수상청 텔칙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문건	날짜 미상–1990년 2월 7일경	연방수상청, 호르스트 텔칙 국장, 콜 수상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4 Band 1
94	통합된 경제와 공동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연방정부 재무 차관 퀼러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1
95	콜(Kohl) 총리에게 보내는 거시경제발전 평가 전문위원회 슈나이더(Schneider) 위원장의 공문	1990년 2월 9일	거시경제발전 평가 전문위원회 슈나이더 위원장, 헬무트 콜 총리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68, S. 778–781.
96	서독 연방정부 노동사회부 장관 노버트 블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문서–사회통합에 관한 동독 정부와의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	1990년 2월 9일	연방노동사회부 블륌 장관, 헬무트 콜 수상	Bundesarchiv, BArch, B 136/21660
97	독일통일에 대한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교환–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2월 10일	연방수상청,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1 Band 2
98	콜 수상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회담	1990년 2월 13일	호르스트 텔칙 국장, 연방수상청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77, S. 814–819.
99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전화통화	1990년 2월 13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Bundesarchiv, BArch/BK, 21 – 30100 (56) Ge 28 (VS) Band 80, Bl. 56–59
100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위한 재정지원–서독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2월 14일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슈프랑어 차관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96, S. 15905*D–15906*B, Anlage 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1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1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2월 14일	서독 외무 장관 겐셔, 수상청장 자이터스, 그 외 연방장관들 및 정부 관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02	연방정부 수상 헬무트 콜과 연방주의 주총리들 간의 회의–동독과의 협상과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1990년 2월 15일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외 각 주 대표, 헬무트 콜 수상, 자이터스 수상청장, 연방정부 각 부처 장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85 S. 834f (digitale Edition)
103	본에서 열린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 대표단의 회의	1990년 2월 19일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동독 정부 한스 모드로우 총리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2
10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본(Bonn) 설립 회의	1990년 2월 19일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수상청,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내독부, 국방부, 경제부, 환경부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 – 34900 Wi 14 Band 1
105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2차 회의	1990년 2월 21일	연방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 – 34900 Wi 14 Band 1
106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2월 22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We 35, Band 1
107	동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동유럽을 위한 지원–1990년 연방정부의 추가예산 수립	1990년 2월 23일	연방회의, 연방의회	Bundesrat, Drucksache 90/90
108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회담	1990년 2월 24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수상청,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Bundesarchiv, BArch/BK, 21 – 30100 (56) Ge 28 (VS) Band 80, Bl. 113–13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9	연방내무부 기록–통일을 이루기 위한 헌법적인 방법	1990년 2월 27일	연방내무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96, S. 879–886.
110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을 위한 보고서	1990년 2월 27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연방수상 공보 담당) 521과 과장 메르테스,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P 4 Po 30 Band 7
111	서독 기본법 104a조 4항에 의거 이주자 수용시설 투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법 초안	1990년 2월 28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Bundesrat, Drucksache 154/90
112	유럽공동체, 동유럽 그리고 통일	1990년 3월 1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유럽 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프랑스 외무 장관 롤랑 뒤마,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 연방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Le rendez–vous de Dublin. In: L'Europe en formation. Frühjahr 1990. Nr. 277. S. 3–5.
113	이주자 증가로 인한 공공예산 부담–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3월 1일	연방의회, 연방재무부 클렘 차관, 사민당 베그너 의원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6628
114	소련대사관과 동독 사민당 간의 접촉	1990년 초	동독 사민당 소속 홀거 자피어 의원, 주 동베를린 소련대사관 소속 제2비서 포포로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115	연방정부 수상청과 각 주정부의 총리실 대표단과의 회의	1990년 3월 2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각 연방주 총리실장, 연방정부 외무 장관 킹켈, 경제 차관 폰뷰어젠 외 다른 연방정부 차관들	Bundesarchiv, BArch/B 136/29247, 122 – 14020 Mi 1
116	서독 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이 달성될 경우 대외적 · 안보 정책적 측면들에 대한 외무부의 중간보고	1990년 3월 5일	서독 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겐셔 외무 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롭 국장, 수상청, 서독 국방부 슈톨텐베르크 장관, 그 외 연방장관들 및 정부 관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7	부쎄(Busse) 국장의 비고–연방내무부 실무그룹 '국가구조와 공공질서'	1990년 3월 6일	폴커 부쎄 국장, 연방수상청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07, S. 917–918.
118	화폐연맹의 구축과 재정문제 실무그룹–슈타르크(Stark) 국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연방수상청,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 팀장 위르겐 슈타르크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1–.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119	영국 대사의 2+4 회담에 대한 서신–텔칙 국장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3월 6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Bundesarchiv, BArch/BK, 222 – 35400 De 7 Band 2
120	2+4 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연방정부 및 동독 정부 대표자 간 동베를린 회담	1990년 3월 9일	연방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연방정부 및 동독 정부 대표자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 – 34900 Wi 14 Band 1
121	2+4 회담 준비를 위한 동독과 서독 간의 회담–동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3월 9일	동독 외무부 차관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22	서독 연방외무부에 대한 연방재무부의 서신–1990년 3월 13일 예정 베를린 개최 독–독 간 경제 · 통화 공동체 준비 전문가위원회를 위한 연방장관들 간 기본법 23조 관련 합의문	1990년 3월 10일	서독 연방재무부 장관 슈미트–블리이프토로이, 연방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연방내무부, 연방법무부, 연방경제부, 연방노동 · 사회질서부, 연방내독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 E
123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서 초안	1990년 3월 13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2 Band 2
12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	1990년 3월 13일	연방수상청, 국내 정치 기본문제 실무단, 연방내무부 장관 쇼이블레	Bundesarchiv, BArch/BMI, GE – 020 052 – 2/1 Band 1 – Aktenzeichen G1 – 0020 008 – AA/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5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 (210과) 보고	1990년 3월 1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과장 람바흐, 외무부 21실 회익 실장, 연방 외무장관 겐셔, 서독 총리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칙 국장, 서독 총리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연방법무부 장관 엥엘하르트, 연방내독부 장관 빌름스, 연방재무부, 연방경제부, 연방내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26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보내는 퀼러 차관의 서한–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준비	1990년 3월 14일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호르스트 퀼러 연방재무부 차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무임소 장관(1990년 4월까지),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헬무트 콜 연방총리, 호르스트 카민스키 동독 국립은행 총재, 헬무트 슐레징거 독일 연방은행 중앙위원회 부회장, 디터 폰 뷔르첸 연방경제부 차관, 칼 그륀하이트 동독 기계제작부 장관, 발터 지거트 동독 재무 장관, 만프레드 오버하우스 실장(연방예산부), 잉골프 노악 동독 법무부 부대표, 베른하르트 야고다 연방노동복지부 차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19, Nr. 219A (Anlage), S. 947–950.
127	본에서 열린 2+4 회담(최초의 실무자급 회담)–동독 외무부 보고	1990년 3월 14일	동독 외무부 차관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롭, 미국 참사관 조엘릭, 미국 국장 라이스, 소련 외무부 차관 아다미친,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8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노버트 블륌이 콜 수상에게 보낸 서한–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주민을 위한 실업연금과 연금의 개정에 관한 입장	1990년 3월 15일	연방노동사회부 블륌 장관, 헬무트 콜 수상	Bundesarchiv, BArch, B 136/20251
129	이주자 수용 폐지법	1990년 3월 20일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내무부 쇼이블레 장관	Bundesrat, Drucksache 216/90
130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 틀을 도입하기 위한 최소 요건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의견	1990년 3월 21일	연방경제부, 연방경제부 장관 하우스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131	콜 수상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 화폐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연방노동사회부 노버트 블륌 장관, 헬무트 콜 수상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31, S. 979–980.
132	콜 수상에게 보내는 필 연방은행 총재의 서한–중앙은행 자문위의 결정	1990년 3월 30일	칼–오토 필 독일 연방은행 총재, 호르스트 쾰러 연방재무부 장관, 헬무트 콜 연방총리, 중앙은행 자문위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39, Nr. 239A (Anlage), S. 1002–1004.
133	양독 간 경제 · 화폐통합 실현의 2+4 회담 및 전승 4개국에 대한 영향–서독 연방재무부에 전달될 서독 외무부의 실무안	1990년 3월 30일	서독 연방재무부 장관, 양독 간 관계 실무단 단장 자라친, 연방수상청, 연방경제부, 연방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겐베르크 및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4	독-영 관계와 통일	1990년 4월 6일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연방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 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Sommer, Theo. 1990. Die Lady läßt sich nicht erweichen. In: Die Zeit. 06.04.1990. Nr. 15. S. 3.
135	서독 연방수상실장에 대한 외무부의 국회 및 내각 담당과의 전문-내각 내 논의를 문서 기록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지	1990년 4월 6일	서독 외무부 (국회 및 내각 담당) 011과 과장 이쉥어, 수상청 (연방-연방주 관계, 연방회의, 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들의 회담 담당) 122과 쾨스터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36	뒤스베르크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동독에서의 정부 구성	1990년 4월 17일	클라우스-위르겐 뒤스베르크 연방수상청 국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5, S. 1012-1014.
137	네링 실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경제 및 복지정책에 관한 소견	1990년 4월 17일	지그하르트 네링 연방수상청 실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6, S. 1015-1016.
138	부쎄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전(全) 독일 의회 구성	1990년 4월 17일	부쎄 연방수상청 국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7, S. 1016-101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9	뒤스베르크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의 정부 성명서	1990년 4월 19일	클라우스–위르겐 뒤스베르크 연방수상청 국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8, S. 1018–1020
140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 관계	1990년 4월 20일	연방경제부, 연방경제부 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국장 루데비히,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 차관 오브민스키, 소련 대사 키브친스키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141	부쎄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선거 일정 및 전(全) 독일 선거	1990년 4월 23일	부쎄 연방수상청 국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54, S. 1030–1032.
142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서베를린 시장 실장 디터 슈뢰더,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143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콜 수상의 보고	1990년 4월 28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유럽이사회	Konrad–Adenauer–Stiftung; http://www.kas.de/wf/de/71.4565 (Stand: 11.05.2018)
144	1989년도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 및 1990년도 더블린 정상회담(독일통일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태도 변화)–볼프강 쇼이블레의 설명	1990년 4월 28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볼프강 쇼이블레, 유럽위원회	Konrad–Adenauer–Stiftung, http://www.kas.de/wf/de/71.456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5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 표명–동독 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부, 동독 외무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146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호르스트 텔칙의 보고	1990년 4월 30일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 연방수상 헬무트 콜, 덴마크 총리 폴 슬뤼터, 이탈리아 총리 쥴리오 안드레오티,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소련 외무부 서유럽 담당 국장 겸 특별 대사 알렉산더 본다렌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외무 장관 예두아르트 쉐바드나체	Konrad–Adenauer–Stiftung; http://www.kas.de/wf/de/71.4564 (Stand: 11.05.2018)
147	1990년 4월 29일 메켈 외무 장관과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의 회담	1990년 4월 30일	동독 외무 장관 메켈,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148	본에서 열린 2+4 회담(제2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4월 30일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미국, 영국 및 소련 대표단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49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연방수상 헬무트 콜을 위한 회담 의제 준비–1990년 5월 4일 자 외무부 회람/1990년 5월 5일 외무부 통지문(Drahterlass)	1990년 5월 4일	서독 수상청장 자이터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연방경제부, 연방재무부, 연방연구 · 기술부, 연방환경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150	본에서 열린 2+4 회담(최초의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5월 6일	겐셔 외무 장관,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51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1990년 5월 10일 부서별 회의를 위한 외무부의 발제	1990년 5월 9일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2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한 연방정부 성명	1990년 5월 11일	연방정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연방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유럽공동체, 서독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1.05.1990. Nr. 58. S. 453–456.
153	폴란드–독일 간 국경 확정–동독 외무부의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 대한 반응	1990년 5월 11일	동독 외무부 법무 · 조약국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54	2+4 조약–동독 외무부의 조약문 초안	1990년 5월 11일	동독 외무부 법무 · 조약국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55	서독 주민의 동독여행–동독 내각위원회 시행령	1990년 5월 16일	동독 내각위원회	Gesetzblatt der DDR, 1990, Teil I, Nr. 27, S. 248–249
156	동독의 재정부담 문제와 국가조약에 관한 연방정부의 콜 수상과 연방주지사들 간의 논의	1990년 5월 16일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외 각주 대표, 헬무트 콜 수상, 자이터스 수상청장, 연방정부 각 부처 장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80 S. 1122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157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외무 장관 겐셔,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5월 17일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라인하르트 쉬베페,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외무 장관 겐셔,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미국 하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158	모스크바에서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와 소련 외무 차관 크윈진스키 간의 회담(1990년 5월 17일)	1990년 5월 18일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소련 외무 차관 크윈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9	본에서 열린 2+4 회담(3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5월 23일	동독 외무부 장관 대리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미국 참사관 조엘릭,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60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르크만–폴,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Drucksache 24 a
161	동독 외무부에서의 메켈 동독 외무 장관과 서독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국 텔칙 국장과의 대화	1990년 5월 25일	메켈 동독 외무 장관, 서독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칙 국장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162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소련 방문–동독 외무 장관에 대한 주소련 동독 대사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뒤마 프랑스 외무 장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163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연방수상청, 연방법무부 차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부 차관 호르스트 쾰러, 연방 경제기술부 차관 오토 슐레히트 외 다른 부서 차관들	Bundesarchiv: BArch, B.136/24370, 51 –14223 Sta 1 Bd. 6. –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164	동 · 서독 외무 장관 간 협의 위원회 구성–메켈 외무 장관과 겐셔 외무 장관의 동베를린 회의	1990년 6월 1일	메켈 동독 외무 장관, 겐셔 서독 외무 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0
165	1990년 6월 9일 개최 실무자급 2+4 회담을 위한 동독 외무부의 논의 주제안	1990년 6월 1일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66	통일된 유럽 내의 통일독일–콜 수상이 미국의 독일위원회에서 행한 연설	1990년 6월 5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동독,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나토, 남 · 중 · 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헬싱키 회의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3.06.1990. Nr. 74. S. 638–64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7	동독에서 진행되는 인민 소유 재산의 민영화와 재조직에 관한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의 설명	1990년 6월 7일	연방경제부, 연방경제부 장관 하우스만,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KAmt/421 – 60000 Wi 3 NA 2 Band 2
168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4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6월 9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 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등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69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렌구트 국장의 보고서–헌법 개정에 관한 고려	1990년 6월 12일	게롤트 렌구트 실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10, 1208–1209.
170	동독 연방 가입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대한 숙고–렌구트 실장이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90년 6월 12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332부 부장 렌구트,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내무부,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Bundeskanzleramt, 422– 35400 V～ 2 Bd. 1.
171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과 동독 외무부 간의 대화–소련 측의 입장	1990년 6월 15일	동독 외무부,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 그리닌,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대사 비서 그리고르예프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172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독–독 간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비망록	1990년 6월 16일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 장관,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3	콜 수상에게 제출된 텔칙 실장의 제안–서방주재 소련군의 재정조달 문제	1990년 6월 19일	호르스트 텔칙 국장, 연방수상청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20, S. 1232–1234.
174	본에서 열린 2+4 회담(5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6월 20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참사관 조엘릭,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등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75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2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6월 22일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76	'독일통일'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	1990년 6월 25일	연방수상, 연방내무부 장관, 연방재무부 장관	Bundesgesetzblatt 1990 II S. 518, 533
177	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 조치	1990년 6월 27일	연방수상청, 연방재무부	Bundesarchiv, BArch/BK, 01 (212) – 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178	메켈 동독 외무 장관에 대한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의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입장 전달	날짜 미상–1990년 7월경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 메켈 동독 외무 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7
179	연방수상실 루데비히 경제국장의 요약 보고–화폐통합 달성을 위한 국가조약의 실행	1990년 7월 3일	요하네스 루데비히 국장, 연방수상청 제421국 국장 호르스트 베스터호프, 위르겐 슈타르크 실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37, S. 1287–128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0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관한 1990년 6월 21일 자 최고인민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폴란드 측 보고	1990년 7월 3일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 주폴란드 동독 대사, 메켈 동독 외무 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81	본에서 열린 2+4 회담(6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 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술렉 등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82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에 관련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수상청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 위원회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5A, 1328-1331.
183	독일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통일조약)	1990년 7월 6일	연방수상청	Bundeskanzleramt, BK, 132 – 35400 De 12 NA 5 Bd. 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4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수상청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 위원회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5A, 1328-1331.
185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한 폴란드 측 입장-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와 메켈 동독 외무 장관의 전화통화 내용	1990년 7월 14일	동독 외무부,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 판 츠볼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186	파리에서 열린 2+4 회담(3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7월 18일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폴란드 외무 장관 스쿠비쉐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187	통일조약에 대한 1990년 7월 18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연방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18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88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 회담에 대한 보고-외무부 정치국의 보고	1990년 7월 18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익,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외무 장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189	본에서 열린 2+4 회담(7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19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0	유럽공동체에 동독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 헬무트 콜 수상이 들로어 유럽위원장에게 보낸 서신	1990년 7월 20일	연방수상 콜, 유럽위원회 위원장 들로어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S. 1402
191	유럽공동체에 동독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 헬무트 콜 수상이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방에만에게 보낸 서신	1990년 7월 20일	헬무트 콜 연방수상, 방에만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Bundesarchiv, BArch/BKAmt/211 – 35400 Eg 29 Band 3
192	동독의 통합과 관련하여 헬무트 콜 수상이 노동부 장관 블륌에게 보낸 서한	1990년 7월 20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노동부 장관 블륌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S. 1403
193	2차 국가조약의 내용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의 제안	1990년 7월 2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1
194	통일조약과 관련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24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5	독–소 간 조약–외무부 내 관할권에 대한 논의–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7월 27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 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및 그 외 외무부 소속 분과들,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동–서 관계, 동유럽 국가들 · 소련 및 미국과의 양자 관계 및 군축과 군비 통제, 특히 헬싱키 협정 관련 담당) 외무부 212과 과장 대리 니켈, 연방재무부 소속 자우페, 연방국방부 소속 대령 올딕스 및 플렉, 연방경제부 국제경제국 국장 쇼메루스, 동–서 경제적 관계 담당 국장 하이트란트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196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T/F의 문건–통일조약(안)	1990년 7월 30일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단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74, S. 1425–1444.
197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동독에서의 사태 변화 및 동 · 서독 간의 협상–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31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198	독일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2차 협상(통일조약)	1990년 8월 1일–3일	연방수상청,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슈테른 국장, 부쎄 국장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77, S. 1449–145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9	서독 경제부가 독일통일 실무그룹에 제출한 동독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1990년 8월 9일	연방경제기술부 차관 오토 슐레히트 ,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Küsters, Hanns Jürgen und Daniel Hofman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1989/90: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Nr. 380 u. 380A, S. 1458 – 1461
200	신탁관리청 관련 연방정부 콜 수상과 연방주 주지사들 간의 회의 보고서	1990년 8월 29일	요하네스 라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각 주의 대표, 연방정부 각 부처 대표, 헬무트 콜 수상,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Bundesarchiv, BArch/B 136/29247, 122 – 14020 Mi 1.
201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에 대한 연방정부 보고	1990년 9월 3일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의회, 동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경제공동체, 중 · 동유럽 국가들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70
202	2+4 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	1990년 9월 3일	동독 외무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203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1일 차)	1990년 9월 4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204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2일 차)	1990년 9월 5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205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3일 차)	1990년 9월 6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06	소련과의 전환협정–수상청 회의 결과	1990년 9월 6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경쟁, 구조, 산업, 에너지, 기업, 수공업 및 무역, 마샬플랜 재정, 국제경제, 내각 경제위원회 정책 담당) 421부 부장 베스터호프, 수상청장 자이터스	Bundesarchiv, BArch/B 136/ 26869, 441 – 84010 Wo 107 Band 2
207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4일 차)	1990년 9월 7일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208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간의 전화통화	1990년 9월 7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S 25 Üb 5 Band 2
209	1990년 9월 12일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대한 조약–2+4 조약	1990년 9월 12일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MULT–781
210	모스크바에서 열린 2+4 회담(4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9월 13일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211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신연방주 가입으로 인한 연방 · 연방주 공동 조정사무소(Bund–Länder–Clearingstelle)의 확대	1990년 9월 19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과장 람바흐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8 E
212	전 세계 정부들에 보내는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	1990년 10월 3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독일연방공화국, 폴란드공화국, 동독, 유럽공동체, 미국, 소련, 유엔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05.10.1990. Nr. 188. S. 1227–122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13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헬무트 콜 수상의 정부 성명	1990년 10월 4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 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남 · 중 · 동유럽 국가들	Kohl, Helmut. 1991.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Verträge und Erklärungen. Bon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280-287.
214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기민당/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자민당 원내 교섭 단체의 발의	1990년 10월 30일	독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 교섭 단체, 사민당 원내 교섭 단체, 자민당 원내 교섭 단체, 신연방주들,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공동체 이사회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391
215	동독 정부와 연방수상청 간의 인적 협력	1991년	연방정부,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국장 텔칙, 동독 정부,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Siedler, Berlin. 1991
216	한시적 연대세 도입법 초안	1991년 3월 8일	연방회의, 연방정부,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재무부 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주 지역세무관청	Bundesrat, Drucksache 142/91
217	독일 국가 3절에 관한 결정과 관련 연방대통령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서신	1991년 11월 19일	리하르크 폰 바이츠제커 연방대통령, 콜 수상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3, S. 2135, Ausgabetag 29.11.1991
218	신연방주를 특별히 고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	1992년 5월 27일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장	Bundesrat, Drucksache 450/92
219	서독을 방문한 동독 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사민당 의원 슈미트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220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 파트너들의 유보적 자세	1996년 8월 1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Kohl,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Dargestellt von Kai Diekmann und Ralf Georg Reuth. Berlin: Propyläen-Verlag. S. 196-19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1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 추천 및 보고	2000년 1월 28일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4/2608
222	연방정부의 답변: 기본적인 문제와 연방수상실의 신연방주 관련 업무 협력과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	2007년 7월 20일	연방정부, 좌파당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6/6110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222)

문서 번호 1

1970년 8월 12일 체결된 독소조약에 관한 외무 장관 발터 쉘의 서신

1970년 8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외무 장관 발터 쉘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외무 장관 발터 쉘이 소련 외무상에게 전달한 서신으로 1970년 8월 12일에 체결된 독소조약과 관련해 독일통일 문제를 논하고 있다. 독소조약에는 폴란드 서쪽 국경의 불가침성에 관한 성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약은 서독이 추구하던 관계 정상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동서독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련과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의 3조에서 서독과 소련은 유럽 모든 국가들의 영토를 존중하고 동서독 국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이 조항은 사실상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달성은 서독의 기본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장기적인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발터 쉘 외무 장관은 이 서신을 통해 기본법의 해당 문장을 인용하면서 서독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소 간에 체결된 조약이 기본법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Diemer, Gebhard / Ku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16/217

문서 번호 2

서독과 소련 간의 조약

1970년 8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외무 장관 쉘, 소련 총리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외무 장관 그로미코

내용_

이 문서는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끄는 사민당 정부가 소련과 체결한 조약문이다. 이 조약을 통해 서독과 소련은 분쟁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전적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군사적 위협을 자제할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자는 현재의 국경이 지켜질 때에만 유럽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자는 유럽 내 현재 국경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서독과 소련은 서로 현재의 영토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행위나 주장을 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규정하는 오더-나이세강 경계와 서독과 동독 간의 국경이 침범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조약은 앞서 서독과 소련 간에 체결되었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들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이 조약을 체결할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 외무부에 서신 한 부를 전달하였다. 이 서신에서 서독 연방정부는 이 조약이 독일통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서독의 목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53-355

문서 번호 3

서독과 폴란드 간의 국교 정상화 조약

1970년 12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외무 장관 쉘, 폴란드 취란키에비츠 총리, 폴란드 예드리쇼브스키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빌리 브란트 정부가 폴란드와 체결한 국교 정상화 조약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 서독과 외교 수립을 위한 제스처를 취했다. 당시 기민당이 이끌던 서독의 연방정부는 그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3년에 서독 연방정부의 제의에 따라 무역대표부의 교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67년 서독 연방정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폴란드 정부는 경제 관계 이상의 합의를 위해서는 영토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며, 서독의 제의를 거부했었다. 서독에서 사민당과 자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후 폴란드와 소련과 비폭력 선언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0년 2월부터 바르샤바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담이 열렸고 1970년 11월에 조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0년 12월에 체결된 조약에서 서독과 폴란드는 두 국가 사이에 정해진 국경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며, 두 나라는 기존의 국경이 현재와 미래 언제든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양국은 현재 서로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독과 폴란드는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전적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군사적 위협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국교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경제, 학술 부문 및 문화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조약은 앞서 서독과 폴란드 간에 체결되었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2, Nr. 27, 24.05.1972, S. 361-368

문서 번호 4

'베를린에 대한 승전연합국 4개국의 협정'을 둘러싼 독일 연방의회에서의 논쟁

1972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수상 브란트, 기독교민주당 당 겸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 교섭단체 의장 겸 독일 연방의회 의원 바젤, 자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보름(동독 슈타지 비공식 요원), 사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외교위원회 의장 대리 마틱, 기민당 연방의장단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그라들

내용_

이 문서는 전승 4개국들이 체결한 베를린 협정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논의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전승 4개국의 협정에 따라 서베를린 주민들이 동베를린 및 동독을 방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협정은 서베를린이 서독의 법적, 경제적 재정 체계에 안정적으로 포함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독을 통해 서베를린이 대표된다는 점은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기민당 소속 바젤 의원은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은 키싱어 연방수상 재임기(1966~1969)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 교섭 단체는 익년에는 동 교섭단체 외에도 다른 교섭단체들도 서베를린의 제국의회 건물에서 업무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민당 소속 빌리암 보름 의원은 베를린 문제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의견의 일치가 된 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의견 일치를 기반으로 서베를린이 생존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베를린에서 결국 독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며, 베를린은 유럽에게도 일종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소련이 서베를린과 서독 간의 연관성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 사민당 소속 의원 마틱은 얼마 전까지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변화가 이 협정과 더불어 생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기민당/기사당 연합 또한 그사이에 소련 및 폴란드와의 조약 비준이 이러한 진전이 성사되는 데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5년간의 고립 이후 처음으로 서독과 동독의 주민들이 큰 규모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베를린에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독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만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기민당 소속 그라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발언하였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직 실현될 과제로 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긴장 완화 상황 때문에 서베를린에 대한 지원이 점차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베를린이 1차적으로 동독의 수도나 독일 공산주의의 중심지역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6. Wahlperiode, 188. Sitzung, Plenarprotokoll, S. 10966C-10975A

문서 번호 5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에 관한 에곤 바의 서신

1972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실 정무 장관 에곤 바, 동독 내각위원회 차관 콜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 기본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서독 연방정부의 정무 장관 에곤 바가 동독 내각회의 차관 콜에게 전달한 서신이다.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에는 양국의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민족문제'에 관한 입장과 같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양국 간의 국경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과 내적, 외적 자주성을 인정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약을 통해 서독이 동독을 독자적인 국가로, 즉 외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서독이 이러한 해석을 공유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곤 바는 서독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평화를 실현하여 그 속에서 독일 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작성된 발터 쉘의 서신과 에곤 바의 서신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서신에 대한 상대방의 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조약과 관련된 서독 연방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당시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조약이 기본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출처_ Diemer, Gebhard / Kuhrt, Eberhart. Kurze Chronik der Deutschen Frage. Olzog Verlag, München. 1991, S. 220

문서 번호 6

동독과 서독 간 관계의 기초에 대한 조약(동·서독 기본조약)

1972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서독 문제 담당 차관 콜 박사, 연방수상 직속 연방정부 특임 장관 에곤 바

내용_

이 문서는 분단 시기 동서독 관계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동서독 간의 기본합의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은 민족문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상이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다음에 합의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동등한 권리에 기초하여 상호 정상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양

자는 군사적 위협 및 군사력의 사용을 자제한다. 서독과 동독은 현존 국경이 현재 및 미래에 있어 침해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다. 동서독은 유럽에서의 군축노력을 지지한다. 서독과 동독 간에 실질적이자 인도주의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우측통행, 우체, 보건, 문화, 스포츠 및 환경 부문에 대한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서독과 동독에는 상시 대표부가 설치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이 조약이 독일통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서독의 목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독과 동독은 양국 간의 기존 국경 표시를 검토하고, 개선하거나 혹은 보완할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한 위원회는 수상 경제 및 에너지 공급 그리고 해충구제 등의 문제를 규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이한 법적 입장 때문에 재산권 문제는 이 조약을 통해 규율될 수 없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국적 문제 역시 이 조약을 통해 규율되지 않았다. 양국 간 국경지역에 인적 교통을 위한 4개의 추가적인 국경통과소가 열렸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3, Nr. 25, 09.06.1973, S. 421-429

문서 번호 7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

1973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수상 브란트,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외무 장관 쉘,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쉬트로우갈, 체코슬로바키아 외무 장관 흐뇨우펙

내용_

이 문서는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 양측은 1938년 9월 29일 나치 체제하에서 체결되었던 뮌헨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나아가 양국 간 정해진 기존의 국경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침해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서로 현재 영토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로 간에 경제, 학술, 문화, 환경, 스포츠, 교통 등과 같은 부문에서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서독 연방정부의 외무 장관 쉘은 체코슬로바키아 외무 장관 흐뇨우펙으로부터 새로 체결된 조약이 서베를린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쉘 장관은 조상이 독일인인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신청할 경우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이 우호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임을 확인받았다. 서독은 조상이 체코인 혹은 슬로바키아인인 서독 국민들이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주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할 것도 확인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독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적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양국 간의 여행 통행도 계속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국경에서의 신속한 통관 처리 및 추가적인 국경통과소 설치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의 개선을 검토

하기로 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외무 장관 흐뇨우픽도 이 점을 확인하였다. 그는 1938년에서 1945년까지 행해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 중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와 전범 행위 그리고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만을 형사소추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모든 형사범죄 행위는 늦어도 1965년 이후에는 시효가 소멸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74, Nr. 40, 16.07.1974, S. 990-997

문서 번호 8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 방문

1987년 9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호네커

내용_

이 문서는 1987년에 동독 사통당의 총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헬무트 콜 수상이 에리히 호네커 총서기장의 서독 방문을 환영하였다. 콜 수상은 먼저 양국의 공동의 언어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양국 국민의 안녕을 위해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아직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인이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위한 노력이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전쟁과 폭력이 또다시 독일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독은 현존하는 국경을 준수하는 동시에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하였다. 4대 전승연합국이 전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속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다. 콜 수상은 그사이에 전보다 더 많은 동독 젊은이들이 서독을 방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더 많은 도시 간 자매결연 및 미디어, 학술 부문 및 예술 분야의 교류가 생기기를 희망하였다. 콜 수상은 미국과 소련이 동서진영 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는 나아가 군축을 지지하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동서독 간의 국경에서는 앞으로 장기에 걸쳐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특히 호소하였다. 그는 독일의 역사가 많은 변동을 겪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콜 수상의 환영사에 에리히 호네커는 평화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답했다. 이데올로기적이자 사회적 대립이 양국 간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독은 과감한 군축을 지지한다. 총서기장은 국경의 불가침성 및 양국이 주권을 지닌 독립국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Nr. 83, S. 705-708

문서 번호 9

서독과 소련의 공동 성명

1989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독 정부 및 소련 정부

내용_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독일 공식방문(1989년 6월 12~15일) 중에 서독과 소련 간의 공동 성명이 조인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3번째 밀레니엄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요구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한다. 전쟁은 방지해야만 하고, 민족 자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가치 체계 및 정치·사회적 질서에 있어서의 차이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II. 서독과 소련은 유럽 분단의 극복을 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로 간주한다. 헬싱키 협정이 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들 간의 무제한적 통합 및 그 안전보장; 확실한 군축 및 군비 통제; 양자 간 및 다자간 밀도 있는 대화 그리고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들 간의 정기적 회담; 인권 보장의 실현; 광범위한 경제적 협력 및 유럽 공동체와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간 관계의 정상화; 예를 들어 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및 정보 분야에 있어서 전 유럽적 협력의 구축.

III. 서독과 소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위협의 감정을 상호신뢰를 통해 점차적으로 해소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군사적 위험성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해 그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맞추어 상호공격을 허용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양자는 다음의 사안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핵 공격 무기의 50퍼센트 감축; 핵협상 및 우주공간 관련 협상에 있어 해결책 모색; 재래식 전력에 있어 낮은 수준의 균형 달성; 유럽 내 신뢰와 안전보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

IV.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틀은 1972년 8월 12일의 모스크바 조약에서 마련하였으며, 그 위에 추가적인 사항들을 조약을 통해 첨부하기로 한다. 1971년 9월 3일 자 전승 4개국 협정에 따라 베를린도 이 조약을 적용하기로 한다.

V. 서독과 소련 간의 관계 개선은 각 동맹 간의 의무를 고려하며 어떠한 타국에도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7.130 E

문서 번호 10

자이터스 연방정부 수상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논의

1989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독성 장관 빌름스, 외무 차관 쥬드호프, 경제 차관 폰 뷰르젠, 재무 차관 클렘, 교통 차관 크니털,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외 다수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장 자이터스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장관과 차관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이터스 수상청장의 동베를린 방문: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과 동독 당국자들과의 논의에서 제시될 서독의 기본 입장이 전달되었다.
2. 철도협상에 대한 상황 보고: 현재 전체 비용에 관한 견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안에 견적을 받도록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베를린으로 가는 철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서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3. 남쪽 통과소: 남쪽 통과소에 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결정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안에 관해 논의되었다.
4. 엘베강의 환경개선: 상수원의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서독 간의 비용 그리고 책임 영역에 관한 조정 협력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5. 베라강의 염분 농도 증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서독 간의 기술이전 문제가 논의되었다.
6. 박람회 참가를 위한 항공교통의 확대를 위한 루프트한자의 신청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베를린을 관할하는 승전연합국의 대사들과의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보고되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9 S. 311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번호 11

베어틀레 상주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 내부 상황에 관한 보고서

1989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의 책임자가 연방정부 수상청장에게 보낸 동독의 상황에 관한 보고이다. 이 문서에서 베어틀레는 다음과 같이 동독의 상황을 설명한다.

동독의 지도부가 세 가지 요인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동유럽의 다른 사회주의 진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며, 그 외에 동독 주민들과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일부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서방으로부터의, 특히 인권 개선과 같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바로 그 세 요인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동독 지도부는 지금까지 방어적으로만 대처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동독이 주민들에게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 근거로 완전고용, 충분한 주거 공간 그리고 교육 기회의 보장과 같은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고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동독 정부는 인권 개선에 대한 서방의 요구를 용납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간주한다. 호네커의 통치가 칭송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통당 내에 개혁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은 그와 정반대이다. '일시적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치부되었던 서비스, 생필품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되는 소비 물자 공급의 어려움과 국가와 계획경제에 의한 감시와 억압은 일반적인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당 지도부의 정체적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게 된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124, 11 35005 Pa4 Band 11

문서 번호 12

내독관계-수상청장 자이터스의 동베를린 공식 방문

1989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수상청장 자이터스, 동독 외무 장관 피셔, 동독 사통당 서기장 호네커

내용_

1989년 7월 4일에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장인 자이터스가 동베를린을 공식 방문하여 동독의 외무 장관 피셔 그리고 당서기장 호네커를 비롯한 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원 그리고 동독 내각과 만났다. 이 방문에서 자이터스는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동시에 동독이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의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다. 동서 간의 국경에서 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 또는 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직원이 서베를린에서 열

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호네커와 피셔는 서독이 군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동독의 주권과 국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이터스는 그런 요구에 대해 나토의 군축 노력을 강조하며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공동 성명을 언급했다. 나아가 서독이 동유럽의 개혁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독 이탈을 원하는 주민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주대표부에 자꾸 몰려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328, 221 – 35016 Ve 40 NA 1

문서 번호 13

동독의 이주정책-슈탑 국장이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내용_

이 보고서는 동독의 이주정책에 관한 동독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보도들로 인해 이주를 원하는 동독 주민들이 이주의사를 철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적어도 동독 당국의 체면치레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주신청서는 1988년 11월 30일 자로 시행된 여행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 탈출 시도에 관한 판결에도 인도적인 이유에서 영구이주를 허용하는 10조를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는 동독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지속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심리적 위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중앙위원회의 7차 회의를 통해 동독에서는 장래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비관적 평가는 그의 개혁이 실패할 경우 동구권 전체의 상황이 훨씬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을 통해 대량으로 탈출해 오고 있는 동독 주민들을 서독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동독 주민들 사이에 언젠가는 서독이 국경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이주를 결정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7/ 15797

문서 번호 14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들의 출입 금지-슈테른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독일정책 실무팀장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 국장, 자이터스 수상청장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의 독일정책 실무팀 책임자인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 국장이 1989년 8월 8일 자로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 시민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연방정부 내각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다.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한 원인은 서독으로 이주를 원하는 130명의 동독 주민이 상주대표부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들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각에 동서독 양국 간에는 문화, 항공교통 영역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59, 222 – 83105 Fa 3 NA 2 Band 4

문서 번호 15

대사관 난민-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콜 연방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

내용_

이 문서는 대사관 난민과 관련하여 서독의 콜 수상이 동독의 호네커 당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수많은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의 이주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대사관, 즉 서독 상주대표부에 왔다. 그들에게 동독 당국만이 이주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상주대표부를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동독 내의 상황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머물도록 만들지 못한 동독 당국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한 비공개 비밀회의를 제안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 355, 11 – 35016 Ve 33 NA 4

문서 번호 16

대사관 난민-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의 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

1989년 8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에리히 호네커 동독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

내용_

이 서신을 통해 호네커는 동독 주민의 이주문제는 동독이 결정할 일이며 동독 정부는 이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독 주민이 동베를린,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에 있는 서독 대표부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서독 정부가 동독 국민의 문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정부가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동독 주민들을 조속히 내보내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동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d. 5

문서 번호 17

대사관 난민-수상청장 자이터스와 동독 외무 차관 크롤리코프스키 간의 회의

1989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베어틀레 차관, 뒤스베르크 국장, 크롤리코프스키 동독 제1 외무 차관, 니어 동독 외무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서독대사관으로 들어가서 서독으로 이주하기를 요구하는 동독 이탈주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의 대표가 동독 외무 차관과 만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린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자이터스 수상청장은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다른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서독대사관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독에 있으며 그 해결책도 동독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크롤리코프스키는 오히려 동독 주민들이 서독 대표부에 체류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지원한 서독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 여권을 발행해 준 것은 위법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서독 대표부에 있는 동독 주민들이 동독으로 귀국할 경우 그들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자이터스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까지 현재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동독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18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베어틀레 상주대표부 대표, 자이터스 수상청장

내용_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상주대표부 내에 서독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동독 주민이 남아 있었다. 이 문서는 상주대표부의 베어틀레 대표가 이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입장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동독의 입장: 동독 당국의 입장은 강경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호네커와 콜 간의 정상회의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에 남아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의 태도: 이들은 대표부 건물 내에서 텔레비전과 신문을 볼 수 있다. 이들 언론 매체가 동독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해 주고 있다.
3.1. 동독의 변호사 포겔과 내독성 차관 프리스니츠 그리고 베어틀레 대표 간의 회의: 포겔 변호사가 호네커에게 동독 이탈주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베어틀레는 상주대표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대표부를 떠나 동독에 남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서독 대표부에 알릴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3.2. 위의 사항이 해결된 후에 상주대표부 내에 남아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한다.
부다페스트와 프라하의 상황: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의 상황도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상황과 유사하다.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에서도 포겔 변호사, 프리스니츠 차관 그리고 베어틀레 대표가 동독 이탈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19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대표부 체류 문제-베어틀레 대표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인 베어틀레 대표가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게 제출한 것으로, 동베를린과 동유럽지역의 서독 대표부에 들어와 있는 동독 탈출자 문제와 관련하여 동독 지도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독 정부가 취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독은 탈출/이탈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하고 이 문제가 동서 양국 간의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서독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독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동독은 서독이 이 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동독은 서독이 자국의 대표부에 있는 동독 주민들을 내보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를 위해 서독이 동독 탈출자들에게 그들이 동독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들이 동독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전해주라고 한다. 동독 당국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서독 쪽에서 반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양측이 서로에게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독은 콜 수상과 호네커 간의 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방안은 위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20

독일-폴란드 관계-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겐셔 외무 장관, 헬무트 콜 연방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혼 헝가리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8월 25일에 열린 헬무트 콜 서독 수상과 네메트 헝가리 수상 간의 실무회담 중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에 관해 논의된 사항에 포커스를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월 25일 오찬을 겸한 실무회담에서 네메트 헝가리 수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네메트 수상은 소련과 폴란드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통해 폴란드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탈퇴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폴란드의 상황이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콜 수상은 폴란드에서 발생할 일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유노조가 정당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파로 갈라진 상황이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서독은 유럽에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동독의 발전이 아주 중요한데, 동독의 경우 어떠한 개혁이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호네커가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언제 개혁을 실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리아는 소련연방의 일부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네메트 수상이 전하였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독일이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와 같이 유럽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양국간의 관계가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U1 Un 25 Band 1

문서 번호 21

김니치성에서 열린 서독 수상 콜과 헝가리의 수상 네메트, 외무 장관 혼 간의 실무회담

1989년 8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하르트만 국장, 겐셔 외무 장관, 헬무트 콜 연방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혼 헝가리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8월 25일에 열린 헬무트 콜 서독 수상과 네메트 헝가리 수상 간의 실무 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네메트 헝가리 수상은 헝가리의 경제 위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현재 헝가리가 고르바초프나 코메콘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방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헬무트 콜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야기하여 헝가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겐셔 외무 장관이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헝가리가 서독,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네메트 수상은 1992년까지 헝가리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해 달라고 고르바초프에게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혼 외무 장관은 소련과 미국이 군축에 관해 정치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헝가리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독을 제외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주둔한 소련군을 철수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독의 외무 장관 겐셔는 그것이 군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이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m 21 – 30100 (56) Ge 28 (VS) Band 78, Bl. 296/1-296/5

문서 번호 22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이다. 이 전문에서 뒤스베르크 국장은 상주대표부와 다른 서독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탈출주민 문제와 이주규정에 관해 논의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동독 당국이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우리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이 큰 폭으로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

각한다. 동독은 현재 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이탈자들이 동독의 자기 지역으로 귀향할 경우 이들을 기존의 이주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주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주대표부와 다른 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주민들이 이주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표부와 대사관에서 나가려고 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23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호네커가 서독 대표부에 들어가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 서독 수상 헬무트 콜에게 보낸 서한

1989년 8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에리히 호네커, 서독 수상 헬무트 콜, 서독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가 서독 수상 헬무트 콜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문서에는 호네커는 동독 주민의 이주문제는 동독 정부만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콜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쓰여 있다. 호네커는 콜 수상에게 서독의 대표부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동독 주민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현재 서독의 대표부 건물들에 들어가 있는 동독 주민들에게도 대표부 건물을 떠나라고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독과 서독의 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콜 수상은 동서독의 대표들이 비공개로 만날 것을 제안했고, 호네커가 이에 동의했다.

출처_ Bundesarchiv, DY 30 IV 212.039, 304, Blatt 115-117

문서 번호 24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 문제-상주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에게 보낸 전문

1989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보고서로 상주대표부와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탈출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동독의 입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외무부 서독담당국의 부국장 한스 쉰들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그에 따르면 서독의 대표부에 들어가 있는 동독 탈출자들이 자진해서 대표부를 나와 고향으로 귀환할 경우 동독 당국은 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주신청을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신청서를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주신청에 비해 아주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동일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주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찾지 못할 경우 그들이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대표부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경우 포겔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이 약속을 보증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탈출자 문제가 양국 정상 간의 회의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동독의 이런 입장을 고려하여 나와 프리스니츠 차관이 동독의 포겔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25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의 동독 이탈주민에 관한 동독과 헝가리 간의 논의에 관한 정보-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내는 전문으로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 문제와 관련

하여 동독 외무 장관과 헝가리의 외무 장관 혼 간의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제 헝가리 외무 장관 혼이 동베를린을 방문해서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 문제에 관해서 동독 외무 장관과 논의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동독은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인들이 일단은 동독으로 돌아와서 이주신청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이주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집한다. 그러나 혼 외무 장관은 현재 헝가리에 있는 5,000명에서 10,000명의 동독 탈출자들이 동독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기 때문이 이들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만 하여 이들을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있는 탈출자들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혼 외무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내가 헝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수일 내에 동베를린의 상황도 아주 긴급해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에게 헝가리의 상황을 수시로 전해 주기를 요청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26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에 관하여-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이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

1989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의 뒤스베르크 국장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틀레 차관에게 보낸 전문으로, 베어틀레 차관이 대표부에 있는 동독 탈출자 문제에 대해 동독 당국과 협의할 때 전달할 서독 연방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동독 당국이 탈출자들이 자기 주거지로 돌아가서 이주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는 방안을 수용한다. 이러한 해결책을 탈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자리에 동독의 변호사 포겔이 동석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 상주대표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주대표부에 있는 탈출자들이 그런 제안을 듣고 자율적으로 상주대표부에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심리적 압력과 억압이 가해져

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27

동독의 내부문제에 서독의 불간섭-자이터스 수상청장과 노이바우어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간의 회담

1989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본 주재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노이바우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와 본에 있는 동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호스트 노이바우어가 대사관 난민에 관해 논의한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회의에서 자이터스 청장은 동독의 신문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근본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도하였다. 서독은 대사관 난민들이 동독 내의 자기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어떤 억압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동독 당국의 약속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며 그래서 포겔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중재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노이바우어는 동독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는 서독 측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을 중지하기를 요구하였다.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연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 토론하는 것은 동독의 내정에 서독이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5

문서 번호 28

헝가리를 통한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네메트 수상에게 보내는 헬무트 콜 수상의 전문

1989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네메트 헝가리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헝가리에 있는 동독 탈출자와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헝가리의 네메트 수상에게 보낸 전보이다. 1989년 9월 10일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에 있는 동독 주민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콜 수상은 이 전문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헌장에 뿌리를 둔 위대한 인도적 행위를 하였다고 네메트 수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30462, 21 - 30130 Band 3

문서 번호 29

연방의회 발언: 동독 탈출자

1989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장 리타 쥬스무트,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9월 14일에 열린 연방의회의 회의에서 리타 쥬스무트 의장과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그리고 다른 연방의회 의원들이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동독 탈출자들을 도와준 서독의 여러 기관에 감사하는 발언을 녹취한 것이다. 특히 자이터스 수상청장은 긍정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과 조직에 소요될 비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58, S. 12035-12047

문서 번호 30

헝가리 국경에 있는 동독 탈출자-자이터스 수상청장과 호르바트 주독 헝가리 대사 간의 회의

1989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주독 헝가리 대사 호르바트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와 주독 헝가리 대사 이스트반 호르바트 간의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먼저 호르바트 대사가 헝가리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헝가리는 자국의 국경을 폐쇄할 의사가 없다. 지금까지 약 6,000명의 동독 탈출자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을 넘어갔다. 이 문제 때문에 헝가리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 또한 아주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헝가리가 개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에 있으며 동-서 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헝가리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개혁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서독을 제외한 다른 서방국가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방국가들은 우리의 개혁에 대처할 어떤 전략도 없는 것 같다. 입으로는 개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우리의 개혁으로 인해 동-서 간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유지가 깨지는 것과 독일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독 탈출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이 헝가리를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에 대해 자이터스 청장은 서독 정부와 의회가 헝가리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그리고 연방정부가 헝가리에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동독 정부가 그것은 일종의 현상금이라고 비난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은 앞으로도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 – 30100 (56) Ge 28 (VS) Band 79, Bl. 30-34

문서 번호 31

동독의 위기-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서

1989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연방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동독의 상황을 전달해 주는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동독의 위기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지도부가 개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르바초프식의 개혁이 동독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은 편이지만 지도부는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도부 내에 문화부 차관, 자유청소년연합의 기관지인 청년세계의 편집장 그리고 독일자유민주당 당수와 같이 개별적으로 개혁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호네커가 지도자로 남아 있는 한 동독에서 개혁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 1989년 6월 중국 천안문 사건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반응은 만일 동독의 반동주의자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금 현재 동독의 교회나 반체제 세력에 의해 동독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독 정부는 소비물자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분노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독은 여전히 서독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동독의 내부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적다. 단 동독에게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 116, 11

문서 번호 32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이 동독 이탈주민들과 관련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에게 보낸 서한

1989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 야케쉬,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내용_
이 문서는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진입한 동독 이탈주민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더 이상 대사관 부지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서독 수상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장에게 보낸 것이다. 콜 수상과 서독 연방정부는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숙소를 구하기를 원했다. 콜 수상은 이와 관련해 도움을 주기를 야케쉬 공산당 서기장에게 요청했다. 야케쉬는 그에 동의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Auswärtiges Amt, 513, B 85 Nr. 2346 E

문서 번호 33

폴란드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베어틀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가 수상청장에게 보낸 보고서

1989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폴란드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을 특별열차로 서독의 헬름슈테트까지 이동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 연방수상청의 자이터스 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동독 당국이 폴란드 내에 있는 이탈주민들이 특별열차를 타고 동독 영토를 지나서 합법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동독에 남은 그들의 가족들 또한 정상적인 이주절차를 통해서 서독으로 간 가족에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89년 10월 1일에 809명이 특별열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 열차가 동독 영토를 통과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지나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헬름슈테트에서는 연방의회 의장 리타 쥬스무트와 니더작센 주지사 알브레히트 그리고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독 이탈주민들을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동독 당국이 필요한 이주서류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쩌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6

문서 번호 34

서독 수상 헬무트 콜과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아다메쉬 간의 전화 통화

1989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_ 발터 노이어 수상실 실장, 헬무트 콜 연방수상, 아다메쉬 체코슬로바키아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다메쉬 총리와 전화통화한 기록이다. 콜 수상은 동독 이탈주민들의 상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이 문제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아다메쉬 총리는 약 10,000명에서 11,000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이 현재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있으며 오후 5

시부터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국경이 폐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현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러한 사실을 일반에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서로 확인했다.

출처_ Bundesarchiv, Abteilung B (Bundesrepublik Deutschland), B 136/21860, 222 83105 Fa 3 NA 2 Ed. 6.

문서 번호 35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의 이주-콜 수상과 아다메쉬 총리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아다메쉬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콜 수상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아다메쉬 총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에 관해 전화로 논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전화통화에서 콜 수상은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대해 아다메쉬 총리는 현재 서독대사관 부지에 약 6,000명 그리고 대사관 주변에 있는 약 2,000명, 그 외에 약 3,000명에서 4,000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이 프라하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오늘밤에 이들 10,000여 명의 동독 이탈주민들이 특별열차를 타고 동독 영토를 거쳐서 서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0, 222 - 83105 Fa 3 NA 2, Band 6

문서 번호 36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수상청장 자이터스와 뒤스베르크 국장의 보고서

1989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뒤스베르크,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자이터스 수상청장과 뒤스베르크 국장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의 이주 문제에 관한 협상 경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이 문

서를 통해 1989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본에 있는 동독 상주대표부 대표 호스트 노이바우어와 연방수상청이 어떻게 협상하였는지 자세히 볼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329, 221 – 35016 Ve 40 NA 1

문서 번호 37

동독 지도부 교체-뒤스베르크 국장이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

1989년 10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뒤스베르크,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수상청에서 독일정책을 담당하던 뒤스베르크 국장이 에리히 호네커에서 에곤 크렌츠로 동독의 지도부가 교체된 것과 관련하여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의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문제에 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며 나아가 경제정책과 정보정책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호네커가 자의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었던 귄터 미탁과 요아힘 헤르만도 자의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크렌츠가 중앙위원회 위원 닷구의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

그날 저녁에 크렌츠는 일종의 정부 성명과 같은 공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서 크렌츠는 동독 지도부가 상황 판단에서 큰 실수를 범했음을 시인하였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할 어떤 소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통당이 동독의 유일한 권력기구라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크렌츠는 이 연설에서 서독과의 관계가 동독 외교정책의 중점적인 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소련과의 관계가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뒤스베르크 국장은 동독의 지도부 교체가 현재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크렌츠가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사통당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295, 221 – 35002 Pe 3 Band 5

문서 번호 38

서독 헬무트 콜 수상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에곤 크렌츠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0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 서독 수상, 에곤 크렌츠 사통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위원회 위원장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0월 동독 공산당의 지도부가 교체된 후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10월 18일에 새로 선출된 사통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곤 크렌츠와 통화한 내용이다. 콜 수상은 먼저 크렌츠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둘이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 수상청 청장이자 정무장관인 루돌프 자이터스가 동독의 외무 장관인 오스카 피셔와 직접 교류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화통화에서 콜 수상은 크렌츠가 변혁을 선포한 것을 언급했다. 양국은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더욱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크렌츠는 여행 자유화의 도입을 언급하고 서독과의 협력에서 단순한 '실무적인 조치' 이상의 결단에 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서로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출처_ Bundesarchiv, Abteilung B (Bundesrepublik Deutschland), DY 30, IV2/2 039, 328, Blatt 28-32

문서 번호 39

프라하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 문제-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가 수상청장에 보낸 보고

1989년 11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대표 베어틀레 차관이 에곤 크렌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에서 크렌츠와 나눈 대화와 외무 장관 피셔와 외무 차관 크롤리코프스키와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곤 크렌츠와의 만남에서 당서기로 추대된 것에 대한 서독 연방정부 축하인사와 함께 프라하에 있는 서독대사관의 심각한 상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방정부의 대표와 만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5,000여 명의 동독 이탈주민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프라하 주

재 동독대사관이 이주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동독 외무 장관 피셔가 동독대사관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베어틀레는 크렌츠에게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의 수리를 마치고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이며 동독 당국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연이어 크롤리코프스키 외무 차관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가 베어틀레 본인에게 동독 이탈 주민들에게 먼저 동독 당국에 이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주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여 귀가를 종용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베어틀레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먼저 대사관에 들어와 있는 동독 이탈주민 전원을 서독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동독이 그에 필요한 서류를 차후에 발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크롤리코프스키는 동독 이탈주민들 중에 극소수만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프라하 주재 동독대사관의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건 이상의 이주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가 와서 베어틀레 차관은 그에게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에 있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동독대사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임시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1861, 222 – 83105 Fa 3 NA 2, Band 7

문서 번호 40

연방정부–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융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

1989년 11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융,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보부 국장이 연방수상에게 1989년 11월 당시 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에 관해 얻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종의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대규모의 동독 이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동독 주민들의 분위기가 경악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동독 이탈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독 지도부가 주민을 잃어버렸다고 고소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대규모 탈출사태로 변한 이후에는 국가의 장래에 대한 염려와 함께 무력한 지도부에 대한 분노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던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동독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대규모 동독 이탈로 인한 충격 외에도 라이프치히와 다른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월요일의 시위와 변화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주민들이 결성한 노이에스 포럼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동독 이탈주민들이 동독을 떠나겠다고 외친 것과 반대로 우리는 이곳에 남겠다고 외치면서 남아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602 - 35001 (78) De 2/64/89, Band 29, Bl. 61-63

문서 번호 41

독일정책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책회의

1989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독성 장관 빌름스, 차관 프리스니츠, 외무 차관 쥬드호프, 경제 차관 뷰르젠, 재무 차관 클렘, 교통 차관 크니텔, 체신 차관 플로리안,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 베어틀레,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서 저항운동이 고조되던 1989년 11월 6일에 서독 연방정부 내에서 열린 일종의 대책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의 서두에 새로이 선출된 동독 정부가 본질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서독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서독이 동독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는 요구가 전달되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에게 서독이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동독과의 협력이 동독 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통해 개혁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조건부로 동독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조건은 동독이 교역을 방해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진보적 합작기업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서독은 판매 자문, 경영 훈련 외에 연락소 설치와 같이 기존의 교역정책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동독에 전하기로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169, 221 - 14223 Sta 8 Band 3

문서 번호 42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1989년 11월 폴란드 공식 방문

1990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연방외무 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 장관 우르줄라 레어, 연방식량·농림부 장관 아그나츠 키흘레,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장관 클라우스 퇩퍼, 연방특임관 겸 연방공보부 장관 한스 클라인,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레흐 바웬사

내용_

콜 수상은 연방정부의 많은 요인들과 함께 폴란드의 문화 및 경제 부문의 대표자 70인과 회동을 가졌다. 그곳에서 콜 수상은 마조비에츠키 총리 및 폴란드 연대 자유노조 위원장 바웬사와 회담을 하였다. 방문 기간 중 아우슈비츠 및 비르케나우 집단수용소 방문 및 크라이스아우 박람회 참관이 계획되었다. 또한 방문 기간 중 9개 협정에 서명이 될 예정이고 그 외 특히 폴란드공화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한 더 긴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 성명이 준비될 것이다. 양측의 쟁점 사항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확정하는 오더-나이세강 경계선 문제 및 나치 집권기 중 폴란드 강제 노역자의 보상청구권 문제이다.

출처_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0.11.1989, Nr. 262/45 D, S. 1-2

문서 번호 43

연방정부 재무 장관 바이겔이 콜 수상에게 보낸 동독을 위한 지원조치에 관한 보고서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재무 장관 바이겔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재무 장관 테오도르 바이겔이 어떤 방법으로 동독, 특히 동독 주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이 현재 동독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 외에 나아가 동독 주민의 삶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 그를 바탕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보증 또는 세금감면 그리고 재건은행과 같은 연방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서독의 기업을 위한 다양한 투자유도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이겔 재무 장관은 경제부가 주도하는 부처 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일은 연방정부 경제부의 폰뷰트젠 차관이 맡게 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6444, 422 – 52602 Bu 48 Band 2

문서 번호 44

베를린 장벽 개방에 관해 고르바초프가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헬무트 콜 서독 연방정부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열린 것과 관련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이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지도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서독의 일부 세력들이 동독의 현재 상황을 악용해서 동독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 수상은 이런 집단들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출처_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BA, DY 30/IV 2/2.039/319, Blatt 15 f.

문서 번호 45

베를린 장벽 개방에 관한 헬무트 콜 수상과 에곤 크렌츠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사통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에곤 크렌츠,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개방 직후 동서독의 지도자 간에 있었던 전화통화에 관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콜 수상은 크렌츠에게 동서독 간의 국경이 개방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동독 주민들이 대량으로 동독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서독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콜 수상은 앞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

급했다. 나아가 크렌츠와 조만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수상청장 자이터스가 동독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콜 수상 본인은 동베를린이 아닌 동독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한편 크렌츠가 동베를린을 동독의 수도라고 명시했지만 콜 수상은 그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콜 수상은 앞으로 동독의 총리가 될 인물을 만나기를 원했다. 크렌츠 또한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호적이며 실무 중심의 논의가 가능하기를 바랬다. 그는 동서독 간의 국경은 유지하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원활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동독 지도부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들은 현재 교회를 포함한 동독 내의 모든 사회세력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독일통일 문제는 현재 동독 정부의 현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콜 수상은 이와 관련해 동서독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문제가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크렌츠는 동독이 서독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해 언급했다. 자이터스 수상청장이 동독을 방문할 것이라는 제안도 환영했다.

출처_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BA, DY 30/IV 2/2.039/328, Blatt 55-61

문서 번호 46

동독의 변화에 관한 고르바초프와 헬무트 콜 간의 전화통화

1989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헬무트 콜 서독 연방정부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간의 전화통화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에게 서독 내에서 동독에서 시작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개혁은 역동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콜 수상은 동독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지난 며칠간 서독을 방문한 동독 주민의 절대다수가 지속적으로 서독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독 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은 서독 정부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또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콜 수상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측 가능한 틀 내에서 행동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_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BA, DY 30/IV 2/2.039/3198, Blatt 17-19

문서 번호 47

동독과 동베를린에서 온 방문 여행자들을 위한 지출-연방재무 장관이 연방회의에 제출한 문서

1989년 1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의장 발터 몸퍼, 연방재무부 차관 카스텐스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부가 1990년 11월 장벽 붕괴 직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대거 방문하면서 발생한 추가지출과 관련해 연방회의에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만프레드 카스텐스 연방재무 차관은 발터 몸퍼 연방회의 의장에게 1990년에 동독과의 보건협정, 동독 및 동베를린, 동유럽지역으로부터 서독을 방문하는 여행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 6.9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추가 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한 방문객의 수로 인해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비용은 1989년도 연방 회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비용을 미리 지출했고, 그들은 연방정부에게 비용 보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647/89

문서 번호 48

독일문제 및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3개 서방 전승국과 소련의 입장

1989년 1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내용_

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터스는 콜 수상에게 1989년 11월 18일의 파리 유럽공동체 국가 및 정부수반 회담 및 외무 장관 특별 회담의 준비를 위해 독일문제 및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3개 서방 전승국과 소련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개 서방 전승국의 재통일에 대한 입장들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재통일과정이 완만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민주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그중 가장 명확한 태도로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도 전승국 4개국이 독일에 대해 갖는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입장은 이보다 유보적이다. 그들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렵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영국은 프랑스보다도 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처 영국 수상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외무 장관 허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그것이 독일인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통일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만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을 뿐이다.
서방의 모든 국가들은 동독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환영하며 서독 연방정부의 대처하는 방식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독일통일은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군사조약이 해소된 이후에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Absorbierung)'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동독의 개혁과정을 지원하여, 그것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30915, 211 – 68000 Gi 46, Anlage B (212-35400 De 29 Band 1)

문서 번호 49

동서독 간의 경제협력

1989년 1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가 동독의 에곤 크렌츠 국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스 모드로우 수상과 만난 후에 연방정부 경제부가 작성한 것으로 동독과 서독 간의 장래 경제협력에 관한 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의 개혁을 지원하고자 한다. 동독 경제가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인트 벤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자유화 조치가 필요하며 동독 정부가 실천에 옮겨야 할 조치의 목록을 전달할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 환경,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하자는 크렌츠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5/21329, 221 – 35016 Ve 40 NA. 1, Anlage A

문서 번호 50

동독의 에곤 크렌츠, 한스 모드로우와 서독의 자이터스 수상청장 간에 열린 동베를린 회담

1989년 11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자이터스 연방수상청 청장,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에곤 크렌츠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베를린에서 서독 수상청장이 동독의 크렌츠 당서기와 새로 선출된 한스 모드로우 총리와 만나서 회담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렌츠 당서기와 모드로우 총리는 동독의 정치개혁이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 초까지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도 1990년 가을에서 1991년 초에 열릴 예정이다.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와 합의하에 양측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양국 간의 합작의 형태로 서독의 자본투자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기를 원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서독의 지원과 도움을 얻는 것이다. 크렌츠는 내독관계를 평화를 위한 책임공동체에서 계약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언급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1989년 11월 24일이면 동서독 간의 국경에 총 93개소의 통과소가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자이터스 서독 연방수상청장은 서독의 콜 수상이 서독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독 측도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이터스 청장은 나아가 여행 자유, 개혁, 경제, 환경, 우편교류의 보장을 위한 총괄금, 교통, 신문교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언급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136/ 21329, 211 – 35016 Ve 40 NA 1

문서 번호 51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 연방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헬무트 콜 수상이 동독의 개혁과 관련해 발표한 10개 조항이다:

1.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에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 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질서를 고려해 내독 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
7.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 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_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9.11.1989

문서 번호 52

10개항 계획에 대한 외국의 반응--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8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내용_

이 문서는 텔칙 차관보가 콜 수상이 발표한 10개항 계획에 대한 외국의 반응을 정리해서 수상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는 독일통일에 있어 미국에 중요한 4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자기 결정권, 나토에의 잔류 및 유럽 통합 그리고 국경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대처 영국 수상은 곤혹스러움을 표출하면서 과거의 기본 조건들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통일에 대한 완전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독일통일 추구 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럽 통합이라는 맥락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사회 부문 및 경제·화폐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 결의

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소련 외교부 대변인인 게라시모프는 유럽 내 상황의 불안정화를 우려하였다. 독일이 1937년의 국경 형태로 다시 성립될 경우 콜 수상의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날 것이다. 연방국가로의 통일에는 반대하지만, 국가연합적 구조는 고려해볼 만하다.
이탈리아 측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외무 장관 데 마켈리스는 일부분 소련 측의 입장을 공유하였다. 독일의 문제는 상상력과 혁신의 정신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네덜란드 총리 뤼버르스는 10개항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독일이 독자 행보를 취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스페인은 "독일인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보낸다"고 반응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4500 De 39 Band 1

문서 번호 53

베를린 문제에 대한 헬무트 콜 수상과 발터 몸퍼 서베를린 시장 간의 회담

1989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 연방정부 및 베를린 시정부의 부처 장관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의 헬무트 콜 수상과 서베를린의 발터 몸퍼 시장이 동독의 개혁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대거 서독과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안게 된 특수한 부담에 대해 논의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베를린에게 현재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문제는 동독에서 오는 방문객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베를린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문제와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에서 베를린의 대표가 투표권을 갖는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더욱이 동베를린의 최고인민회의 대표들은 이미 1979년부터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가 구성될 경우 베를린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베를린시와 교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별도로 심의하고 해결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게는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03 S. 578f (zit.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번호 54

모스크바에서의 연방외무 장관 겐셔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대화–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소련 측의 비판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외무 장관 겐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개인 자문역 사글라딘,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블레히,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내용_

서독 겐셔 외무 장관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개혁 정책을 평가하면서 서독이 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그가 말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예로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10개항 계획에 대한 정부 성명은 소련과의 의사 교환 없이 발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콜 수상은 이로써 동독에 지시를 내리고자 하는 것인가?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결정을 주의 깊고도 책임감을 갖고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의 핵심적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동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내일은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를 그렇게 다룰 것인가? 또 나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겐셔 외무 장관의 답변: 서독 연방정부의 정책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된다. 콜 수상의 계획은 통일과정이 장기적이며 또 유럽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제안일 뿐, 최후통첩도, 일방적 지시도 아니다. 그보다 이는 하나의 관점의 제시로서, 동독 측은 이에 가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독이 현재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은 서독 정부가 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10개항 계획 중 특히 동·서독 간 협력을 위한 동독의 민주화라는 전제 조건이 제시된 제3항은 '신하한테 내리는 명령조'이자 '말 그대로의 복수주의'의 표현이며, '유럽적 과정을 무덤에 묻어버리는'식의 문제를 보인다.

겐셔 외무 장관: 서독 연방정부의 입장에 대한 그러한 반응은 정당하지 않다. 유럽 발전을 위한 서독의 기여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서독은 동독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콜 수상의 성명에는 다수의 위험 요소들이 상존한다. 그로 인해 동독 내 사건들의 전개가 인위적으로 가속될 위험이 있다. 이 성명 때문에 상태의 발전 문제가 단지 하나의 선거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신뢰에 기초해야 할 협력이 이로써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겐셔 외무 장관은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을 계속 변호하였으나, 실은 그도 이에 대해 콜 수상의 연방의회 연설에서 처음 접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견해들이 아직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소련과 서독이 현재 '정치권에 매우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55

연방외무 장관 겐셔와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의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대화

1989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외무 장관 겐셔,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모스크바 주재 서독 대사 겸 회담 통역 담당 하르트만

내용_

이 문서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겐셔 외무 장관과 그를 배웅하러 나온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이 공항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역이 정리·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셔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1989년 12월 5일 회담 중에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에 대해 예상외로 심각하게 반응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소련 측이 "최고위급에서 우선 그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동독에 주둔 중인 소련군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거듭 밝혔다. 동독에 주둔 중인 소련군들의 공격적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단서도 있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겐셔와 고르바초프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이미 콜 수상이 고르바초프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고 겐셔 외무 장관이 직접 나서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 일은 이제 지나간 것으로 잊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려 깊지 못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련 지도부 내에서는 과연 겐셔 외무 장관을 이번에 초청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셔 외무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과 그의 올곧음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이라고 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에게 전화로 재차 부탁하기를, 겐셔 외무 장관이 콜 수상에게 들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겐셔 외무 장관은 소련과 서독은 유럽의 안정에 큰 책임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될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78.931 E

문서 번호 56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고려 사항들–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89년 12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내용_

텔칙 차관보는 연방수상 콜에게 소련의 10개항 계획과 관련한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고려 사항들 및 그 배경이 되는 정보들을 보고하였다. '공식적인' 고려 사항들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을 통해 표현된다. '비공식적인' 고려 사항들은 소련 중앙위원회의 국제부의 견해를 말한다. 소련 지도부가 통일문제를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본 문서의 부록에서 소련은 독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동독 내 상황 전개에 대한 소련의 긍정적인 태도와 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동독 내 상황 변화 과정에 대해 소련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기에, 동독에서도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은 서독 정책에도 달려 있다. 소련은 독-독 간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유럽 통합이 헛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유럽 내 평화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독일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다. 그때까지는 서독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조약들(Ostverträge)을 엄격하고도 무제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계약공동체' 제안은 실용주의적이라고 받아들여졌다.

'비공식적인' 고려 사항들에 있어, 동서독 간 관계를 과거의 유물로서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고 있다. 동독은 서독의 계속되는 경제적인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군축을 실행할' 수 있다. 독일문제를 순간적인 정치문제나 선거용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두 독일 국가의 종전까지의 동맹조약 소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소련은 서독이 평화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독일 국가연합의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은 소련의 전 유럽적 통합이라는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련이 독일 국가연합 구상에 대해 거는 조건이라면, 동 독일 국가연합이 타국의 핵시설을 자국 영토 내에 포기하는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21 - 3500 (28) De 26 Band 1, Bl. 1/0 und 2-5

문서 번호 57

서독 수상의 동독 방문을 위한 준비/동독을 위한 경제 지원

1989년 12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의 경제국장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작성한 것으로 자이터스 수상

청장에게 동독과의 경제적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민간 자본과 국가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동독에 투자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헬무트 콜 수상이 1989년 12월에 한스 모드로우 동독 수상과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 자본의 규모가 공공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국가 자본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지불보증하고 재건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동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연방경제부가 주축이 되는 부처 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1990년 1월 중순까지 의결 가능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3 – 30104 De 23

문서 번호 58

콜 수상과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의 서베를린 회담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내용_
헬무트 콜 수상과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는 서베를린에서 동독의 상황과 양독 간의 관계 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콜 수상은 먼저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였다.
베이커 국무 장관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 및 프랑스 측에는 어느 정도 불안함도 존재한다. 베이커 국무 장관은 이날 모드로우 동독 총리도 만날 예정이다.
콜 수상은 현 상황은 매우 주의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발언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지 시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독일 상황의 진전은 유럽의 전체 계획과 함께 가야 하며, 소련을 포함한 각국의 안전보장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콜 수상은 가능한 한 빨리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회동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설령 오는 겨울에 소련에 위기가 닥칠지라도,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소련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독과 미국이 소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상황을 무조건 안정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도 서독이 지원을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동독에서는 1990년 초여름에 자유선거가 열릴 것으로 콜 수상은 예상하였다. 동독지역에서 미래에 정당들이 어떠한 구조를 형성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동서독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계약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동독 경제는 민간 경제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건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공동의 체제를 만드는 것은 그때 가능할 것이다.
오더-나이세강 국경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분명한 조약들이 존재한다. 국경 문제가 실제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베이커 국무 장관은 미국은 유럽이 원하는 한에 있어 유럽에서의 힘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나토에는 이제 정치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콜 총리는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미래에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0105 A5 Am 7

문서 번호 59

연방장관 자이터스와 서방 전승 3개국 대사들의 본(Bonn) 회담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터스, 미국 대사 월터스,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 영국 대사 몰러비, 외무부 차관 쥬드호프

내용_
프랑스 대사 부아드보와 영국 대사 몰러비 및 미국 대사 월터스는 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루돌프 자이터스와의 회동에서 1989년 12월 11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승 4개국의 회담 결과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다.
그 회담에서 소련 대사 코췌마소프는 소련의 정책에 대해 매우 긴 설명을 하였다. 베를린 상황에 관련한 연합군 측 제안들과 관련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 통행은 여기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코췌마소프 대사는 동독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10개항 계획에 대해 언급을 했다. 전제 조건이 붙은 식으로 서독이 동독에 주는 원조는 내정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몰러비 영국 대사는 항공 통행에 대한 더 자세한 제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이에 관해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1, 221 - 34900 Spr 2 Band 1

문서 번호 60

동독을 위한 서독의 재정지원 조치

1989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의 경제국장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서독이 동독에게 주는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에는 이미 17억 7,700만 마르크가 그리고 그다음 해까지 포함하면 30억 8,000만 마르크의 재정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조치가 계획되었다:
1. 내독교역의 틀에서 제공하던 재정보증 규모를 10억 5,000만 마르크에서 60억 마르크로 증액
2. 유럽부흥 프로그램(마샬플랜)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건은행을 통한 차관 프로그램의 규모를 80억 마르크 증액
3. 외채상환을 위해 동독이 20억 마르크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증
구체적인 내용에 협의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이 1989년 12월 14일에 동독의 경제 장관 크리스타 루프트, 무역성 장관 바일과 회담을 갖는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3 - 30104 De 23

문서 번호 61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독일정책의 목표

1989년 1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

내용_

연방수상 헬무트 콜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에 대한 다음 서신에서 소련이 수차례에 걸쳐 국제적으로 비판했었던 연방정부의 독일정책에 대해 해명하였다.
콜 수상은 기존의 소련과의 조약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의 변화가 유럽 내 불안정화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소련 측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나토 측의 입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불안정한 상황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제안과는 달리 동독이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이로부터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뒤에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10개항 계획처럼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야만 했다는 것이 콜 수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도 정해진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이 아닌

데, 여기에 종종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 전 유럽적 틀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동독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또 서독 내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될 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면 동-서 관계, 특히 소련과 미국 간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유럽 통합이 진전되어야 하고, 군축 과정이 촉진되어야 하며, 나토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고 또 헬싱키 회의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정책이 성공하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계속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서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동독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콜 수상은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2 Band 1

문서 번호 62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콜 수상에 대한 서신-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안

1989년 12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수상청 국장 하르트만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서신 및 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콜 연방수상에게 제출하였다.
서신의 주된 목적은 콜 수상이 드레스덴을 방문하기 직전에 소련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콜 수상의 10개항 계획이 '최후통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헬싱키 협정 최종 문서나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에 성립되었던 1989년 6월 13일의 본(Bonn) 공동 성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독 내 사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서독이 전후 국경을 준수할 것이며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동독의 내적 안정을 바란다는 겐셔 외무 장관의 발언들을 중시한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1989년 12월 9일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연설에서 소련은 동독에 대한 내정 간섭을 무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래는 역사와 전 유럽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르트만 국장은 10개항 계획을 거론하는 이 서신의 논조가 강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련은 동독 내 변화의 속도 및 동서독 간 통일과정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2 Band 1

문서 번호 63

헬무트 콜 수상과 동독 야당 및 반체제 대표자 간의 만남-드레스덴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외교안보국장 호르스트 텔칙, 연방내독성 장관 빌름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블륌, 동독 반체제 및 야당 대표들(독일기사당, 민주주의 지금, 노이에스 포럼, 20인 그룹)

내용_

이 문서는 헬무트 콜 수상의 드레스덴 방문 기간 동안에 동독의 반체제 그룹 대표들과 만나 회의한 것에 대한 보고서로, 수상실의 프릭 보좌관이 작성했다. 이 회의에는 사민당의 대표도 초대되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들은 동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대한 평가, 독일문제와 관련해 콜 수상이 앞으로 취할 정책, 안보상황에 관한 평가 등이었다.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진지하고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콜 수상이 발표한 10개 항목 중에 9개 조항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환경 보호, 교통계획, 지역 간의 협력, 도시정비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양측이 즉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고 전했다. 자유선거 후에는 연방제 구조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는 야당 및 반체제 그룹의 대표자들도 이런 논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콜 수상이 언급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신속하게 동독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서독 간의 화폐교환율을 1:3으로 결정한 것이 첫 단계이다. 그러나 서독이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아저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독 사회의 질서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콜 수상은 이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동독에 군부독재의 위험은 없다고 보았다.

동독의 야당과 반체제 그룹이 원할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조직적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콘라드-아데나워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콜 수상은 언급했다. 아직은 어떤 특정한 그룹과 협력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며, 그와 관련된 결정은 1990년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내려질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578, 221 - 35014 Ge 31 Band 2

문서 번호 64

독일정책에 대한 연방회의 의결-논의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서독의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회의에서 독일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연방회의는 각 연방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관이다. 이 회의에서는 연방주 대표들이 독일정책과 관련해 제출된 세 개의 제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세 개의 제안은 A안) 베를린,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를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B안)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 C안) 함부르크 등이다. 이 회의에서 각 정당 또는 정치가들이 발표한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헬무트 콜 수상은 198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10개 조항-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독일정책과 관련되어 '인위적으로 시간적인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연방제적 구조를 만드는 문제도 동독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동독 정부를 구성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 체신, 환경, 교통, 지역협력, 문화, 관광, 재산문제와 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원회와 실무그룹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발터 몸퍼(사민당) 베를린 시장은 "양쪽이 계약공동체를 구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0년이 넘는 분단 기간 동안에 형성된 구조를 단숨에 아무런 문제없이 하나로 통합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알브레히트(기민당) 니더작센 주지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방회의에서 합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독일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고 아헨에서 오더강의 프랑크푸르트까지 하나의 통일된 독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제안에 대한 심의는 내독관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출처_ Bundesrat Plenarprotokoll 608/1989

문서 번호 65

서독과 서베를린 거주 주민의 동독 여행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과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여행을 새롭게 규정한 시행령이다. 이 법을 통해 서독 주민은 비자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동독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이 그들에게 치외법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89, Teil I, Nr. 26, S. 271-272

문서 번호 66

이스라엘 샤미르 수상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과 관련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답신-텔아비브 주재 서독대사관 전문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샤미르,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이스라엘 주재 서독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로 베를린 장벽붕괴 및 독일통일에 관한 이스라엘 총리 샤미르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답신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답신에서 샤미르 총리는 최근 동유럽과 독일에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샤미르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환영하면서, 그 이후의 변화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서의 경험에서 우러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즉, 현재 독일을 가득 채운 통일을 향한 격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독일에서 환호하는 군중의 모습에서 1930년대의 군중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떠올렸음을 적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장기간 쌓아온 이스라엘과 서독 간의 협력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67

동독 주민들의 여론–콜 수상에게 제출된 보고서

날짜 미상–1989년~1990년 겨울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수상청의 자이터스 청장이 동독의 여론과 동독 기민당의 현황에 관해 정리해서 콜 수상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정치 지도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동독 주민들은 지도부가 부정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를 요구한다. 지금 지도부 내에는 "누구든 각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주민들의 주된 관심은 화폐통합 문제이다. 사회개혁과 저항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들은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사회주의통일당이 지루하게 끌어서 개혁세력을 피곤하게 만드는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동독 기민당의 당수 로타 드 메지에르는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개혁 정책은 당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독 기민당의 청소년협회는 당지도부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당내에서는 1990년 늦여름에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열리고, 기민당이 15~20% 정도 득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Band 1

문서 번호 68

서독과 동독 간의 '협력과 선린 관계를 위한 조약'–수상청의 설명–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1월 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서독 연방 외무부 21실 회익 실장, 내무부 국장 쉬퍼, 내독부 소속 만케, 법무부 국장 하이데,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내용_

이 문서는 콜 수상이 1989년 12월 19일과 20일 드레스덴 방문 중에 약속된 동독과의 조약이 가질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수상청에서 열린 내부회의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체결할 조약의 초안은 내독부가 준비하였다. 수상청에서 독일정책을 담당하는 20국의 뒤스베르크 국장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상이한 이유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독은 그것을 국가연합을 향한 진전으로 보고, 동독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병존하는 두 나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 조약이 동독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 조약을 통해 1972년에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 및 그에 의거한 협정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조약은 내용적으로는 중립적이고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들에 맞추어져야만 한다.

서독 연방정부의 내독부가 제안한 전문 속에 포함된 '자유통행', '거주·이전의 자유'나 '모든 독일인', '독일의 두 국가'와 같은 표현 등에 동독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위원회(Kommission für regionale und kommunale Zusammenarbeit)'를 넘어서는 국가연합 구조에 대한 다른 규정을 조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외무부는 현재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이 조약을 비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0 E

문서 번호 69

동독의 화폐와 경제 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 차관 폰 뷰어젠, 재무 차관 쾰러, 노동사회부 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뒤스베르크 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쾰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와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관해 평가하기 위해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참가자들이 먼저 동독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개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고 덜 광범위하고 철저하지 못하게'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하게 예외 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년 당시 연방정부 재무 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는(그는 재무 차관에서 물러난 후 세계은행 총재직을 역임하고 연방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런 원인은 동독 지도부가 '가능하면 적은 규모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서독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반체제 그룹 중에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

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방식의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투자보호 협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난받았다. 이 협정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투자 한도가 전체 자본규모의 49%이며, 조인트 벤처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은 점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동독 재무 체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적 개혁 이후 기초식량에 대한 가격통제가 해제되면 재무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동독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문서 번호 70

화폐통합으로 가기 위한 10개 조항

1990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독관계 과장 틸로 자라친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당시 서독 연방정부 재무부의 국장으로 내독관계와 화폐경제통합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틸로 자라친이 작성한 것으로 1994년에 연방재무 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발표한 독일통일에 대한 회고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2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 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 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_ Waigel, Theo/Schell, Manfred. 1994.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zum Kaukasus, S. 174-183

문서 번호 71

동독 주민의 이주에 관한 정보수집-서독 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의 녹색당이 동독과 동유럽 다른 국가로부터 이주해 오는 독일인과 동독으로부터 오는 방문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질문한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내무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헌법수호청에서 간첩방지를 위한 ADOS(동독 업무자료)를 수집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와 관련해서 헌법수호청이 새로운 자료를 모으거나 필요한 자료의 저장을 위해 기존의 데이터가 폐기된 것은 없다. ADOS는 궁극적으로 중단될 것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연방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구체적인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헌법수호청이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동독으로부터 오는 이주자들의 경우 이제는 최종적인 거주자와 고용주에 관해서만 질문한다. 그러나 동유럽 다른 국가로부터 오는 독일계 이주자들은 자신이 독일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6222

문서 번호 72

독일문제와 유럽의 책임-콜 수상의 파리 연설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서독, 동독, 중·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바르샤바 조약기구,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헬싱키 회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내용_

1990년 1월에 헬무트 콜 수상은 파리에서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독일문제'와 그것이 유럽 전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설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 덕분에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및 유럽공동체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공동체의 통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럽공동체는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노력을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콜 수상은 나아가 연방정부의 독일통일에 대한 10개항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통일을 준비하게 될 공동의 국가연합적 기관들을 설립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또한 콜 수상은 특히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과 관련하여 그것이 앞으로 침해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출처_ Kohl, Helmut. 1990. Reden un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Bon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167-184.

문서 번호 73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를 위한 협약-동독 정부의 초안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동서독 간의 선린우호조약의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 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ativkommission)를 설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측은 군비 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시장 경제의 원칙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서독은 동독의 유럽공동체(EG) 회원국 가입 신청을 지원한다.
- 본 협약은 (서)베를린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45A, S. 713-716.

문서 번호 74

양독 간 영사업무를 개시할 경우의 국적법적 측면-수상청에 제출한 서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1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210과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담당) 소속 브란덴부르크, 수상청, 내독부,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

내용_

서독 수상청은 동독의 요청에 따라 양독 간 대표부를 설치하여 영사업무를 개시할 경우 1963년 4월 24일의 '영사 관계에 대한 비엔나 조약'을 고려한 국적법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서독 외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재국의 시민'이라는 표현은 영사 관계에 대한 비엔나 조약 5항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독 외무부는 '서독의 공식적 인적증명의 소지자'라고 바꿔 표현하는 것이 서베를린 시민을 지칭하는 데 더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독의 법적 견해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 인정되었는데, 지금 서독과 동독 간에 영사 관계에 대한 비엔나 조약의 일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외무부의 입장이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9 E

문서 번호 75

동서독 간의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정부가 작성한 동서독 간의 선린우호 조약의 초안이다.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와 상호 관계에 대한 8개 조항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의한다고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 경제 전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 제도, 노동 및 복지 제도 분야는 계약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공동 위원회의 설립: 경제 관계 강화 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 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 교환 개선 위원회, 환경 보호 위원회; 법제도 위원회; 노동 복지 위원회; 문화 위원회; 과학 기술 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 사업 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 위원회; 언론 위원회
-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 위원회 구성
-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국경 위원회
- 공동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 내 양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년 주기로 회동한다.
- (서)베를린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39, S. 695.

문서 번호 76

서독 연방의회 독일정책 토론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연방의회의 여러 당들이 현재 진행되는 동서독 간의 관계 발전과 관련해 독일정책에 관해 토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토론된 사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독과의 협상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
2. 연방정부의 독일정책
3. 동서독 간의 협력
4. 폴란드 서쪽 국경선의 보장 문제
5. 오더-나이세강을 폴란드 서쪽 국경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문제

이 회의의 모두 발언은 수상청장 자이터스가 했다. 이후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 회의에서 최대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동독의 위성정당들을 사통당의 동조자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정상적인 정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서독의 군축정책을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이며,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승인하는 문제였다.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녹색당은 대안으로 '급진 민주주의적인 두 독일 공화국의 친환경적 연방'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88

문서 번호 77

서독 연방수상청 청장실에서 열린 독일정책에 관한 회의

1990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자이터스 수상청장, 빌름스 내무 장관, 프레스니츠 내무 차관, 쥬드호프 외무 차관, 폰 뷰어젠 경제 차관, 클렘 재무 차관, 크니텔 교통부 차관, 포어스턴 플로리안 농림식품영양부 차관,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 대표 베어틀레 차관, 연방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1월 25일로 정해진 서독 연방수상청 청장 자이터스의 동베를린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수상청 내부에서 열린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폰 뷰어젠은 1990년 1월 23일에 동서독 경제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동독 측에서 투자법, 사업자율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했으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독 내부의 상황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동독의 물자부족으로 인해 동독 주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만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자이터스는 강조했다.

화폐통합과 관련된 문제도 논의되었다. 클렘 차관은 화폐통합은 하나의 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제는 비공개로 작은 써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국가조약을 위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다른 조치들은 1990년 5월 6일 이후가 되어서야 최

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사법원조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동독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클링겔 차관은 동독이 붕괴할 경우 또는 동독 측에서 즉각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42 S. 701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번호 78

연방수상청 요하네스 루데비히 경제국장이 동서독 경제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문서

1990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경제국장 요하네스 루데비히,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경제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의 경제국장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동서독 경제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동독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이 국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투자에 관한 법
- 지사 설립과 영업의 자유
- 상공회의소의 회칙
- 조세법
- 대외무역의 독점 폐지
- 새로운 기업을 위한 물자공급의 문제점
- 은행 및 금융기관
- 유럽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차관을 동독에서 이용하는 것
- 화폐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43 S. 703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번호 79

동독 정치발전 과정에 반체제 그룹과 야당이 참여하는 문제-동베를린에서 열린 자이터스 수상청장과 원탁회의 대표자들 간의 회의

1990년 1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자이터스 청장, 동독 원탁회의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가 1990년 1월 25일 동베를린에서 동독의 원탁회의 대표들과 만나서 논의한 것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는 사민당의 대표도 초청되었지만 서독 사민당이 중용한 정치인이었던 헤르버트 베너의 장례식이 본에서 열려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과도기에 야권이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에 관한 사전협의에도 야권이 참여할 수 있다.

자이터스 청장은 현재 수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은 양쪽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 대표자들도 그들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독에서 흘러들어오는 돈이 동독의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집세를 비롯한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조직된 '민주주의 지금' 그룹의 대표는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고, 그를 상환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나아가 서독의 정당들이 벌써부터 동독의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복잡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좌파연합은 시장경제의 질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288/ 116, 11 - 35004 La 4 Band 8

문서 번호 80

독-소 간 관계의 현황 및 전망-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내용_

텔칙 국장은 콜 수상에게 서독과 소련 관계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최근 콜 수상의 1988년 10월 모스크바 방문 및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1989년도 6월 본

방문 등의 상호 방문 덕에 양국 간 관계는 소폭 개선되었다. 협정 체결 및 기업 간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서독에 대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기대가 모두 충족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
동독 및 소련 내 국내정치의 변화 때문에 민감한 정치심리학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안정 및 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였고, 페레스트로이카에 있어 난점이 노출되었으며,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서독의 입장에서는 독일문제와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정책, 10개항 계획 및 독일계 러시아 국민 문제와 관련하여, 또한 그 외에도 유럽 내 안전보장 및 군축 정책과 관련해서 소련과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 및 역내 해상통행 및 1990년도 베를린 시의원 직접 선거와 같이 실행 가능한 베를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1989년도에 서독과 소련 간의 무역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300억 마르크 규모의 여신을 집행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소련 행정의 관료주의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양국 간 군사적 관계는 동맹국이 아닌 국가 간에 가능한 최대의 수준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구축된 상태이다.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호이해를 위해 문화교류가 중요하지만, 특히 서독 연방주들의 동의가 모두 확보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협의는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서독의 문화원조와 관련된 주된 주제는 주로 독일계 러시아 국민과 관련된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S 25 So 28 Band 4

문서 번호 81

전 유럽적 틀에서 본 독일정책-하르트만 국장의 기록

1990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에는 서독 외무무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 내 1990년도 3월 선거 이후 전 유럽적 틀에서 본 독일정책과 관련한 고려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3가지 중점 사항이 논의되었다.
1. 원칙적 고려 사항: 동독의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 동독에서 서독과 국가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서독이 정책 방향을

공표하는 것이 동독 내 상황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동서독 관계: 서독과 동독 내에 점점 더 민족적 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경우 연방주의적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공동체는 경우에 따라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체결이 필요하다. 전문에는 통일에 대한 의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법치주의적 질서 등이 규정되고, 공동 정부 구성, 의회 측 자문회의 및 각 분야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규정들 및 경제·화폐통합 및 사회 체제의 변화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법령의 균등화 및 교통·통신 체계 간의 조화 및 폴란드 서부 국경 문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소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약 내에 두 독일 국가의 독일 연방 소속 여부나 전승 4개국의 권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990년 12월 2일로 예정된 다음 독일 연방의회 선거일 이전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독일 유권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좋을 것이다.
3. 유럽 및 국제 분야: 서독은 계속 유럽공동체의 정치·경제적 통합에 공헌하겠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1990년에 이미 유럽공동체와 동독 간의 무역 및 협력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헬싱키 협정 정상 회담이 같은 해인 1990년 말까지 개최되어 독일문제를 전 유럽적 틀 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소련은 1990년 1월에 전승 4개국 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연방정부는 관계국 6자 회담을 지지하며, 여기에 헬싱키 협정 대표자가 독일문제의 논의를 위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전 유럽에 있어 소련에 대응하는 무게 중심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에 대해 모든 외국 주둔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방향이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 남아야 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1 (aus digitaler Edition)

문서 번호 82

마조비에츠키 총리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폴란드 총리 마조비에츠키

내용_
이 문서는 폴란드의 마조비에츠키 총리가 서독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폴란드의 개혁 과정과 체제 변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콜 수상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마조비에츠키 총리는 서독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이미 시행되었던 것처럼 5억 서독 마르크 분의 신용대출을 더 나은 이자 조건의 서독 국채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4, S. 754f (aus digitaler Edition)

문서 번호 83

한스 모드로우 총리+S492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개혁기 총리 한스 모드로우가 발표한 통일방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 사회의 변혁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 독일통일은 유럽 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모드로우는 독일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1단계: 국가연방제의 요소를 지닌 선린 계약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2단계: 공동 조직과 기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3단계: 단일화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11를 둔 연방(Föd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출처_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 (Herausgegeben von der Hauptabteilung Presse des Ministeriums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문서 번호 84

독일 경제 통일을 위한 조치-기본 구상

1990년 2월 2일

담당자 / 기관_ 미하엘 메르테스 실장, 노베르트 프릴 52그룹 팀장, 클라우스 고토 51 그룹 팀장, 요하네스 루데비히 국장, 지그하르트 네링 실장, 텔칙 실장, 아커만 실장, 한츠 마르틴 52그룹 담당자, 헬무트 콜 연방총리, 연방은행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수상청에서 작성한 경제적 통일을 위한 기본 구상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목표: '독일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적 균등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수반한 경쟁을 통한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 공동 조치: 공동 화폐로서의 서독 마르크 즉각 도입, 연방 은행은 동독의 화폐 가치 안정을 책임진다.
- 서독 측의 조치: 동독에 대한 단기 지원 프로그램(예: 의료제도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중장기 동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5년에 걸쳐 수백억 마르크 지원: 원거리 통신망, 철도, 도로망의 현대화 및 확대, 에너지 공급 구조 개편 및 재조직), 서독의 기존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동독 기업에까지 확대, 중소기업을 비롯한 동독 내 기업 투자를 위해 재건은행(KfW) 측에 (수백억에 달하는) 신용 자금 조달
- 동독 측의 조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신속히 전환, 연금과 수입에 대한 사회적 보장/경쟁력 있는 사회 보험 시스템의 확대, 서독의 환경 수준을 단계별로 동독에 적용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7B, S. 752-753.

문서 번호 85

콜 수상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간의 회담-동독의 현황

1990년 2월 3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 수상,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총리와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 간에 열린 회담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드로우 총리는 격변하고 있는 동독의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동독은 현재 국가보위부의 통제 기능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업무는 서독의 과제가 아니라 동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모드로우는 나아가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기는 것이 어떤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드로우는 동독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동독의 농민들은 1945/1946년에 동독에서 실행된 토지개혁을 통해 발생한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58 S. 753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번호 86

지역 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위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협의

1990년 2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정부, 서독 정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에 동서독 정상이 만나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는 다음의 내용에 합의했다:

1. 지역 협력을 위한 동서독 공동 정부위원회를 구성한다(이하 위원회). 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두 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양 대표단의 단장은 양 정부가 각각 위임한 차관이다.
3. 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회동한다.
4. 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벗어나는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사안을 중점 관리한다.

특별 중점 관리 사안은 다음과 같다:

a) 지역 발전
b) 환경 보호
c) 지역 경제 계획 지원
d) 교통 및 통신 분야
e) 여행 및 관광업
f) 에너지 분야

g) 노동 및 복지 분야
h) 문화, 여가, 스포츠
i) 재난 및 재해 구조
5. 위원회는 양측 정부에 전달할 권고 사항을 수립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00A, 200B (Anlage), 903-905.

문서 번호 87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1990년 2월 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재무부(주도), 동독 재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과 서독의 지역 간의 협력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정부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입각하여 공동 정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되, 본 위원회는 2개의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회동하는 것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베를린, 뤼베커 부흐트, 엘버레기온, 하르크, 서부 튜링겐/헤센 베르크란트, 중부 튜링겐/프랑켄 등. 본 사업의 주요 핵심 영역은 지역발전, 환경 및 자연 보호, 교통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 노동문제 및 사회문제 그리고 관광 등이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주정부를 상대로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협정 초안을 마련토록 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und Daniel Hofman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1989/90: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Nr. 200A, S. 901 - 902

문서 번호 88

1990년 2월 7일에 개최된 내각회의를 위해 연방수상실에서 작성한 회의 자료

1990년 2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자이터스 청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수상실에서 내각회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이다. 이 회의는 동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독일문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은 지난 몇 주 동안에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통일이 핵심적인 주제로 발전했다. 동독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독일통일을 최종적인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한스 모드로우(Modrow) 총리 또한 통일에 대한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독일통일을 자신의 목표로 정하고 2월 1일에 '독일통일로 가기 위한 방안(Konzeption für den Weg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을 제안했다.

출처_ Bundeskanzleramt: 136120170, 221-14470 Ka 1 Bd. I.

문서 번호 89

동독에서의 향후 파트너 정당에 관한 콜 수상의 숙고

1990년 2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1990년 초, 동독에서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연대한 자매정당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기민당의 지도부는 동독 체제하에서 사통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동독 기민당 외에 '민주적 진격(Demokratischer Aufbruch)'과 '독일사회동맹(Deutsche Soziale Union)'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콜 수상은 특히 동독 기민당의 대표인 로타 드 메지에르가 기민당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가 사통당의 한스 모드로우 총리가 이끄는 개혁정부에 동참했던 것 때문에 서독 기민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은 동독 기민당과 민주적 진격, 독일사회동맹 세 그룹이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위해 공동으로 후보명단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독일을 위한 연대(Allianz für Deutschland)'라는 명칭의 선거연합을 조직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출처_ Kohl, Helmut Kohl. 1998.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Propyläen, S. 283-289

문서 번호 90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장이 연방정부에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출한 자료

1990년 2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수상실의 자이터스 청장이 연방정부 회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모드로우 수상이 '독일통일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콜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고 7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독일통일' 내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을 위해 사법, 노동법, 사회법 등의 조정작업을 준비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170, 221 – 14470 Ka 1 Band 1

문서 번호 91

서독 연방수상청 네링 국장의 메모–동독과의 경제 및 화폐통합(WWU)에 관한 네링 국장의 소견

1990년 2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지그하르트 네링 연방수상청 422부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수상청의 국장이 동독과의 경제화폐통합과 문제에 관해 내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동독과 경제 개혁을 비롯해 화폐통합에 대한 협상을 즉각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 동독인들은 신속한 미래 전망을 원한다.
- 화폐통합은 경제 개혁과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시장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는 1948년 화폐 개혁과 경제 개혁을 연이어 추진한 바 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63, S. 761.

문서 번호 92

독일 정치문제 그리고 동독의 현 상태 및 동독을 위한 긴급지원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질의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2+4 회담과 경제화폐통합에 관해 질의한 속기록이다. 이 논의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화폐통합으로 인해 DM의 안정성이 위협받는지 여부 그리고 화폐통합이 사유재산의 도입, 영업의 자유화 그리고 세금 감면 등과 같이 동독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즉각적인 지원의 현황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추가예산과 여행환기금 그리고 유럽부흥특별재원의 증액 등을 통해 약 60억 DM이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 외에 의료와 환경 분야에서도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예비비로 약 20억 DM이 제공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93

문서 번호 93

전 유럽 안보구조-서독 연방수상청 텔칙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문건

날짜 미상-1990년 2월 7일경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호르스트 텔칙 국장, 콜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수상청의 외교안보국장인 호르스트 텔칙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 유럽적 안보구조와 독일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완전한 주권국가로 통일될 독일에게 동독과 서독이 각각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동독은 상호우호조약을 바탕으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다른 회원국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서독 또한 1952년과 1954년에 서구연합국과 체결한 군대주둔조약과 독일조약을 통해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한 가운데 있는 핵심국가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독일의 참여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 또한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소련은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갖춘 세력이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핵무장을 계속하고자 할 것이다. 유럽의 다른 핵보유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이

다. 통일된 독일은 핵보유국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전 유럽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상호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군비통제와 군축대화를 강화·지원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통일된 독일은 완벽하게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비무장화 되지 않을 것이며, 나토의 회원국으로 잔류할 것이다. 독일 군대가 지금의 동독지역에 주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소련에게는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안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를 위한 일반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4 Band 1

문서 번호 94

통합된 경제와 공동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재무 차관 퀼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 차관 호스트 퀼러가 수상청과 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통합된 경제와 공동 화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의 초안이다. 이 초안은 동독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폐와 경제 통합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동독의 마르크는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된다. 그때까지는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그것은 동독에 2단계의 은행 체계(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1

문서 번호 95

콜(Kohl) 총리에게 보내는 거시경제발전 평가 전문위원회 슈나이더(Schneider) 위원장의 공문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거시경제발전 평가 전문위원회 슈나이더 위원장, 헬무트 콜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이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는 기구 중에 하나이다. 1990년 2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이 논의되던 시기에 경제전문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여러 관점에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정부의 경제전문자문위원회는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화폐통합이 동독 주민이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폐통합이 경제 개혁 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독에 도이치 마르크를 도입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 주민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 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 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재정균형배분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있는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독 주민들이 화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질 것이다. 나아가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독 기업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에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재 동독의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 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독 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68, S. 778-781.

문서 번호 96

서독 연방정부 노동사회부 장관 노버트 블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문서–사회통합에 관한 동독 정부와의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노동사회부 블륌 장관, 헬무트 콜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노동부 장관 노버트 블륌이 1990년 2월 15일에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회담하게 될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이다. 이 회담에서 노동과 사회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블륌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고용지원법에 따라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제도를 즉각적으로 구축
- 동독의 연금제도를 서독의 연금 체계에 맞추어서 조정
-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약속

나아가 블륌 장관은 콜 수상에게 사회통합과 화폐통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동독 측에 꼭 주지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딪히게 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독에도 가능한 한 서독의 사회보장 체계와 유사하게 안정적인 사회보장 체계가 도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할 것은 사회보장 체계가 개인의 납입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세대 간의 계약 원칙에 따라 적립식이 아닌 순환식 재정구조를 기반으로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블륌 장관은 이 문서를 통해 콜 수상이 한스 모드로우와의 회담에서 동독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 B 136/21660

문서 번호 97

독일통일에 대한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교환–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

1990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 장관이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서신에서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모스크바 회담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미-소 간 주제들 외에도 독일통일이 논의되었으며 소련 측에는 유럽이 불안정해지고 독일 국경에 분쟁이 발생하며 독일이 유럽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 때문에 소련은 단지 관망자적 자세만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커 국무 장관은 일차적으로 독일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통일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인들이 내적 문제들을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과 별개로, 1990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적 문제와 관련된 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베이커 국무 장관은 제안하였다. 이를 단지 전승 4개국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2+4 회담의 형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려 있는 자세를 보였다.
베이커 국무 장관은 독일이 나토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련 지도부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소련을 포함시킬 정도로 나토를 확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1 Band 2

문서 번호 98

콜 수상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회담

1990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호르스트 텔칙 국장,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에 열린 동서독 두 정상 간의 회담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회담에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는 서독 연방정부가 동독으로부터 이주자 문제를 핑계로 동독의 사회적 변화를 배려하지 않는 채 콜 수상이 바라는 방식으로 독일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미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동독에서 현재 의회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가지는 원탁회의의 의견도 서독 측에서는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독일통일 과정이 동독 사회에 불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콜 수상은 이에 대해 3월 18일에 있을 선거 때문에 동독의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독의 사민당은 서독의 사민당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

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 할 일은 3월 18일의 선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77, S. 814-819.

문서 번호 99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전화통화

1990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내용_

연방수상 헬무트 콜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자신의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의 1990년 2월 13일 자 회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콜 수상은 동독 내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주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자신이 화폐 및 경제통합을 제안하였음을 전달하였다.

그는 나아가 모스크바 회동에서 부시 대통령이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콜 수상은 비록 소련 내 물자 보급 상황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이 소련 공산당 당원 총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는 독일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겐셔 외무 장관이 1990년 2월 12일 오타와 회담에서 2+4 회담을 제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콜 수상의 1990년 2월 말 캠프 데이비드 방문 중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의 미래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소련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외무 장관들의 2+4 회담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표명하였다. 콜 수상은 약 4주 후인 1990년 3월의 동독 선거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때 서독은 동독과 대화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이 존재한다. 빠른 결단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타 국가들이 발언권을 가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헬싱키 협정의 35개국들이 모두 관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콜 수상이 제안한 일정에 동의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 - 30100 (56) Ge 28 (VS) Band 80, Bl. 56-59

문서 번호 100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위한 재정지원-서독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슈프랑어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서독 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으로 온 동독의 이주자들은 일회적으로 200 DM의 과도기 지원금을 받는다. 실업연금 대신 정착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가족 상황에 따라 1,001에서 1,219 DM까지 유동적이다. 나아가 저렴한 이자로 가재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지원을 위한 소득 상한선이 상향되었다. 그 외에 이주자들은 서독의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아동수당, 주거보조금 또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교육지원비(BAFoeG)를 받을 수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1/196, S. 15905*D-15906*B, Anlage 4

문서 번호 101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1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 장관 겐셔, 수상청장 자이터스, 그 외 연방장관들 및 정부 관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이 작성한 것으로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겐셔 외무 장관의 1990년 2월 10일과 11일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은 더 이상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을 막고자 하지 않는다. 1990년 2월 12-14일간의 오타와 공동 회담에서 독일통일의 대외적인 측면만을 2+4 회담을 통해 규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독일 정책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특히 고려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A) 헌법에 합치하는 독일통일 방식 및 전승 4개국의 권한 소멸 방식 B)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C) 동맹 체결권 및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겐셔 외무 장관은 서독과 동독은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 상호 협의 속에 6자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는 위 A)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발언권을 주장하려는' 추가적인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 사

항과 관련해서는 동독의 유럽공동체 직접 가입의 방식은 배제하기로 하였다. 그보다는 유럽공동체의 영역을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동독지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다. C) 사항은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 이 협의의 결과는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 전에 도출되어야 한다.
슈톨텐베르크 서독 국방부 장관은 동맹 선택권 문제를 암시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국방체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02

연방정부 수상 헬무트 콜과 연방주의 주총리들 간의 회의-동독과의 협상과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1990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외 각 주 대표, 헬무트 콜 수상, 자이터스 수상청장, 연방정부 각 부처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 초에 헬무트 콜 수상과 각 연방주의 주지사들이 참석하여 동독의 변화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기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두 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변화, 동독과의 협상 현황, 연방주의 참여: 콜 수상은 동독과의 협력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이 과정에 연방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연방정부와 각 연방주들은 승전연합국과의 협상은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연방수상청장은 화폐통합에 관한 동독과의 협상에 연방주들이 제한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에 반해 연방주의 대표들은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에 연방주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 관계: 동독으로부터 밀려오는 동독 이탈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이견이 존재하였다. 연방정부의 재무 장관 바이겔은 동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지사 요하네스 라우는 동독 이탈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문제로 인해 연방주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바이겔 장관의 제안에 따라 연방과 연방주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재정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비

용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바이겔 장관은 동독 이탈주민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1990년에 5억 마르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85 S. 834f (digitale Edition)

문서 번호 103

본에서 열린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 대표단의 회의

1990년 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헬무트 콜 연방수상, 동독 정부 한스 모드로우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대표단과 함께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해서 콜 수상과 함께 논의한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콜 수상은 2+4 회담의 틀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서독 간의 문제는 양측이 직접 논의하며, 1990년 3월 18일로 잡힌 선거일정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거 이주해 오는 주민들이다. 1990년 1월과 2월 사이에만 약 100,000명이 이주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화폐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문제, 예를 들어 실업연금 지원과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주부터 이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가 시작될 것이다.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동독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확인했다. 동시에 원탁회의가 작성한 문건을 언급했다. 서독의 입장이 무엇인지, 동독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계약공동체 방안이 이미 제시되었다. 동독도 화폐공동체 구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통일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동독의 볼프강 울만 장관은 동독을 서독에 흡수하게 하려는 권력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했다. 콜 수상은 본인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독의 라이너 에펠만 장관은 동독 주민들이 통일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화폐통합과 같은 전면적인 정책을 지금 실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50억 DM의 차관을 동독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동독의 마티아스 플라첵 장관은 동독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서독의 정치권은 그와 정반대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독의 재무 장관 바이겔은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기본법 23조는 그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서독의 공공예산에 약 317억 DM의 금액이 동독에 지원

될 것이며, 즉각적인 도움을 위해 추가로 50억 DM이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요하네스 라우 주총리는 기본법 23조를 통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특별히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어떤 경우든 동독지역에서 연방주 구조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독 연방정부의 헬무트 하우스만 경제 장관은 동독을 유럽 내수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독에 단순히 소비재를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2

문서 번호 10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본(Bonn) 설립 회의

1990년 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수상청,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내독부, 국방부, 경제부,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내에 겐셔 외무 장관을 의장으로 개최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의 설립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타와에서 열린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회담 및 외무 장관들의 회담 결과에 따라, 독일통일의 국내적 측면들은 동독과 서독이, 국제적 측면들은 전승 4개국이 함께 다루도록 한다. 그를 위한 헌법적 토대와 유럽공동체 관련 문제 그리고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 관련 동맹 조약에 대해 검토 및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겐셔 외무 장관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가입을 지지했는데, 이는 기본법, 즉 헌법에 합치하기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평화조약과 유사한 해결책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는 나토의 보호 영역이 동독 영토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소련 군대의 동독 주둔은 단지 과도기적으로만 용납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겐셔 외무 장관은 동독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이하 내용: 실무단 구성)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 – 34900 Wi 14 Band 1

문서 번호 105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2차 회의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내용_

이 문서는 겐셔 외무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의 두 번째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셔 외무 장관은 실무단의 기록 및 업무가 앞으로는 비밀 등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독과의 결합을 통한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은 유럽공동체 기본 체제의 변경을 요하지 않음.
- 헌법적 구조-기본법 23조에 따른 가입은 동독의 특별한 이해를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을 가능케 함. 영토 문제가 분명히 해명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특히 전쟁 배상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
- 공무원들은 안전보장 정책 관련 문제들을 질문 리스트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실무단은 내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 – 34900 Wi 14 Band 1

문서 번호 106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텔칙 차관보의 콜 수상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내용_

이 문서는 텔칙 국장이 콜 수상에게 소련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고르바초프와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독일인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방식에 대해 엄격한 노선을 견지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평화협정과 같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이 '완고주의자'라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그와 반대로 '미래 예견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 그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의 단호한 정책으로 맞서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입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독일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소련이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르샤바 조약의 붕괴는 개연성이 없다.
통일은 소련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 분야에서 생산의 60-70%에 달하는 소련에 대한 동독의 의무적 물자 공급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이 때문에 독일통일은 최소한 수년을 요한다고 생각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경들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구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럽의 안전 보장 체제의 형성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We 35, Band 1

문서 번호 107

동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동유럽을 위한 지원-1990년 연방정부의 추가예산 수립

1990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부에서 작성한 1990년 추가예산안과 그에 대한 연방회의의 입장에 관한 것이다. 추가예산은 동독의 변화로 인해 필요해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될 재정이었다. 나아가 동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었다.
추가예산의 총규모는 68억 7천만 DM이며, 그중에서 65억 4천만 DM을 새로운 부채로 충당할 것이다. 추가지출은 각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처에 배정될 것이다. 20억 DM은 '동독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유동적 사용목적의 항목으로 확보될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다른 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여행기금(21억 5천만 DM 환영금), 유럽부흥 프로그램-특별재산(20억 DM), 동독 이탈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한 비용(5억 DM), 동독의 경제지원 조치를 위한 비용(1억 5천만 DM), 도로, 철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환경 보호 파일럿 프로젝트의 비용(6억 DM), 동독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3억 4천만 DM), 동독 의료지원(3억 4천만 DM), 베를린-하노버 고속전철 건설(2천 3백만 DM), 폴란드 안정화기금(1억 5백만 DM).
연방회의는 이 법안에 동의하였지만 추가로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90/90

문서 번호 108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미국 대통령 부시의 회담

1990년 2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수상청,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내용_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 중에 연방수상 헬무트 콜은 부시 대통령과 독일통일 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콜 수상은 미국 측에게 소련에 입장을 밝혀준 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서독과 미국 간의 우호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유럽과 소련 내의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독일통일을 향해 진행되는 변화들이 극적이며, 아무도 그렇게 동독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독 이탈주민 문제와 경제 붕괴는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폐통합 및 경제 공동체를 제의했다고 콜 수상은 설명하였다. 동독 선거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연방주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중요하고,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가 실제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콜 수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많게는 110개 국가가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서독은 이미 충분한 전후 배상금도 지불하였다고 못박았다. 그는 2+4 회담 협상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2+4 회담 협상이 연내에 종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독일문제를 1990년 11월 파리의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으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파리의 정상회담에서 2+4 회담에서 내려진 결론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콜 수상은 언급하였다. 베이커 국무 장관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는 독일이 나토에 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일부 경과 규정들이 필요할 것인데, 38만 명에 달하는 주둔 중인 소련군에 대한 경과 규정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에 있어 미국과 독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유럽 내 동맹국들 간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 – 30100 (56) Ge 28 (VS) Band 80, Bl. 113–138

문서 번호 109

연방내무부 기록–통일을 이루기 위한 헌법적인 방법

1990년 2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2가지 통일방식의 장단점을 논하고 있다.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방안과 146조에 따라 새로운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23조에 따른 가입: 기본법 23조는 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입은 동독 정부와 동독 영토에 세워진 주들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 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이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서독은 공정한 협상을 보장해야만 한다. 가입선언이 자율적이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서독은 가입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제가 유지되며, 독일연방공화국이 현재 동독의 영토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과 연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구조가 이 지역에도 적용되게 된다.

2. 146조에 따른 새로운 헌법의 도입: 이 방법은 독일제국 시절 전 국민의 자결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 방법을 채택한다면 독일 국가조직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새로 도입하고, 입법부도 새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얼마의 시간을 요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통일로 가는 길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통일 자체가 지금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예 통일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96, S. 879–886.

문서 번호 110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을 위한 보고서

1990년 2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연방수상 공보 담당) 521과 과장 메르테스,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외무부가 헬무트 콜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로 폴란드와의 국경과 관련하여 민감한 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의 서부 국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그것이 미래 통일된 독일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상의 국내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상이 먼저 1. 헌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2. 통일된 독일이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폴란드 측이 전후 배상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친선협력조약을 폴란드와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가 정리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P 4 Po 30 Band 7

문서 번호 111

서독 기본법 104a조 4항에 의거 이주자 수용시설 투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법 초안

1990년 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는 이주자 임시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연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법의 초안이다. 1988년과 1989년 사이 이주자 수가 총 980,000명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수용시설의 수용량을 훨씬 넘어섰다. 이주자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경제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량을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0년과 1991년에 약 5억 DM을 지원할 것이다. 지원금은 모든 연방주에 배분되어 새로 지은 수용시설 또는 확대된 시설에 이주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첨부된 부록에는 연방회의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환영하면서도 수용시설에 1인당 제공되는 7,000 DM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154/90

문서 번호 112

유럽공동체, 동유럽 그리고 통일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프랑스 외무 장관 롤랑 뒤마,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 연방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내용_

이 문서는 프랑스의 뢰로프 엉 포마시옹(L'Europe en formation)지가 유럽공동체가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움직임 및 앞으로 다가온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개혁 역시 수행할 수 있을지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들 개혁들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 유럽의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유럽 연합 경제통화 동맹의 정부 간 회의상의 일정을 확대·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을 경제통화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시간적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이 신문은 강조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유럽의회가 더 많은 공동 결정권 및 통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유럽공동체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공동체와 빨리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출처_ Le rendez-vous de Dublin. In: L'Europe en formation. Frühjahr 1990. Nr. 277. S. 3-5.

문서 번호 113

이주자 증가로 인한 공공예산 부담-연방의회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재무부 클렘 차관, 사민당 베그너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의 사민당 베그너 의원이 제출한 연방정부에 이주자를 위해 1989년에서 1990년에 공공예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클렘 재무 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항목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89년에 연방 내무부와 재무부는 총 174,930,000 DM을 지출했다. 가장 큰 항목은 생활보조 가구 구입을 위한 과도기지원금, 프리드란드지원금, 정착지원융자금, 연방수용시설지원금 등이다. 1990년의 경우 연방정부는 적어도 5억 2백만 DM을 정치적 변화에 따른 긴급지원정책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1990년도 추가예산에서 총 19억 5천만 DM이 지출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6628

문서 번호 114

소련대사관과 동독 사민당 간의 접촉

1990년 초

담당자 / 기관_ 동독 사민당 소속 홀거 자피어 의원, 주동베를린 소련대사관 소속 제2비서 포포로프스키

내용_

2+4 회담이 개시되기 전에 동독의 사민당 소속 의원 홀거 자피어는 주동베를린 소련대사관 소속 제2비서 포포로프스키를 만났다. 이 문서는 그의 대화록이다.

포포로프스키는 안전보장 문제 관련 서독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는 자피어 의원이 이 주제로 겐셔 외무 장관과 최근 가졌던 회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피어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피어 의원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포포로프스키는 동독 사민당과 소련 간에 입장의 일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4 협상과 관련하여 포포로프스키는 소련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포포로프스키는 동독이 협상에서 가능한 한 자신감 있는 자세로 대처한다면 소련도 이를 지원할 것이지만, 단지 서독이 단독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일이 생긴다면 협상은 '막다른 길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아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115

연방정부 수상청과 각 주정부의 총리실 대표단과의 회의

1990년 3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각 연방주 총리실장, 연방정부 외무 장관 킹켈, 경제 차관 폰뷰어젠 외 다른 연방정부 차관들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가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주정부 총리실장들에게 동독과의 협상에 관해서 그리고 경제화폐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에 관련하여 보고한 회의록

이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화폐공동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1990년 3월 18일에 있을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연방주들은 승전연합국과의 회의, 즉 2+4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 각 부처의 차관들이 동독과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관해서 보고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경제화폐공동체를 만드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수상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각 담당 부처가 동독의 해당 부처와 직접 협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상청은 전체적인 조정을 담당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9247, 122 – 14020 Mi 1

문서 번호 116

서독 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이 달성될 경우 대외적·안보 정책적 측면들에 대한 외무부의 중간보고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겐셔 외무 장관,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수상청, 서독 국방부 슈톨텐베르크 장관, 그 외 연방장관들 및 정부 관료

내용_
이 문서는 겐셔 외무 장관이 서독 연방정부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독일통일의 실현과 관련하여 대외적·안보 정책적 측면들에 대해 발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특히 소련은 갑자기 통일이 자신의 개입 전에 다 진행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들은 대내적, 즉 동·서독 간의 상호 적응과정 전에 해명되어야 한다.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들은 2+4 회담에서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 이전까지 논의되고 또 그를 통해 '축복을 받으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 통일'과 관련하여 기본법 23조에 따른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을 선호한다. 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유럽공동체와 관련하여 독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법 23조에 따른 통일의 경우 유럽공동체 조약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에 반해 기본법 146조에 따라 통일이 될 경우에는 그 때문에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그에 이어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은 1990년 2월 28일의 런던에서 열린 3개 서방 전승국 정치국장급 회담 내용 및 1990년 3월 2일 아다미사힌 소련 외무부 차관과의

제네바 회담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안보, 국경 및 전승 4개국 권한 해소라는 3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3개 서방 전승국들은 나토 조약 5조 및 6조의 보호 규정이 현 동독 영토에 적용될 것인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 외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2+4 회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카스트룹 국장은 평화조약과 관련해서 그에 반하는 분명한 법적, 정치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이하 문서에는 2+4 회담 일정 및 기본법 23조 관련 각 소관 부처 입장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번호 117

부쎄(Busse) 국장의 비고-연방내무부 실무그룹 '국가구조와 공공질서'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폴커 부쎄 국장,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무부의 '국가구조와 공공질서' 실무그룹의 책임자인 부쎄 국장이 실무그룹의 업무에 관해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그룹의 보고서는 연방내무 장관과 연방주의 주수상청과도 논의된 것이다. 실무그룹은 통일절차와 관련해 기본법 23조와 146조 두 개의 방안을 검토하고, 23조를 따르는 것이 절차상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절차는 동독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보고서에는 외교 안보 문제 등 독일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07, S. 917-918.

문서 번호 118

화폐연맹의 구축과 재정문제 실무그룹–슈타르크(Stark) 국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 팀장 위르겐 슈타르크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정책그룹의 팀장인 서독 연방재무부의 슈타르크 국장이 당시 재무 차관이었던 호르스트 쾰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호르스트 쾰러는 그 후에 세계은행 총재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과 화폐문제를 담당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2차례 전문가회의가 열렸고 동독 측에서 이 회의에 아주 협조적이었다. 전문가그룹과 실무그룹의 업무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1–.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문서 번호 119

영국 대사의 2+4 회담에 대한 서신–텔칙 국장의 연방수상 헬무트 콜에 대한 보고서 초안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국장 겸 수상청 차관보 텔칙, 연방수상 콜

내용_

텔칙 국장은 곧 개최될 2+4 회담에 대한 영국 대사의 서신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에게 앞으로의 유럽의 안전보장 합의는 중요한 주제이다. 2+4 회담 이전에 서방국가들은 소련에 대한 입장을 협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텔칙 국장에게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한 참고 사항 및 질문들의 리스트가 전달되었다.

- 영국은 콜 수상이 구동독을 비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한 성명을 환영한다.
- 상기 지역에 나토 조약의 5조 및 6조 조항 자동군사개입 또는 집단적 자기방위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겐셔 외무 장관과 슈톨텐베르크 국방부 장관이 성명에서 독일연방군 전력을 위 지역에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방위할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그러한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이 지역의 방위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 독일연방 군대를 베를린에서 주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2일 후 나토의 회의에서 콜 수상과의 대화에서 제기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22 - 35400 De 7 Band 2

문서 번호 120

2+4 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연방정부 및 동독 정부 대표자 간 동베를린 회담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연방정부 및 동독 정부 대표자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 정부 대표자들이 1990년 3월 14일 본에서 열린 2+4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동베를린에서 가졌던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수상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박사는 이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회담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동독은 2+4 회담의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가들을 연루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의 4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국경문제, 군사정책적 상황, 전승 4개국의 권한 종료 및 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서독 정부는 정치적, 법적인 이유 때문에 평화협정을 거부하였다. 서독 정부는 그 대신 전승 4개국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종료되는 조치를 희망하였다.

동독은 앞으로 계속 이번과 같은 형식의 회동에서 재산권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서독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뒤스베르크 국장은 두 가지 이유, 즉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헌법적 고려 사항 및 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한 사안의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무부의 관련하에 외교정책 관련 회담들을 더 잘 조율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콜 수상이 가능한 한 2+4 회담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0244, 221 - 34900 Wi 14 Band 1

문서 번호 121

2+4 회담 준비를 위한 동독과 서독 간의 회담-동독 외무부의 보고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차관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내용_

이 문서는 '6자 회담' 개최 이전에 동독 외무 차관 크라바취와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이 베를린에서 비공개로 입장 타진을 위해 만난 것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라바취 차관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통일은 합병과 유사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카스트룹 국장은 통일의 완성 이전에 통일의 외적 요소들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동독에서 기본법 23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독의 선거 이후 동등한 권리하에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 외에 2+4 회담의 진행 절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독 정부는 이에 대해 3개 서방 전승국과 논의할 것이다. 동독은 소련 측에 영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로 폴란드가 2+4 회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논의되었다. 그에 있어 양자는 폴란드는 단지 폴란드와 관련되는 국경선 확정 문제를 포함한 논의 쟁점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990년 3월 3일에 폴란드 서부 국경과 관련한 하나의 연방의회 결의가 존재한다.

카스트룹 국장은 통일된 독일은 서방 측 동맹국으로 남아야 하는데, 단 그 관련 시설들이 현재 동독 영역 내로 이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은 군축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원한다. 그에 있어 크라바취 외무 차관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 독일이 생화학 및 핵무기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4 회담 종료 시점에 전승 4개국의 권리가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의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22

서독 연방외무부에 대한 연방재무부의 서신-1990년 3월 13일 예정 베를린 개최 독-독 간 경제·통화 공동체 준비 전문가위원회를 위한 연방장관들 간 기본법 23조 관련 합의문

1990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재무부 장관 슈미트-블리이프토로이, 연방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연방내무부, 연방법무부, 연방경제부, 연방노동·사회질서부, 연방내독부

내용_

서독 연방재무부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에게 '기본법 23조와 기본법의 헌법적 체계'라는 제목의 연방장관들 간 합의문을 전달하고, 이를 1990년 3월 13일에 예정된 베를린 개최 독-독 간 경제·통화 공동체 준비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합의문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1. 기본법 23조 2항에 따른 독일연방 가입 절차
2.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적 질서의 의미. A) 입법권 B) 행정권 C) 사법권 D) 그 외 연방주의적 체계 내에서 연방주들의 영향력 행사 방식들 E) 기초지역단체의 자치행정권
3. 가입과 관련하여 기본법적 사회국가 규정이 지닌 의미
4. 각 연방주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재정·세법적 일반규정의 의미
5. 동독이 기본법적 재정 체제에 귀속될 경우 동독에 제공 가능한 재정적·경제적 가능성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 E

문서 번호 123

폴란드 서부 국경-콜 수상에 대한 하르트만 국장의 보고서 초안

1990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하르트만 국장은 콜 연방수상에게 폴란드 서부 국경에 대한 폴란드와 소련 및 서방의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 폴란드 총리는 통일 이전에 두 독일 국가 간에 평화조약이 준비된 후 통일 정부가 이에 서명하는 것을 원한다. 그 외에 폴란드는 미래 독일의 근린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 독일의 근린 국가들 간의 회담 및 6자 회담에 참여하고자 한다. 독일 연방의회의 1990년 3월 8일 결의에서 바르샤바 조약 및 오더-나이세강 국경선이 논의되지 않은 점이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 및 근린 국가들의 안전보장과 보조를 맞추며 이루어져야 한다(각 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

프랑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이전에 국제법적 조치로서 국경의 불가침성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폴란드를 '6자회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데 반대하였다.

영국의 입장은 폴란드의 입장과 동일하였다.

소련은 독일통일과 관련해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협상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폴란드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았다. 종전 후 국경이 평화조약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폴란드 국경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면서, 폴란드의 이해를 고려하기 위해 폭넓게 자문을 거치겠다고 발언하였다.
하르트만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였다.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는 국제적으로 폴란드 측 입장에 대한 강한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 난관이 되거나 다른 열강들에 의해 도구화될 수 있다.
하르트만 국장은 연방수상이 공세적인 방식을 취할 것을 제언하였다. 2+4 회담에 폴란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하지만 조속하게 폴란드와 직접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2 - 35400 De 39 NA 2 Band 2

문서 번호 124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

1990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국내 정치 기본문제 실무단, 연방내무부 장관 쇼이블레

내용_

겐셔 외무 장관은 서독의 미래 전력이 2+4 회담의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슈톨텐베르크 국방부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제들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가 아닌 연방안전보장자문위원회(Bundessicherheitsrat)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겐셔 외무 장관은 2+4 회담 준비를 위한 동독과의 회담 결과를 전달하였다. 동독 측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이 회담의 내용으로 상정되었다: 전승 4개국의 권한, 국경문제, 소유권 관계 문제 그리고 동독은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통일을 반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폴란드는 국경문제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만 회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하위 실무그룹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위 실무그룹은 평화조약과 무관하게 전승 4개국의 권한 종료의 형식 문제, 베를린 문제, 동독 주둔 소련군 문제 및 군대주둔협정의 신규 제정 문제들을 전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련 및 여타 국가들에 대한 동독의 경제적 의무를 서독이 물려받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MI, GE - 020 052 - 2/1 Band 1 - Aktenzeichen G1 - 0020 008 - AA/1

문서 번호 125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실무단 회의-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제정치과(210과) 보고

1990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과장 람바흐, 외무부 21실 회익 실장, 연방외무 장관 겐셔, 서독 총리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 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칙 국장, 서독 총리청 (독일 정책 담당) 20국 국장 뒤스베르크,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연방법무부 장관 엥엘하르트, 연방내독부 장관 빌름스, 연방재무부, 연방경제부, 연방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정부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 관련 주제들에 대해 회의한 것에 대한 외무부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겐셔 외무부 장관과 슈톨텐베르크 국방부 장관은 통일독일의 전력은 2+4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 대신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비엔나 군축협상을 위해 제안들이 준비되고 3개 서방 전승국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외무부 21실의 회익 실장은 정치국 카스트룹 국장이 특히 2+4 회담 관련 조율을 위해 동독 외무부와 가진 회담들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2+4 회담은 가능한 한 항상 독일 영토에서 동·서독지역을 순서대로 오가면서 개최되어야 한다.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폴란드 서부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동독 측은 폴란드 측 입장에, 안보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련 측 입장에 동조하였다. 동독 측은 또한 포츠담 협정을 연관 지으며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2+4 협상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동독 측은 일반적으로 독일통일을 점진적으로 달성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에 있어 헬싱키 협정을 그에 결부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된 동독 측의 1990년 2월 23일 자 비망록이 헬싱키 협정 회원국들에 전달되었던 바 있다. 동독 측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가입 방식을 바라지 않았다.

겐셔 서독 외무 장관은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협상에서 통일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외교정책적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2+4 협상을 마치는 것은 동독 지도부의 ‘지연 전술’ 때문에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서독 수상청 뒤스베르크 국장에 따르면 동독 외무부의 중간 관료들은 그보다는 “융통성을 보인다”.

겐셔 외무부 장관은 서독 정부는 평화조약의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독 총리청 텔칙 국장은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에 동독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들을 통일독일이 인계받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던 합의 내용을 상기시켰다.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는 그에 대한 실태 파악은 동독 측의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고 하였다.

연방재무부를 대표한 포스는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 대한 콜 수상의 약속은 단지 국영기

업체를 제외한 국가 간 의무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혹시 모를 소련과 동독 간의 협상이 있기 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의무 사항들'에 대해 확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하 동 회의 상세 논의 및 그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요약)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26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보내는 쾰러 차관의 서한-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준비

1990년 3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겸 연방장관, 호르스트 쾰러 연방재무부 차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무임소 장관(1990년 4월까지),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헬무트 콜 연방총리, 호르스트 카민스키 동독 국립은행 총재, 헬무트 슐레징거 독일 연방은행 중앙위원회 부회장, 디터 폰 뷔르첸 연방경제부 차관, 칼 그륀하이트 동독 기계제작부 장관, 발터 지거트 동독 재무 장관, 만프레드 오버하우스 실장(연방예산부), 잉골프 노악 동독 법무부 부대표, 베른하르트 야고다 연방노동복지부 차관

내용_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콜 서독 총리 간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Expertenkommission)에서는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에 관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논의 중 부각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양측은 화폐통합과 경제공동체를 국가 통일로 가는 결정적 단계로 이해한다.
- 양측은 화폐통합과 경제공동체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안정적 화폐,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신속한 전환, 단호한 시장경제적 개혁, 능력에 따른 과세 제도를 통한 국가 재정의 안정화,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 보장
- 화폐 교환 방법과 시점을 비롯한 기타 문제들은 차후 회담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이며 심도 있게 해결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맥락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19, Nr. 219A (Anlage), S. 947-950.

문서 번호 127

본에서 열린 2+4 회담(최초의 실무자급 회담)–동독 외무부 보고

1990년 3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차관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미국 참사관 조엘릭, 미국 국장 라이스, 소련 외무부 차관 아다미친, 소련 대사 크위진스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내용_

이 문서는 6자회담에 대한 동독 외무부의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국 정부의 대표들은 회담의 절차 및 일정 중 논의할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1) (폴란드와 독일 간) 국경문제 (2) 안전보장 (3) 베를린 문제 (4)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이 그것이다. 동독은 그 밖에도 다음의 주제들을 논의하길 원했다. 두 독일 국가의 일체화는 전 유럽적 변화와 보조를 맞추며 이루어져야 함; 동독 내 소유권 관계의 보호. 예를 들어 1945년/1946년의 나치 및 전범의 재산권 박탈 및 농지개혁; 양자 간 및 다자간 부문에 있어 동독과 서독의 국제 조약상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에서 소련은 동독을 지지하였다. 3개 서방 전승국과 서독은 논의 범위의 확대에 반대했다. 모든 참여국들은 실무자급 회담이 앞으로 동·서독에서 번갈아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 회의는 1990년 4월에 동독의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는 6개국의 외무장관 간의 첫 회담이 개최된다. 서독은 그 개최 장소로 본을 제안했다. 모든 참여국들은 폴란드와 관련되는 국경 확정 문제를 포함한 논의 쟁점이 있을 시 항상 폴란드를 회담에 초청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소련은 평화협정을 원했다. 이와는 반대로 서독과 3개 서방 전승국은 '최종규정의 도입'에 찬성했다. 실무자급 회담상의 결정은 합의(Konsens) 원칙을 따른다. 각 참여국은 중요한 필요가 있을 때 실무자급 회담을 요구할 수 있다. 1990년 3월 14일의 첫 실무자급 회담 이후 언론에 내용을 전달하지만, 질문은 받지 않는다. 외무 장관들은 외무 장관 간 회담 내용을 공표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28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노버트 블륌이 콜 수상에게 보낸 서한–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주민을 위한 실업연금과 연금의 개정에 관한 입장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노동사회부 블륌 장관, 헬무트 콜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과 기타 동부유럽 국가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독일인의 연금과 실업연금 문제에 대한 노동사회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화폐통합이 실현될 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연금수령 가능한 사람은 서독의 법적 기준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다. 그것은 현재 동독의 평균 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45년 동안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은 매달 480 DM을 받으며, 그것은 서독연금의 30%에 해당한다. 화폐통합이 실시된 후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독에 있는 연금 관련 서류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동유럽 국가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매월 1,200 DM이 지급되던 정착금은 폐지된다. 반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정착금을 지급한다. 동독에서 이주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업연금의 금액은 동독에서 받았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동독에서 이주한 사람과 동유럽 국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외의 차별적인 대우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동유럽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을 위한 연금법은 독일-폴란드 간의 사회보험 협약에 따라 개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방내무 장관은 동독에서 이주해 온 사람과 동유럽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을 연금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동유럽 국가로부터 이주한 사람과 관련된 규정을 실향민연금과 연계하기를 제안한다.

모든 이주자들은 사회보조금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앞으로 모든 이주자의 연금이 하향 조정되고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의 실업연금 또한 동독에서 획득한 소득 수준으로 조정되면 사회보조금을 신청할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 B 136/20251

문서 번호 129

이주자 수용 폐지법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내무부 쇼이블레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이주자 수용법 폐지와 난민지원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의 초안이다. 그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으로부터 오는 이주자는 지금까지 서독에서 모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기지원금도 받았다. 그러나 화폐경제사회공동체가 성립되고 동서독 간의 국경이 개방되면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자 할 수도 있다. 한편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삶의 조건들이 곧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이주자 수용법은 화폐경제사회공동체가 실현되는 1990년 7월 1일 자로 폐지될 것이다.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연방내무 장관 쇼이블레이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216/90

문서 번호 130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 틀을 도입하기 위한 최소 요건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의견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연방경제부 장관 하우스만,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사회적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동독에 도입되고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기 위해서 동독에 도입되어야 할 기본 틀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사법과 행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는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생산, 물자제공, 투자 그리고 인력투입 등과 같은 기업가적 결정과 가격문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획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독 경제의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 환경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경제화폐공동체가 출범할 때까지 개정되어야만 하는 동독의 법률: 개인 소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대지에 대한 법조항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동법, 기업법, 공동결정권 그리고 노동쟁의권이 서독 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늦어도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때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법: 가능한 한 인민소유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전환, 민간 상업은행과 보험의 허용, 타지역의 점포 허용, 가격규제의 해제와 가격 감시제의 도입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131

콜 수상에게 보내는 블륌 장관의 서한-화폐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노동사회부 노버트 블륌 장관, 헬무트 콜 수상

내용_

- 동독은 그곳에서도 시장 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뿌리를 내린 뒤에야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서독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1 화폐교환 비율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회 보조금 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화폐교환 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31, S. 979-980.

문서 번호 132

콜 수상에게 보내는 푈 연방은행 총재의 서한-중앙은행 자문위의 결정

1990년 3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칼-오토 푈 독일 연방은행 총재, 호르스트 쾰러 연방재무부 장관, 헬무트 콜 연방총리, 중앙은행 자문위

내용_

- 중앙은행 자문위는 동독 2마르크를 서독 1마르크로 교환할 것을 결정한다. 화폐를 1:1로 교환할 경우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국제 경쟁 속에서 도태될 것이며, 그로 인해 동독 경제는 비용적 문제나 부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2:1 화폐교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인이 소유한 예금이다. 모든 동독 주민은 1인당 2천 마르크까지 1:1 비율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다.
- 소급 적용일은 설정하지 않는다.
-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서독 연방은행이 화폐 정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동독에 15개 지점을 설립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39, Nr. 239A (Anlage), S. 1002-1004.

문서 번호 133

양독 간 경제·화폐통합 실현의 2+4 회담 및 전승 4개국에 대한 영향-서독 연방재무부에 전달될 서독 외무부의 실무안

1990년 3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재무부 장관, 양독 간 관계 실무단 단장 자라친, 연방수상청, 연방경제부, 연방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힐겐베르크 및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3월 27일에 연방경제부에서 열린 여러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작성하고 외무부 법무국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이 검토한 실무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과 동독 간에 체결될 예정인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조약은 전체 독일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련이 포츠담 협정 및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체결된 다른 협정들을 인용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들 규정들은 단지 독일 문제의 대외적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서방 측 전승 3개국들은 이제까지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관계를 항상 국제적 관계가 아닌 내독 관계로 간주하였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은 이러한 틀 속에서 만들어졌다.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을 위해 서독과 동독은 다음 부문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경제 및 재정정책; 공동 통화; 사적 경제 허용; 국가 독점 폐지.

소련이 2+4 협상 중에 언급된 합의 내지 협의 내용과 전승 4개국 권한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 소련은 동독의 주권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소련이 유보해왔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1990년 3월 2일에 발표한 소유권 관계의 보전에 대한 성명이 이러한 주장에 상응한다.

그런데 물론 포츠담 협정에 경제 및 화폐 관련 합의가 포함되었기는 했지만, 이들은 단지 얄타 회담의 논의 목적을 이행한 것에 국한되었으며 그 효력도 과도기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전승 4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 민족의 자결권이 통일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을 막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소련은 1955년에 동독에게 소련에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던 바도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39 E

문서 번호 134

독-영 관계와 통일

1990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연방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 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주요 주간지인 디 차이트(die Zeit)지가 대처 영국 수상과 콜 수상 간의 의견 차이가 연례 쾨니히스빈터 회의에서 더 명백해졌음을 보도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이라는 '독일문제'가 더 이상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안전보장 정책에서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콜 수상이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에 동의함으로써 영국 정부 입장에 더 접근한 바 있다. 유럽공동체와 관련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콜 수상은 이 공동체가 정치적 연합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대처 영국 수상은 그에 반대하였다.

출처_ Sommer, Theo. 1990. Die Lady läßt sich nicht erweichen. In: Die Zeit. 06.04.1990. Nr. 15. S. 3.

문서 번호 135

서독 연방수상실장에 대한 외무부의 국회 및 내각 담당과의 전문-내각 내 논의를 문서 기록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지

1990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국회 및 내각 담당) 011과 과장 이슁어, 수상청 (연방-연방주 관계, 연방회의, 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들의 회담 담당) 122과 쾨스터

내용_

서독 외무부 국회 및 내각 담당과 과장 이슁어는 수상청 내의 연방-연방주 관계, 연방회의, 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들의 회담 담당과 쾨스터 과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각회의 또는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해 이미 합의된 것처럼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외무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단지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3월 30일 서독 외무부 차관 쥬드호프와 각 연방주 수상청과의 회담에 대한 보고에도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36

뒤스베르크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동독에서의 정부 구성

1990년 4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위르겐 뒤스베르크 연방수상청 국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내용_

- 동독 과도정부의 연립내각 구성을 위한 합의안은 과도기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와 함께 동독 과도기의 인민회의는 광범위한 입법작업을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는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 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이 연방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문제는 먼저 서독과 협상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행정 단위로서 '주'제도를 먼저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이 문서에는 기본법 146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서독의 연방의회와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합동으로 '독일통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 화폐교환과 관련하여 개인이 보유한 예금, 임금, 연금 외에 다른 재정적인 채무관계의 교환율을 1:1로 규정한 조치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과도기의 동독 연립정부는 친환경적이며 사회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관해서는 서독 정부와 함께 조율한다. 재무 체계와 조세제도는 서독 시스템을 모델로 한다.
- 연방은행의 중앙위원회, 즉 금융통화위원회(Zentralbankrat)에 참여한 동독의 대표는 서독의 대표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한다.
- 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통일 전까지 폴란드와 국경 협정을 체결한다.
- 통일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이하 NATO)의 회원국으로 남는다. 그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전면방어나 유연대응과 같은 기본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
- 이 합의문에는 경찰 조직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단 국가안전부, 즉 비밀경찰 슈타지는 완전히 해체한다고 명시하였다.
- 사회주의통일당의 과거는 청산의 대상이다. 거기에는 사통당에 의해 몰수 국유화된 재산문제도 포함된다.
- 행정개혁을 통해 공무원 수를 감축하며, 서독의 사법 체계를 모델로 동독의 사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5, S. 1012-1014.

문서 번호 137

네링 실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경제 및 복지정책에 관한 소견

1990년 4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지그하르트 네링 연방수상청 실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내용_

-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독일에도 서독의 법 규정과 구조들은 그대로 혹은 조정된 형태로 동독지역에 적용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1957년에 프랑스령이었던 자를란트(Saarland)지역이 서독의 연방주로 가입하였을 때와 유사하게 과도기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독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 독점이나 외환 독점과 같은 규정들은 대안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 화폐교환 비율은 1:1이 적용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임금과 연금이 화폐교환 실시 이전에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실업보험, 연금보험, 사회보장보험, 인프라, 환경 보호, 농업 분야에 대한 서독에 의한 초기 자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과도기에는 서독 측에서 동독의 국가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연방수상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독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과 같은 고소 불능 권리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민영화와 관련하여 외지인에게는 10년 후의 선매권이 있는 임차권만 허용할 것이다. 민영화된 영업 자산의 획득에 있어서는 동독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6, S. 1015-1016.

문서 번호 138

부쎄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전(全) 독일 의회 구성

1990년 4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부쎄 연방수상청 국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내용_

- 연방의회의 총선 시기와 관련하여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연방내무 장관은 현 의회 회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기본법 제39조 1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이와 관련된 기본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난

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Otto Graf Lambsdorff) FDP 당수는 현 회기를 1991년 1월까지 연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연방내무부와는 달리 연방법무부는 현재의 법규하에서도 연방의회 자진 해산권 부여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관한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7, S. 1016-1018.

문서 번호 139

뒤스베르크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의 정부 성명서

1990년 4월 19일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위르겐 뒤스베르크 연방수상청 국장, 헬무트 콜 연방총리

내용_
- 드 메지에르 정부의 성명서는 1990년 4월 12일에 발표된 연립내각 구성을 위한 합의서의 내용과 비교할 때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국가안전부, 즉 비밀경찰 슈타지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였지만 과거의 체제와의 극단적인 대립 또한 피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도 언급하지 않는다.
- 드 메지에르는 필요한 구조조정 조치를 실행하는 것과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통일을 지지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동독이 공동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에 따르면 통일은 가능한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화폐교환은 1:1의 기본 비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1990년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토록 해야 한다.
- 그는 서독과의 에너지 연합을 구성하고 갈탄 채굴을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 동독의 사법기구를 확대하며, 1991년에는 주 차원의 행정 단위를 도입하며 문화와 경찰 업무를 주정부가 관할하도록 한다.
- 폴란드 서부 국경은 국제법적으로 구속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48, S. 1018-1020

문서 번호 140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 관계

1990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연방경제부 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국장 루데비히,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 차관 오브민스키, 소련 대사 키브친스키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0년 4월에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중에 소련 대표단과 서독 연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서독과 화폐경제사회공동체를 구성하더라도 동독이 필요하다면 서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를 계속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 장관 하우스만은 서독 또한 소련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먼저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동독을 제외하고 소련과 서독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문서 번호 141

부쎄 국장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선거 일정 및 전(全) 독일 선거

1990년 4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부쎄 연방수상청 국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내용_

-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 FDP 당수와 볼프강 미쉬니크(Wolfgang Mischnick) FDP 원내 대표는 1991년 초 전 독일 선거를 찬성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내무부 장관은 현 의회 회기 연장을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 한스 엥엘하르트 연방법무부 장관과 위르겐 W. 뫼레만(Jürgen W. Möllemann) 연방교육부 장관, 헬무트 콜 연방총리는 연방의회 선거를 1990년 말에, 전 독일 선거를 1991년 말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기본법 제39조 1항 3절에 따르면 새로운 연방의회 선출은 1990년에서 1991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실시되어야만 한다. 연방정부는 1990년 12월 2일을 선호하고 있다.

- 기본법 제68항에 따른 연방 의회 조기 해산은 (신뢰의 문제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 1991년 전 독일 선거를 위해 현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차기 연방의회에 자진 해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54, S. 1030-1032.

문서 번호 142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시장 실장 디터 슈뢰더,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베를린 시장 실장 디터 슈뢰더가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것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서베를린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통일된 베를린에도 기존의 연방국가와 법치국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소위 말하는 동독식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독 지도부의 엘리트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기초단체들 그 외의 행정 단위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동독 정부에 의한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
- 베를린시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베를린 시정부와 협의한다.
- 통일된 베를린의 행정 주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한다.
- 동베를린에 소재한 문화기구의 조직과 재정은 국가가 관리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143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콜 수상의 보고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유럽이사회

내용_

콜 수상은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번 특별 회의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각국 정부들의 폭넓은 지지를 경험하였다.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이라는 제목의 3단계 계획이 소개되었다. 유럽공동체는 동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승인하였다.

콜 수상은 독일통일과 유럽 통합 간의 병행을 강조하면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동독의 가입(Beitritt)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내용을 전달받을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했다.

출처_ Konrad-Adenauer-Stiftung; http://www.kas.de/wf/de/71.4565 (Stand: 11.05.2018)

문서 번호 144

1989년도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 및 1990년도 더블린 정상회담(독일통일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태도 변화)-볼프강 쇼이블레의 설명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볼프강 쇼이블레, 유럽위원회

내용_

쇼이블레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89년 12월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이사회 회담 및 직전에 개최된 1990년 4월 24일의 더블린 회담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회담에서는 아직 독일통일에 대한 상당한 회의가 지배적이었지만, 더블린의 회담에서는 이미 독일통일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통일이 유럽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인식된 상태였다. 동독 출신 동독 이탈주민들을 염두에 둘 때 독일통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었다.

출처_ Konrad-Adenauer-Stiftung, http://www.kas.de/wf/de/71.4563

문서 번호 145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 표명-동독 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부, 동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정부 간에 진행되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대해서 소련 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0년 4월에 소련 외무성은 서독 정부가 본에 있는 소련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조약에 관해 동독 대표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안'을 전달받았고 그에 관해서 소련의 입장과 질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서를 동독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안을 보면 독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승전 연합국이 독일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는 국제조약의 대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모든 조약의 규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2. 화폐경제공동체조약의 초안을 보면 2+4 회의에서 먼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초안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통일된 국가를 건국'한다는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
3. 이 조약이 4대 승전 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치와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연방정부의 부처나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의 관청이 동독 영토에서 활동을 할 경우 동독의 법질서와 동독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5.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은 소련과 다른 국가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에서 상호경제원조와 관련하여 동독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2조 12항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동독 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의 잔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8. 이 조약이 비스무트 독소합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이 합작회사는 동독의 튜링겐과 작센지역의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던 회사로 소련의 핵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9. 이 조약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2+4 협상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들이 불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146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호르스트 텔칙의 보고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 연방수상 헬무트 콜, 덴마크 총리 폴 슬뤼터, 이탈리아 총리 쥴리오 안드레오티, 유럽이사회 의장 찰스 제임스 호히, 소련 외무부 서유럽 담당 국장 겸 특별 대사 알렉산더 본다렌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장 마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외무 장관 예두아르트 쉐바드나체

내용_

이 문서는 호르스트 텔칙이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독일통일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없었다. 단지 영국 및 덴마크 그리고 포르투갈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그는 독일 언론도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보고했다.

텔칙은 나아가 외무 장관 회의의 주제 확정 등의 논의에 그쳤던 당시 2+4 회담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 외에 텔칙은 특히 알렉산더 본다렌코 국장과 같은 소련의 독일문제 관련 자문 전문가들이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자신이 추측하고 있는 사항을 서술하였다.

출처_ Konrad-Adenauer-Stiftung; http://www.kas.de/wf/de/71.4564 (Stand: 11.05.2018)

문서 번호 147

1990년 4월 29일 메켈 외무 장관과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의 회담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 장관 메켈,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내용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의 일환으로 메켈 외무 장관과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독일통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소련의 안보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그는 독일통일 과정에 장애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이제까지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부문은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이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 지위를 갖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독일은 그보다는 중립화되어야 하며, 혹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의 동시 회원국 지위 유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메켈 외무 장관은 그것은 낡은 진영적 사고의 연장이라고 답변하였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독일에서의 평화조약 규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양자는 과거 독일과 적대국이었던 모든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소련의 입장이 요약된 비공식 문서를 전달하며, 그 입장이 동독의 서독과의 협상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문제들이 불완전하게 해결될 경우 이는 다시 2+4 회담의 국제적 체제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법 23조는 수정이 필요하다. 메켈 외무 장관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 동독 또한 소련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를 계속 다할 것이다. 적당한 시점에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의 동독 답방이 있을 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148

본에서 열린 2+4 회담(제2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미국, 영국 및 소련 대표단

내용_

2+4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제2차 실무자급 회의에서 1차 외무장관급 회담(1990년 5월 6일)이 준비되었다.

참가국들은 독일과의 평화조약 대신에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 규율 및 해소'라는 표현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서독과 동독이 2+4 회담 바깥에서 통일된 독일과 관련한 일치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폴란드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1990년 5월 5일의 본 개최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결정한다(다음 문서 참고).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49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연방수상 헬무트 콜을 위한 회담 의제 준비-1990년 5월 4일 자 외무부 회람/1990년 5월 5일 외무부 통지문(Drahterlass)

1990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수상청장 자이터스,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연방경제부, 연방재무부, 연방연구·기술부, 연방환경부

내용_

서독 연방수상 헬무트 콜은 1990년 5월 21일까지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준비를 위한 회의가 1990년 5월 2일 외무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다음 주제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조약에 의한, 또는 정치적으로 혹은 각종 성명에 의거해 기초된 서독-소련-동독 간 각종 관계들의 전환 혹은 지속 여부 문제, 독-소 간 양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문제, 동독의 그리고 유럽 공동체 내에서 독일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1990년 5월 7일 외무부 통지문(Drahterlass)을 통해 다수의 연방장관들에게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외무부에서의 논의를 위한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문서의 다음 내용에는 논의되는 의제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포함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문서 번호 150

본에서 열린 2+4 회담(최초의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5월 6일

담당자 / 기관_ 겐셔 외무 장관,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내용_

이 문서는 본에서 열린 제1차 2+4 외무장관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담 참가국들은 회의 상의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국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폴란드 서부 국경은 1950년의 독-폴 간 괼리츠 조약 및 1970년의 독-폴 간 바르샤바 조약에 상응하여 오더-나이세강 경계로 하고, 통일된 독일의 영토는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폴란드는 파리에서 열릴 1990년 7월 17일의 3차 외무장관급 회담에 초청되며, 두 독일 국가는 지체없이 폴란드와 접촉하여, 파리 회담에서 3개국 간에 협의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폴란드 외무부 정치국장은 앞의 회담 중 실무자급 회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 해결책은 전 유럽적 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소련은 절충적 제안에 열린 태도를 보일 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51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1990년 5월 10일 부서별 회의를 위한 외무부의 발제

1990년 5월 9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

내용_

헬무트 콜 수상은 1990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 중 개최될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의 미-소 정상회담 이전에 외교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 소련 및 서방 파트너국가들에 대해 독-소 간 관계 발전을 위해 서독 정부가 고려한 내용들을 전달하였다. 외무부의 소련 담당 213과는 1990년 5월 10일의 부처 간 회의를 위한 쟁점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1990년 5월 21일에 수상청에도 이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는 부처 간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 조약에 의한, 또는 정치적으로 혹은 각종 성명에 의거해 기초한 독-소 간 각종 관계들의 지속 여부 문제: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소련 간의 모든 조약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여기에서 통일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동일한 국가를 의미한다. 동독의 소련에 대한 기존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뢰원칙에 따라 계속 그 준수가 보장될 것이다. 양자 간 협정은, 특히 그에 시간적 제한이 있었던 경우 연장이 검토되었다(이하 문서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된 경제 협력, 학술 및 기술 협력, 환경 및 핵원자로 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협정들이 열거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1.629 E

문서 번호 152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한 연방정부 성명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연방수상 헬무트 콜,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의장 쟈끄 들로르, 유럽공동체, 서독

내용_

콜 수상은 성명을 통해 독일통일과 유럽의 통일은 서로 부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연방정부가 더블린에서의 유럽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다른 국가 및 정부 수반들로부터 받은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독일통일과 관련한 독-독 간 협상 상황을 전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앞으로 개최될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유럽 연합 경제통화 동맹이 설립되어야 하며, 정치적 연

합이 성립되고 유럽 역내 시장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통일을 위해 7월 2일에는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 그리고 마르크의 도입이 완료될 것이며, 독일통일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세금 인상을 실시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1.05.1990. Nr. 58. S. 453-456.

문서 번호 153

폴란드-독일 간 국경 확정-동독 외무부의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 대한 반응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

내용_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은 폴란드-독일 간 국경에 대한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중요한 것은 폴란드 서부 국경을 오더-나이세강 경계로 확정하는 것이다. 폴란드 측 조약 초안에서는 먼저 전문에서 그에 선행하는 1945년 포츠담 선언, 1950년의 동독-폴란드 간 괼리츠 조약, 1951년 동독-폴란드 간 프랑크푸르트 문서, 1970년의 동독-폴란드 간 바르샤바 조약 및 1989년 동독-폴란드 간 오더부흐트 조약을 언급한 후, 1조에서 오더-나이세강 경계를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으로 정하고 있다. 동독은 이에 동의하면서 국경의 명확한 경계를 조약 내에 포함해 국경의 확정을 이루자고 제안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54

2+4 조약-동독 외무부의 조약문 초안

1990년 5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

내용_

동독 외무부 법무·조약국은 독일의 지위와 관련해 2+4 조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

항들을 열거하였다.
(1) 독일의 평화의무(Friedensgarantie) (2) 국경 확정 (3) 국제법적 기본원칙의 강화 (4) 미래 독일 국가의 정치·군사적 지위가 그것이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 독일은 자유롭고 법치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모든 독일 전투병력은 감축되어야 하며, 독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이점은 동일하다. 국경문제에 대해 세 가지 상이한 표현이 제안되었다. 전 유럽적 안전보장 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독일은 과도기 중에 자유로운 동맹결성권을 갖지만, 구동독지역에 나토의 군대가 주둔해서는 안 된다. 이 과도기 중 독일 군대가 지역방위를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이 군대는 독일 연방군이나 나토에 속해서는 안 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55

서독 주민의 동독여행-동독 내각위원회 시행령

1990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시행령을 통해 서독과 서베를린의 주민들이 무비자로 동독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 당국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입국을 거부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90, Teil I, Nr. 27, S. 248-249

문서 번호 156

동독의 재정부담 문제와 국가조약에 관한 연방정부의 콜 수상과 연방주지사들 간의 논의

1990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외 각주 대표, 헬무트 콜 수상, 자이터스 수상청장, 연방정부 각 부처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각 연방주의 대표들과 만나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해 논의한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연방정부와 연방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감당한다: 연방정부의 재무 장관 테오 바이겔이 1990년 5월 15일에 열린 재무장관회의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 회의에서 '독일통일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는 기금의 규모, 금융시장에서 융자를 얻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기금사용에 대한 연방주의 공동결정권,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감축, 베를린이 안게 될 특수한 재정부담의 배려,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 1995년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관계의 개정 등과 같은 문제들도 포함되었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들이 함께 나누는 문제는 1990년 5월 16일 기초자치단체 대표들과 협의되었다고 카스텐스 연방재무 차관이 보고했다.
2. 독일통일의 외교적 문제: 이에 대해서는 겐셔 외무 장관이 설명했다.
3. 동독과의 국가조약에 대한 협상: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요하네스 라우 주지사와 함부르크시의 헤닝 포셔라우 시장은 국가조약의 준비과정에 연방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포셔라우 시장은 통일과 관련해 기본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모든 연방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콜 수상은 연방정부는 항상 연방주들에게 보고해 왔고 동참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답변했다. 다양한 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록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콜 수상은 4주에 한번씩 연방정부와 연방주정부들 간의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280 S. 1122f (aus digitaler Edition – Seitenzahlen ggf. abweichend)

문서 번호 157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외무 장관 겐셔,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워싱턴 주재 서독대사관 보고

1990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라인하르트 쉬베페,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외무 장관 겐셔,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 미국 하원

내용_

이 문서는 워싱턴 주재 서독 대사 라인하르트 쉬베페가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 외무 장

관 겐셔, 연방국방부 장관 슈톨텐베르크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과 미 하원의원들과의 면담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방문에서 콜 수상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 남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독일의 주권에 대한 제한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럴 일이 있다면 아주 한정적인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콜 수상은 나아가 헬싱키 협정은 나토에 대한 보완이지 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통일된 독일은 오더-나이세강이 국경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것을 연방의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독일통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이 초기에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3~4년 후에 독일의 동부지역은 풍요로운 지역(ein blühendes Land)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미래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콜 수상은 소련군이 동독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답하였다.
반면 그는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미군이 독일과 유럽에 지속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토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소련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697 E

문서 번호 158

모스크바에서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와 소련 외무 차관 크윈진스키 간의 회담(1990년 5월 17일)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소련 외무 차관 크윈진스키

내용_

이 문서는 소련 외무 차관 크윈진스키와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가 모스크바에서 만나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소련의 입장을 논의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윈진스키 차관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소련의 안보와 관련된 소련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소련이 전승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과도기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소련의 입장은 동서독 간의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이 실현된 후에는 동독이 더 이상 자율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크윈진스키는 나아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4 회

담의 최종 문서에는 반드시 군축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 포함되어야 하며, 소련군의 철수 이후 독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문서 번호 159

본에서 열린 2+4 회담(3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장관 대리 크라바취,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미국 참사관 조엘릭,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등

내용_

이 문서는 2+4 회담의 틀에서 진행된 제3차 실무자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특히 통일된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측이 제출한 초안은 통일독일이 주권국가임을 확인하는 한편 베를린의 지위 및 폴란드-독일 간 양국 국경의 확정 및 그 종결적 효력에 대한 조약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미국 그리고 서독 정부 대표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표한 것에 반해, 소련은 위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포괄하는 방안만이 해결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는 평화적 독일에 대한 보장, 미래 독일 국가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대한 확인 및 생화학 및 핵무기의 포기 등이 포함되었다.

서방 측 전승국들과의 교감 아래 서독은 통일독일의 지위는 동서독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독 정부가 소련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 국경문제가 논의되었다. 서독은 동서독의 의회에서 오더-나이세강 경계로 국경을 확정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의결하고 통일 이후 최종 국경조약의 작업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본 3차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1990년 7월 17일의 3차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이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독과 동독 그리고 폴란드 간의 3자 회담은 추후 베를린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60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르크만-폴,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

내용_

이 문서에서는 동독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독일통일위원회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을 승인하기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위원회의 견해는 이 조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독 정부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89년 10월 7일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의 토지와 산림 매수와 관련된 토지법, 1945/1946년에 시행된 토지개혁과 1945/1949년에 승전연합국법에 따른 토지개혁을 통해 동독 주민이 획득한 소유권의 보장, 토지개혁과 승전연합국법의 틀을 벗어나 몰수된 재산의 검토,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우선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국가예산의 적자를 보충하고 국가채무의 감축 그리고 국가재원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동서독 간의 환경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독일의 동쪽 국경이 오더-나이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된 독일은 대량 학살무기를 포기하며 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는 동독 정부가 작성해서 입법화해야 할 사안들과 동독 정부가 실현해야 할 조치와 규정들의 목록도 작성하였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연맹90/녹색당'의 소수 의견이 첨부되었다. 녹색당은 통일에는 동의하지만 동서독 정부가 국가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헌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Drucksache 24 a

문서 번호 161

동독 외무부에서의 메켈 동독 외무 장관과 서독 수상청 국제정책 및 안전보장정책국 텔칙 국장과의 대화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메켈 동독 외무 장관, 서독 수상청 (외교 및 내독 관계, 개발정책, 국제안전보장 담당) 제2국 텔칙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을 방문한 후 텔칙 국장이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의 메켈 외무 장관과 소련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입장에 대해 나눈 대화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텔칙 국장은 소련에 경제 및 재정위기가 닥쳤으며 지불불능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콜 수상이 소련에 대해 50억 마르크 상당의 단기 여신 및 200에서 500억 마르크 상당의 장기 은행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콜 수상은 그를 통해 소련이 2+4 협상에서 최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길 기대했다고 했다. 그리고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달했다.

텔칙 국장과 메켈 외무 장관은 모두 소련 군대의 동독지역에서의 철수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서독 정부는 소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서독 주민들이 그에 비판적이리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미온적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메켈 외무 장관은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적 관계는 초기에 동독-소련 간의 양자 관계를 통해, 나중에는 서독을 포함한 3자 관계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동독과 소련 간에 존재하는 모든 요구사항 및 의무들을 서독이 한꺼번에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시각을 공유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국 가입 여부 및 핵무기 체제의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들이 논의되었다. 텔칙 국장과 메켈 외무 장관은 소련의 이익이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162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소련 방문-동독 외무 장관에 대한 주소련 동독 대사의 보고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뒤마 프랑스 외무 장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및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과 회담한 것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동독 대사가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앞으로 결코 독일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으로 잔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서방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미테랑 대통령 또한 통일독일이 나토 산하 정치기구에 회원국이 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토 군사동맹에 잔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유럽 통합을 위한 비전들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측의 유럽 국가연합 아이디어에 대해 소련 측은 헬싱키 협정에 기초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문서 번호 163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법무부 차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부 차관 호르스트 쾰러, 연방경제기술부 차관 오토 슐레히트 외 다른 부서 차관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재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 차관이었던 호르스트 쾰러가 통일문제에 관해 동독의 각 부처 담당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대표들이 서독 정부가 그때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 B.136/24370, 51 -14223 Sta 1 Bd. 6. -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문서 번호 164

동·서독 외무 장관 간 협의 위원회 구성-메켈 외무 장관과 겐셔 외무 장관의 동베를린 회의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메켈 동독 외무 장관, 겐셔 서독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겐셔 서독 외무 장관이 동베를린에서 메켈 동독 외무 장관 및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그리고 그 외 여러 정치인들을 만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의 외무 장관은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겐셔 장관은 소련이 원하는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적대적이자 군사적인 대립 관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발언의 논지였다. 그는 런던에서 열리는 7월 초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전략의 변화가 제시되길 기대하며, 소련 외무 장관이 말한 것처럼 헬싱키 협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다수의 헬싱키 협정 기구를 베를린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조약과 관련해서 겐셔 외무 장관은 연방수상, 기독교민주당 연방의회 원내 교섭 단체 그리고 폴란드 정부 모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겐셔 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 장관은 1990년 6월 22일의 2+4 회담 틀에서 열리는 베를린 외무 장관급 회담에서 독일의 군사적 지위 및 베를린 지위의 변화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겐셔 장관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에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대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겐셔 외무 장관과 메켈 동독 외무 장관은 2+4 협상 이후에는 통일독일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과도기적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독일의 통일과 독일의 주권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두 외무부의 교류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실무단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거기에는 군비 통제 및 군축; 유엔; 경제 및 남북문제; 유럽공동체; 외국 문화정책; 법무 및 영사 문제; 행정적 문제 등을 담당하는 실무단들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동·서독은 외국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대표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0

문서 번호 165

1990년 6월 9일 개최 실무자급 2+4 회담을 위한 동독 외무부의 논의 주제안

199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6월 9일에 개최될 실무자급 2+4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제안된 주제들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구조 및 체제; 국경문

제 처리의 원칙; 1990년 6월 22일 개최 외무장관급 회담 준비; 동 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발표 준비.
1990년 6월 22일에 개최될 외무장관급 2+4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군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국제법적 최종 합의 규정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결정, 국경문제 처리 원칙,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 규율 및 해소를 위한 실무단 투입 그리고 언론 보도 관련 결정.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동독과 서독 및 폴란드 간의 국경조약이 제안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당사국 간의 협의 내용을 다른 2+4 회담 참가국들에 전달하며, 그것을 형식상으로 2+4 회담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독일의 영토가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린이 될 것이며, 양국은 또한 독일 영토의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며 통일된 독일의 헌법도 이에 상응한 내용으로 변경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66

통일된 유럽 내의 통일독일-콜 수상이 미국의 독일위원회에서 행한 연설

1990년 6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동독,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나토, 남·중·동유럽 국가들, 유럽공동체, 헬싱키 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콜 수상이 미국의 독일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그 주제는 독일통일과 독-미 간 관계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이래 최근 1989/1990년도까지 미국은 독일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었다. 지금 현재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는 것은 독일인들에게 '행운'이며, 독일인들은 미국인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독일인들은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앞으로 결코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나토의 동맹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방 세계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독일은 연방국가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현재 동독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유럽의 통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12월에는 유럽 연합 경제화폐 연합과 정치적인 '국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야만 하며 결국에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간의 더욱 강화된 경제적·정치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13.06.1990. Nr. 74. S. 638-641.

문서 번호 167

동독에서 진행되는 인민 소유 재산의 민영화와 재조직에 관한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의 설명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연방경제부 장관 하우스만,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이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을 통해 하우스만은 동독에서 진행되는 민영화과정 그리고 신탁관리청의 구조조정에 관해 연방정부가 동독 수상청에 자문해 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경제부, 재무부 그리고 법무부의 자문을 받아 동독 수상청은 국유재산의 민영화와 재조직화를 위한 법안을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동독의 국영기업을 민간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은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체들이 사용해 온 토지와 대지는 새로이 설립될 회사의 소유로 전환된다. 나아가 신탁청의 조직을 개편하여 분야별로 분리된 관리 체제를 갖는 신탁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그를 통해 신탁청의 결정과정을 분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421 - 60000 Wi 3 NA 2 Band 2

문서 번호 168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4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 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등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의 4차 실무자 회의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식으로 국경문제가 2+4 회담의 최종 규정에 포함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긴 토론 끝에 정해진 다음의 내용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1) 통일독일의 영토는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린이 될 것임. (2) 폴란드와 국경에 대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조약이 체결될 것임. (3)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지 않는다. (4) 그에 상응하여 통일된 독일의 헌법이 변경될 것임(전문, 기본법 23조 및 기본법 146조) (5) 4개 전승국 정부는 독일 국경의 임시적 성격은 이로써 종료됨을 확인함.
1990년 6월 21일 이전에 본에서 추가적인 실무자급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69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렌구트 국장의 보고서-헌법 개정에 관한 고려

1990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게롤트 렌구트 실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내용_

- 회의에서 나타난 각 부처의 입장: 연방내무부(BMI)는 양측 모두가 폭넓게 수용한 동독과의(제2차) 국가조약을 선호한다. 연방법무부(BMJ)는 헌법이 편입에 좌우되는 조약 체결을 통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인도 법률(Überleitungsgesetz)을 선호한다. 연방재무부(BMF)는 국가조약을 통한 해결책이 헌법에 관한 원치 않은 논란을 상당수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무부(BMJ)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기본법 전문(Präambel, 前文)과 제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기본법 제23조는 대안 없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법 제29조(서독 연방지역의 재편성)에 관해서는 각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법의 재정 헌법(Finanzverfassung)과 국방 헌법(Wehrverfassung)을 동독에서 발효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 기본법 제116항(국적): 법개정 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 각 부처별 일정: 12월의 전 독일 의회 선거 일정을 감안해, 국가조약은 9월 말에 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정과 내각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편입 협상과 인도 법률 입법에 대한 구상을 시작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10, 1208-1209.

문서 번호 170

동독 연방 가입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대한 숙고-렌구트 실장이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90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332부 부장 렌구트,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내무부,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내용_

동독의 연방 가입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대한 고려 사항

1990년 6월 11일에 개최된 연방내무부,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그리고 연방수상청과의 회담

연방내무부, 연방재무부, 연방법무부 및 연방수상청 33그룹의 회담 주제:

- 동독의 연방 가입과 관련하여 기본법의 어떤 항목을 수정할 것이며 수정사항의 형식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의견 교환의 목적은 국가조약과 관련된 찬반 논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출처_ Bundeskanzleramt, 422- 35400 V~ 2 Bd. 1.

문서 번호 171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과 동독 외무부 간의 대화-소련 측의 입장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 그리닌,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대사 비서 그리고르예프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주재 소련대사관 자문 그리닌이 통일과정과 관련한 소련 측의 입장을 동독 외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소련이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일독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의 나토에 잔류해서는 안 된다. 나토가 변화될 경우, 이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소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변화들은 소련의 시각에서 볼 때 안정적이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유사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독일이 동시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준회원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4 회담 외에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 간에, 특히 평화 증진 및 진영적 사고의 해소에 기여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그리닌은 통일된 독일에 3년에서 15년까지의 과도기를 두고 그 기간 동안 2+4 협상 결과들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 이후에야 연합국들의 특별 권한이 완전히 소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닌은 동독 측의 입장과 소련 측 입장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0

문서 번호 172

경제, 통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독-독 간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비망록

1990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메켈 동독 외무 장관,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

내용_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은 바르샤바 주재 동독 및 서독의 대사관들에 독-독 간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이 메켈 동독 외무 장관에게 보낸 별도의 문서에서는 국경문제에 대한 동독과 서독 그리고 폴란드의 입장들이 요약되었다.
본 비망록에서는 폴란드 정부의 상기한 독-독 간 조약 및 독일의 통일에 대한 입장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폴란드는 통일 이후에 이제까지의 조건으로 독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 밖에도 폴란드가 유럽공동체로 통합되는 데 독일 측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한편 별도의 문서에서는 국경조약에 대한 협상은 통일 이후 독일 단일정부가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173

콜 수상에게 제출된 텔칙 실장의 제안-서방 주재 소련군의 재정조달 문제

1990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_ 호르스트 텔칙 국장,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의 외교안보국장 호르스트 텔칙이 1990년 6월 19일에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의 철수비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문제점에 관해 국방 차관과 회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상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주제는 1990년 6월 20일 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군 서부군단은 1990년 하반기에 약 14억 DM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부담 문제는 소련 측과 합의하에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련군과 가족 군속 등이 보유하고 있는 루블을 환전하는 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20, S. 1232-1234.

문서 번호 174

본에서 열린 2+4 회담(5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참사관 조엘릭,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등

내용_

이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들은 3차 및 4차 실무자급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 문제 및 국제법적 종결 규정의 구조에 대해 재차 토의하였다.

종전 4차 실무자급 회담에서 국경조약 관련한 절충이 이루어졌다. 본 5차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그 때문에 필요해진 서독의 기본법 23조의 수정에 대해 논의되었다. 1990년 7월 4일의 실무자급 회담 및 1990년 7월 17일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국경문제가 논의될 때는 폴란드 정부 파견단이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 파견단은 그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동 5차 회담에서 2+4 조약의 '임시 목차'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에 있어 어느 정도로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점에 있어 서방 측 연합국들 및 서독 측의 입장과 소련(및 상당 부분 동독)의 입장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75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2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에서 열린 2+4 회담 내 2차 외무장관급 회담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외무 장관들은 국경문제 해결 초안에는 합의했으나, 국제법적 종결 규정의 구조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1990년 6월 9일 개최 4차 실무자급 2+4 회담에서 작성된 기본원칙들이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종결 규정에 대한 소련 측의 초안을 토론하였는데, 이 안은 2+4 회담 이후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에 5년간의 과도기를 제안을 포함하였다. 그 기간에 서독과 동독의 이제까지의 모든 조약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독일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의 회원국이 될 것이며, 자신의 전력을 3년 내에 (약 60만 명과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연합군의 전력은 최소한 5년 동안 계속 독일에 주둔한다는 것이다. 서독, 프랑스, 미국 및 영국은 그에 따를 때 독일에 완전한 주권을 지니지 못한 특별 지위가 부여되게 되는 소련 측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76

'독일통일'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

1990년 6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연방내무부 장관, 연방재무부 장관

내용_

독일통일기금은 연방의 특별재산이었다. 그것은 통일 이후 독일정부가 5개의 신연방주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도입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중에 하나였다.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신연방주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유한 연방주와 가난한 연방주 간의 재정배분 체계에 통합되지 않는 대신에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재정을 제공받았다. 이 법을 통해 통일기금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규정되었다. 이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경제화폐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조약에 따라 신연방주를 지원하기 위해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통일기금을 설치한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한다.

이 기금을 통해 지원될 재원은 총 1,607억 5백만 마르크이며, 그것은 매년 분할되어 지급한다. 이 기금을 통해 지원될 재정의 총규모는 채무승인과 세수, 특히 수입관세를 통해 보장된다. 이 기금을 위해 연방과 서독의 구연방주들이 부담할 금액의 배분은 재정균형배분을 통해 규정된다. 연방주의 참여분은 게마인데재정개혁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정해진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의 구속력을 책임진다.

(이 법은 그 외에 재정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0 II S. 518, 533

문서 번호 177

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 조치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재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소련에게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소련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소련이 자체적인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독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이 당시 안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부족 문제도 언급된다. 소련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굳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일이 독일통일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개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방의 국가들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군축과 군사무기감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 체제 CSCE의 제도화 등도 포함되었다. 소련은 독일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독일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독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담보가 보장되고 차관을 상환하면 서방의 은행과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나아가 소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01 (212) - 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문서 번호 178

메켈 동독 외무 장관에 대한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의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입장 전달

날짜 미상–1990년 7월경

담당자 / 기관_ 쉐바드나체 소련 외무 장관, 메켈 동독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소련의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이 메켈 동독 외무 장관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소련 외무 장관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의를 통해 '진영을 초월한 유럽 내 일반적 안전보장 기구'의 초석이 놓여졌다고 적었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 뵈르너의 모스크바 방문(1990년 7월 14~17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회동에서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동 선언이 발표될 것인데, 이에 따라 상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원칙들이 확립되고 또 다른 모든 헬싱키 협정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은 그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동독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을 희망하였다. 바르샤바 조약의 사무총장에게 동 선언의 준비 및 초안 작성을 위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토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표자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초청하여 외교 관계 수립을 제안하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또한 나토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 내 정치자문위원회(Politisch Beratender Ausschuss)에서 발언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비엔나에서 1990년도에 예정된 '군사교범(Militärdoktrinen) 및 전력 간 비율(Kräfteverhältnissen)에 대한 유럽 군사 회의'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전 유럽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핵무기 문제를 포함한 유럽 내 군축 협상에는 더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 쉐바드나체 외무 장관은 헬싱키 협정에서 유럽 의회(Europäischer Vers-

ammlung)에 상당하는 의회 기구를 만드는 안에 나토 회원국들이 찬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47

문서 번호 179

연방수상실 루데비히 경제국장의 요약 보고-화폐통합 달성을 위한 국가조약의 실행

1990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요하네스 루데비히 국장, 연방수상청 제421국 국장 호르스트 베스터호프, 위르겐 슈타르크 실장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의 루데비히 경제국장이 작성한 것으로 화폐경제공동체 조약이 발효된 후의 상황을 정리해서 수상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화폐전환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독일연방은행과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이다. 독일연방은행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제를 아주 잘 해결했다. 국제금융시장도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1인당 교환한 금액이 대부분 2,000 DM의 최대교환 금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족당 약 800 DM 정도 교환했다.

화폐통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동독에서는 7월 1일 자로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동독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동독 측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1990년 7월 현재 동독의 재정지원을 위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독의 재정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폐통합 외에 환경, 우편, 교통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동서독 국경통과소에서 실시되던 검문이 사라졌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37, S. 1287-1289.

문서 번호 180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관한 1990년 6월 21일 자 최고인민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폴란드 측 보고

1990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 주폴란드 동독 대사, 메켈 동독 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바르샤바 주재 동독대사관이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의 보고를 전달받아 동독 정부에 보낸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문서에서 1990년 6월 21일 서독 연방의회와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동시 통과시킨 국경에 대한 승인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자마자 폴란드와 독일 간의 국경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폴란드 정부는 동 조약이 2+4 회담에서 만들어질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시간적으로 연계될 것을 요구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특히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측이 양 결의를 임시 조치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독일 국가 간의 통일 이전에 이 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용적으로는 폴란드 정부도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들에 동의를 표했다. 현재 영토의 불가침성; 특히 1945년 포츠담 선언을 포함한 기존 협정들에 대한 존중; 독일이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 등이 그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81

본에서 열린 2+4 회담(6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카스트룹, 프랑스 정치국장 뒤푸크, 소련 외무부 국장 반다렌코, 미국 국무부 차관 세이츠, 미국 국장 라이스, 영국 정치국장 웨스턴, 동독 외무부 차관 미젤비츠, 동독 외무부 (중요문제 담당) 국장 크라바취, 폴란드 유럽정책국 국장 술렉 등

내용_

2+4 회담의 6차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파리에서 1990년 7월 17일에 열릴 3차 외무장관급 회담의 논의사항이 준비되었다. 폴란드는 최초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개의 질문들이 정리되었다. 이들은 주로 소련의 관심사들에 해당하였는데(그리고 종종 동독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즉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 필요

할 경우 그 과도기의 기간, 나토, 구동독지역의 지위 등에 관련한 내용 및 독일의 평화의무(Friedensgarantie für Deutschland)에 대한 조항이 동 조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그에 이어 폴란드 정부 파견단은 국경문제에 관해 종전에 작성되었던 기본원칙들에 3가지 추가 제안을 하였다. 이때 가장 논쟁거리였던 것은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 조약이 2+4 회담의 최종 규정과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는지(이는 폴란드 측 입장이었다), 아니면 전자가 통일된 독일의 최종 규정을 통해 실현되어도 좋을지(이는 서독 측 입장이었다)의 질문이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82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에 관련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수상청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 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조약의 1차 협상문이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 측이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고 1990년 12월에 통일된 독일의 전독의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을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해 체결된 1차 국가조약에 이은 제2차 국가조약으로 칭하지 않고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동독 측은 전 독일 총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다. 그에 대해서 동독 측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 측은 동독 측의 제안, 2차 국가조약이 아닌 '통일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기존의 기본법 제23조에는 동독 측이 일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독 정부가 통일조약의 초안을 구상하기보다는 동독 측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독 측은 보았다. 통일조약은 양측의 입법부로부터 2/3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가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서독 정부는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독일의회에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고자 한다. 동독 측은 수도의 문제를 '통일조약'을 통해 분명히 규정하기를 원하며, 베를린을 수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동독 측은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국호와 서독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독일국가(Deutschlandlied)'를 국가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동독 측은 통일독일의 명칭을 '연방독일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이라는 국호와 가사 내용상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절로, 서독 국가의 3절을 2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통일된 '독일국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 동독 측은 신탁관리청(Treuhandstelle)의 수익을 오직 동독지역에만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동독 측은 국가목표규정(Staatszielbestimmung)과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의 경우 개인이 그것의 실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일정에 합의하였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5A, 1328-1331.

문서 번호 183

독일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통일조약)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1990년 7월 6일에 동서독 양국 대표들이 베를린에서 동독의 연방 가입과 관련된 기본법 제2항 제23조에 의거한 규정을 채택할 것에 동의하였다.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출처_ Bundeskanzleramt, BK, 132 - 35400 De 12 NA 5 Bd. 2.

문서 번호 184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수상청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수상청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 위원회

내용_

-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가입에 관한 원칙적 문제: 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 5개 주의 서독 편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운명
-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 신탁관리청
- 유럽공동체법 도입과 신설 5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 상호경제원조(이하 RGW) 자문위원회와 소련, 기타 RGW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 형성을 위한 법적 규정
-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정부 헌법과 주정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 동독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5A, 1328-1331.

문서 번호 185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한 폴란드 측 입장-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와 메켈 동독 외무 장관의 전화통화 내용

1990년 7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 판 츠볼

내용_

바르샤바 주재 동독 대사 판 츠볼은 메켈 동독 외무 장관에게 자신과 폴란드 외무 장관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다.

폴란드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폴란드는 하나로 파악된 독일에 대한 4개 전승국들의 권한 행사가 지체되게끔 폴란드가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4개 전승국들이 그들이 연합국으로서의 권한을 아직 행사하는 한에 있어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폴란드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발언하였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186

파리에서 열린 2+4 회담(3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외무 장관 메켈,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폴란드 외무 장관 스쿠비쉐프스키

내용_

이 문서는 2+4 회담의 일환으로 파리에서 열린 본 3차 외무장관급 회담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는 스쿠비쉐프스키 폴란드 외무 장관이 참가하였다. 동 회담은 그전 회담들과 비교해서 확연할 정도로 분명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담에서는 국경문제를 다루는 기본원칙에 대한 공동 결의가 작성되었다. 이 결의는 베를린에서 열린 1990년 6월 9일 개최 4차 실무자급 2+4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5가지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통일독일의 영토는 서독 및 동독 그리고 베를린이 될 것임. 독일의 국경 확정은 유럽 내 평화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위 사항은 독일-폴란드 간 국경조약의 체결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3) 그 이외의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4) 이상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독일 기본법상의 조항들은 변경되어야 함. 이는

기본법 23조 및 기본법 146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5) 4개 전승국 정부는 이상을 확인함.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독일-폴란드 간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소련은 독일에 대해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7월 15일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 간의 캅카스 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1990년 7월 5~6일간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정책 방향이 수정된 것을 계기로 도출되었다. 그 밖의 양국 간 관심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4 회담의 종료 이후에 독일-소련 간에 전체 조약(Gesamtvertrag)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87

통일조약에 대한 1990년 7월 18일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연방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에서 겐셔 서독 외무 장관이 통일 이후 전승 4개국이 독일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이 소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 대한 전승4개국의 권한과 관련하여 먼저 소련과 3개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1. 현 동독 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향후 3~4년 주둔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2. 현 동독 영토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재정적 지출에 대한 통화 가치 균등화(Währungsausgleich) 조치에 대한 조약; 3. 통일독일과 소련 간의 새로운 기본조약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서독은 소련 측과 독일연방군이 미래에 동독 인민군을 포함할 것과, 그 전력의 수요를 제한할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폴란드와의 근린 관계 조약 체결에 있어 이를 소련과의 조약 체결과 가능한 한 가까운 시기 중에 처리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그 이전에 폴란드와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기본법과 관련해 기본법 23조의 삭제 및 전문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이상에 있어 전제 사항이다. 기본법 146조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 문제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연방법의 전부를 적용할 것인지, 아

니면 그 부분적인 적용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될 법령들과 적용되지 않을 법령들 각각의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88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 회담에 대한 보고-외무부 정치국의 보고

1990년 7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익, 한스-디트리히 겐셔 연방외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 정치국 국장 대리 회익이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 회담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외무 장관 겐셔 및 연방재무부 장관 바이겔이 소련을 방문하였던 1990년 7월 15일과 16일간 소련에서의 회담을 통해 독-소 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파리 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파리 회담의 오전 회의에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구조에 대하여 빠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20개 항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은 각국 외무부 정치국장들에 의해 계속 검토되게 될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문제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에 2+4+1의 형식으로 최초로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 다음의 5개 원칙이 도출되었다.

1. 서독과 동독의 영토로 이루어진 독일의 현 국경은 최종적임을 확인함 2.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을 국제법적 조약을 통해 확인함 3. 독일은 영토 변경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주장도 하지 않음 4. 추후 공동 성명에서 이와는 다르게 표현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5. 4개 전승국의 이에 대한 형식적 확인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통일의 대외적 측면의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비준 등 법적, 형식적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 이전에 이를 완료한다는 시간 계획은 확실히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56.313 E

문서 번호 189

본에서 열린 2+4 회담(7차 실무자급 회담)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_

동 본에서 2+4 회담의 일환으로 열린 7차 실무자급 회담에서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질문들의 대부분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며 전문의 초안도 계속 작성될 수 있었다. 참가국들 간에 더 이상 근본적인 이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190

유럽공동체에 동독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 헬무트 콜 수상이 들로어 유럽위원장에게 보낸 서신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콜, 유럽위원회 위원장 들로어

내용_

이 문서는 콜 수상이 들로어 유럽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독과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서독 정부와 협의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당시 유럽위원회는 독일통일의 틀에서 동독을 유럽공동체로 포함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콜 수상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에게 재정을 부담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독일통일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S. 1402

문서 번호 191

유럽공동체에 동독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 헬무트 콜 수상이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방에만에게 보낸 서신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 연방수상, 방에만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내용_

이 문서는 콜 수상이 들로어 유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방에만 부위원장에게도 함께 보내면서 그에게 독일 정부의 입장을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콜 수상은 방에만 부위원장에게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이 독일통일로 인해 그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인상을 가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1 – 35400 Eg 29 Band 3

문서 번호 192

동독의 통합과 관련하여 헬무트 콜 수상이 노동부 장관 블륌에게 보낸 서한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노동부 장관 블륌

내용_

이 문서는 헬무트 콜 수상이 연방정부의 노동사회복지 장관 노버트 블륌에게 보낸 것이다. 콜 수상은 블륌 장관에게 동독을 위한 유럽의 구조기금에 관한 과도기규정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와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유럽위원회가 당시 동독을 통합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의 자체적인 재원 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회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콜 수상은 유럽공동체와 모든 회원국들이 독일통일을 핑계로 회비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콜 수상은 이와 유사한 서한을 이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장관들에게 보내고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S. 1403

문서 번호 193

2차 국가조약의 내용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의 제안

1990년 7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내용_

동독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2차 국가조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통일된 독일의 영토는 서독과 동독 및 베를린으로 한다. 2. 두 국가 간 통일이 완성됨과 동시에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에 대해서 조약상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3. 통일된 독일은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4. 독일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5. 헌법상으로 파시즘과 군사주의(패전국이었던 국가가 과거 패전처리의 부당성을 사후에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보복주의 및 테러를 금지한다. 6. 생화학 및 핵무기의 생산 및 보유, 그 배치 및 확산을 금지한다. 7. 동시에 동독 인민군(NVA)과 서독 연방군을 감축한다. 8. 통일독일 군대의 인적·기술적 전환을 일원적인 법적 규정을 통해 시행한다. 9. 구동독 및 전 베를린지역의 군사적 지위 및 독일 내 외국 주둔 군대의 철수에 대한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구동독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던 조약들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11. 두 독일 국가의 비자 정책을 동일하게 만듦. 12. 동독의 유럽공동체 귀속을 위한 경과 규정들. 13. 동독 출신의 인사를 유럽 의회 및 유럽 평의회의 의원으로 배정함. 14. 통일독일에서 동독의 해외 공관을 인계받으며 동독의 해외 문화원 및 정보센터들을 유지시킬 것. 15. 인권의 보호. 16. 망명권의 보장 및 개선. 17. 소수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 18. 동독의 개발 프로젝트를 유지할 것. 19. (특히 전문 및 독일 국적 관련 규정의 수정을 포함한) 기본법의 수정. 동 위원회 소속 민주사회당 의원들은 위와는 별도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전 유럽적 안전보장 체제가 성립될 때까지는 현 동독에 독일연방군 및 나토와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군사 관련 법률(Wehrrecht)을 제정하여야 한다. 동독, 서독 및 베를린에서 국민투표(Volksbefragungen)를 통해 미래 독일이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베를린이 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정부 기관들이 지역에 분산 배치될 수도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내렸던 결정들은 구동독에 속했던 연방주들 및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1

문서 번호 194

통일조약과 관련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1990년 7월 24일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통일조약의 구조와 관련해 동 내각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이어 기본법에 대한 여러 수정 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방주들과 동독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로서 기본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그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본법 23조는 삭제되고, 146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 현재 유효한 법령과 과도기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용인하게 해 주는 추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동독의 특별 권한들(Sonderrechte)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헬싱키 협정이 아닌 통일조약 내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독일통일기금'과 관련해서는 연방과 연방주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회의 참가자들은 동독에 연방법 일체가 적용되는 안을 선호하였다. 그 외에도 각 소관 부처가 제기한 개별 사항들에 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동독에서 가능한 경제적인 지원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동독 체제전환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유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95

독-소 간 조약-외무부 내 관할권에 대한 논의-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의 보고

1990년 7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 외무부 2A 분과 (군축 및 군축통제 담당 연방관) 분과장 홀릭, 서독 외무부 법무국 국장 외스터헬트 및 그 외 외무부 소속 분과들, 수상청 (외무부, 경제협력부 담당) 21국 국장 하르트만, (동-서 관계, 동유럽 국가들·소련 및 미국과의 양자 관계 및 군축과 군비 통제, 특히 헬싱키 협정 관련 담당) 외무부 212과 과장 대리 니켈, 연방재무부 소속 자우페, 연방국방부 소속 대령 올딕스 및 플렉, 연방경제부 국제경제국 국장 쇼메루스, 동-서 경제적 관계 담당 국장 하이트란트

내용_

서독 외무부 (소련 담당) 213과는 외무부에서의 여러 부처 및 수상청 대표들 간의 논의를 정리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외무부 정치국 디터 카스트룹 국장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0년 7월 17일 회담에서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총서기장은 미래의 통일독일과 소련 간에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조약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1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준비는 지금 이미 개시되어야 한다.

각 부처 및 수상청의 대표들은 동 조약에 대한 소련 측 초안을 서독 측 논의를 위한 기초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나토 및 유럽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치가 있었다. 문서의 다음 부분에는 소련 측 안에 대한 논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카스트룹 국장은 수상청과 각 연방부처가 1990년 8월 중순까지 소련 안의 각 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카스트룹 국장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독일 측을 대표할 것이다. 소련 측의 그 상대역은 소련 외무 장관 대리 크윈진스키로 예정되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40.713 E

문서 번호 196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T/F의 문건-통일조약(안)

1990년 7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단

내용_

- 전문에는 평화와 자유,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 국가의 건설 및 국경 불가침을 강조한다. 서독 측의 제안문에 4대 승전연합국에 관해 언급한다.
- 제1장: 기본 토대(베를린을 포함한 신설 주)
- 제2장: 법 조정(기본법 개정, 동독 인민군(Nationale Volksarmee)과 국경수비대(Grenztruppe) 관계자들의 원칙적 활용 가능성, 서독 연방법 및 기타 법률의 적용 및 동독법 규정의 무효화)
- 제4장: 조약 및 협정에 관한 문제(여기에는 재산문제와 동서독이 체결한 조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제5장: 공공 행정(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개발을 위해 과도적기에 동부 재건부 설치, 행정기관 및 공공 업무의 법적 관계의 이행, 공무원법 도입)
- 제6장: 재정(세수(稅收), 재정 균형, 동독의 행정 자산과 재정 자산, 부채, 사회복지, 신

탁 자산, 유럽공동체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무구조조정, 동독 국영철도(Deutsche Reichsbahn) 문제, 기타 시설물의 건축)
- 제8장: 안보정책과 군사력(군비 감축 및 입증)
- 제9장: 국제 관계에 대한 규정(대사관을 포함하여 외국에 주재한 동독의 외교공관, 외교적 평등원칙, 유럽공동체와의 관계, 상호경제원조(RGW) 자문위원회, 소련 및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 제10장: 문화, 교육, 과학
- 제11장: 조약의 법적 절차와 발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74, S. 1425-1444.

문서 번호 197

'독일통일' 내각위원회-동독에서의 사태 변화 및 동·서독 간의 협상-서독 외무부 21실 보고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21분과 과장 폰 슈투드니츠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7월 31일의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동독에서의 효력 발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간의 교환에 있어 액수가 10만 서독 마르크를 넘는 총 6만 건 중 단지 300건에 있어서만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주간 더 작은 액수의 계좌들도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실업자의 수는 22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중 단지 12만 명만이 실업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들을 위한 직업알선은 막 시작되었다. 4만 개의 취업 가능한 일자리 중 단지 6천 개에 대해서만 직업알선이 이루어졌다. 다수 사업체는 재정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서독 은행 및 신탁청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망된다.

이 회의의 두 번째 논의 주제는 진행 중인 동·서독 간의 협상에 대해서였다. 1990년 8월 8일이나 9일에 연방의회 산하 위원회에서 선거권 조약에 대해 회의가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과 관련하여 동독 정부 연정 내에 분열상 때문에 동 조약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 그 외에 협상 상황이 부분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조약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50 E

문서 번호 198

독일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2차 협상(통일조약)

1990년 8월 1일–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슈테른 국장, 부쎄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통일을 위한 조약에 관한 제2차 협상라운드에 대한 보고서이다. 서독 연방수상청의 슈테른 국장과 부쎄 국장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동베를린에서 3일간 열린 통일조약 2차 협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는 동독 측이 쇼이블레 내무 장관이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12월에 있을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협상도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그룹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조약의 구조와 문장에 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부록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연방주, 동독 정부, 연방정부 간에 재정문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마지막 협상은 1990년 8월 20일에 열릴 것이다.

개별적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수도문제는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낙태와 관련해서도 동독의 법률이 한시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방주들은 연방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기를 요구하며, 동독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독의 법률이 동독지역에 적용되게 되고 예외적인 경우는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하기로 한다. 동독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통일조약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은 2+4 회담을 통해 다루어질 것이다. 동독의 인력을 승계할 것에 대한 요구는 업무 영역의 조정에 따라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행정재산 목록은 198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그 이후의 변화를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한다. 신탁관리청은 연방정부의 공적인 기구로 업무를 계속한다. 연방재무부와 연방경제부 어느 쪽이 신탁관리청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77, S. 1449–1453.

문서 번호 199

서독 경제부가 독일통일 실무그룹에 제출한 동독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1990년 8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기술부 차관 오토 슐레히트 ,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경제부가 통일 이전에 과도기 동독의 경제 상황을 분석 정리한 자료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전기와 대비해 볼 때 1990년 상반기에는 산업 생산성이 약 7% 정도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늘고, 생산된 제품의 판로 또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1990년 7월 기준으로 볼 때 실업자 수는 242,000명에 달했고(3% 비율), 파악된 임시 노동자 수는 656,000명을 기록했다. 구조적 전환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조치는 다름 아닌 서독의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서독의 조세제도가 성과 및 성장 지향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도입하게 되면 동독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순 조세 금액이 1천억 마르크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달성된다. 서독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의 구조전환 과정을 보조했다. 예를 들어 지역 투자 융자제공, 자기자본 조성 지원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서독 기업들 또한 동독 기업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상반기 기준 약 2,800개의 조인트벤처). 그동안 동독 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신탁관리청'). 아울러 유럽 연합과 동독 사이의 상품교역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1990년 8월 1일부터 농산물 및 관세 통합). 하지만 1990년 하반기 때 동독 국가예산은 350억 마르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und Daniel Hofman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1989/90: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Nr. 380 u. 380A, S. 1458 – 1461

문서 번호 200

신탁관리청 관련 연방정부 콜 수상과 연방주 주지사들 간의 회의 보고서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요하네스 라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각 주의 대표, 연방정부 각 부처 대표, 헬무트 콜 수상,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콜 수상이 연방주의 주지사들과 신탁관리청의 업무와 독일통

일 문제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청의 업무, 특히 동독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응찰에 관한 문제와 그 외에 동독과 동유럽 국가 간의 무역, 동독의 사업체를 중소기업에 매각하는 문제 등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서 독일통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되었다.
1. 콜 수상이 제안한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문제
2. 통일조약 체결을 위한 일정표
3. 통일 이후 공공기관의 업무조직-이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원할한 협력을 위한 조정국을 설치하며, 연방정부의 여러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고, 인력계획과 인원감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무국을 연방내무부에 설치하기로 한다.
4. 연방회의에서 연방주들의 의석을 재분배하기 위해 통일조약 초안과 기본법 개정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9247, 122 - 14020 Mi 1.

문서 번호 201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에 대한 연방정부 보고

1990년 9월 3일

담당자 / 기관_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유럽의회, 동독,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독일연방공화국, 유럽 경제공동체, 중·동유럽 국가들

내용_

유럽위원회는 독일통일 과정이 역동적이면서도 규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독일통일은 유럽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 통합을 진전시키고 또 가속화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동독의 통일독일 및 유럽공동체로의 귀속은 여러 단계에 걸쳐 완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반드시 유럽공동체 조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사회는 독일통일을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유럽이사회는 동독 해당 지역의 유럽공동체 귀속이 문제점 없이 조화롭게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의 결론을 환영하며 독일통일에 대한 비정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독일통일이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유럽공동체 측의 관점에서는 더 용이하다고 보았다. 본 문서의 다음 부분에서는 동독의 경제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경제는 전문화가 결여되었다. 서방 공업국가들과 비교하면 동독 경제 구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편이다. 동독 경제에서 제조업은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에 있어서는 서비스 부문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차이가 있다. 그 국가 규모를 고려할 때, 동독은 세계무역 체제와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출은 GDP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네덜란드에서 이는 GDP의 55에서 60퍼센트에 달한다. 그 밖에도 이 문서에서는 동독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경제조약들이 열거되었다. 이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가 제안하는 다수의 법령안들이 포함되었다. 동 문서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통일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논의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70

문서 번호 202

2+4 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

1990년 9월 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내용_

서신 형식으로 연합군 측 외무 장관들에게 전달된 본 2+4 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에서는 연합군 측의 결정의 효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총 4개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1)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점령법에 기초해서 시행되었던 몰수 조치 및 농지개혁을 소련이나 동독이 원상복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통일된 독일의 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손해보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전쟁 위령소 및 전몰자 묘지들은 독일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관리되어야 한다.

(3) 기본법은 자유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예를 들어 나치 연맹(nationalsozialistische Vereinigungen)과 같은 조직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4) 다른 국가들과 동독이 맺은 조약들의 지속이나 변경 혹은 폐지의 결정에 있어 유럽공동체의 관할권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03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1일 차)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_

2+4 회담의 최종 문서의 제목을 놓고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사이에 정해진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전문; 국경문제 조항;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조항; 생화학 및 핵무기 관련 조항; 독일군 전력에 대한 조항이 그것이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04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2일 차)

1990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_

이 자문회의와 관련한 소련 측 협상 지침에 따르면 논의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다시 정치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처음부터 강조되었다. 동독의 군사적 지위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또한 그 외에도 소련 측 안의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했다: 통일된 독일의 평화 엄수 의무; 4개 전승국 조치의 정당성; 나치즘의 금지; 역사기념관 및 위령탑 등의 현상 유지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05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3일 차)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_

2+4 회담의 일환으로 열린 8차 실무자급 회담 중 자문회의 3일 차에 해당하는 본 회의에서 최종 규정의 상당 부분이 완성될 수 있었다. 즉, 전문과 국경문제, 4개 전승국의 권한 소멸, 독일의 생화학 및 핵무기 포기 및 독일군 전력의 상한에 대한 조항들이 그것이다. 아직도 회담의 (최종) 문서의 명칭에 대해 그리고 구동독지역에 핵무기 탑재 체계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확실히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또 연합국 군대가 이제까지의 동·서독 간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조약의 효력 발생 전까지 4개 전승국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06

소련과의 전환협정-수상청 회의 결과

1990년 9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경쟁, 구조, 산업, 에너지, 기업, 수공업 및 무역, 마샬플랜 재정, 국제경제, 내각 경제위원회 정책 담당) 421부 부장 베스터호프,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수상청 부장 베스터호프는 수상청장 자이터스에 대한 본 보고서에서 소련군의 철수와 관련된 경제적·재정 문제를 다루는 소련과의 전환협정이 상당 부분 완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소련군의 철수를 위한 전반적인 재정적 틀이 협의되어야 규정이 가능한 재정적 측면들을 일단 제외하고 1990년 9월 6일 오전 3시 정각에 전환협정이 완성될 수 있었다. 4년 기간에 나누어 185억 마르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련 측의 주장을 서독 연방재무 장관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였다. 서독 연방재무부의 계산에서는 그 비용을 40억 마르크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 바이겔이 스스로 소련에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독일 측에서는 그 외의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지역의 소련군 주둔 대지 및 작센주와 튜링겐주 소재 독-소 비스무트주식회사(과거 세계 4위의 우라늄 채굴량을 자랑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소련에서 독일에 그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던 광산회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우려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 26869, 441 - 84010 Wo 107 Band 2

문서 번호 207

본에서 열린 2+4 회담(8차 실무자급 회담, 자문회의 4일 차)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담당 실무자급 공무원(다른 실무자급 회담 명단 참조)

내용_

2+4 회담의 일환으로 열린 8차 실무자급 회담 중 자문회의 4일 차 회의에서는 연합국 군대가 이제까지의 동·서독 간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남은 문제들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내려진 연합군 측의 결정들의 효력에 대한 질문은 동·서독의 외무 장관들이 2+4 조약의 서명일에 4개 전승국 외무 장관들에 전달할 공동 서신에서 답해질 것이다(이와 관련해 본 문서집에 포함된 1990년 9월 3일 자 〈2+4 조약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공동 성명 초안〉 문서를 참고).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08

연방수상 헬무트 콜과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간의 전화통화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내용_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유하였다. 동독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에 대한 협상에도 진전이 있었다. 콜 수상은 전환협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련 내 (복귀한 군대를 위한) 주거시설의 건설 문제, 철수 전까지 동독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그리고 (소련 군인들의) 직업전환교육 및

귀환 교통비용 문제 등이 그에 해당한다. 위 주거시설의 건설 문제를 현지에서 전담해 결정할 소련 측 인사가 필요하다. 양측의 전문가들이 그 진행을 협의해야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콜 수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실질적인 문제들을 밝힐 포럼의 구성에 찬성하였다. 이 포럼은 비용의 총액에 대해 합의가 되자마자 만들어져야 한다.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해 큰 그림을 잘못 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콜 수상은 80억 마르크라는 제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보고, 주거시설의 건설을 이 제안의 특별한 내용으로서 제의하였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주거시설의 건설에만도 11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콜 수상은 소련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지 주거시설이 아니라 인프라 설비의 건설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콜 수상은 특히 6억 마르크 상당의 돈육이 소련에 공급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동물자는 동독에서 생산된 제품이기에 그 공급은 1990년 10월 3일까지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가트(GATT)와 유럽공동체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1990년 10월 3일의 통일 경축행사에 초청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213 – 30130 S 25 Üb 5 Band 2

문서 번호 209

1990년 9월 12일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대한 조약-2+4 조약

1990년 9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9월 12일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대한 조약-2+4 조약 및 1990년 10월 1일의 4개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성명'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1) 서독과 동독 및 전 베를린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현 국경은 최종적이다. 폴란드와 이후 체결할 국제법적 조약을 통해 이점이 재확인될 것이다.

(2) 독일은 평화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3) 독일은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독일군의 전력은 오는 3년에서 4년 이내에 37만 명으로 제한한다.

(4) 소련군은 1994년 말까지 동독지역에서 철군한다.

(5) 소련군이 동독지역에서 철수할 때까지 구동독 영토에는 오직 다른 지역에서 독일군 전력이 소속되어 있는 동맹군 구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독일군 전력만이 배치될 수 있다. 다른 외국군 전력은 동독지역에 주둔할 수 없으며 이곳에서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 외에 동독지역에 핵무기 탑재 체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외 다른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6) 독일은 동맹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 (7) 연합국들의 모든 권한과 책임 및 시설들은 소멸 및 제거된다. (8) 동 조약의 비준 및 승인에 대한 규정들 (9) 조약의 효력 발생 (10) 조약상의 언어 (독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조약문의 공탁 및 복제에 대한 규정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MULT-781

문서 번호 210

모스크바에서 열린 2+4 회담(4차 외무장관급 회담)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외무 장관 겐셔,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 미국 국무 장관 베이커, 영국 외무 장관 허드, 소련 외무 장관 쉐바드나체, 프랑스 외무 장관 뒤마

내용_
이 문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2+4 회담의 제4차 외무장관급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최종 조약규정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비록 동독 영토에서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가 이중 탑재가능한 탑재 체계의 배치가 허용되었기는 하나, 이는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을 탑재하는 형태로서만 계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참가자들은 동 협상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독일통일이 유럽 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치하하였다. 이들은 뉴욕에서 열리는 오는 1990년 10월 1일과 2일의 헬싱키 협정 정상회담에서 본 2+4 조약에 대해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통일된 독일은 2+4 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독일은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그 군대 전력을 제한한다.
동독의 드 메지에르 총리 겸 외무 장관과 겐셔 서독 외무 장관은 동 2+4 조약에 필수적인 부록이 될 양자의 공동 서한을 다른 4개국 외무 장관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다음 4개 사항이 중요하였다. 1. 여기에서는 미해결 재산권 문제에 대한 1990년 6월 15일의 서독과 동독 정부의 공동 성명이 언급되었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점령법에 기초해서 시행되었던 몰수 조치는 더 이상 원상회복될 수 없다." 소련과 동독은 당시 시행되었던 조치들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서독 정부는 그러한 입장을 인식하였다고 답하였다.
서독 정부는 미래의 통일된 독일의 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손해 보상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 전쟁과 폭력적 지배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 및 전몰자 묘지는 그

대로 유지·보존되어야 한다. 3. 통일독일의 자유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4. 구동독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맺었던 국제법적 조약들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혹은 폐지될 것인지 아니면 변경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 서한의 내용을 발터 쉘 전 외무부 장관의 소련 정부에 대한 1970년의 서신 및 전 연방특임 장관 에곤 바의 동독 정부에 대한 1972년의 서신(본 총서에도 포함된 독일통일문서집 31권 1번 및 2번 문서) 각각의 내용과 비교해 볼 만 하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25

문서 번호 211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회의-신연방주 가입으로 인한 연방·연방주 공동 조정사무소(Bund-Länder-Clearingstelle)의 확대

1990년 9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과장 람바흐

내용_

연방내무부는 다음 내용을 보고하였다. 연방·연방주 공동 조정사무소(Bund-Länder-Clearingstelle)는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1개의 신연방주마다 10명의 구연방주 소속 연방 및 연방주 공무원들이 배정되었다. 이에 1명의 조정관(Koordinatior)이 각각 추가되었다. 본 문서에는 조정관들의 성명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노동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독지역의 각 연방주 주도에서는 1990년 9월 24일 자로 자문단의 완전한 구성과 활동이 개시되었다. 본(Bonn) 소재 사무소도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문서에는 앞으로 구성될 실무단들의 목록이 포함되었다. 쇼이블레 연방내무부 장관은 동독지역의 각 연방주 주도에 우편망이 확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문단의 숙소 문제는 해결되었다. 연방재무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기에, 연방 국방부는 본과 베를린 간 셔틀버스의 추가 배치를 약속할 수 있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Aktensignatur ZA 198.468 E

문서 번호 212

전 세계 정부들에 보내는 연방수상 헬무트 콜의 서신

1990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독일연방공화국, 폴란드공화국, 동독, 유럽공동체, 미국, 소련, 유엔

내용_

독일통일의 당일에 콜 수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전 세계 모든 정부들에게 동 서신을 보냈다. 콜 수상은 통일이 세계 평화와 유럽 통합에 공헌할 것임을 확언하였다. 그는 독일이 영토 변경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동독의 국제조약들은 재검토될 것이다. 독일은 앞으로도 서구 민주주의 및 나토의 일원이며 전 세계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력 감축을 통해 국제적 군축에도 공헌할 것이다.

출처_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05.10.1990. Nr. 188. S. 1227-1228.

문서 번호 213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헬무트 콜 수상의 정부 성명

1990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헬싱키 회의, 나토, 서유럽 연합,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폴란드 총리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남·중·동유럽 국가들

내용_

전 독일을 포괄하는 최초의 연방의회 회의에서 콜 수상은 의회가 2+4 조약을 비준할 것을 호소하면서, 독일통일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일은 서방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집단 방위 체제 내에서 주권을 분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목표는 유럽 국가연합을 건설하는 것이다. 콜 수상은 프랑스와의 협력자 관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더 적은 무기가 평화를 만든다"라는 모토하에 국제적 군축에도 기여한다. 이에 관해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 총서기장과 합의한 바 있다. 소련군은 1994년 말까지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 밖에도 독일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현존하는 국경을 보장한다. 또한 독일은 빈곤과 기근 그리고 환경파괴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출처_ Kohl, Helmut. 1991. Vereinigung Deutschlands im Jahre 1990. Verträge und Erklärungen. Bon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S. 280-287.

문서 번호 214

유럽공동체와 독일통일-기민당/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자민당 원내 교섭 단체의 발의

1990년 10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의회, 기민당/기사당 연합 원내 교섭 단체, 사민당 원내 교섭 단체, 자민당 원내 교섭 단체, 신연방주들,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공동체 이사회

내용_

기민당/기사당 연합, 사민당 및 자민당 원내 교섭 단체의 발의에서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가능한 한 유럽공동체 및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하도록 요구받았다. 동 원내 교섭 단체들은 유럽공동체 각 기관의 조속한 처리에 감사하면서, 아직 협상해야 할 이행조치들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 주길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동독지역에서 구신탁청이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 및 동 지역에서 (특히 구조펀드를 포함한) 유럽공동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타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독일통일이 유럽 통합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391

문서 번호 215

동독 정부와 연방수상청 간의 인적 협력

199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수상청, 연방수상 헬무트 콜, 수상청 국장 텔칙, 동독 정부, 동독 총리 드 메지에르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던 호르스트 텔칙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되기까지 329일간의 기억을 기록한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여러 차례 연방수상청과 동독 정부 간의 인적 협력에 관해 언급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에게는 동독 개혁정부의 수장으로 로타 드 메지에르와 같이 능력 있는 인물이 선출된 것이 특히 중요했다. 콜 수상은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 이후 동독의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협상의 결과에 아주 만족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4+2 회담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은 동독 정부가 서독 정부로부터 원격조정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드 메지에르 총리의 정부성명서는 부분적으로 연방정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드 메지에르 총리는 인민군을 해체하지 않으려고 했다. 인민군 해체가 동독 정부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 4월에 동독 주재 소련 대사가 드 메지에르 총리에게 소련이 여전히 동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텔칙 본인은 동독 체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동독 정부가 경제, 재정 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통일과 함께 정확한 규모조차 알지 못한 채 엄청난 책임과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전 독일 선거를 조기 실시하자는 요구가 커졌다. 콜 수상은 전 독일 선거를 1990년 12월에 실시하기를 원했다.

출처_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Siedler, Berlin. 1991

문서 번호 216

한시적 연대세 도입법 초안

1991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정부, 연방수상 헬무트 콜, 연방재무부 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주 지역세무관청

내용_

이 문서는 연대세 도입법의 초안이다. 1990년에는 걸프전쟁과 동유럽의 변화 그리고 신연방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해 연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런 추가적인 부담들은 기존의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1992년부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차체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줄이고 면제되는 세금도 줄여서 100억 DM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에서 차입금을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독일이 누리는 높은 신용평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부담은 모든 국민이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국가적인 과제였다. 그것이 연대세 도입의 배경이다.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대추가부담금, 즉 연대세가 부가되었다. 연대세 납부의무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이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갖게 되

었다. 연대세는 모든 납세자들이 자신의 납세 능력에 맞추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연대세의 관리는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지역의 세무관청이 담당한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142/91

문서 번호 217

독일 국가 3절에 관한 결정과 관련 연방대통령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서신

1991년 1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연방대통령, 콜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연방대통령이 독일 국가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콜 수상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독일 국가의 3절은 독일연방공화국 국민들에게 국가의 한 부분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절은 특히 분단기 동안에 독일인이 법치국가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통일을 원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콜 수상은 바이츠제커 대통령에게 보낸 답신에서 모든 독일인들은 자유 체제하에서 조국통일이 완성되기를 원했고, 그러한 기대가 독일 국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답했다. 이제 독일 국가는 법치국가적 질서하에서 살게 된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3, S. 2135, Ausgabetag 29.11.1991

문서 번호 218

신연방주를 특별히 고려하여 연방관청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 독립연방주의위원회가 1992년 5월 27일에 제출한 제안서

1992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장

내용_

독일 연방의회의 독립연방주의위원회와 연방회의는 1990년 5월 27일에 신연방주를 특별히 배려하여 연방관청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였다.

I. 일정한 연방기구를 신연방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다(각 주에 배치될 기구를 제시)

II. 연방기구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의결되었다.
신설될 연방관청과 기구는 신연방주에 배치한다.
통일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으로 결정됨으로써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본을 위한 보상의 차원에서 연방기구를 본으로 이전하는 작업 또한 강화될 것이다(이전할 기구의 리스트 제시).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450/92

문서 번호 219

서독을 방문한 동독 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사민당 의원 슈미트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슈미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 내무 차관인 바펜슈미트가 답한 것이다.
서독은 1959년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불해 왔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나아가 1964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 외에도 각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환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1984년에서 1989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20억 마르크를 환영금으로 지출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문서 번호 220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 국가 파트너들의 유보적 자세

1996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 헬무트 콜, 유럽공동체,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내용_

유럽공동체 내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회원국 간에 큰 입장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유보적 자세를 보인 것은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였다. 대처 영국 총리는 독일인들에 대해 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었다. 콜 수상에 따르면 이 때문에 대처 영국 총리가 통일독일이 유럽공동체

에 확실하게 통합되도록 전력을 다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네덜란드 측의 입장에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큰 영향을 끼쳤다. 룩셈부르크 및 벨기에 대표들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총리 쥴리오 안드레오티가 새로운 '범독일주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공동체에 대해 전혀 유보적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단지 스페인 및 아일랜드의 총리였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역시 통일에 대해 그 나름의 문제를 우려한 바 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우선 그에 관해 분명한 전략이 없었으며, 프랑스 외무 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무엇보다 프랑스 외무부는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출처_ Kohl, Helmut. 1996.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Dargestellt von Kai Diekmann und Ralf Georg Reuth. Berlin: Propyläen-Verlag. S. 196-198.

문서 번호 221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의결 추천 및 보고

2000년 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연방주 상임위원회

내용_

신연방주 상임위원회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제안한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보고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지속하자는 안에 동의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4/2608

문서 번호 222

연방정부의 답변: 기본적인 문제와 연방수상실의 신연방주 관련 업무 협력과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

2007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좌파당

내용_

연방정부는 좌파의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다:
2005, 2006 그리고 2007년에는 신연방주 내각위원회가 신연방주의 주정부들과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3차례 모임을 가졌다.

연방정부의 활동과 결정에 관한 개별 부서와 공무원의 기여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6/6110